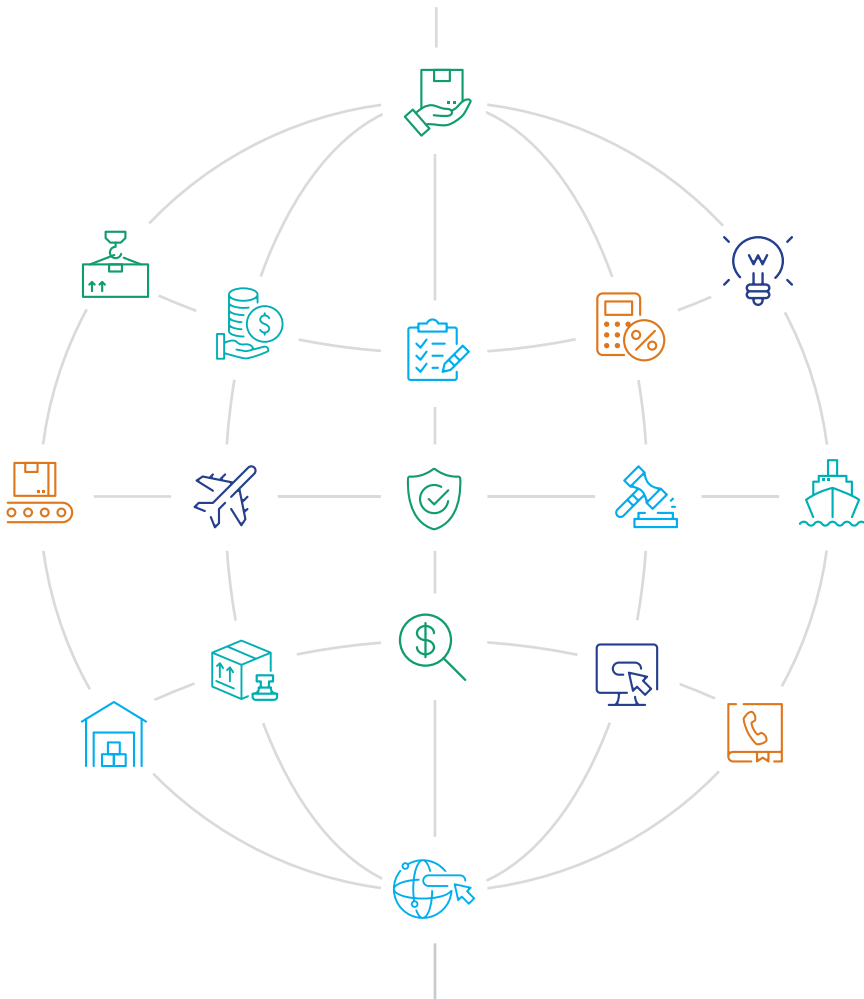


알기  
쉬운

#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알기  
쉬운

#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발간사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우리의 대외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수출입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사후에 예기치 못한 세금 추정 위험을 해소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인 「관세안심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관세 행정 규정 속에서 기업들이 관세행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본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관세 행정 지원 제도를 단계별로 쉽게 안내하는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사후 추징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품목분류, 과세가격, FTA 활용, 외국환 거래 등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의 사전심사 제도와 납세협력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운 경제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 12.

관세청장 이 명 구

## CONTENTS

|                                                                                     |                                      |           |
|-------------------------------------------------------------------------------------|--------------------------------------|-----------|
| <b>PART 01</b>                                                                      | <b>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b>              | <b>09</b> |
|    | 1. 성실신고는 수출입기업 경영에 필수입니다             | 10        |
|                                                                                     | 2. 무역거래 준비와 동시에 성실신고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 11        |
| <b>PART 02</b>                                                                      | <b>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b>                 | <b>13</b> |
|    | 1. 수출입신고 전에 품목분류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 14        |
|                                                                                     | 2.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인 받으세요                 | 18        |
|                                                                                     | 3.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도 미리 확인하세요(ACVA) | 22        |
|                                                                                     | 4. 환급신청 전에 수출물품의 환급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 26        |
|                                                                                     | 5.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 27        |
| <b>PART 03</b>                                                                      | <b>수출입통관 안내</b>                      | <b>29</b> |
|    | 1. 수입통관은 이렇게 하세요                     | 30        |
|                                                                                     | 2. 수출통관 절차도 확인하세요                    | 40        |
|                                                                                     | 3. 특수물품·우편물 통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45        |
|                                                                                     | 4.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를 확인하세요               | 49        |
|                                                                                     | 5. 납세신고와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                 | 53        |
|                                                                                     | 6. 관세의 감면과 감면물품의 사후관리도 확인하세요         | 56        |
|                                                                                     | 7.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59        |
|                                                                                     | 8. 신고·제출서류는 보관하여야 합니다                | 62        |
| <b>PART 04</b>                                                                      | <b>FTA 활용안내</b>                      | <b>65</b> |
|  | 1.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 67        |
|                                                                                     | 2. 원산지 결정기준, 꼭 확인하세요                 | 69        |
|                                                                                     | 3.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로 이용하세요      | 70        |
|                                                                                     | 4. 원산지인증수출자, FTA활용의 필수입니다            | 72        |
|                                                                                     | 5. 원산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 75        |
|                                                                                     | 6.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으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세요      | 77        |
|                                                                                     | 7. YES FTA 전문교육                      | 78        |

|                                                                                   |                                    |           |
|-----------------------------------------------------------------------------------|------------------------------------|-----------|
| <b>PART 05</b>                                                                    | <b>개인통관 안내</b>                     | <b>79</b> |
|  | 1.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확인하세요          | 80        |
|                                                                                   | 2. 해외직구물품 반품하면 환급 받으세요             | 81        |
|                                                                                   | 3.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안내드립니다             | 82        |
|                                                                                   | 4. 입국장면세점,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 85        |
|                                                                                   | 5.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으세요 | 87        |

|                                                                                   |                             |           |
|-----------------------------------------------------------------------------------|-----------------------------|-----------|
| <b>PART 06</b>                                                                    | <b>기업부담 완화제도</b>            | <b>89</b> |
|  | 1. 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 90        |
|                                                                                   | 2. 관세환급, 꼭 챙겨 주세요           | 94        |
|                                                                                   | 3. 분할납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98        |
|                                                                                   | 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 99        |
|                                                                                   | 5.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 101       |
|                                                                                   | 6. 해외통관 애로 해소해 드려요          | 105       |
|                                                                                   | 7. 일자리 창출기업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 106       |

|                                                                                   |                              |            |
|-----------------------------------------------------------------------------------|------------------------------|------------|
| <b>PART 07</b>                                                                    | <b>납세협력 프로그램</b>             | <b>107</b> |
|  | 1. 기업부담이 완화되는 보장제도 이용하세요     | 108        |
|                                                                                   |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 110        |
|                                                                                   | 3.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하세요     | 113        |

|                                                                                     |                             |            |
|-------------------------------------------------------------------------------------|-----------------------------|------------|
| <b>PART 08</b>                                                                      | <b>성실신고 이행확인</b>            | <b>115</b> |
|  | 1. 관세조사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116        |
|                                                                                     | 2. AEO기업은 갹산심사를 받습니다        | 119        |
|                                                                                     | 3.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 120        |
|                                                                                     | 4. 원산지검증으로 특혜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123        |

|                                                                                     |                            |            |
|-------------------------------------------------------------------------------------|----------------------------|------------|
| <b>PART 09</b>                                                                      | <b>성실신고 불이행 시</b>          | <b>129</b> |
|  | 1.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130        |
|                                                                                     | 2. 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 132        |
|                                                                                     | 3.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35        |

**PART 10****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137**

|                       |     |
|-----------------------|-----|
| 1. 외국환거래 제도의 개요       | 138 |
| 2. 지급 등의 절차           | 141 |
| 3. 지급 등의 방법           | 143 |
| 4.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 147 |
| 5.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등    | 149 |
| 6.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152 |
| 7. 자율점검표를 이용한 신고거래 확인 | 154 |

**PART 11****납세자 권리보호****159**

|                               |     |
|-------------------------------|-----|
| 1.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 160 |
| 2. FTA 원산지검증 시 납세자 권리 보호 받으세요 | 162 |
| 3.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 164 |
| 4.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165 |
| 5. 사후 구제절차도 알아두세요             | 166 |
| 6.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소개합니다            | 167 |
| 7. 관세업무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합니다       | 169 |

**부록 01****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173**

|                         |     |
|-------------------------|-----|
| 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 | 174 |
|-------------------------|-----|

**부록 02****업무분야별 상세안내****177**

|                     |            |
|---------------------|------------|
| <b>① 수출입통관 안내</b>   | <b>179</b> |
| 1. 일반 수입통관 절차       | 180        |
| 2. 수출통관 절차          | 187        |
| 3. 특송물품·우편물 수출입통관   | 192        |
| 4.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   | 197        |
| 5. 관세감면·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 210        |
| 6. 원산지 표시           | 216        |
| 7.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225        |
| <b>② FTA활용 안내</b>   | <b>227</b> |
| 1.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 228        |
| 2. 원산지 결정기준         | 230        |
| 3. 원산지 인증수출자        | 237        |
| 4. 원산지증명서 발급        | 240        |
| 5. 원산지 검증           | 243        |

|                        |            |
|------------------------|------------|
| <b>③ 관세 부과·징수와 환급</b>  | <b>253</b> |
| 1. 납세신고                | 254        |
| 2.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 259        |
| 3. 관세의 납부기한            | 262        |
| 4. 가격신고 제도             | 266        |
| 5. 관세평가                | 271        |
| 6.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 278        |
| 7. 품목분류                | 283        |
| 8.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285        |
| 9. 관세환급                | 290        |
| 10. 환급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 294        |
| <b>④ 납세협력 프로그램 안내</b>  | <b>299</b> |
| 1. 사후세액심사              | 300        |
|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 302        |
| 3.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 311        |
| <b>⑤ 관세조사 안내</b>       | <b>313</b> |
| 1. 관세조사                | 314        |
| 2. 통관적법성 위반 사례         | 326        |
| 3. 불성실신고에 대한 관세 제재     | 335        |
| 4. 일자리창출·유지기업 관세조사 유예  | 348        |
| <b>⑥ 납세자권리구제 안내</b>    | <b>349</b> |
| 1.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 350        |
| 2. 불복청구 주요사례           | 354        |
| 3. 납세자보호관제도            | 359        |
| 4. 관세 종합 상담            | 369        |

---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371**




---

**부록 04      수출입·관세업무 관련 연락처      375**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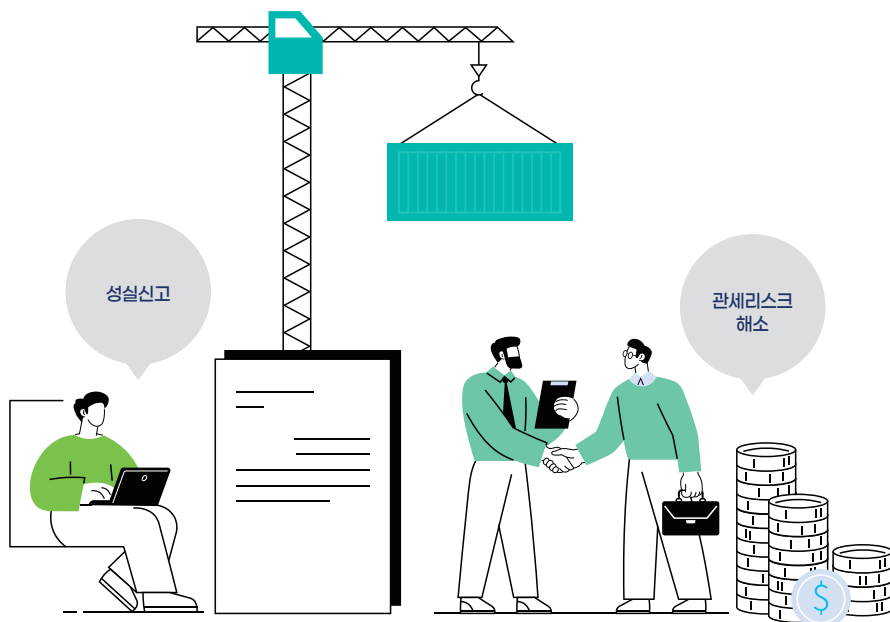
PART 01

**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1. 성실신고는 수출입기업 경영에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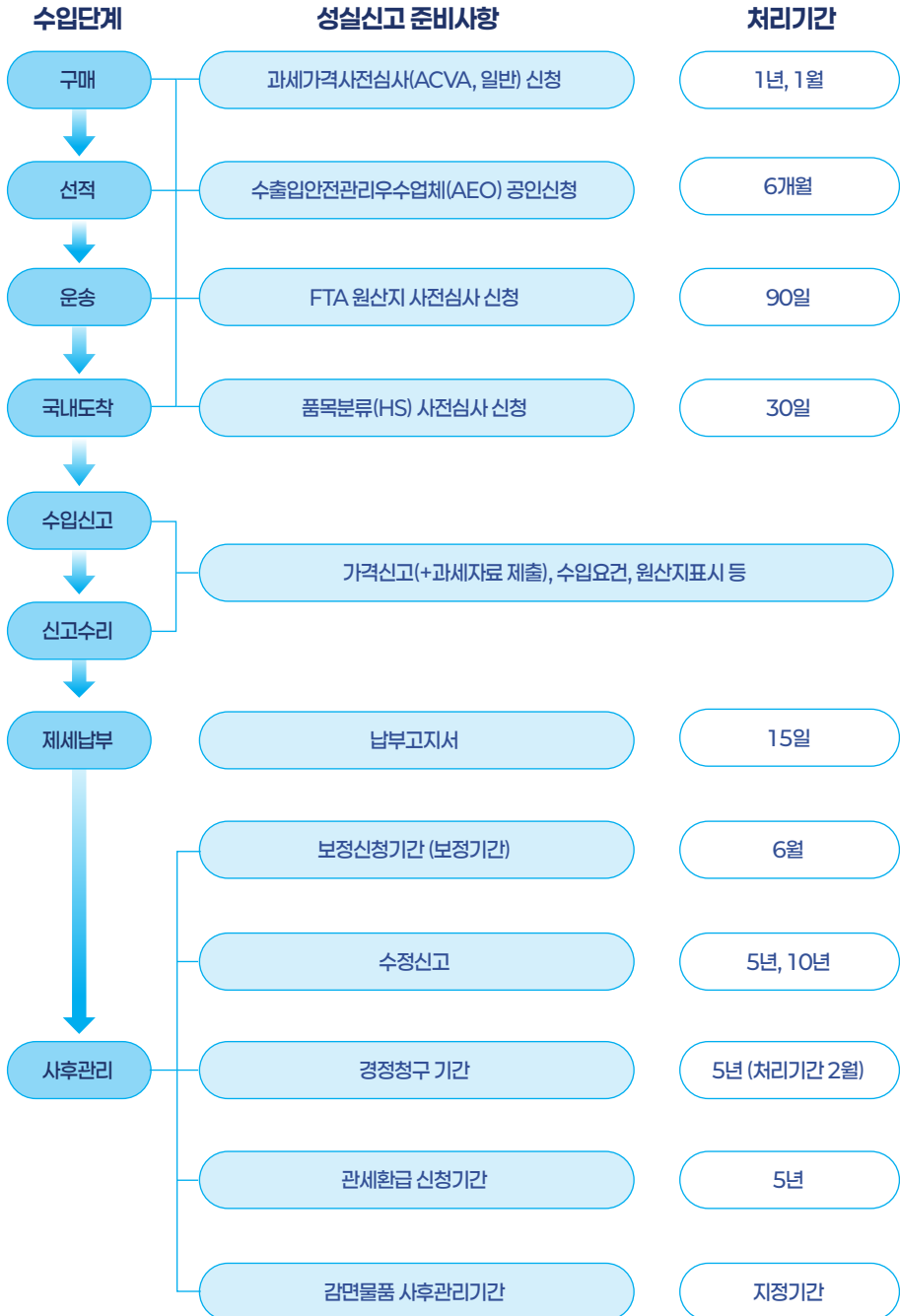
## 1 성실신고를 통해 관세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수입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요건을 갖추어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 세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통관단계에서 국민보건·사회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신고오류로 통관 후 관세 등을 추징당하거나 행정·사법상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수입자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세관의 엄격한 통관 관리로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수입자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 준비단계부터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고객센터 등 폭넓게 활용해야 합니다.
- 또한, 관련 부서간에 거래가격, 외환, 통관요건 등 수입정보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관세사 등에게 정확한 수입거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성실한 관세신고를 통해 관세리스크를 조기에 관리·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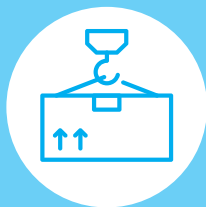
2

## 무역거래 준비와 동시에 성실신고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PART 02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1. 수출입신고 전에 품목분류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2.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인 받으세요
3.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도 미리 확인하세요(ACVA)
4. 환급신청 전에 수출물품의 환급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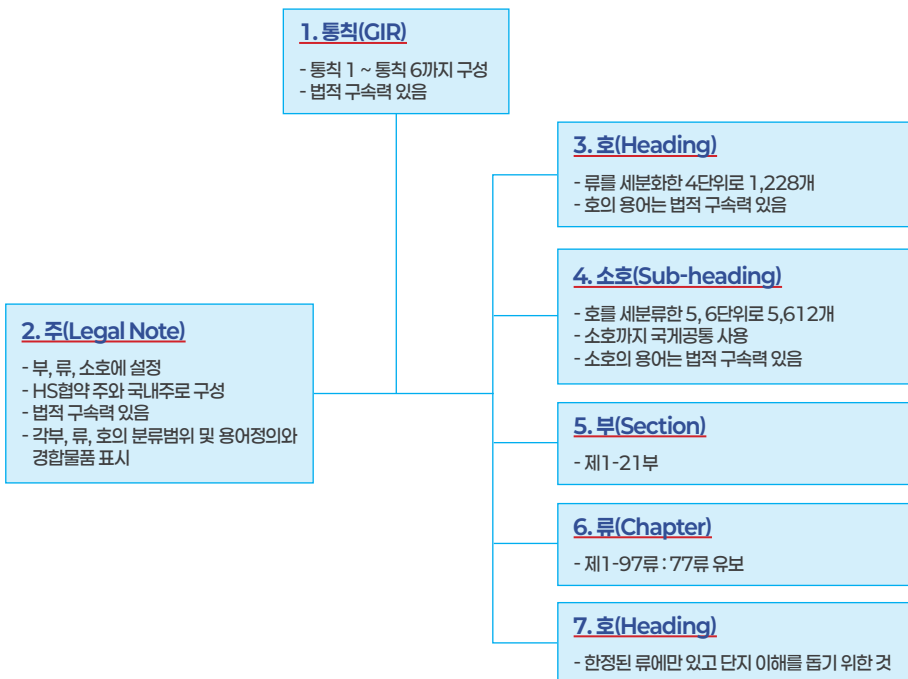
## ①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됩니다.
- WTO에 가입된 회원국은 HS 체약국이 되며,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

- ▶ HS코드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이며, 관세법에서 별표 관세율표에 HS 코드를 반영·시행
- ▶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HSK(HS of KOREA)는 한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이며 HS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한 10단위 분류체계를 갖춤(중국·EU-8단위, 일본-9단위, 미국-10단위)

## ② 품목분류표 기본구조



## 1 품목분류사전심사의 의의

-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수출입 하려는 자가 수출입 하려는 물품이 HS품목분류표상 어느 번호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는 제도입니다.

## 2 사전심사신청자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대상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입니다.

## 3 사전심사 신청시기

- 원칙적으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4 사전심사 분석수수료

-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구성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신청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사전심사 처리기한

-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 신속심사 신청대상

-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정요구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6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된 품목분류 번호는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관세법시행령 제107조의 품목분류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품목분류의 변경사실을 통지합니다.
- 다만, 이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로 수출·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 번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품목분류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 사전심사신청 준비와 심사절차

### ● 신청인 준비사항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1부
- 물품설명서 1부(용도설명서, 성분함량표 및 제조공정도 포함)
- 견본 1점(분말제품 및 액상제품 - 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분말 500g 이상, 액상 500ml 이상)

※ 견본제출이 어려운 거대중량(예: 기계류 등) 물품은 사유서와 대체사진 3매 제출

- 필요시, 비공개 요청서 1부(요청서와 증빙자료 포함)
- 필요시, 신속심사요청서 1부

### ● 신청방법

#### ▶ 인터넷(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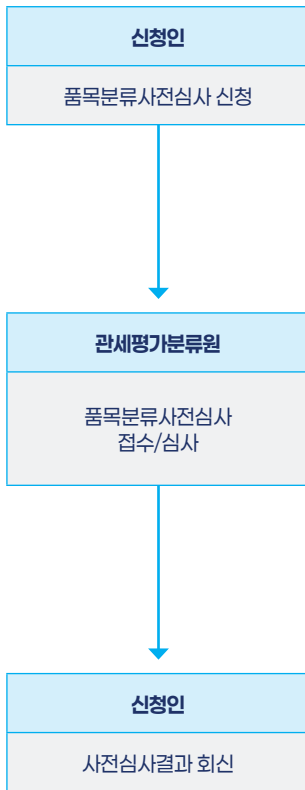
\* <https://unipass.customs.go.kr>

#### ▶ 서면(예외)

- 우편, 직접 방문\*

\* 관세평가분류원(T. 042-714-7535,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214)

## 8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처리 절차



| 구분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
| 발급기관 |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
| 신청대상 | 수출입신고를 하려는 물품                        |
| 신청인  | 수출입자, 수출물품 제조자,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
|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 등 미산입)                      |
| 수수료  | 품목당 3만원(성분분석 시)                      |
| 신청방법 | 인터넷*(원칙), 서면(우편 등)<br>* 관세청 UNI-PASS |

## ① 관세평가

-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가격과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과세가격 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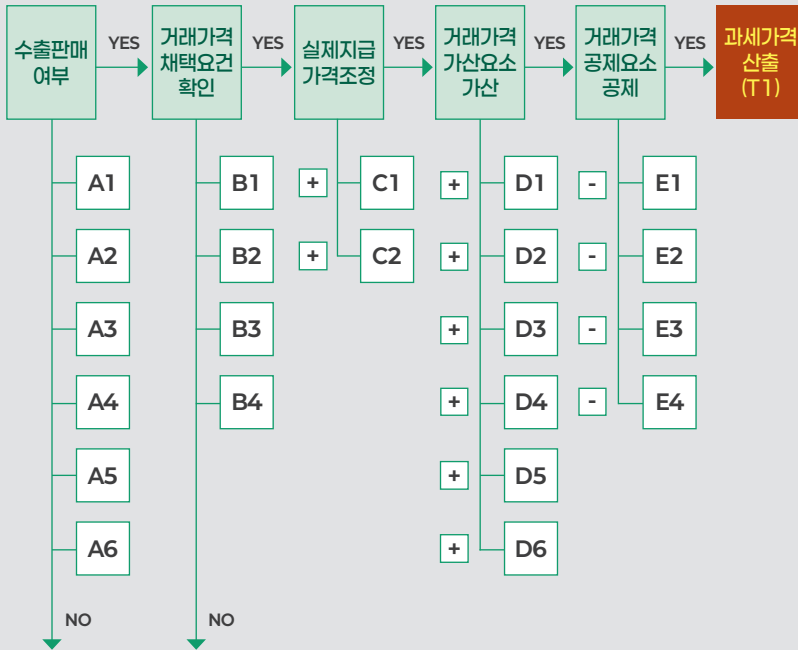
-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하여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거래가격 가산요소

- ① 수수료 및 중개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②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 ③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 ④ 권리사용료 (Royalty) (재현생상권의 사용대가는 제외한다)
- ⑤ 사후귀속이익
- ⑥ 운임 및 보험료

-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으로 제4방법, 제5방법 적용순서는 바꿀 수 있음)

## 과세가격 결정방법 체계도



기타의 과세가격  
T2, T3, T4, T5, T6의 순차적 적용

- T**
- T1**: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 T2**: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 T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 T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
  - T5**: 산정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
  - T6**: 합리적인 과세가격

- A**
- A1**: 무상 수입물품이 아님
  - A2**: 판매위탁 수입물품이 아님
  - A3**: 수출자 책임판매물품이 아님
  - A4**: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님
  - A5**: 유·무상 임대차물품이 아님
  - A6**: 송화주 부담 파기물품이 아님

- B**
- B1**: 수입물품의 사용·처분의 제한 없음
  - B2**: 특별한 조건·사정으로 가격에 영향 없음
  - B3**: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없음
  - B4**: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C**
- C1**: 별도로 지급한 금액 (채무변제액, 상계액)
  - C2**: 간접지급금액

- D**
- D1**: 수수료 및 중개료
  - D2**: 용기 및 포장비용
  - D3**: 생산지원비용
  - D4**: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 D5**: 사후귀속이익
  - D6**: 운임 및 보험료

- E**
- E1**: 수입후 설치 등 비용
  - E2**: 수입 이후의 운송비용
  - E3**: 수입국 제세·공과금
  - E4**: 연불이자

### 3 과세가격 심사제도를 활용하세요.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독립당사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 ; APR; Advance Pricing Rule)와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특수관계 사전심사 ;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로 구분됩니다.

#### 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비교

| 구분      | 일반 사전심사(APR)                                                                                                                                                                        |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
|---------|-------------------------------------------------------------------------------------------------------------------------------------------------------------------------------------|--------------------------------------------------------------------------------------------------------------------------------------------------------------------------|
| 심사대상    | 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
| 심사기간    | 30일                                                                                                                                                                                 | 1년                                                                                                                                                                       |
| 시행시기    | '90. 12. 31.                                                                                                                                                                        | '08. 1. 1.                                                                                                                                                               |
| 신청자격    |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관계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세자                                                                                                                                     |
| 심사절차    | 일방 결정                                                                                                                                                                               | 납세자 협의 ⇒ 동의 ⇒ 결정                                                                                                                                                         |
| 심사담당    |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분류원(본부세관)                                                                                                                                                            |
| 주요 심사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공제요소 확인</li> <li>-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귀속이익 등)</li> <li>- 수출판매해당 여부</li> <li>- 제2·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li> <li>-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 제6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li> <li>-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li> <li>-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li> </ul> |
| 잠정신고    | 적용대상 아님                                                                                                                                                                             | 신청시점에 잠정가격신고하고, 결정내용으로 확정가격신고                                                                                                                                            |
| 가산세     |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결정 기간 가산세 면제(잠정가격 신고 시)</li> <li>- 결정 이전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가산세 10% 면제</li> </ul>                                  |

|      |                    |                                                                            |
|------|--------------------|----------------------------------------------------------------------------|
| 적용기간 | 3년(확인물품에 한함)       | 3년(결정내역과 동일 거래물품)<br>+ 2년(연장가능)<br>*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br>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
| 사후관리 | 해당없음               | 연례보고서 제출                                                                   |
| 법적근거 | 관세법 제37조 제①항 제1,2호 | 관세법 제37조 제①항 제3호                                                           |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042-481-7767, 7987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T.042-714-7511, 7508

PART  
01

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PART  
02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PART  
03

수출입  
통관 안내

PART  
04

FTA  
활용 안내

PART  
05

개인통관  
안내

PART  
06

기업 부담  
완화제도

PART  
07

납세협력  
프로그램

PART  
08

성실신고  
이행확인

PART  
09

성실신고  
불이행 시

PART  
10

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

PART  
11

납세자  
관리보호

### 1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 관세 과세가격의 1차적인 기초는 거래가격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다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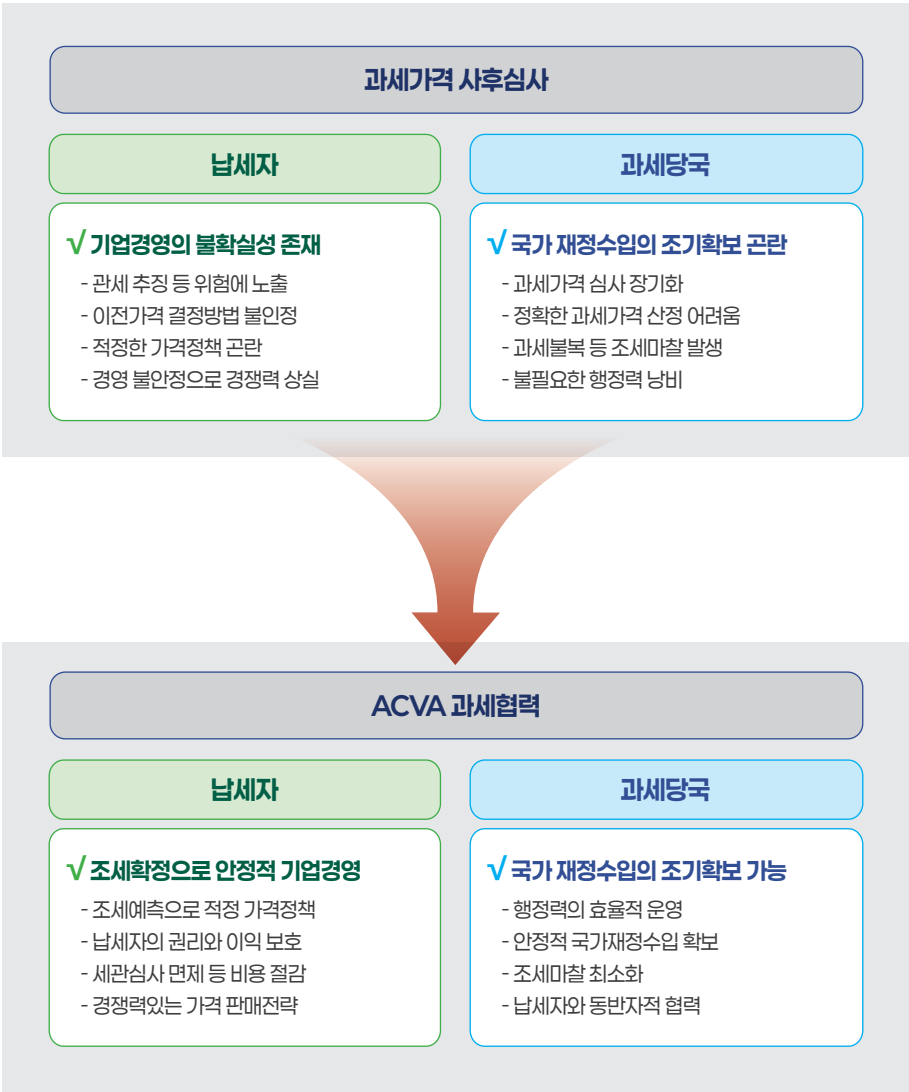
#### 특수관계의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독점대리인 등의 경우에도 '특수관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자로 간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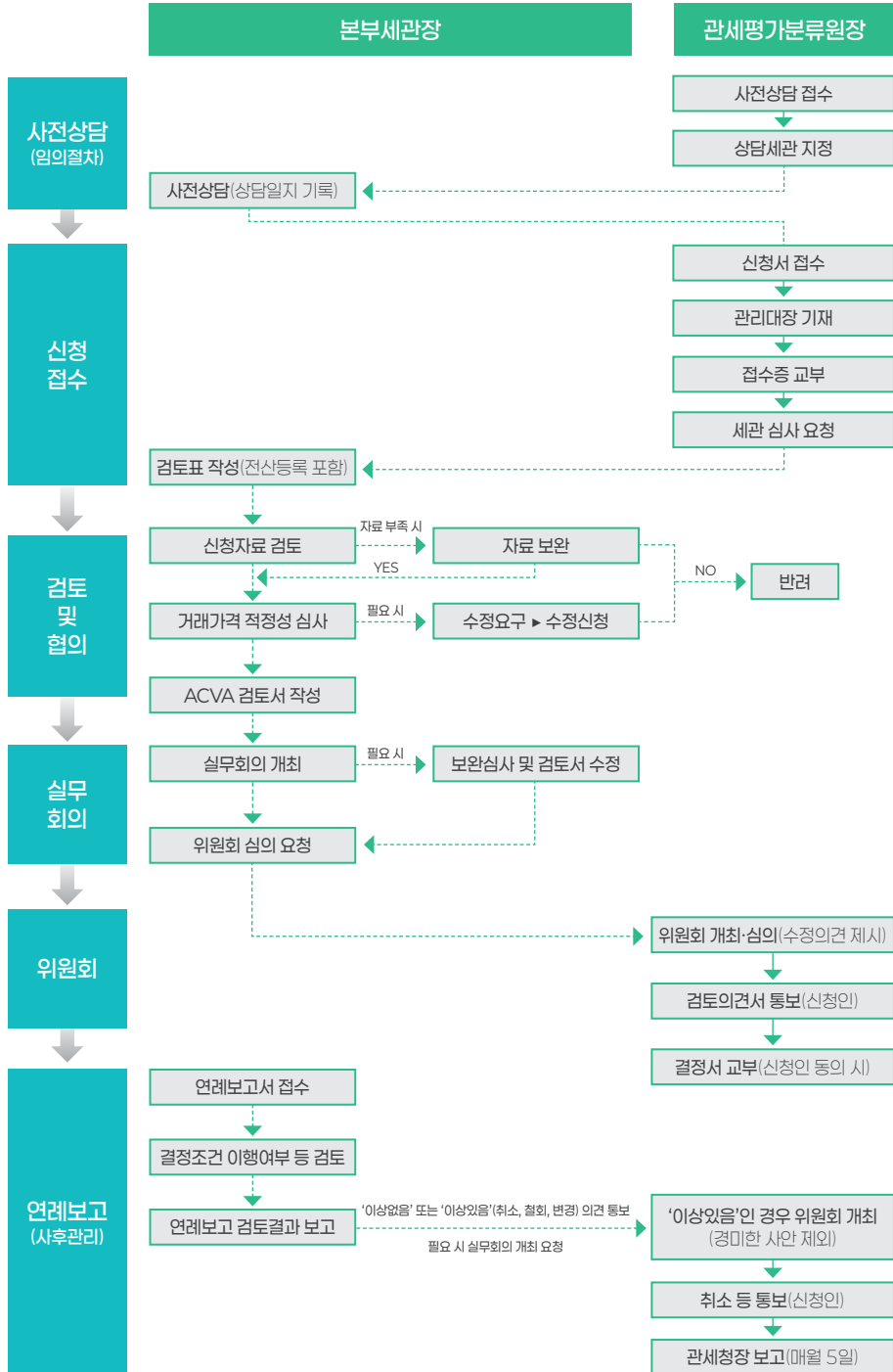
## ②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의 의의

-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입니다.

## ③ ACVA 제도는 납세자·과세당국 모두 유익합니다.



#### 4 ACVA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5 ACVA 이용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ACVA 신청물품은 신청시점부터 결정시점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내역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ACVA 결정 이전(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 납부가 면제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ACVA 사전심사 기간 동안 세관의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CVA 결정 물품(유효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ACVA 결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 ACVA 업체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042-481-7767, 7987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T.042-714-7511, 7508

### 참고자료

####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평가

## ■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개요

- 환급을 신청하기 전, 환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소요량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 자율소요량 이용업체가 소요량 산정 오류로 인하여 사후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징 위험을 사전예방하고 수출기업의 과소환급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 신청방법 및 처리기관

- **신청 및 처리기관**: 관할(환급) 세관장  
※ 관할(환급) 세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본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 처리가능
- **신청대상**: 수출 등(국내거래 포함)에 제공된 미환급신청 물품
- **처리기간**: 30일(현장확인 시 50일, 보완기일 제외)
- **신청방법**: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작성하여 관할(환급)지 세관장에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0조~제12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관련 주요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T. 042-481-7873 또는 7875)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지역번호 없이 125
- 관할(환급) 세관 환급담당부서

## 5

##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 ①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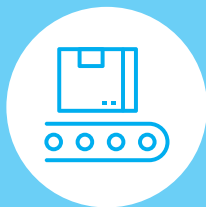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원산지 사전심사 처리 절차도

| 단계       | 세부단계       | 주체              | 주요내용                                                                                                      |
|----------|------------|-----------------|-----------------------------------------------------------------------------------------------------------|
| 신청       | 사전심사 신청    | 신청인             | ▶ 서류제출(신청서 및 심사 필요서류)<br>- 신청 : 관세청 UNI-PASS, 서면, 이메일 등                                                   |
| 접수       | 신청서류 확인·접수 | 담당<br>부서        | ▶ 신청 내용이 규정상 사전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류 확인                                                                 |
|          | 보정 및 반려    |                 | ▶ 추가서류 제출 필요 시 신청인에게 보정요구<br>- 보정 :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br>▶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          | 사전심사 접수처리  |                 |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및 수수료 납부 확인                                                                                |
| 심사       | 신청내용 심사    | 담당<br>부서        |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서류 보정기간 제외)<br>▶ 심사결과 보정 또는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 또는 반려<br>- 보정 :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 |
| 통지<br>공표 | 심사결과 통지    | 담당<br>부서        | ▶ 최종 검토 후, 심사 결과를<br>'사전심사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          | 심사결과 대외 공표 |                 | ▶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FTA 포털'에 게시<br>- 사전심사 결과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에 한하여 결정내용을 공표                                      |
| 사후<br>절차 | 이의제기       | 신청인             |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          | 사전심사 변경    | 신청인<br>담당<br>부서 |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br>▶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가능                        |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PART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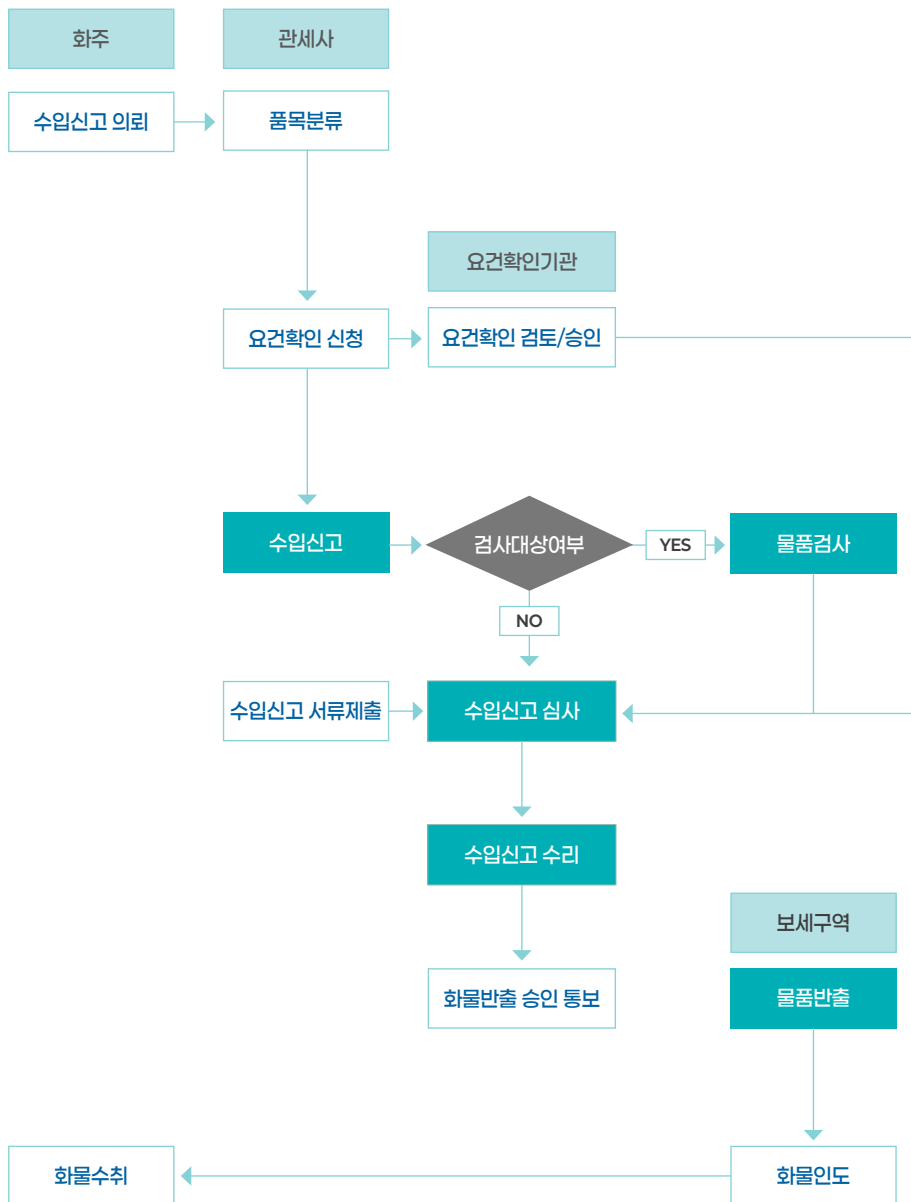
**수출입통관 안내**

1. 수입통관은 이렇게 하세요
2. 수출통관 절차도 확인하세요
3. 특송물품·우편물 통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4.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를 확인하세요
5. 납세신고와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
6. 관세의 감면과 감면물품의 사후관리도 확인하세요
7.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8. 신고·제출서류는 보관하여야 합니다

## 1

## 수입통관은 이렇게 하세요

## ■ 수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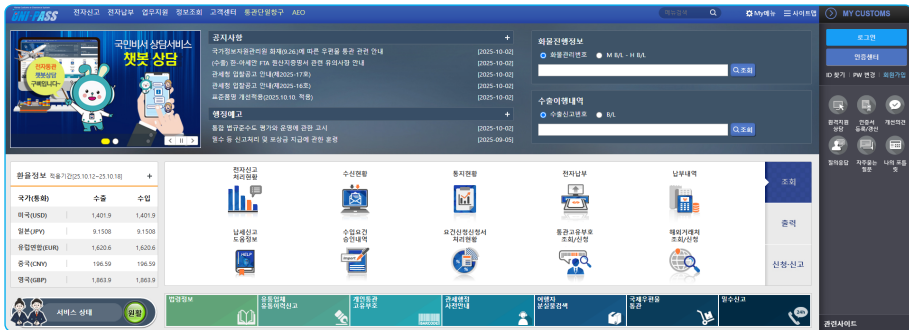
## 1 수입통관

- **수입통관**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2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에 자료전송

※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를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기술지원센터(T.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①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②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 3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 4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완요구 사유

- ①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 ②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③ P/L 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 통관보류 사유

- ①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③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⑤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⑥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⑦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 ⑧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이 발행됩니다.

\*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5 물품반출

-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

## 6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세관장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각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
| (1) 「약사법」해당물품 중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및 한약재<br>(가)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br>(나)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br>(다) 한약재<br>(라) 동물용 의약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li>●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li> <li>●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 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li> <li>●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ul> |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
| (4) (삭제)                                                                                                                                                                |                                                                                                                                                                                                                       |
| (5) 「식물방역법」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
| (6) 「사료관리법」해당물품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
| (7) 「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
| (8) (삭제)                                                                                                                                                                |                                                                                                                                                                                                                       |
|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해당물품<br>(가) 안전인증대상 제품<br>(나) 안전확인대상 제품<br>(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li> <li>●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li> <li>●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li> </ul>                                                            |
|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서                                                                                                                                                                                         |
| (1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 ●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                                                                                                                                                                                                    |
| (12) 「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li> <li>●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li> </ul>                                                                                                    |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
| (13) 「방위사업법」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
| (14) 「화학물질관리법」해당물품<br>(가) 금지물질<br>(나) 제한물질<br>(다) 유독물질                                                                                 |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br>●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br>●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
| (15) 「석면안전관리법」해당물품                                                                                                                     |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
| (16) 「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br>(가) 핵물질<br>(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br>●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
|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br>해당물품<br>(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br>(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br>전자총격기, 석궁                     | ●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br>●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
|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br>(다만,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br>(가) 야생생물<br>(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br>포함)<br>(다) <삭제><br>(라) 지정검역물 |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br>●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br>위기종) 수입허가증(서)<br>● <삭제><br>●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야생동물 수입검역<br>증명서              |
|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 ●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
| (20) 「비료관리법」해당물품 중 위해성검사대상 물품                                                                                                          | ●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
| (21) 「먹는물관리법」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 ●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
| (22) 「종자산업법」해당물품<br>(가)식량작물종자<br>(나)채소종자<br>(다)버섯종균<br>(라)약용종자<br>(마)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br>●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br>●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br>●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br>●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 (23) 「화장품법」해당물품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 (24) (삭제)                                                                                                                              |                                                                                                                                       |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
| (25) 「의료기기법」해당물품<br>(가) 의료기기<br>(나)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구조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br>(다) 동물용 의료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li>●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li> <li>●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li> </ul>                                           |
| (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 (27) (삭제)                                                                                                                       |                                                                                                                                                                                                                  |
| (28) 「통신비밀보호법」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
| (29) 「산업안전보건법」해당물품<br>(가) 석면함유제품<br>(나) 제조등 금지물질<br>(다) 안전인증대상제품<br>(라) 자율안전확인 대상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확인서</li> <li>●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li> <li>●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li> <li>●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li> </ul> |
| (3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 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
| (3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당물품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
| (32) (삭제)                                                                                                                       |                                                                                                                                                                                                                  |
| (33) 「전파법」해당물품<br>(가)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br>(나)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 확인서</li> <li>●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인 생략된 경우는 제외)</li> </ul>                                                                       |
|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고 위험병원체                                                                                        | ●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 신고확인서                                                                                                                                                                               |
|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해당물품 중 고압가스용기                                                                                                  |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
| (3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li> <li>●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li> </ul>                                                                           |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
| (37) 「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                                                |
| (38) 「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
| (39) 「농약관리법」 해당물품                                                     | ● 농촌진흥청장의 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
|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br>(가) 목재, 목재제품, 목재패킷<br>(나) 성형목탄, 목탄 | ● 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br>●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 통지서        |
| (4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br>(가) 생태계교란 생물                      |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
| (4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br>(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신고 확인증                                             |
| (4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br>해당물품<br>(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물품<br>(가) 이동식부탄연소기·이동식프로판연소기              |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
|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당물품<br>(가) 삼상유도전동기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확인서              |

## 7 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세요.

● 현행 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 내용 및 근거                                                     |
|-------|-------|-------------------------------------------------------------|
| 국정관세율 | 기본관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
|       | 감정관세율 |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감정적으로 적용                                     |
|       | 탄력관세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br>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5조(제73조 제외)에 근거 |
| 협정관세율 |       |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해 결정된 세율                                   |

● 관세율의 적용 순위에 유의하세요.

| 순위 | 적용 관세율                                                                                   | 비고                              |
|----|------------------------------------------------------------------------------------------|---------------------------------|
| 1  | 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간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 특별간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
| 2  | 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                                                                     | 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 3  | 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                                               | 단, 할당관세는 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 4  | 일반특혜(제76조)                                                                               |                                 |
| 5  | 감정(제50조)                                                                                 |                                 |
| 6  | 기본(제50조)                                                                                 |                                 |

## 8 특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간이세율

-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 (1)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

- 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 ②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 ③ 탁송품 또는 별송품

#### (2) 간이세율적용 제외물품

- ①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2). 수출용원재료
  - (3). 관세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나. 고가품
    - 다.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라. 관세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해당 물품
- ②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③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④ 관세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 ● 합의에 의한 세율

-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용도세율

-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수입통관 흐름도



PART  
01

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PART  
02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PART  
03

수출입  
통관 안내

PART  
04

FTA  
활용 안내

PART  
05

개인통관  
안내

PART  
06

기업 부담  
완화제도

PART  
07

납세협력  
프로그램

PART  
08

성실신고  
이행확인

PART  
09

성실신고  
불이행 시

PART  
10

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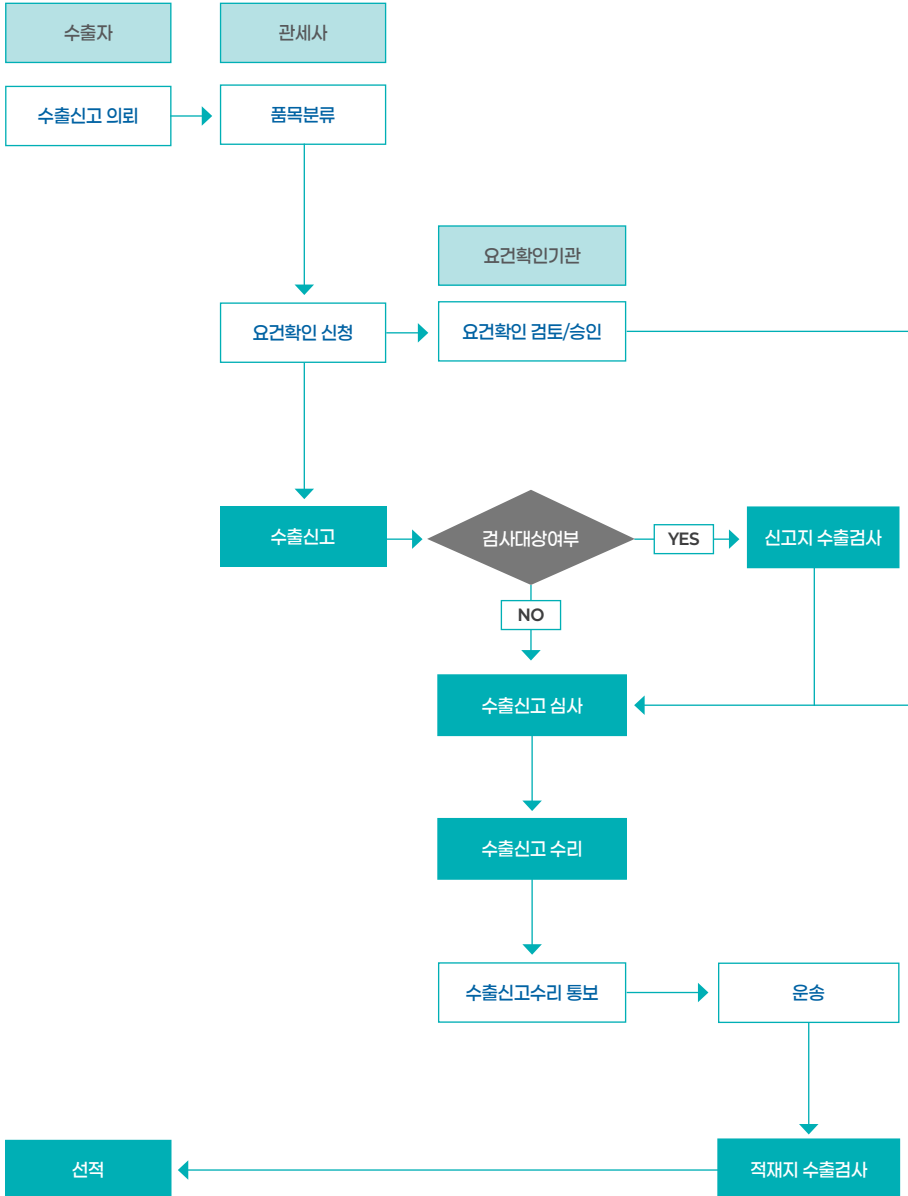
PART  
11

납세자  
권리보호

## 2

## 수출통관 절차도 확인하세요

## ■ 수출 개관



**① 수출신고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③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6 수출신고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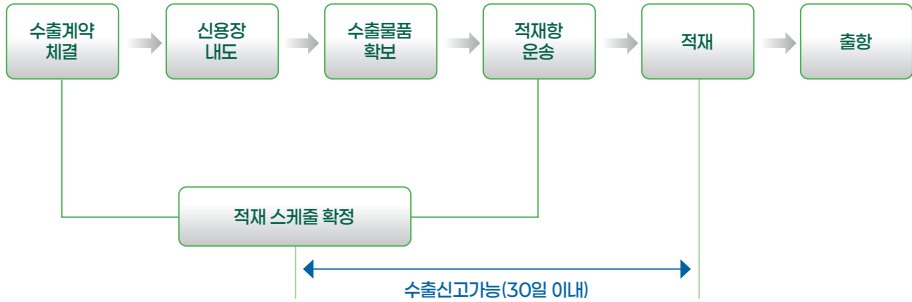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등에 따른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
| (2) (삭제)                                                                                                    |                                                                            |
|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서                                              |
|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br>●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 (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
| (5) 「총포·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br>(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br>(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 ●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br>●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br>(가) < 삭제 ><br>(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br>(다) < 삭제 >               | ● < 삭제 ><br>●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 위기종) 수출허가증(세)<br>● < 삭제 >       |
|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
|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br>(가) 핵물질<br>(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br>●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
|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물품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
| (11) (삭제)                                                                                                   |                                                                            |
| (1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 ●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
|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서                                                            |
|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br>(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
|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br>(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확인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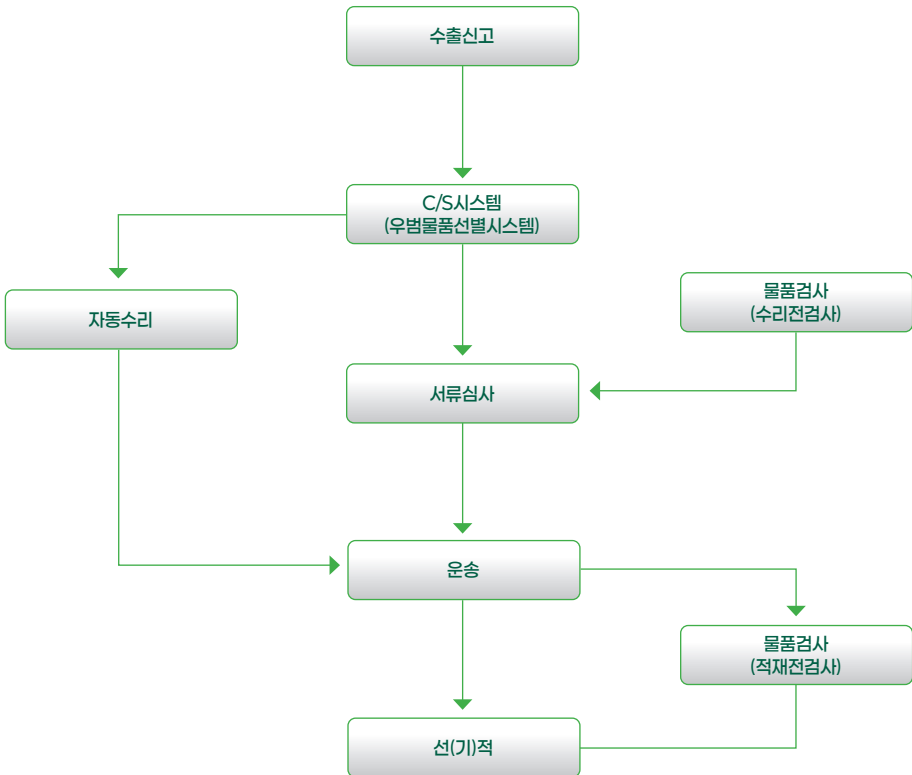
## 7 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

-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국제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 수출 절차



### ● 수출통관 흐름도



## 8 간이수출신고 절차

- 400만원(FOB 기준)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간이수출신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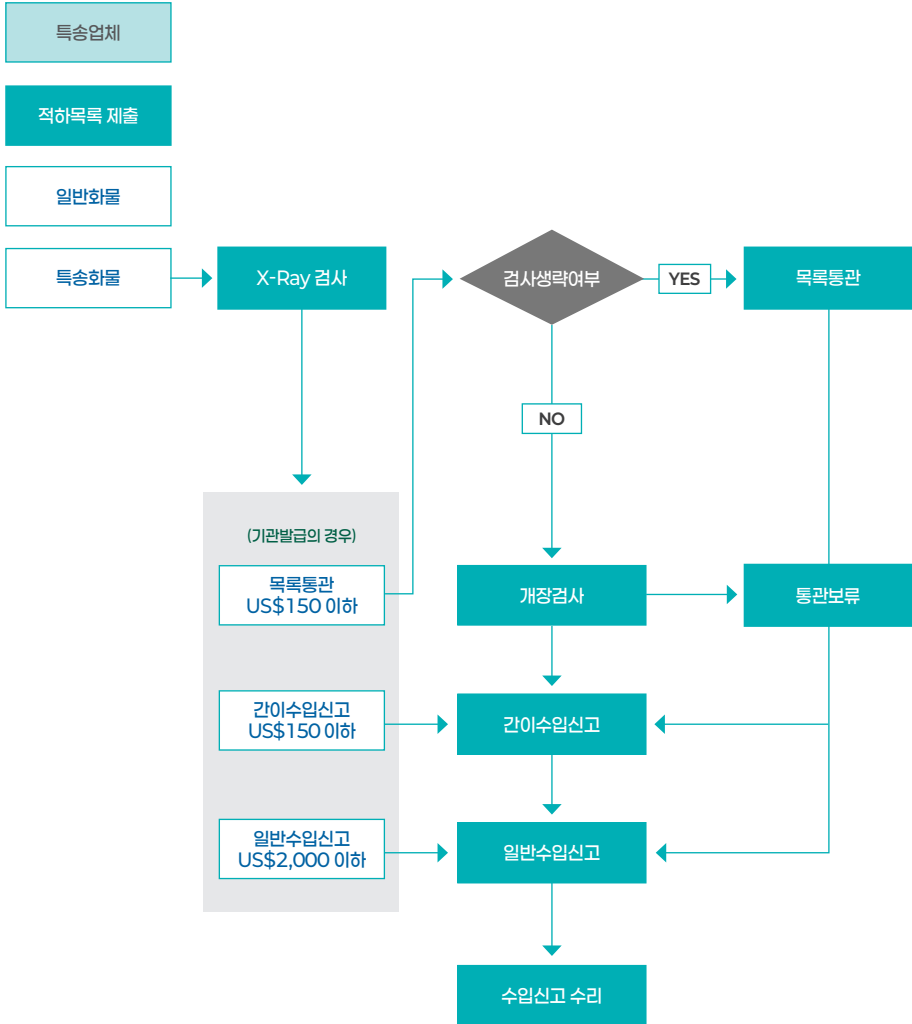
- ①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
- ②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과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은 일반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 업체는 적재이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

## 특송물품·우편물 통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 특송물품 수입개관



## 1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단,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주류·담배류 ⑧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⑫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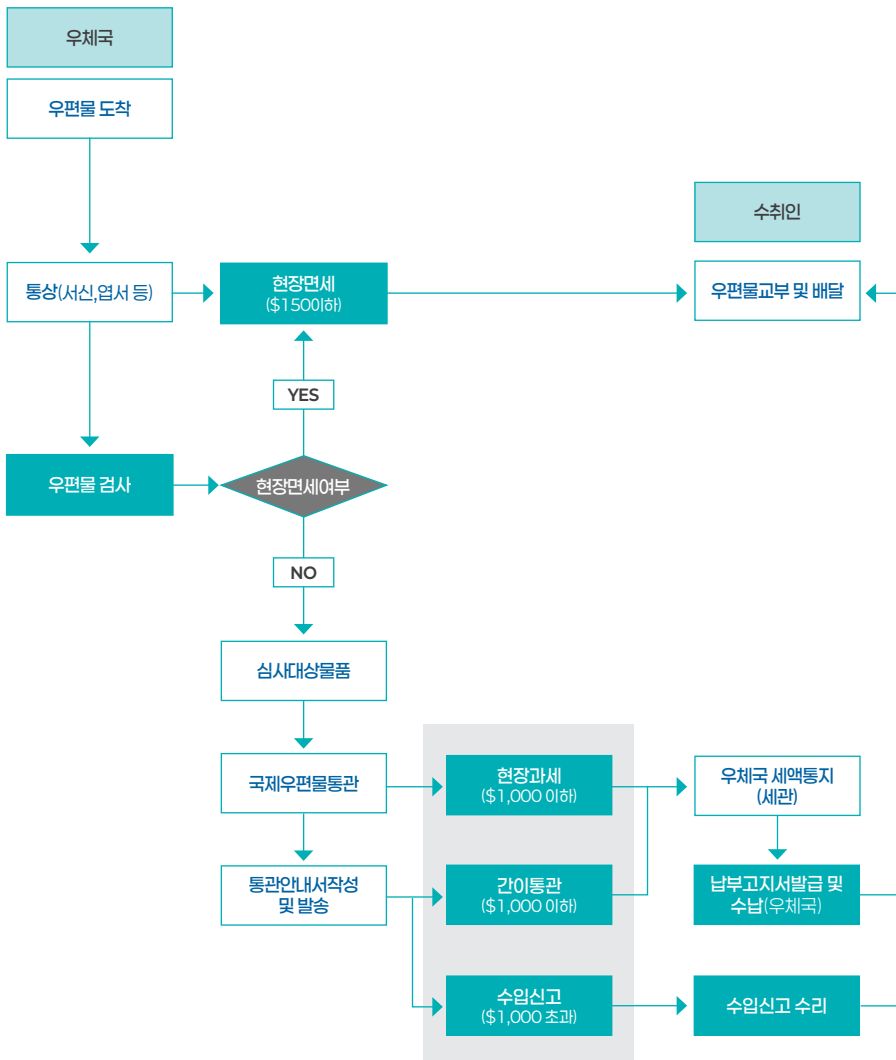
###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 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기업이 상용목적(상업용 견본품, 광고용품 제외)으로 특송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국제우편물 통관 개관



#### 4 우편물의 통관절차

-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고,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납부한 이후 배달이 진행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5 우편물의 수입신고방법

#####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일반수입신고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

- ①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②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③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④ 선물 등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 ⑤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물품
- ⑥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 ⑦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4

##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를 확인하세요

### 1 가격신고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 가격신고를 생략합니다

- 수입신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가격신고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가격신고 생략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격신고 생략 대상

-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② 정부조달물품
- ③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④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⑤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기관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함
- ⑥ 수출용 원재료
-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⑧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 ⑨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
- ⑩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

### 3 가격신고 필수신고대상

-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라 하더라도 '생략의 제외'에 해당 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격신고 생략 불가

-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금액(상계, 간접지급 등)이 있는 물품
- 과세가격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물품
- 관세 부과·징수 물품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체납자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농·수산물 등)

### 4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미만의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격신고는 종전과 같고, 과세자료 제출만 생략
- 같은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연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 수입 거래 형태별로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시, '미제출 사유서' 제출

| 분야(8개 분야)                  |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
|----------------------------|-----------------------------------------------------------------------------------------------------------------------------------------------------------------------------------|
| ①<br>권리사용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li> <li>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li> </ul>                                           |
| ②<br>생산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지원 관련 계약서</li> <li>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li> </ul>                                                                        |
| ③<br>수수료·중개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li> <li>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li> </ul>                                                                                 |
| ④<br>운임·보험료·<br>기타 운송관련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li> <li>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li> </ul>                                             |
| ⑤<br>용가·포장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li> <li>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li> </ul>                                                                  |
| ⑥<br>사후귀속이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г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li> <li>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li> </ul>                                 |
| ⑦<br>간접지급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li> <li>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li> <li>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li> <li>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li> </ul> |
| ⑧<br>특수관계자 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li> <li>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li> </ul>                                                                            |

※ 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2. ①부터~⑥까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3. ⑦ 간접지급금액: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과세자료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 사후 제출을 허용하였습니다.

※ 가격신고 시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고, 통관 후 30일 이내 과세자료 제출

## 5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하세요

●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유·곡물·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수입물품 가격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가 수입신고일로 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지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ACVA) 신청업체인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 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 APA 승인업체일 것

\*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 ACVA 또는 APA 승인서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제4방법)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터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 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042-481-7987, 7767

5

## 납세신고와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

### 1 납세신고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납세신고합니다.

- ①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 ② 관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 ③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 ④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 3 납세신고는 사후심사가 원칙입니다.

-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 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 4 다음의 경우 세관장이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 ① 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제1호 부터 제6호 및 제8호 부터 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③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⑥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5 납세제도와 납부기한

-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 납기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 6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제도

-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⑦ 납부방법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납부제도           |             | 주요목적                | 납부기한                                      | 법적근거                            |
|----|----------------|-------------|---------------------|-------------------------------------------|---------------------------------|
| 원칙 | 일반적인<br>납세     |             | -                   | 신고납부제도 :<br>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관세법<br>제9조제1항                   |
|    |                |             |                     | 부과고지제도 :<br>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    |                |             |                     | 즉시반출제도 :<br>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
| 예외 | 납세<br>정정<br>제도 | 보정<br>신청    | 부족세액 납부             |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관세법<br>제38조의2 제4항               |
|    |                | 수정<br>신고    | 부족세액 납부             |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 관세법<br>제38조의3 제1항               |
|    | 월별납부제도         |             | 납세편의,<br>금융 비용 절감   | 일반적인 납세신고의<br>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                | 관세법<br>제9조 제3항                  |
|    | 정수유예제도         |             | 재난 등으로 인한<br>어려움 완화 | 1년의 범위 내에서<br>세관장이 정하는 날                  | 관세법<br>제10조, 국제징수법<br>제15조~제17조 |
|    |                |             |                     |                                           | 관세법<br>제107조 제1항                |
|    | 분할<br>납부<br>제도 | 천재·<br>지변 등 | 산업시설건설,<br>중소기업지원 등 | 분할납부승인일부터<br>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 관세법<br>제107조 제2항                |
|    |                | 특정<br>물품 등  |                     |                                           | 관세법<br>제107조 제2항                |
|    | 일괄납부제도         |             | 수출지원                | 일괄납부기간(6월 범위내)<br>종료일이 속하는 달의<br>다음 달 15일 | 관세환급특례법<br>제6조                  |
|    | 납기전 정수제도       |             | 조세채권 확보             | 세관장이 정하는 날                                | 국제징수법<br>제14조                   |

**1 관세감면은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2 관세감면은 수입물품의 용도 및 상태, 적용법령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동일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관세감면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4 관세감면의 근거와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법          | 조문       | 내용                                            | 감면율       |
|--------------|----------|-----------------------------------------------|-----------|
| 관세법          | 제88조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100%      |
|              | 제89조     | 세울불균형물품의 면세                                   | 100%      |
|              | 제90조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80%(50%)  |
|              | 제91조     |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100%      |
|              | 제92조     | 정부용품 등의 면세                                    | 100%      |
|              | 제93조     | 특정물품의 면세                                      | 100%      |
|              | 제94조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100%      |
|              | 제95조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30%(50%)  |
|              | 제96조     |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 100%      |
|              | 제97조     | 재수출면세                                         | 100%      |
|              | 제98조     | 재수출감면세                                        | 30~85%    |
|              | 제99조     | 재수입면세                                         | 100%      |
|              | 제100조    | 손상감세                                          | 가치감소분     |
| 조세특례<br>제한법  | 제101조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수출가격분     |
|              | 제118조    | 관세의 경감                                        | 50%       |
|              | 제118조의2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 100%(50%) |
|              | 제121조의3  | 외국인투자 자본재 관세감면                                | 100%      |
|              | 제121조의10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면제                     | 100%      |
|              | 제121조의11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면제                       | 100%      |
|              | 제126조의7  | 금거래소 공급 수입 금지금 관세면제                           | 100%      |
| 자유무역<br>지역법  | 제140조    | 해저광물자원개발 기계·장비 등 관세면제                         | 100%      |
|              | 제46조 제1항 |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포함) 입주기업이 반입하는 건물·공장 건축용 시설재 관세면제 | 100%      |
| FTA관세<br>특례법 | 제30조     |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100%      |
| 협정           |          | SOFA, 국제민간항공협약, 각 국가와의 협정 등                   | 100%      |

## 5 감면받은 물품은 일정기간 세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용도세울 또는 관세감면을 받거나 분할납부 중인 물품은 정책의 실효성과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사후관리받습니다.

※ 용도세울 전용물품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 이행 절차 생략 가능

## 6 사후관리는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7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1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2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습니다.

### 3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 4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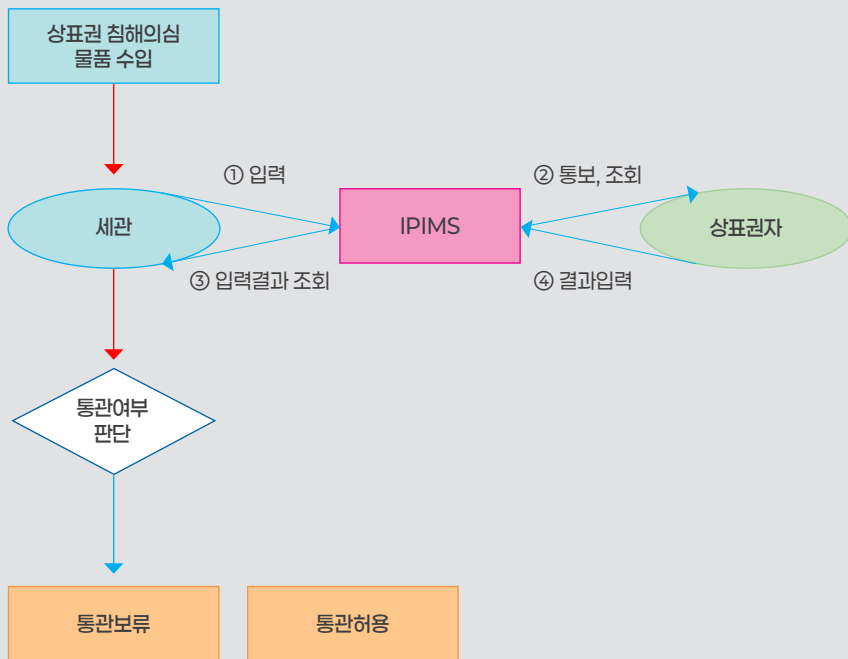
##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한 TIP

### ● IPIMS 이용을 통한 지재권 침해여부 확인

- TIPA 지식재산권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후 관세청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 시스템(IPIMS)'에 연계 등록하시면 보호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IPIMS(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세관과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침해물품 수입정보 및 감정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IPIMS 이용자는 SMS, E-mail를 통해 침해물품 수입사실을 세관으로 부터 통보받게 되며,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IPIMS에 감정결과를 등록하면, 세관에서는 침해물품에 대한 신속한 국경조치가 가능합니다.



### ● IPIMS 이용 신청

-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 IPIMS

## 문의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T.042-481-7836

- ①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 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관서류와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마이크로 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보관서류                                                                                                                                                               | 보관기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필증</li> <li>●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li> <li>● 지식재산권 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li> <li>●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li> </ul> |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필증</li> <li>● 반송신고필증</li> <li>●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li> <li>●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li> </ul>            | 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li> <li>●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li> <li>●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li> </ul>                                                   |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

## ②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며 관세조사 및 세액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3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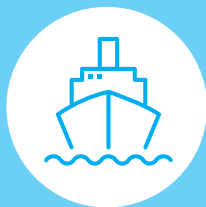
| 제출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li> <li>②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li> <li>③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li> <li>④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li> <li>⑤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li> <li>⑥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li> <li>⑦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li> <li>⑧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li> <li>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li> <li>⑩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li> </ul> |

## ③ 신고서류 보관 및 요구자료 제출 미이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별칭    | 위반 내용                                                                |
|-------|----------------------------------------------------------------------|
| 형사 처벌 | 2천만원 이하 벌금,<br>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 관세법 제12조를 위반하여<br>신고서류 미보관(과태료 부과 제외)                                |
|       | 관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미보관                                              |
|       | 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br>요구받은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br>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
|       | 관세법 제37조의4 제6항에 따라<br>요구받은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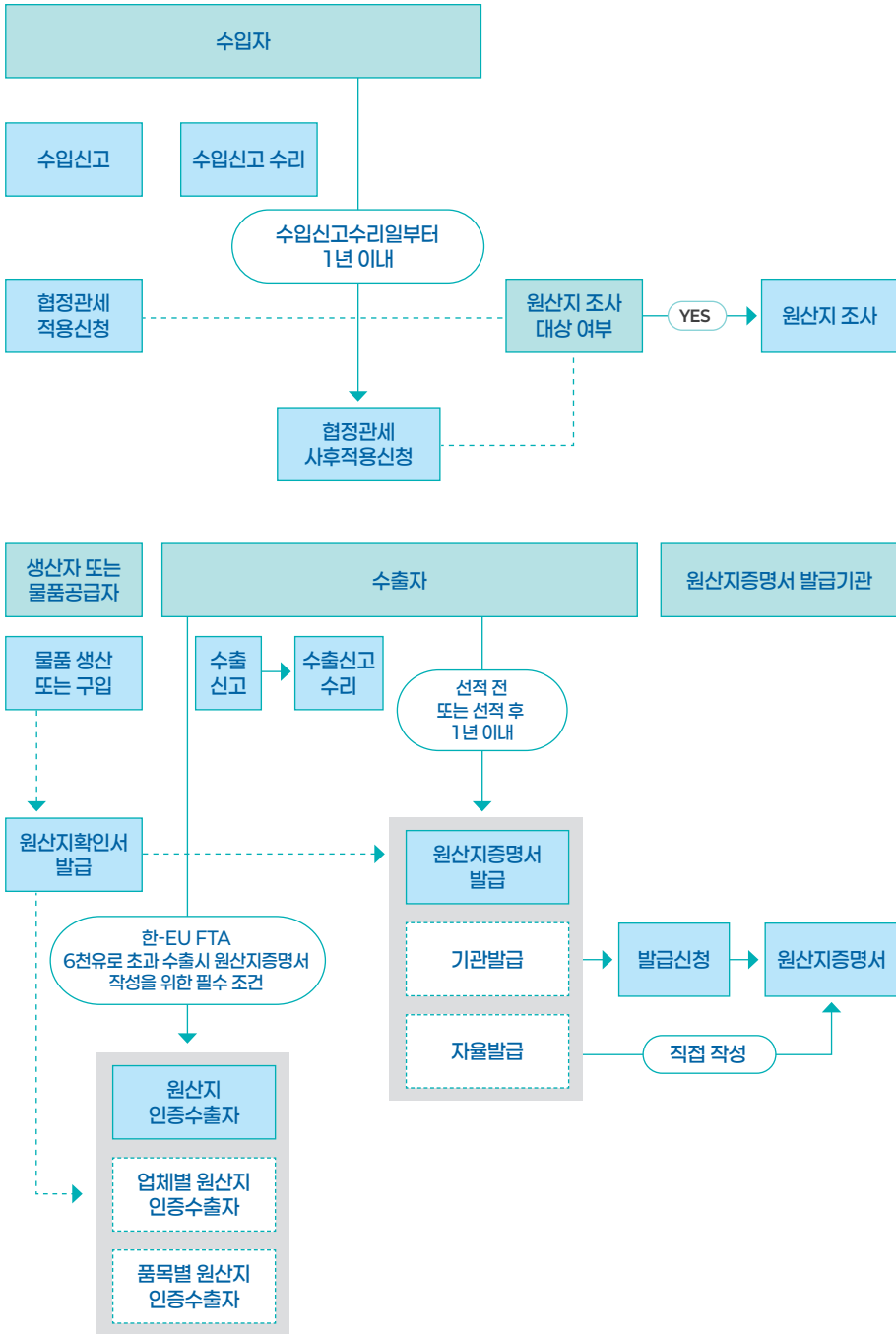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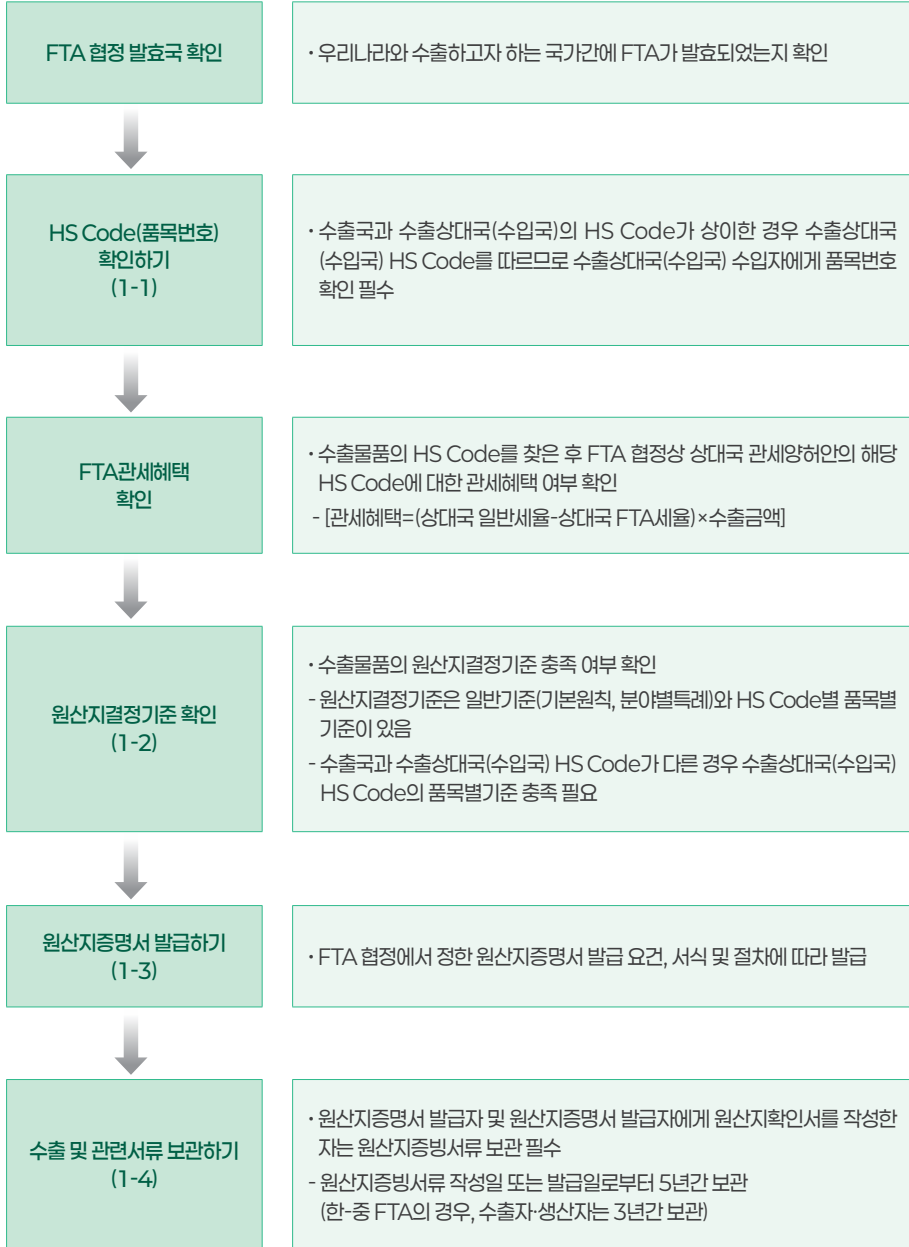
PART 04  
**FTA 활용안내**

1.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2. 원산지 결정기준, 꼭 확인하세요
3.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로 이용하세요
4. 원산지인증수출자, FTA활용의 필수입니다
5. 원산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6.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으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세요
7. YES FTA 전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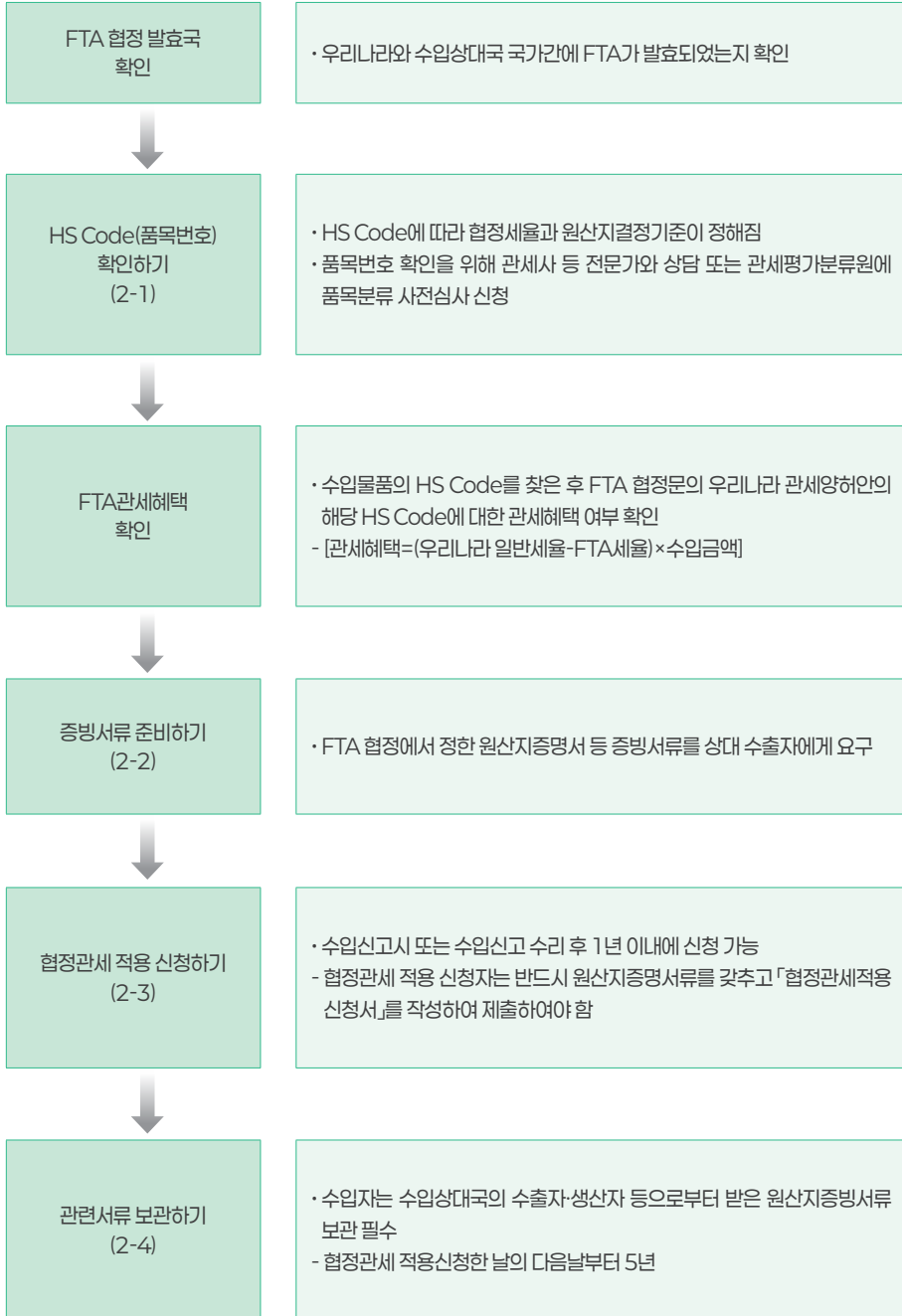
## FTA 개관



## ① 수출통관시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 2 수입통관시 FTA 혜택을 받기위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① 원산지 결정기준의 필요성

- FTA는 체결국가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을 부여합니다.
-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②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자료실 ⇒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 조회할 협정명 선택 ⇒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검색

※ 관세청에서 무료로 배포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원산지 판정가능

### ③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분

-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 ▶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기준입니다.
  - \* 일반기준은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보충적 기준)로 구분
- ▶ 품목별기준은 품목번호(HS Code)별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문의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T.042-481-3234, 3221

## 1 FTA-PASS란?

-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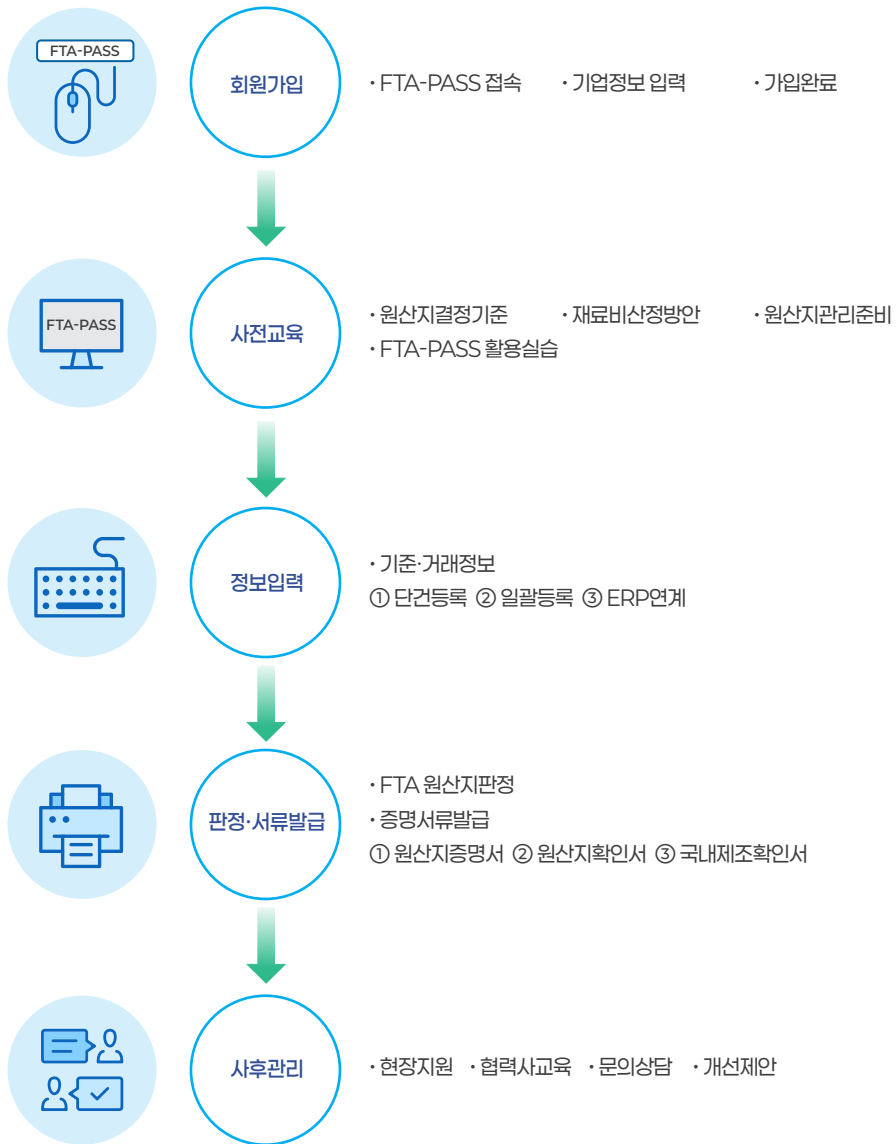
## 2 주요 특징점

|                                                                                                                                                                     |                                                                                                                                                                              |
|---------------------------------------------------------------------------------------------------------------------------------------------------------------------|------------------------------------------------------------------------------------------------------------------------------------------------------------------------------|
| <b>① 모든 협정 원산지판정·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협정별, 기준별 원산지 판정지원</li> <li>▶ 매출처, 공급물품 단위 일괄판정 지원</li> <li>▶ 원산지 불충족 건에 대한 충족 방안 안내</li> </ul> | <b>② 정확한 원산지판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신규 발효 및 개정사항에 대한 시스템 적시 반영으로 원활한 FTA 활용 지원</li> <li>▶ 기업 ERP와 FTA-PASS 자료 자동연계를 위해 범용 ERP 연계모듈 배포</li> </ul> |
| <b>③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기관발급)</li> <li>▶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전자유통</li> <li>▶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발급</li> </ul>              | <b>④ 원산지검증대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한 원산지검증 표준 질의서 작성 지원</li> <li>▶ 사후검증 대비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li> </ul>                                       |

## 3 활용유형(기업 환경에 따라 선택)

|     |                                                                                                                                                                                                                                                                                                                         |
|-----|-------------------------------------------------------------------------------------------------------------------------------------------------------------------------------------------------------------------------------------------------------------------------------------------------------------------------|
| 기본형 | <p>원산지 판정·발급·보관 등 원산지관리 전반, ERP 연계가능</p> <p>- 재고관리기능 미사용(권장) : 사용자가 산출한 재료비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엑셀 9종)</li> </ul> <p>- 재고관리기능 사용 : 재고관리기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원산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불부(엑셀 13종)</li> </ul> |
| 간편형 | <p>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p> <p>*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p>                                                                                                                                                                                                                                                           |
| 체험형 | 로그인 없이 사전 모의 원산지판정(시뮬레이션) 체험 가능                                                                                                                                                                                                                                                                                         |

## 4 사용방법



## 5 문의상담

- 전화: 1544-0645 (문의시간: 평일 08:00~17:00)
- 메일: fta-pass@origin.or.kr

PART  
01

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PART  
02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PART  
03

수출입  
통관 안내

PART  
04

FTA  
활용 안내

PART  
05

개인통관  
안내

PART  
06

기업 부담  
완화제도

PART  
07

납세협력  
프로그램

PART  
08

성실신고  
이행확인

PART  
09

성실신고  
불이행 시

PART  
10

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

PART  
11

납세자  
권리보호

###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개념

-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신청업체의 주요 품목(3개~5개) 위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을 심사합니다.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수출물품(HS 6단위 기준)이 인증받으려는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 업체별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신청 가능

| 구분     | 업체별<br>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br>원산지인증수출자                       |
|--------|----------------------------------------|---------------------------------------|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협정별 해당 품목(HS 6단위)                     |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
| 인증기관   | 본부세관(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 인증기준   | ① 원산지증명능력<br>② 법규 준수도<br>③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 ①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br>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

### 3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

- (한-EU·영국 FTA)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이 부여됩니다.
- (한-EFTA FTA) 인증신청시 서면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수출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RCEP·한-캄보디아·필리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됩니다.
- (한-이스라엘) 미화 1천달러 초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이 부여됩니다.
- (한-아세안·베트남·싱가포르·인도·중국·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 FTA, RCEP)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생략, 현지확인 면제 등 심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심사

- 인증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청 UNI-PASS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 서류는 전자문서로 전송하면 됩니다.
- 인증신청 세관은 각 본부세관(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세관이며, 인증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세관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이상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정 요구 및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의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업무 절차                                                                                                                                                                                                                                                     | 신청인                                                                                                                                                                                                                                                                                                                                                                               |
|-----------------------------------------------------------------------------------------------------------------------------------------------------------------------------------------------------------------------------------------------------------|-----------------------------------------------------------------------------------------------------------------------------------------------------------------------------------------------------------------------------------------------------------------------------------------------------------------------------------------------------------------------------------|
| <div>1. 인증 신청/접수<br/>(UNI-PASS 또는 서면접수)</div> <div>2. 신청서 접수<br/>본부세관 (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br/>및 평택직할세관</div> <div>3. 서면 심사<br/>(필요시 보정요구/현지확인)</div> <div>4. 인증서 교부<br/>(30일 이내)</div> <div>5. 인증변경신고/수리<br/>(7일 이내)</div> <div>6. 유효기간 연장신청</div> | <div>1. 구비서류<br/>① 인증 신청서<br/>②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br/>③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 서류<br/>-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br/>- 국내제조확인서 등<br/>④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br/>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내역<br/>⑥ 기타 자료<br/>-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div> <div>3. 보정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div> <div>5. 인증사항 변경 신고<br/>(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원산지관리<br/>전담자 등 변경시)</div> <div>6.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만료<br/>30일 전까지 연장신청</div> |
| <div>7. 인증수출자 사후관리</div> <div>8. 시정명령<br/>(30일 이상)</div> <div>9. 인증취소<br/>(청문)</div>                                                                                                                                                                      | <div>7. 인증유지 여부 점검<br/>- 유효기간내 2회 자율점검 실시<br/>※ (1회차)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br/>(2회차)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div> <div>8. 기간 내 시정</div> <div>9. 청문 시 소명자료 제출</div>                                                                                                                                                                                                              |

## 5 원산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 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상대국(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물품이 원산지 제품임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여 발급하거나(기관발급),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서명하여 발급하거나(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서명하여 발급(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자율발급                                                                                                                          |
|--------------------------------------------------------|--------------------------------------------------------------------------------------------------------------------------------------------------------------------------------------------|-------------------------------------------------------------------------------------------------------------------------------|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 EU,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미시행), 필리핀<br>* 협정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 받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br>- (EU·영국) 6천유로<br>- (이스라엘) 미화 1천달러<br>- (RCEP·캄보디아·필리핀) 전체 금액 | 칠레, EFTA, 페루, 미국, 튀르키예,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호주, 중미, RCEP(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에 한해 시행('25.1.1.)), 이스라엘(미화 1천달러 이하), 인도네시아(미시행), 필리핀(미시행) |

###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수출상대국(수입국) 세관에서 FTA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 또는 선적일 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한·싱가포르 FTA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

| 구분   | 첨부서류                                                                                                     |
|------|----------------------------------------------------------------------------------------------------------|
| 신규발급 |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화인 가능한 경우 생략)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br>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br>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br>4. 원산지소명서 |
| 재발급  | 없음                                                                                                       |
| 정정발급 | 1.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발급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br>2. 정정사유 입증서류                         |

- **(자율발급)** 수출자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를 근거로 협정상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발급하고 원산지증명서 대장 관리

\* 수출자는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 변경·추가: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3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 기관발급

##### 세관 발급

###### ■ 온라인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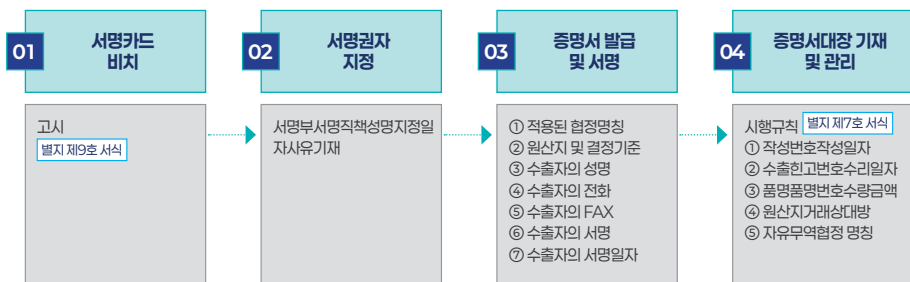
###### ■ 온라인



###### ■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 ● 자율발급



6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으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세요

### ①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 수출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수출기업에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②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를 활용하여 수출했으나, 사후 검증대비 원산지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 FTA를 활용하지 않고 수출했으나, 향후 FTA를 활용하여 수출할 예정인 소상공인

### ③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증명 서류) 작성 및 보관방법, 기간 등
- (검증대응 매뉴얼)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절차안내
- (모의검증 실시) 모의검증을 통한 실질적 대응능력 향상
- (인증수출자 취득)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합동컨설팅 실시) 컨설턴트와 세관직원이 합동으로 컨설팅 제공

### ④ 사업 참여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컨설팅 비용이 제공(기업규모별 차등)되며, FTA-PASS 활용을 통한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과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시 일부 FTA 활용에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1 교육 목적**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도모

**2 교육 기간**

- 2025년 1월~12월

**3 교육 대상**

- 중소기업 실무자, 소상공인 등

**4 교육 과정 : 2개과정 15개 세부과정**

| 과정             | 세부과정명                                                                                                      |
|----------------|------------------------------------------------------------------------------------------------------------|
| 집합과정<br>(화상포함) | FTA 실무 기초, FTA 실무 심화, FTA-PASS활용, 품목분류,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실습, 수입기업 FTA활용 실무            |
| 온라인과정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하기, C/O 작성하기, 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 원산지검증 이해하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수행하기 |

**5 교육 비용 : 전액 무료****문의 및 교육신청**

- 교육문의 : 한국원산지정보원 T. 1544-5702
- 교육신청 : FTA원산지 아카데미(<http://ftaedu.or.kr>)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PART 05

**개인통관 안내**

1.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확인하세요
2. 해외직구물품 반품하면 환급 받으세요
3.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안내드립니다
4. 입국장면세점,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5.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으세요

## ① 개념

- 「전자문서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전자상거래법」 제2조)
- 일반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 택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입니다.
-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을 주로 이용합니다.

## ② 거래유형

-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
-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 ③ 수입통관방법

- 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 적용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 ①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②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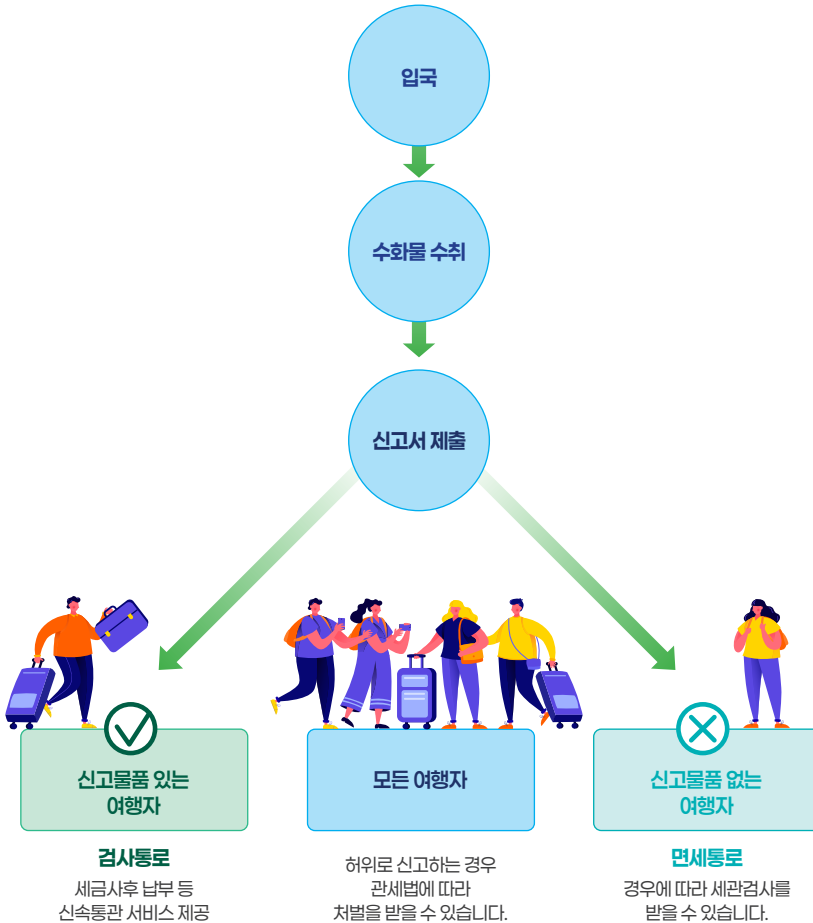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 ③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200만원 초과 물품           | 200만원 이하 물품                              |
|------|-----------------------|------------------------------------------|
| 공통서류 | 1. 환급신청서<br>2. 수입신고필증 |                                          |
| 제출서류 | 3. 수출신고필증             | 3. 물품 송품장<br>4. 판매자의 반품확인서류<br>5. 환불영수자료 |

## ①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 ② 여행자 휴대품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 3 면세범위

####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1.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2. 1항과 별도로 주류 2L(전체 용량이 2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 4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1.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2.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 5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 1. 반출입 금지 물품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2. 반출입 제한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6 신고대상

1. 면세범위 초과 물품
2.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가·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4. 양귀비·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5.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7.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8.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 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0.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2.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3.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송할 물품
14.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 4

## 입국장면세점,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 1 개요

-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 김포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김해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국장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면세범위 별도),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2 구매한도 알아두세요.

-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     |                                                                                                                                                                    |
|-----|--------------------------------------------------------------------------------------------------------------------------------------------------------------------|
| 사례1 | <p><b>가방 \$400, 의류 \$390 구매가능 여부</b></p> <p>▶ 총 구매금액이 \$790로 구매한도 \$800 이하이기 때문에 <b>구매가능!!</b></p>                                                                 |
| 사례2 | <p><b>가방 \$400, 의류 \$3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b></p> <p>▶ 총 구매금액이 \$820로, <b>구매한도인 \$800을 초과</b>하였기 때문에 <b>구매불가능!!</b></p>                                            |
| 사례3 | <p><b>가방 \$400, 의류 \$3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b></p> <p>▶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b>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b>으로 <b>추가 구매가 가능</b>하므로 <b>구매가능!!</b></p> |



### 3 국산제품 구매하면 면세범위 우선 공제됩니다.

-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                                                                                                                                                                       |
|------------|-----------------------------------------------------------------------------------------------------------------------------------------------------------------------|
| <b>사례1</b> | <p>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p> <p>▶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8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p>                                                   |
| <b>사례2</b> | <p>가방 \$800(시내면세점), 모피의류 \$800(해외)을 구매한 경우</p> <p>▶ 모피의류 구입가격(\$8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800)에 대해서는 과세</p> <p>* 간이세율이 모피의류 19%, 가방 15%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p> |
| <b>사례3</b> | <p>가방 \$800(시내면세점), 모피의류 \$8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p> <p>▶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모피의류 \$800 공제)</p> <p>* 선글라스 간이세율 15%</p>                                   |

-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

|            |                                                                      |
|------------|----------------------------------------------------------------------|
| <b>사례1</b> | <p>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1병(입국장면세점 구매)</p> <p>▶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p> |
| <b>사례2</b> | <p>양주 1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p> <p>▶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p>            |

5

##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으세요

### 1 개념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물품 통관 시 수하인(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에는 필수적인 부호로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모바일 관세청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 2 신청유형(유효기간)

- **신규발급**: 새로운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신규발급일 기준 1년)
- **정보변경**: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에서 작성했던 개인정보 변경(변경일 기준 1년)
- **갱신**: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연장(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1년)
- **부호변경(재발급)**: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하고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재발급일 기준 1년)
- **사용정지**: 발급자의 신청 또는 도용 등 확인 시 부호관리자가 해당 부호의 사용을 정지
- **해지**: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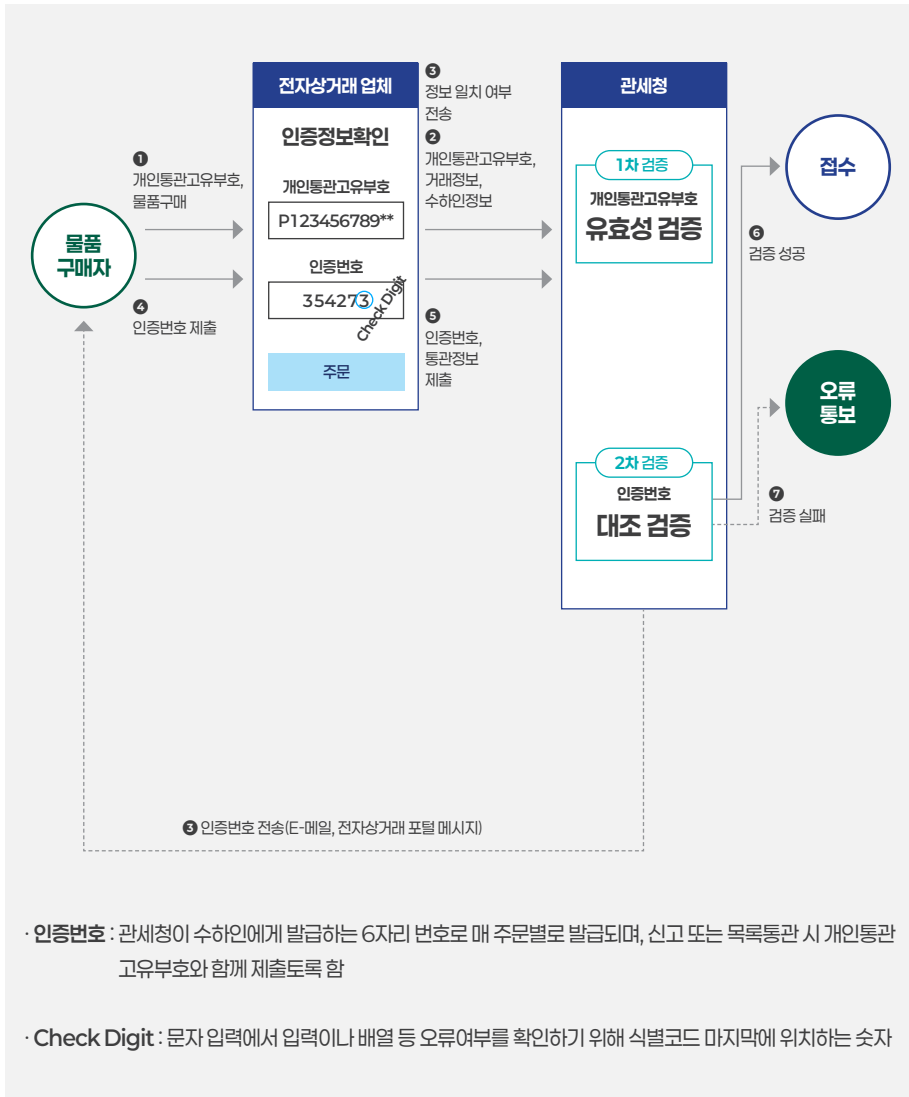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적용되며, 기존 부호의 경우 1년간 유효기간 이후 2027년부터 갱신의무 적용

### 3 참고사항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정보와 통관 시 정보(주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해지되어 발급받으신 부호가 사용이 불가능하여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간 갱신을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장기배송이 우려되는 상품 주문 시에는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부호를 변경(재발급)하여 추가 도용을 방지하시기 바라며,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사용정지를 하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4 추진사항

- 관세청에서는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증번호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PART 06

## 기업부담 완화제도

1. 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2. 관세환급, 꼭 챙겨 주세요
3. 분할납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5.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6. 해외통관 애로 해소해 드려요
7. 일자리 창출기업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 1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공장 이외 다른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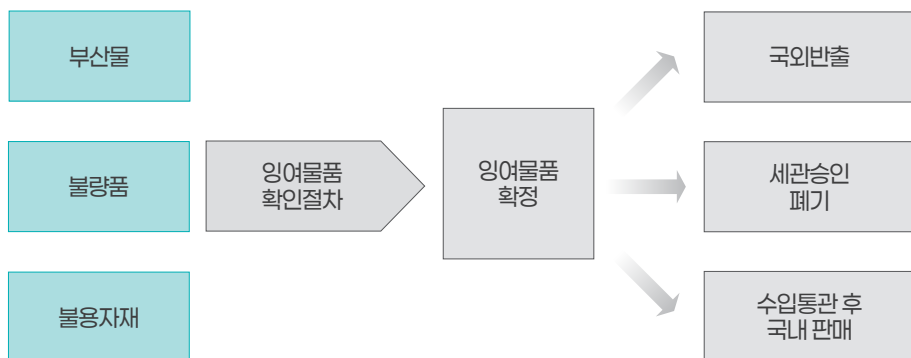
### 3 과세적용시기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 또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은 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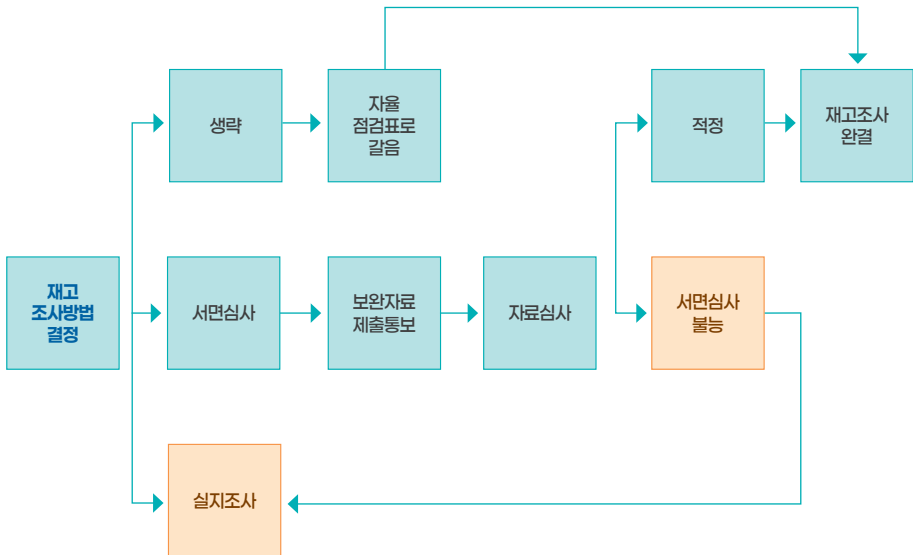
### 4 잉여물품 처리절차

-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합니다.



## 5 소요량관리 및 재고조사

- 운영인은 생산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재고관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표를 심사하여 재고조사 생략,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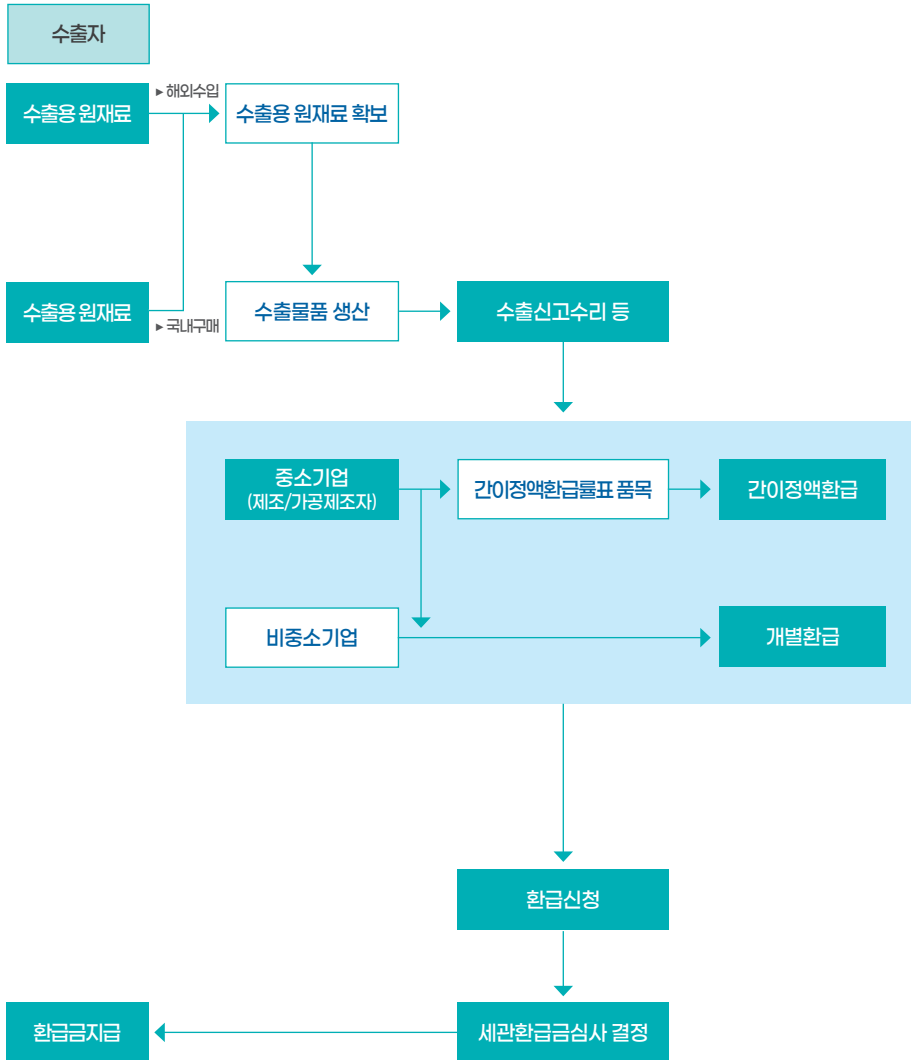
### 문의처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T. 042-481-7826

###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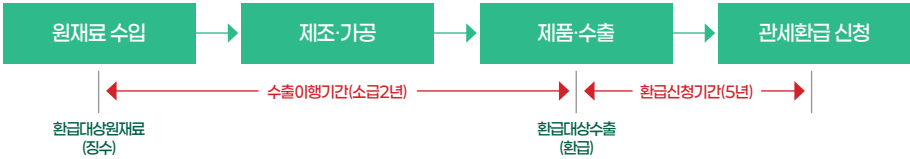
- 「관세법」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제188조(제품과세)및「관세법시행령」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 「관세법」제189조(원료과세)및「관세법시행령」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 「관세법 시행령」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 의무)
- 「관세법 시행령」제207조(재고조사)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 관세환급 개관



## ① 관세환급은 관세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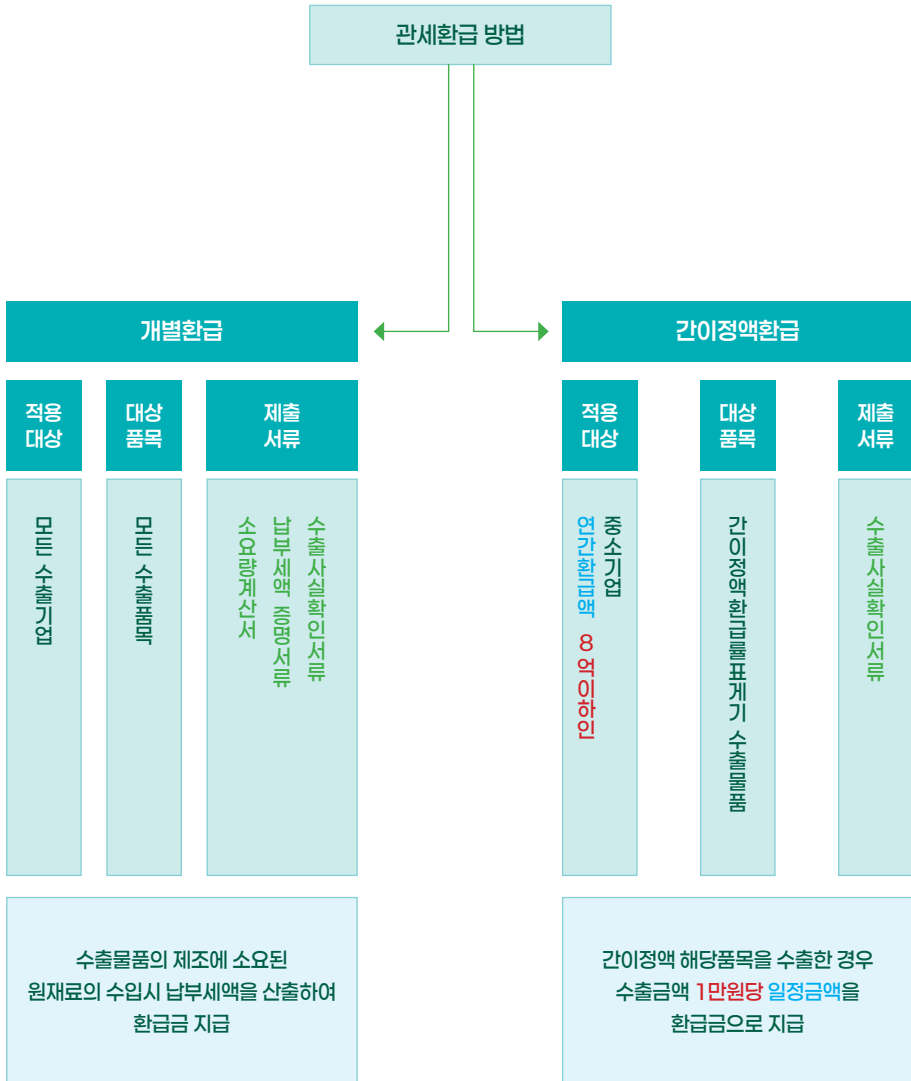
## ②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li> <li>●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건표, 자재명세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 표에 따라 환급</li> <li>●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 등록증</li> </ul> |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 실적 제외)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②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 실적 제외)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
-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3 개별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와 T. 042-481-7873

### 1 관세분할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 중소기업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중소기업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니며, 생산주무부 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 분할납부기간

-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 물품 및 기간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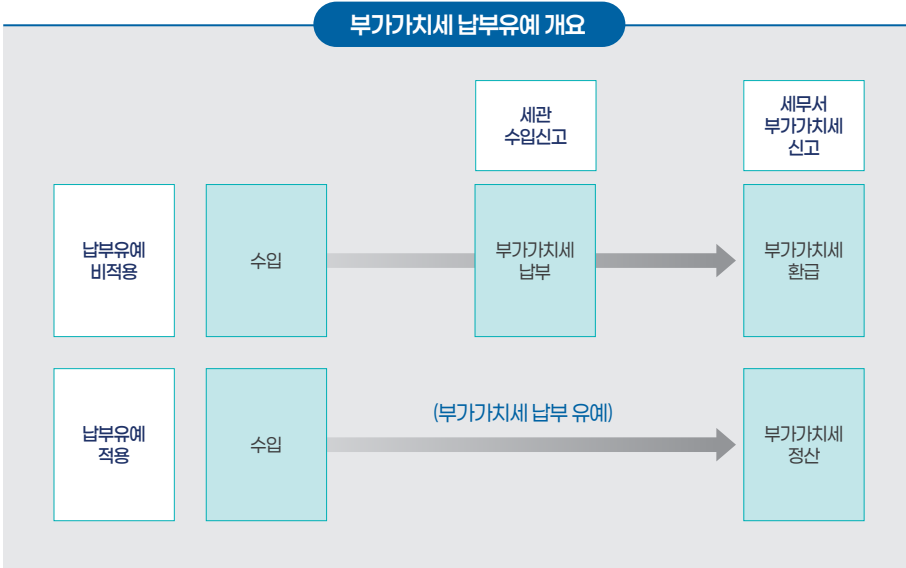
#### ●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4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 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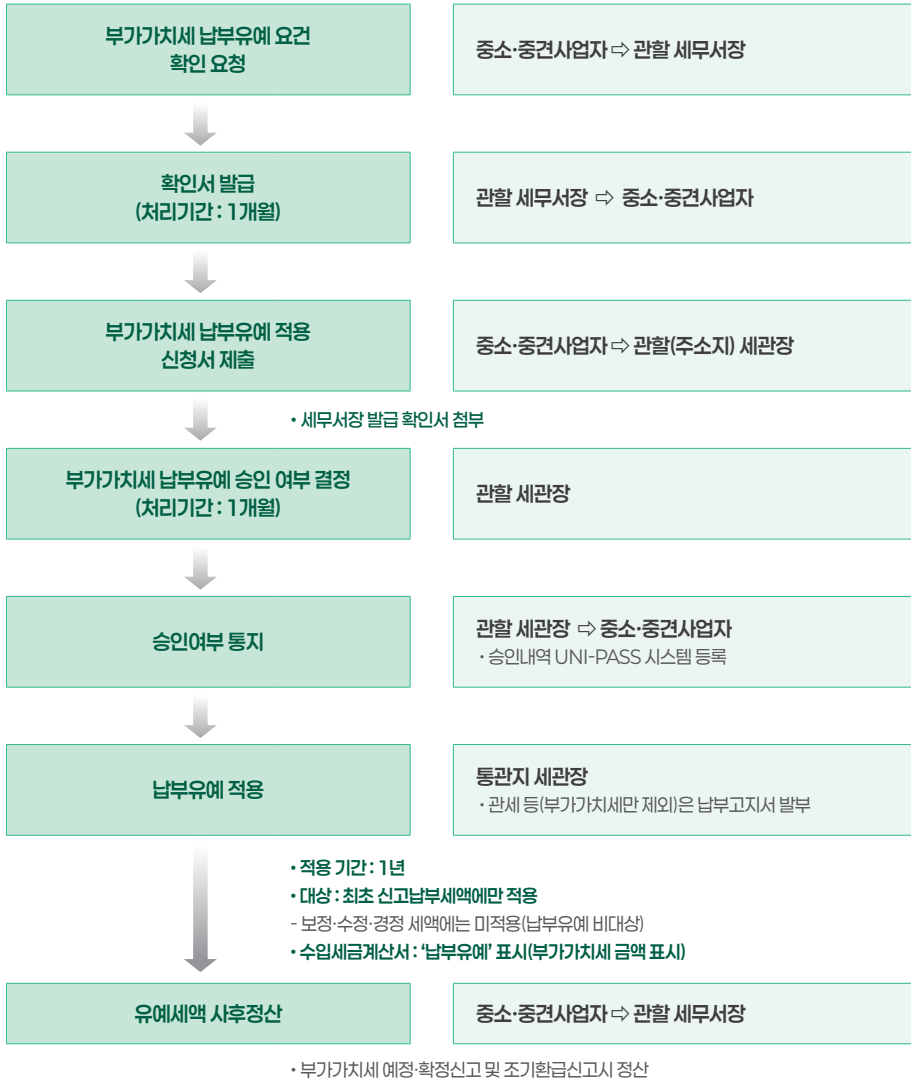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 조의2)

- ① 중소기업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및 §6조의4제1 항)
- ② (중소)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중견) 수출액 비중 30% 이상
- ③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 ④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⑤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042-481-7863

## 1 추진 배경

- 관세청은 내수회복과 수출지원 정책을 반영한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2 주요 내용

### ●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정정·과태료·과징금 납부액에 대하여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 연장 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피해 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환급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지급 요청하여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 수출 환급 지원

- 수출신고건에 대해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실시간 자동 안내합니다.
- 수출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25년 4,574개)

### ● 체납자 회생 지원

-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강제징수 유예받은 기업은 수입통관 허용, 강제징수 및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합니다.
- 분할납부 중인 세액을 체납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잔여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유지(체납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역     |             |                                                                                                                                                           | 확인 기관     |
|----------|-------------|-----------------------------------------------------------------------------------------------------------------------------------------------------------|-----------|
| 수출 기업    | 1<br>수출기업   | ① 수출 우수 기업<br>· AEO 기업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관세청       |
|          |             | ②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무역협회      |
|          |             | ③ 전문무역상사<br>· 「대외무역법」 제8조의2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br>* ①3년 평균 수출 1백만 달러 이상 + 대항수출비중 20% 이상, ②대규모 점포 국외 운영 + 전년 매출 500억원 이상, ③전자상거래 운영 + 매출액 100만원 이상 등 | 산업부       |
|          |             | ④ 수출 중소기업<br>·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중소기업으로 작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관세청       |
|          |             | ⑤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 수출 중소기업<b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       |
|          |             | ⑥ 우리청-타부처 수출지원 협업 사업 선정기업<br>· 중기부 등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br>· 금융위 등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 사업<br>· 소진공의 수출희망 소상공인 대상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등                                 | 관세청 외 타부처 |
| 정책 지원 기업 | 2<br>혁신·新성장 | ① 혁신기업<br>·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15조3 의거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 지정 기업                                                                                 | 중기부       |
|          |             | ②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RE100)<br>·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제조기업                                                                                                          | 산업부       |
|          |             | ③ 뿌리기술 전문기업<br>·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 산업부       |
|          |             | ④ 우수재활용(GR) 인증기업<b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및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조4호                                                                            | 산업부       |
|          |             | ⑤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br>·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승인                                                                                                         | 산업부       |

| 상세내역                       |                        |                                                                                                                                                                                       | 확인 기관         |
|----------------------------|------------------------|---------------------------------------------------------------------------------------------------------------------------------------------------------------------------------------|---------------|
| 정<br>채<br>지<br>원<br>기<br>업 | 3<br>일자리 유지<br>및 창출    | ① <b>일자리 창출 기업</b><br>·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기업<br>* (관세청) '22년 수입액 기준: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미만 2%이상, 1억불이하 3%이상<br>* (국세청)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수)를 전년 대비 증가시킬 예정 기업 | 관세청,<br>국세청   |
|                            |                        | ② <b>일자리 유지 기업</b><br>·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관세청           |
|                            |                        | ③ <b>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b><br>·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
|                            |                        | ④ <b>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b><br>·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당 기업                                                                                                  | 관세청,<br>고용노동부 |
|                            |                        | ⑤ <b>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b><br>·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                                                                                                                               | 국가보훈처         |
|                            |                        | ⑥ <b>일·생활균형<sup>구·근무혁신</sup> 우수기업</b><br>· 「고용노동부」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
|                            |                        | ⑦ <b>가족친화인증기업</b><br>·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의거 여성가족부 인증 기업                                                                                                                   | 여성가족부         |
|                            |                        | ⑧ <b>청년일자리 강소기업</b><br>·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의거 고용노동부 지정 기업                                                                                                                                 | 고용노동부         |
|                            | 4<br>스타트업              | ① <b>새싹 중소기업(벤처기업)</b><br>·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                                                                                                                        | 중기부           |
|                            |                        | ② <b>'24년 신설 중소기업</b><br>· '24년 신설 중소기업(분할·합병·인수 등은 제외)                                                                                                                               | 관세청           |
| 위<br>기<br>발<br>생<br>기<br>업 | 5<br>성실인증              | ① <b>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b>                                                                                                                                                      | 관세청           |
|                            |                        | ② <b>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b>                                                                                                                                                          | 관세청, 국세청      |
|                            | 6<br>피해 기업             | ① <b>라·우 전쟁, 물류 대란, 태풍 등 긴급 자연재난 피해 중소기업</b>                                                                                                                                          | 관세청           |
|                            | 7<br>위기 산업·<br>재난지역 기업 | ① <b>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b>                                                                                                                                                           | 산업부           |
|                            |                        | ② <b>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 기업</b>                                                                                                                                                              | 고용노동부         |
|                            |                        | ③ <b>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업</b>                                                                                                                                                              | 고용노동부         |
|                            |                        | ④ <b>개성공단 입주 기업</b>                                                                                                                                                                   | 통일부           |
|                            |                        | ⑤ <b>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b>                                                                                                                                                              | 행안부           |



| 구분 | 제외요건(관세법 §10, §107, 징수업무 고시 §9, §35) 미해당 업체                                             |                                                                                                                                                                              |
|----|-----------------------------------------------------------------------------------------|------------------------------------------------------------------------------------------------------------------------------------------------------------------------------|
| 업체 | 납기 연장 (분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li> <li>·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li> <li>·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1년)</li> </ul> |
|    | 담보 생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①항 해당 기업 (소상공인은 제35조①항5호의 경우 최근 1년)</li> </ul>                                                                 |
|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사전세액심사 대상) 제5호 해당 물품</li> </ul> |                                                                                                                                                                              |

####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T. 042-481-7644

## 6 해외통관 애로 해소해 드려요

### 1 추진 배경

-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해 단계적 해소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합니다.

### 2 주요 내용

#### ● 문제점 파악 및 전담팀 구성(인지·예방)

- 국내 및 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관 장벽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지역별/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하여 정기 설명회 개최 및 통관애로 상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포괄적 관세행정 상담·지원을 위해 FTA 등 전문가로 해외 통관애로 원스톱지원팀을 구성하여 해외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통관애로 해소 지원(직접 대응)

- 통관규제 다발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남아시아·동남아시아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통관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있습니다.
-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FTA 특혜 배제,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소 지원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지원팀을 파견하여 통관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 ● 정보제공 및 시스템 개선(대응능력 저변 확대)

- 해외관세 정보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 제공하여 애로발생을 예방하고, 통관애로 사항의 유형별 맞춤형 분석·제공으로 기업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ART  
01  
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PART  
02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PART  
03  
수출입  
통관 안내

PART  
04  
FTA  
활용 안내

PART  
05  
개인통관  
안내

PART  
06  
기업 부담  
완화제도

PART  
07  
납세협력  
프로그램

PART  
08  
성실신고  
이행확인

PART  
09  
성실신고  
불이행 시

PART  
10  
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

PART  
11  
납세자  
관리보호

## ①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 ② 관세조사 유예를 위한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를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중 2024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관세청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 청년근로자[15~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 2024년 수입금액           | 1천만불 미만 | 1천만불~5천만불 | 5천만불~1억불 |
|----------------------|---------|-----------|----------|
| 일자리 창출 비율*<br>(전년대비)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청년근로자[15~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 ③ 관세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유지계획서 작성·신청
-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상세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유지계획서 제출 메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문의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T.042-481-7973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PART 07

## 납세협력 프로그램

1. 기업부담이 완화되는 보정제도 이용하세요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3.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하세요

## ① 보장제도는 조기 세액확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조기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 및 기업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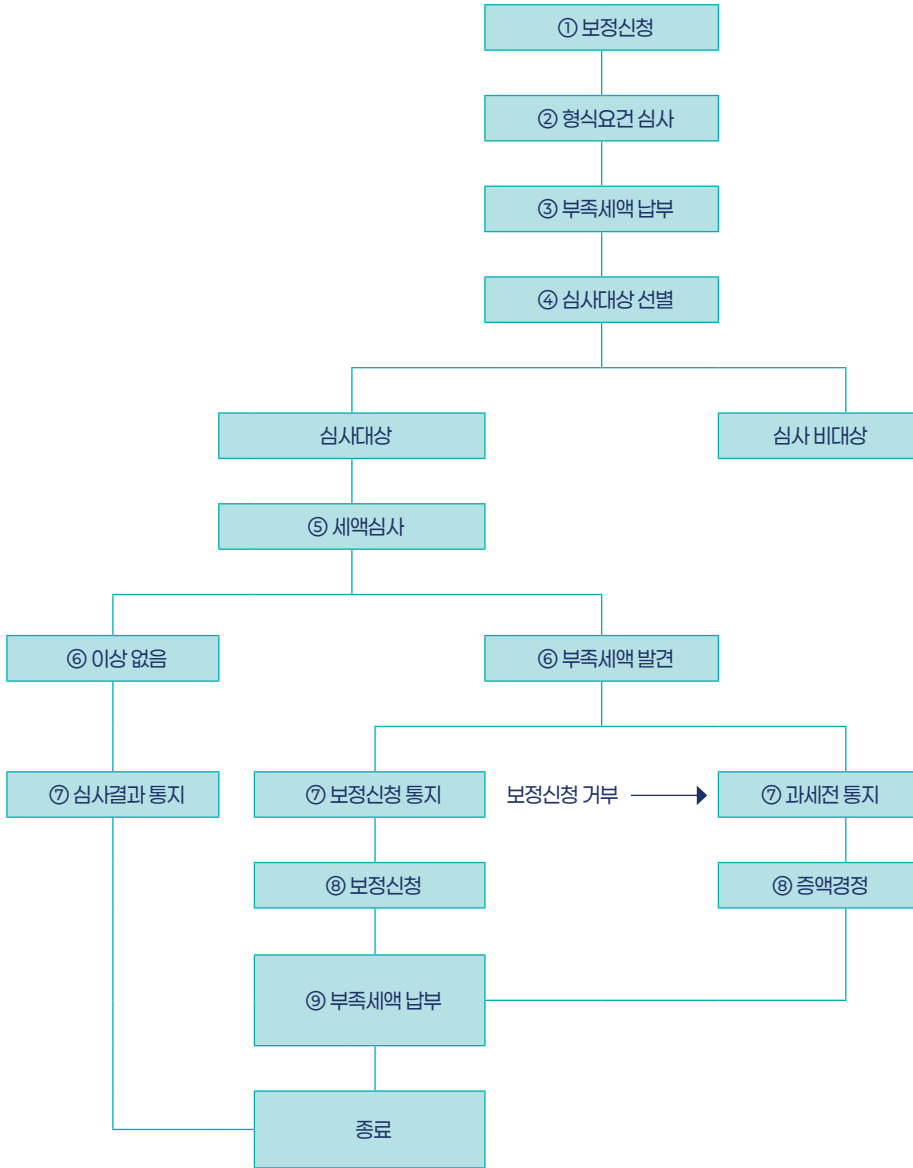
## ② 세액에 변경이 있는 보장·수정·경정제도는 신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 ⇨ 보장신청
- 보장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 수정신고
-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경정청구

| 구분   | 보장신청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신고시기 | 납부한날로부터<br>6월 이내 (보장기간) | 보장기간 이후 부터<br>관세부와 제척기간* | (경정청구의 경우)<br>신고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 |
| 증액여부 | 증액                      | 증액                       | 감액                            |
| 보장이자 | ○                       | X                        | X                             |
| 가산세  | X                       | ○                        | X                             |
| 납부기한 | 보장신청한 날의<br>다음날         | 수정신고한 날의<br>다음날          |                               |

\* 관세부와제척기간: 5년 또는 10년(관세포탈, 부정합급 등)

### 3 보정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 042-481-7863

PART  
01

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PART  
02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PART  
03

수출입  
통관 안내

PART  
04

FTA  
활용 안내

PART  
05

개인통관  
안내

PART  
06

기업 부담  
완화제도

PART  
07

납세협력  
프로그램

PART  
08

성실신고  
이행확인

PART  
09

성실신고  
불이행 시

PART  
10

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

PART  
11

납세자  
권리보호

### 1 AEO의 개념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 관리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AEO 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 (SAFE Framework)에 따른 민·관 협력제도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2 AEO의 혜택

- AEO 공인기업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 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AEO 공인기업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세관검사를 축소와 같은 각종 신속 통관 편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 3 AEO 공인신청

-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자, 수입자,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 구역 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9개 업종입니다.



- AEO 공인을 신청하려면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①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 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⑧AEO MRA 혜택 관련 영문 정보 ⑨최근 2년 내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한정)

#### 4 AEO 공인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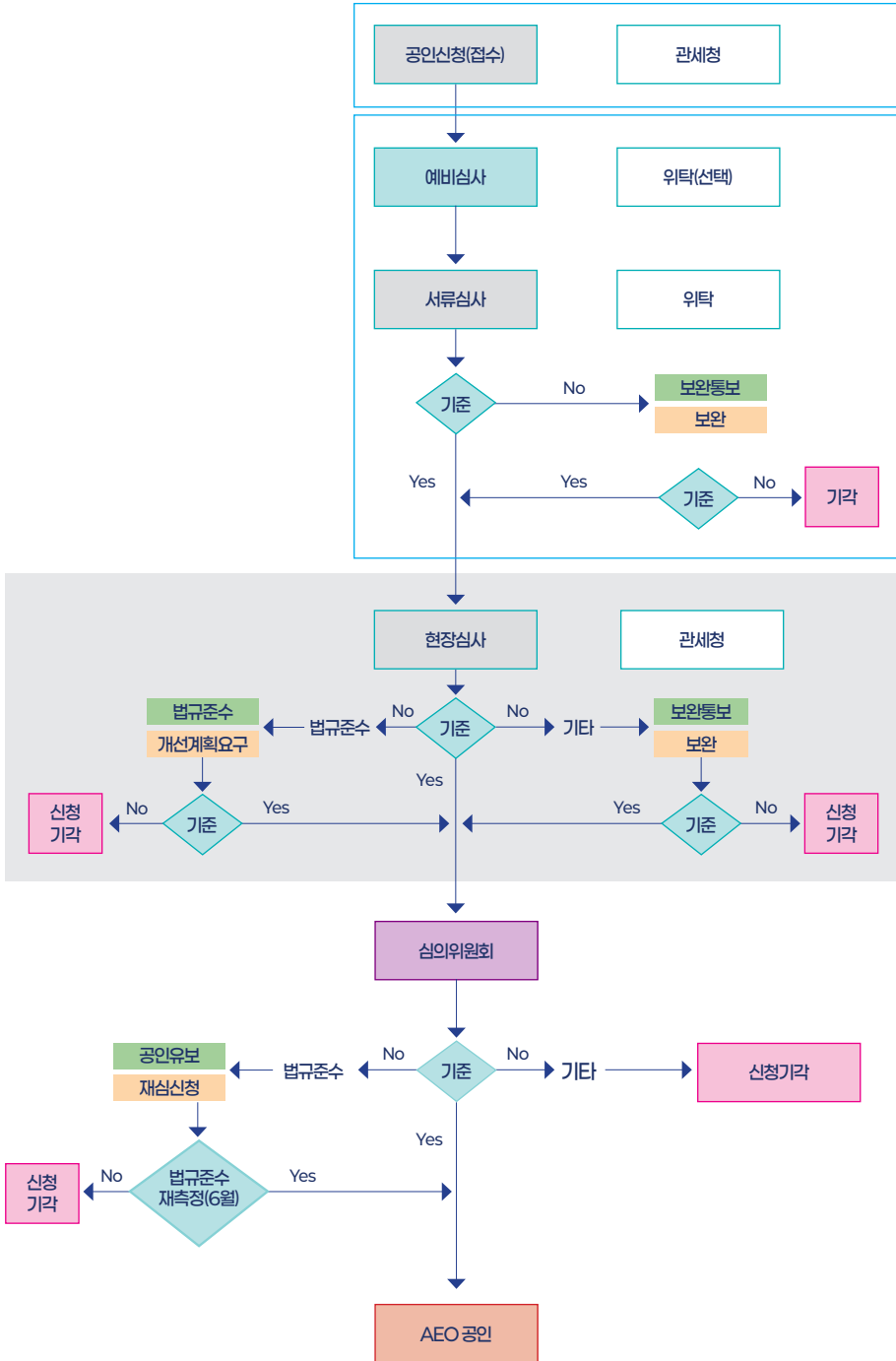
-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심사를 거쳐 AEO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042-481-7866
- 한국AEO진흥협회 T.02-701-3325

## ■ AEO 개관



### 3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하세요

#### 1 납세신고도움정보를 받아보세요

##### ● 개요

기업의 납세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보제공 항목

| 항목     | 항목수 | 정보제공 내역                 |
|--------|-----|-------------------------|
| 일반현황   | 8   | 수출입 실적·감면·채납 등 현황 자료    |
| 납세유의사항 | 4   | 과세신고, 품목분류, 환급, 기타 유의사항 |
| 기타 자료  | 7   | 절세 정보, 법 개정사항, 환급·감면 안내 |

##### ● 주요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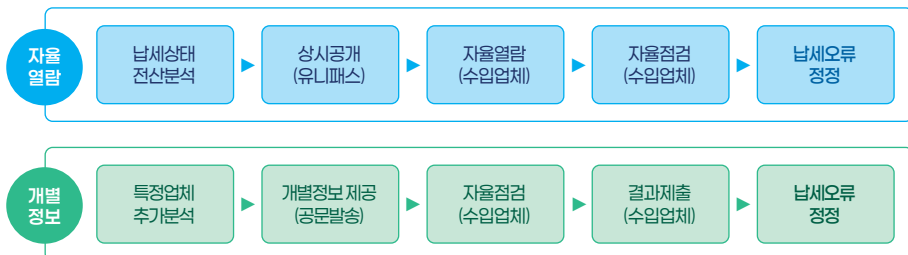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하여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성실업체에게는 해당 납세신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 신고 오류점수 면제(수입신고 정정시, 정정사유 코드를 '37'로 입력한 건에 한함)
- ▶ 수입신고 정정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 성실납세와 관련한 포상 대상으로 추천
- ▶ 가산세 : ①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 ②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

| 수정신고(보정신청)신고 기간              | 가산세 감면             |
|------------------------------|--------------------|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정이자연 3.1%(가산세 면제) |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 1년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30% 감경   |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년 경과 ~ 1년 6개월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감경   |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 2년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감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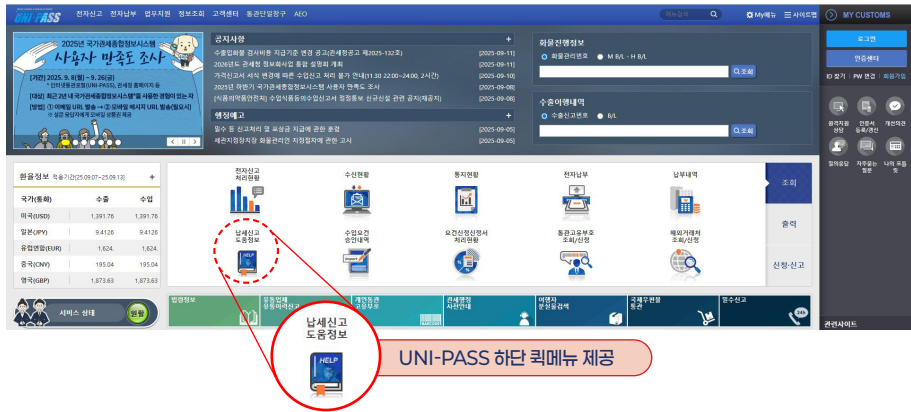
##### 정보제공 방식

| 자율열람                                                            | 개별정보                            |
|-----------------------------------------------------------------|---------------------------------|
| 수입기업의 납세상태를 진단하고, 납세신고오류 가능성을 유니패스(Uni-Pass)에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상시 열람 | 세관이 개별 기업의 오류 가능성을 추가 분석한 정보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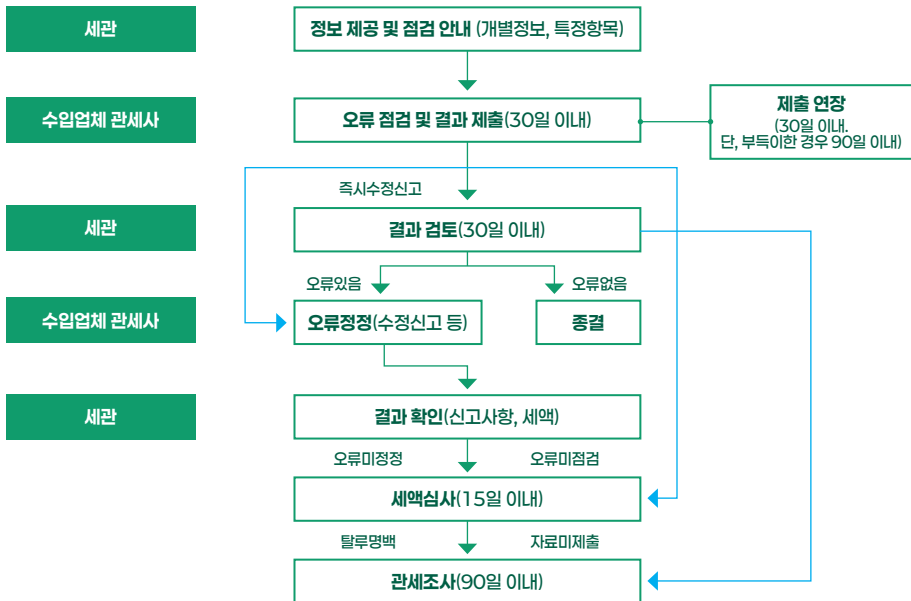
## ● 자물열람

시스템 : UNI-PASS 로그인(<https://unipass.customs.go.kr>) ⇨ 조회 ⇨ 납세신고  
도움정보



## ● 개별정보

### 개별정보 오류점검 절차도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042-481-7863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PART 08

## 성실신고 이행확인

1. 관세조사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AEO기업은 갱신심사를 받습니다
3.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4. 원산지 검증으로 특혜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1 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관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은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관세조사는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되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관세조사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                                                                                                                                | 비정기 관세조사 (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li> <li>●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li> <li>●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한 경우</li> <li>●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li> <li>●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li> </ul> |

- AEO 공인기업에 대하여는 관세조사를 대신하여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갱신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AEO 공인업체                                                                                                                                 | 非AEO 업체                                                                                                                                                 |                                                                                                                                                  |
|------------------------------------------------------------------------------------------------------------------------------------------|---------------------------------------------------------------------------------------------------------------------------------------------------------|--------------------------------------------------------------------------------------------------------------------------------------------------|
| 공인/갱신심사                                                                                                                                  | 정기 관세조사                                                                                                                                                 | 비정기 관세조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심사 실시 후 AEO로 공인</li> <li>● AEO 공인 후 5년 주기 갱신심사(통관적법성 심사 포함) 실시</li> <li>● 민·관 파트너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 만불 이상 &amp;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li> <li>● 4~5년 주기 정기심사</li> <li>●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적법성 위반 고위험 업체 (정보분석)</li> <li>● 특정사안 수시조사</li> <li>●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단, 사안별 특정조사가 가능)</li> </ul> |

### 3 관세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관세조사를 위한 TIP

## ● 관세조사 전에 「관세조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세조사 준비를 위하여 조사개시 15일전에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 부득이한 경우 조사착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기타 관세조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조사착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활한 관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는 기업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하며, 언제든지 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관세조사의 방문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실시합니다.

- 관세조사기간은 대상업체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방법·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1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관세조사는 관세오류 예방을 위한 기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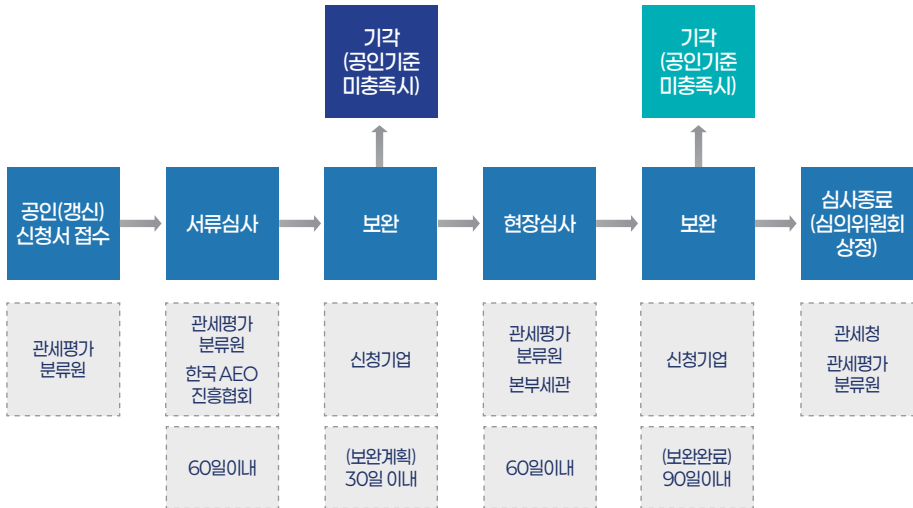
- 관세조사가 종료되면 관세조사 결과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문의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T.042-481-7650

### ① AEO 사후관리와 갱신심사

- AEO 사후관리는 공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공인 후 발생하는 각종 변동 사항의 보고, 정기 자율평가 실시, 관리책임자 교육 수료, 갱신심사 수감 등 AEO 공인 후의 모든 활동을 통칭합니다.
- 기업상담전문관(AM)은 공인기업 협력 파트너로서 지정된 세관의 AEO 지원 담당 직원으로, 심사 업무 경험 또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직원 중에서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 갱신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 042-481-7866
- 한국AEO진흥협회 T. 02-701-3325

### ①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 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 ②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표시방법을 확인하세요.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물품                                                                                                                                                                          | 표시방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계기된 수입물품</li> <li>• 전체 수입품목의 약 56%(2025.7월 기준)</li> <li>- HS 4단위 품목기준 총 1,219개 중 687개 (공산품 513개, 농수산물 174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li> </ul> </li> <li>•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li> <li>•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br/>&lt; 올바른 원산지표시 Tip 참조 &gt;</li> </ul> |

-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                                                                                                                                           | 실질적 변형 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li> <li>• 해당 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li> <li>-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li> <li>•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li> <li>-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li> </ul> </li> </ul> <p>*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별표9 참조</p> |

### ③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과 위반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통관·유통단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 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 조치

| 구분           | 제재 조치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통관단계         | 통관제한 및<br>시정명령                                                                         | ▶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br>*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정정한 후 통관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유통단계         | 보세구역<br>반입명령                                                                           | ▶ 수입신고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br>-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br>-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의무 불이행<br>*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통관 및<br>유통단계 | 과징금 부과<br>(최대3억원)                                                                      | <table><tr><th>위반 유형</th><th>1차</th><th>2차</th><th>위반 유형</th><th>3차</th></tr><tr><td>허위표시</td><td rowspan="3">(통관단계)<br/>시정명령<br/><br/>(유통단계)<br/>- 미판매분 : 시정명령<br/>- 판매분 : 과징금(30%경감,<br/>단 중소기업은 50% 경감)</td><td rowspan="3">시정명령<br/>과징금</td><td>허위표시</td><td rowspan="2">시정명령<br/>과징금<br/>(50%가중)</td></tr><tr><td>손상변경</td><td>손상변경</td></tr><tr><td>오인표시</td><td>오인표시</td><td rowspan="2">시정명령<br/>과징금<br/>(30%가중)</td></tr><tr><td>표시방법 위반</td><td rowspan="2">시정명령</td><td>표시방법 위반</td></tr><tr><td>미표시</td><td>미표시</td></tr></table> | 위반 유형 | 1차                     | 2차 | 위반 유형 | 3차 | 허위표시 | (통관단계)<br>시정명령<br><br>(유통단계)<br>- 미판매분 : 시정명령<br>- 판매분 : 과징금(30%경감,<br>단 중소기업은 50% 경감) | 시정명령<br>과징금 | 허위표시 | 시정명령<br>과징금<br>(50%가중) | 손상변경 | 손상변경 | 오인표시 | 오인표시 | 시정명령<br>과징금<br>(30%가중) | 표시방법 위반 | 시정명령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 미표시 |
|              | 위반 유형                                                                                  | 1차                                                                                                                                                                                                                                                                                                                                                                                                                                                                                                                                            | 2차    | 위반 유형                  | 3차 |       |    |      |                                                                                        |             |      |                        |      |      |      |      |                        |         |      |         |     |     |
| 허위표시         | (통관단계)<br>시정명령<br><br>(유통단계)<br>- 미판매분 : 시정명령<br>- 판매분 : 과징금(30%경감,<br>단 중소기업은 50% 경감) | 시정명령<br>과징금                                                                                                                                                                                                                                                                                                                                                                                                                                                                                                                                   | 허위표시  | 시정명령<br>과징금<br>(50%가중) |    |       |    |      |                                                                                        |             |      |                        |      |      |      |      |                        |         |      |         |     |     |
| 손상변경         |                                                                                        |                                                                                                                                                                                                                                                                                                                                                                                                                                                                                                                                               | 손상변경  |                        |    |       |    |      |                                                                                        |             |      |                        |      |      |      |      |                        |         |      |         |     |     |
| 오인표시         |                                                                                        |                                                                                                                                                                                                                                                                                                                                                                                                                                                                                                                                               | 오인표시  | 시정명령<br>과징금<br>(30%가중) |    |       |    |      |                                                                                        |             |      |                        |      |      |      |      |                        |         |      |         |     |     |
| 표시방법 위반      | 시정명령                                                                                   | 표시방법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미표시          |                                                                                        | 미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고발·송치 의뢰<br>(징역 5년,<br>벌금 1억원 이하)                                                      |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br>▶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8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br>▶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br>▶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br>▶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b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유통단계         | 과태료<br>(최대1천만원)                                                                        | ▶ 원산지표시 단속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은 관세청 외에 사·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수행합니다.

## 올바른 원산지 표시 TIP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는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원산지는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러한 방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표시 가능)
  - 다른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한글표시 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및 표시방식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절한 것으로 인정
-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그리고 단순가공여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 참조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은 관세청,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 문의처

- 공정무역심사팀 T.042-481-7885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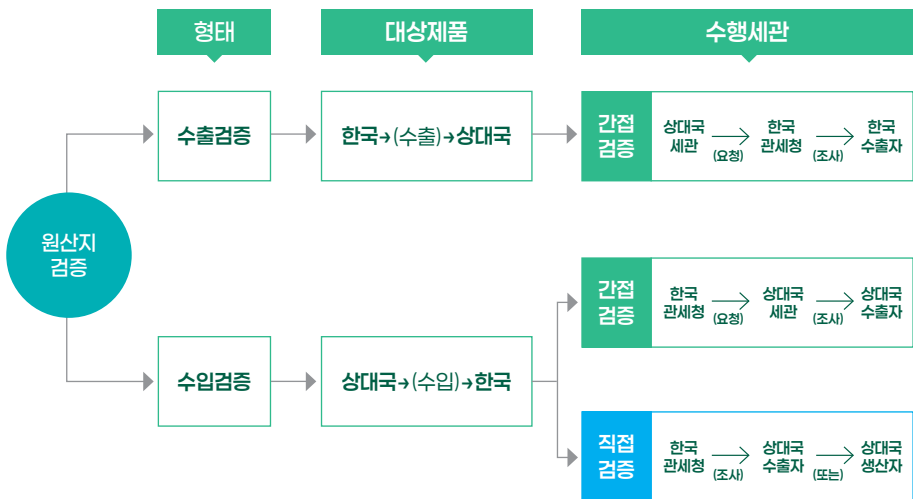
## 원산지검증으로 특혜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① 원산지검증은 수출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입니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상대국 거주자 포함),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자 포함),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합니다.

### ② 원산지검증의 대상에 따라 크게 수입검증과 수출검증으로 구별 됩니다.

- 수입검증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출검증은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원산지검증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계약 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검증을 말합니다.



- 원산지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FTA 협정별로 다릅니다.

| 협정      | 검증 방식           | 검증 주체                        | 간접검증 회신기간   | 협정 규정  |
|---------|-----------------|------------------------------|-------------|--------|
| 한-칠레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                       | -           | 제5.8조  |
| 한-싱가포르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                       | -           | 제5.7조  |
| 한-EFTA  | 간접검증            | 수출국 세관<br>(수입국은 참관가능)        | 15개월        | 제24조   |
| 한-아세안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br>(직접) 수입국 세관 | 2개월(최대 6개월) | 제14조   |
| 한-인도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br>(직접) 수입국 세관 | 3개월(최대 6개월) | 제4.11조 |
| 한-EU    | 간접검증            | 수출국 세관                       | 10개월        | 제27조   |
| 한-미     |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 | 수입국 세관                       | 12개월(섬유·의류) | 제6.18조 |
| 한-페루    | 직접검증+간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150일        | 제4.8조  |
| 한-터키    | 간접검증            | 수출국 세관                       | 10개월        | 제25조   |
| 한-호주    | 직접검증(기관중명은 간접)  | 수입국 세관                       | -           | 제3.23조 |
| 한-캐나다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                       | -           | 제4.6조  |
| 한-중국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br>(직접) 수입국 세관 | 6개월         | 제3.23조 |
| 한-베트남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br>(직접) 수입국 세관 | 6개월         | 제3.21조 |
| 한-뉴질랜드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                       | 90일         | 제3.24조 |
| 한-콜롬비아  | 직접검증+간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150일        | 제3.25조 |
| 한-중미    | 직접검증+간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150일        | 제3.24조 |
| 한-영국    | 간접검증            | 수출국 세관                       | 10개월        | 제27조   |
| RCEP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           | 제3.24조 |
| 한-이스라엘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10개월        | 제3.29조 |
| 한-캄보디아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90일         | 제3.22조 |
| 한-인도네시아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2개월(최대 4개월) | 제3.23조 |
| 한-필리핀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3개월         | 규칙15   |

### 3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합니다.

- 원산지검증 결과 수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② 계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가 서면조사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기간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③ 현지조사를 할 때 계약상대국 생산자, 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증빙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계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⑤ 계약상대국이 기간 내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⑥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⑦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⑧ 조사대상자의 부도, 폐업,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⑨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있는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한 동종동질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 벌칙(FTA관세법 제44조)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제1항<br>(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8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br>* 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제2항<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br>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울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br>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br>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br>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br>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br>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br>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
| 제3항<br>(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 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 제4항                                                                   |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 과태료 (FTA관세법 제46조)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제1항<br>(1천만원 이하의<br>과태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li> <li>2.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ol>                                                                                                                                                                                                                                              |
| 제2항<br>(5백만원 이하의<br>과태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 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li> <li>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li> <li>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li> <li>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li> </ol> |

PART  
01  
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PART  
02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PART  
03  
수출입  
통관 안내

PART  
04  
FTA  
활용 안내

PART  
05  
개인통관  
안내

PART  
06  
기업 부담  
완화제도

PART  
07  
납세협력  
프로그램

PART  
08  
성실신고  
이행확인

PART  
09  
성실신고  
불이행 시

PART  
10  
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

PART  
11  
납세자  
권리보호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PART 09

## 성실신고 불이행 시

1.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3.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① 세액보정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정신고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경정

- 세관장은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납세고지합니다.

## 5 강제징수

-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합니다.

### 세액변경 주체 및 방법

| 구분       | 제1단계                                                                                                            |              | 제2단계                     |      | 제3단계                        |         |
|----------|-----------------------------------------------------------------------------------------------------------------|--------------|--------------------------|------|-----------------------------|---------|
| 명칭       | 정정                                                                                                              | 정정안내<br>직권정정 | 보정신청                     | 보정통지 | 수정신고                        | 경정      |
| 주체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 조치<br>시기 | 납세신고(수입신고) 시점부터<br>신고납부 전까지                                                                                     |              | 신고납부일로부터<br>6개월 이내(보정기간) |      | 보정기간 경과 다음날부터<br>제척기간 도래시까지 |         |
| 변경<br>사유 | 과다/과소 신고                                                                                                        |              | 과소 납세                    |      | 과소 납세                       | 과다/과소납세 |
| 비고       | - 직권정정은 납세와 관계없는 수입신고사항만 가능<br>- 정정안내에 불응시 세관장 직권경정가능<br>-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때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                          |      |                             |         |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042-481-7863

### ① 가산세

- 가산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과태료

- 각종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77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에서도 각종 위반행위시에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서 관세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관세형벌과는 다릅니다.

### ③ 관세형벌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의뢰합니다.

## ● 주요 관세법상 형벌규정

| 주요 관세범죄     | 위반 내용                                                 | 처벌                                                                    |
|-------------|-------------------------------------------------------|-----------------------------------------------------------------------|
| 금지품 수출입     | 수출입금지품(음란물 등 공공질서 침해 물품, 정부 기밀 누설물품, 위조 화폐·채권 등)을 수출입 |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br>- 밀수출입물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정)                |
| 밀수입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br>-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정) |
| 밀수출         | 수출(반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br>-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정)                    |
| 관세포탈        |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 수입제한회피 분할수입 | 수입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불완전품으로 수입거나 분할하여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
| 부정수입        | 수입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 부정수출        | 수출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 부정감면        |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                    |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 부정환급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 가격조작죄       |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신고, 수정·보정신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밀수품취득 등     | 밀수품(혹은 부정수출입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감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br>-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정)                    |

\* 시가는 범칙행위 당시 국내 도매가격을 의미

PART  
01

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PART  
02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PART  
03

수출입  
통관 안내

PART  
04

FTA  
활용 안내

PART  
05

개인통관  
안내

PART  
06

기업 부담  
완화제도

PART  
07

납세협력  
프로그램

PART  
08

성실신고  
이행확인

PART  
09

성실신고  
불이행 시

PART  
10

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

PART  
11

납세자  
권리보호

####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면 수정수입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 ①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 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②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③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 042-481-7862

**① 세관장이 통관 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미제출·지연제출 사유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통관 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이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한차례 연장할(30일) 수 있습니다.

**② 세관장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 과세자료 미제출 시 세관장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 ② 담보제공 생략 중지
  - ③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 ④ 기타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042-481-7987, 7767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PART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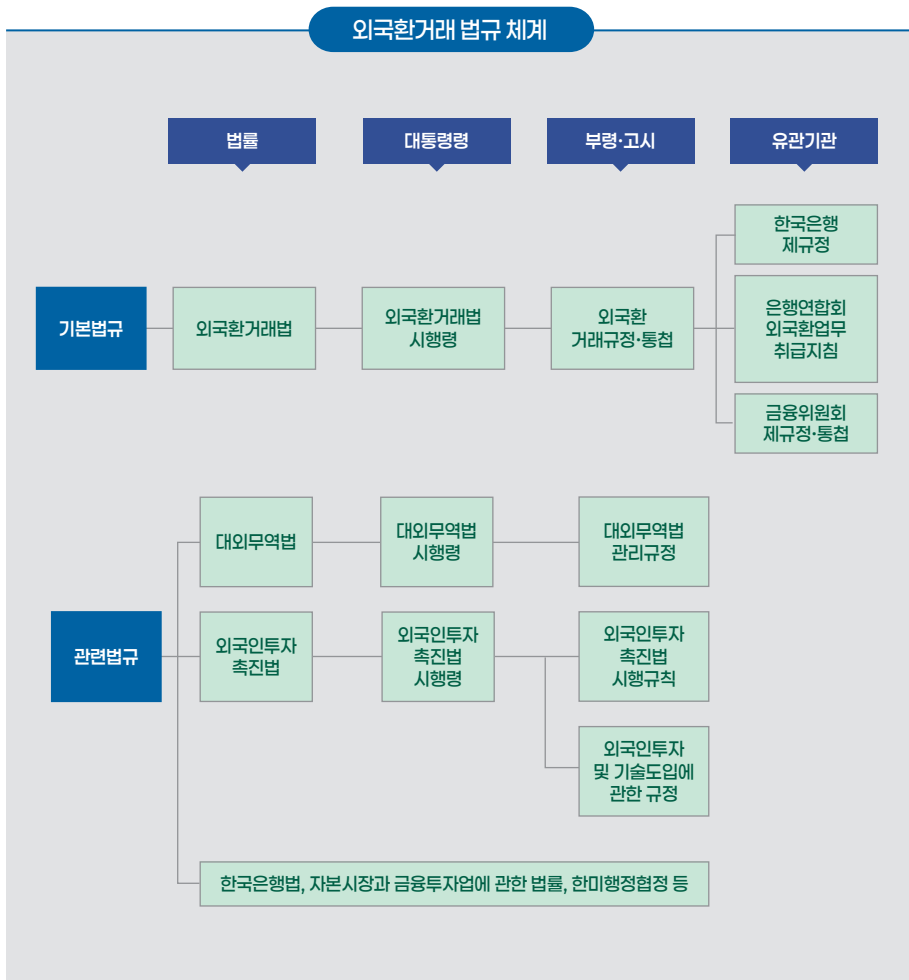
# 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

1. 외국환거래 제도의 개요
2. 지급 등의 절차
3. 지급 등의 방법
4.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5.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등
6.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 자율점검표를 이용한 신고거래 확인

# 1 외국환거래 제도의 개요

## 1 외국환거래의 법규 체계

- 외국환거래에 대한 기본 법규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 규정」 등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를 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등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범위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당사자와 거래의 장소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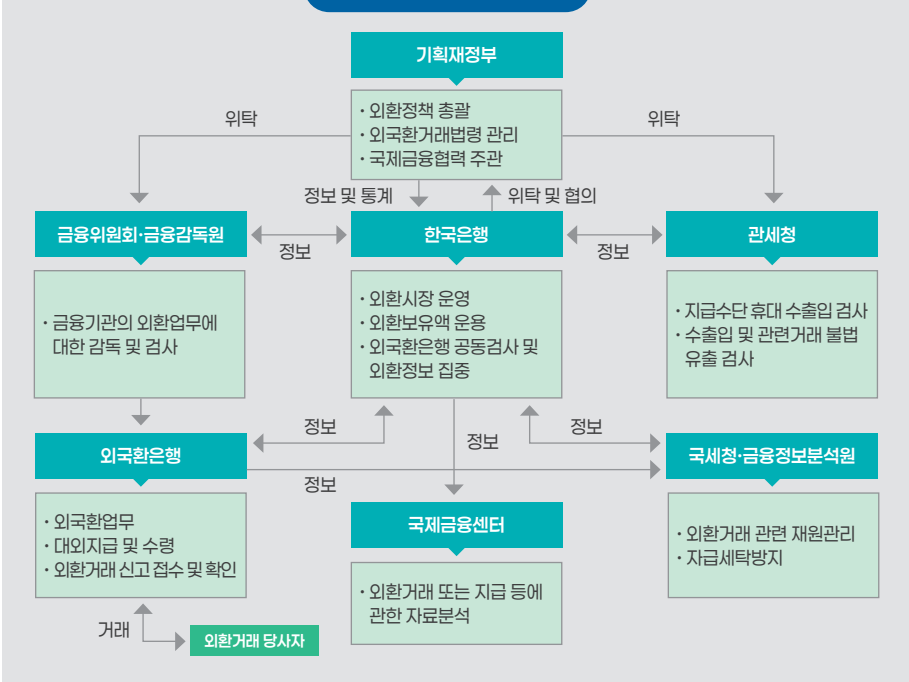
###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외국환거래

- ①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
- ③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④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⑤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3 외국환거래 감독기관

- 기획재정부장은 외환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회·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 또는 위임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 관리 체계



## ※ [참고] 「외국환거래법」 주요 용어(법 제3조)

1.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증권**”이란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급수단, 통화, 귀금속, 증권, 파생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4.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5.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7.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 2

## 지급 등의 절차

- 기획재정부장은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이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 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행위가 법, 영, 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 원인거래 및 결제행위에 따른 법령 적용 체계

| 구분             | 수출입거래                                              | 용역거래                     | 자본거래                        |
|----------------|----------------------------------------------------|--------------------------|-----------------------------|
| 원인거래           | 관세법·대외무역법 적용<br>(수출입신고, 허가, 확인)                    | 대외무역법 적용<br>(수출입 허가, 확인) | 외국환거래법 적용<br>(자본거래신고, 제18조) |
| 결제행위<br>(외환거래) | 외국환거래법 적용<br>(지급 등의 절차- 제 15조, 지급 등의 방법 신고 - 제16조) |                          |                             |

- ① 원인거래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등 의무이행**  
- 직접투자, 해외예금, 채무보증, 금전대차등 자본거래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
- ② 결제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등 절차이행**  
-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지급·수령은 증빙서류 제출, 은행은 신고대상 등 확인
- ③ 예외적인 결제방법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신고 등 의무이행**  
- 상계·기간초과지급·제3자 지급·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은 지급방법 신고

## 1 거주자의 지급 등의 절차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는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계약서 등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급의 목적과 사유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등의 절차

-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받고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미화 5만불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해외여행경비 지급 절차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고 지급하거나 휴대수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수출하는 경우 출국장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여행경비 지급한도 비교

| 구분                           | 은행확인                                    | 세관신고                                                                   | 휴대수출 | 은행송금             |
|------------------------------|-----------------------------------------|------------------------------------------------------------------------|------|------------------|
| 일반<br>해외여행경비                 | 금액제한 없음                                 | 미화 1만불 초과<br>휴대수출                                                      | 가능   | 불가 <sup>주)</sup> |
| 해외체재비<br>(유학생,<br>국외 연수생 포함) | 금액제한 없음<br>(휴대, 송금)<br>*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 은행 발행 외국환신고(확인)<br>필증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휴대<br>수출하는 금액이 미화 1만불<br>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 | 가능   | 가능               |
| 단체<br>해외여행(연수)<br>경비(여행사)    | 금액제한 없음<br>(휴대, 송금)<br>*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 신고불요                                                                   | 가능   | 가능               |
| 법인 명의<br>여행경비 환전             | 금액제한 없음<br>* 소속 임직원의<br>일반여행경비에 한함      | 미화 1만불 초과<br>휴대수출                                                      | 가능   | 불가               |

주) 외국에서의 치료비·교육 관련 경비 등은 지급증빙서류 제출 및 기관 등의 예산으로 지급은 경비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송금가능하며, 한국은행 사전 확인이 필요 없고, 출국 시 증빙서류의 소지를 요함

-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고 예외 거래 외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미리 신고하거나 사후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결제방법 구분

| 일반적인 결제방법            | 예외적인 결제방법                       |
|----------------------|---------------------------------|
| 거래 건별로 지급·수령         | 상계(상호계산) 후 잔액만 지급·수령(법 제16조제1호) |
| 거래 전후 일정한 기간 내 지급·수령 | 1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수령(법 제16조제2호)   |
| 당해 거래 당사자 간에 지급·수령   | 제3자에게 지급, 제3자로부터 수령(법 제16조제3호)  |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수령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법 제16조 제4호) |

## ① 상계 및 상호계산(규정 제2절)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①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②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상대방과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상호계산 신고 이후 상호계산 계정을 통해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대차기 잔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결산 주기별 결산보고서 등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계정 폐쇄 시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기간 초과 지급 등(규정 제3절)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와 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제3자 지급 등(규정 제4절)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3자 지급 등 신고를 사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규정 제5절)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포함)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보고서                                                                                                                                                                                                              |                        |                                                                                                                                    |                                                                                |  |      | 처리기간 |  |
|--------------------------------------------------------------------------------------------------------------------------------------------------------------------------------------------------------------------------------|------------------------|------------------------------------------------------------------------------------------------------------------------------------|--------------------------------------------------------------------------------|--|------|------|--|
| 신고인                                                                                                                                                                                                                            | 상호                     |                                                                                                                                    |                                                                                |  |      |      |  |
|                                                                                                                                                                                                                                | 대표자성명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
| 거래내용                                                                                                                                                                                                                           | 거래종류                   | <input type="checkbox"/> 수출거래 <input type="checkbox"/> 수입거래 <input type="checkbox"/> 용역거래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            |                                                                                |  |      |      |  |
|                                                                                                                                                                                                                                | 계약상대방                  | 상호 및 대표자성명                                                                                                                         |                                                                                |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결제방법                   | <input type="checkbox"/> 신용장(L/C) <input type="checkbox"/> 추심(D/P, D/A) <input type="checkbox"/> 송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지급등의 방법                                                                                                                                                                                                                        | 금액                     | 계약금액                                                                                                                               |                                                                                |  | 신고금액 |      |  |
|                                                                                                                                                                                                                                | (1)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 | 결제기간                                                                                                                               | 당초기간                                                                           |  | 변경   |      |  |
|                                                                                                                                                                                                                                |                        | 결제시기                                                                                                                               | 당초시기                                                                           |  | 변경   |      |  |
|                                                                                                                                                                                                                                |                        | 결제방법                                                                                                                               | <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2)상계에 의한 계정의 대기, 차기   |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 貸記                                                                             |  |      | 잔액   |  |
|                                                                                                                                                                                                                                |                        |                                                                                                                                    | 借記                                                                             |  |      |      |  |
|                                                                                                                                                                                                                                | (3)기타                  | 구분                                                                                                                                 | <input type="checkbox"/> 제3자 지급<br><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  |      |      |  |
| 결제시기                                                                                                                                                                                                                           |                        |                                                                                                                                    |                                                                                |  |      |      |  |
| 변경                                                                                                                                                                                                                             |                        |                                                                                                                                    |                                                                                |  |      |      |  |
| <p>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p> <p>한국은행총재 귀하<br/>&lt;외국환은행의 장&gt;</p> |                        |                                                                                                                                    |                                                                                |  |      |      |  |

210mm×297mm

- <첨부서류> 1. 사유서  
2. 수출입계약서사본 1부  
3. 지급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1부

※ [참고]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2호 서식

[별지 제5-2호 서식]

|                                                                                                                                                                                                       |                        |  |  |                     |  |
|-------------------------------------------------------------------------------------------------------------------------------------------------------------------------------------------------------|------------------------|--|--|---------------------|--|
| <b>상 호 계 산 신 고 서</b>                                                                                                                                                                                  |                        |  |  | 처 리 기 간             |  |
| ①<br>신<br>청<br>인                                                                                                                                                                                      | 상 호, 대 표 자 성 명         |  |  |                     |  |
|                                                                                                                                                                                                       | 주 소 및 전 화 번 호          |  |  |                     |  |
|                                                                                                                                                                                                       | 업 종                    |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②<br>상<br>호<br>계<br>산<br>상<br>대<br>방                                                                                                                                                                  | 상 호 및 대 표 자<br>( 지 정 ) |  |  |                     |  |
|                                                                                                                                                                                                       | 주 소                    |  |  |                     |  |
|                                                                                                                                                                                                       | 업 종                    |  |  |                     |  |
|                                                                                                                                                                                                       | 자 본 금(영 업 기 금)         |  |  |                     |  |
|                                                                                                                                                                                                       | 본 지 사 여 부              |  |  |                     |  |
| ③ 회 계 기 간                                                                                                                                                                                             |                        |  |  | ④ 지 사 설 치<br>유효 기 간 |  |
| ⑤ 변 경 내 용                                                                                                                                                                                             |                        |  |  |                     |  |
| <p>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10px;">신고인                      ⑨</p> <p style="margin-top: 10px;">외국 환은행의 장 귀하</p> |                        |  |  |                     |  |

210mm×297mm

## 4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 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거나,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과 증권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할세관의 장에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당해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관의 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 할 때에는 질문과 증빙서류 제시 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 수출입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게 하거나 당해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PART  
01

성실신고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PART  
02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PART  
03

수출입  
통관 안내

PART  
04

FTA  
활용 안내

PART  
05

개인통관  
안내

PART  
06

기업 부담  
완화제도

PART  
07

납세협력  
프로그램

PART  
08

성실신고  
이행확인

PART  
09

성실신고  
불이행 시

PART  
10

외국환거래  
성실신고  
안내

PART  
11

납세자  
관리보호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

지급수단등

류

량

#### ④대 가 결 제 방 법

 $\sigma$ 

자

지

⑧기 타(또는 변경 내용)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주 소 : 년 월 일  
(전화 : )  
(E-mail : )  
상 호 :  
대 표 자 : ⑤  
(전화 : )

세관의 장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신 고 일 자

유 효 기 간

210mm×297mm

〈첨부서류〉 1. 사유서 2. 거래당사자의 실체확인서류  
3. 원인거래 입증서류(계약서, 신고서 등) 4. 수출입 소요량 입증서류  
5. 지급수단 사본(필요시)  
6. 기타 세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5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등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신탁계약,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의 발행 및 취득, 파생상품거래, 기타 자본거래 등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유형별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자본거래는 규정 제7장의 적용을 받고 해외직접투자자와 부동산 취득거래는 규정 제9장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본거래 유형과 규정

| 구분       |                        | 유형                    | 외국환거래규정 |
|----------|------------------------|-----------------------|---------|
| 자본<br>거래 | 제7장<br>자본거래            | 자본거래 통칙               | 제7장 제1절 |
|          |                        | 예금 및 신탁거래             | 제7장 제2절 |
|          |                        | 금전대차 및 채무보증           | 제7장 제3절 |
|          |                        | 대외지급수단·채권의 매매 등       | 제7장 제4절 |
|          |                        | 증권의 발행                | 제7장 제5절 |
|          |                        | 증권의 취득                | 제7장 제6절 |
|          |                        | 파생상품거래                | 제7장 제7절 |
|          |                        | 기타 자본거래(임대차/조합/상속/증여) | 제7장 제8절 |
|          | 제8장<br>현지금융            | 삭제                    |         |
|          | 제9장<br>직접투자 및<br>부동산취득 | 해외직접투자                | 제9장 제1절 |
|          |                        |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 제9장 제2절 |
|          |                        |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 제9장 제3절 |
|          |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제9장 제4절 |
|          |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제9장 제5절 |

## ※ [참고] 「외국환거래법령」상 해외직접투자 구분(법 제3조, 영 제8조)

### 1. 거래 및 행위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의 것

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나.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 ① 임원의 파견
-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다. ‘가’와 ‘나’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

라. ‘가’부터 ‘나’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대부투자)

### 2. 자금의 지급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것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자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 ※ [참고]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규정 제9장제1 절제2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2.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대은행
3. 1.내지 2.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별지 제9-1호 서식]

| <b>해 외 직 접 투 자 신 고 서(보고서)</b>                                                                                              |                   |          |               | 처리기간 |
|----------------------------------------------------------------------------------------------------------------------------|-------------------|----------|---------------|------|
| 신<br>고<br>인<br>(보<br>고<br>인)                                                                                               | 상<br>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대 표 자             | (인)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소 제 지             | 전화번호 :   |               |      |
|                                                                                                                            | 업 종               |          |               |      |
| 해<br>외<br>직<br>접<br>투<br>자<br>내<br>용                                                                                       | 투 자 국 명           | 소 제 지    |               |      |
|                                                                                                                            | 투 자 방 법           | 자 금 조 달  |               |      |
|                                                                                                                            | 투 자 업 종           | 주 요 제 품  |               |      |
|                                                                                                                            | 투 자 금 액           | 출 자 금 액  |               |      |
|                                                                                                                            | 투 자 비 율           | 결 산 율    |               |      |
|                                                                                                                            | 투 자 목 적           |          |               |      |
|                                                                                                                            | 현 지 법 인 명<br>(영문) | (자본금 : ) |               |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보고)합니다.<br><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div>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                   |          |               |      |
| 위와 같이 신고(보고)되었음을 확인함                                                                                                       |                   | 신 고 번 호  |               |      |
|                                                                                                                            |                   | 신 고 금 액  |               |      |
|                                                                                                                            |                   | 유효 기 간   |               |      |
| 피신고(보고)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          |               |      |

210mm×297mm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포함)  
 2.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여에 의한 해외직접 투자인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서  
 4. 해외투자수단이 해외주식인 경우, 당해 해외주식의 가격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5자리) 및 업종명을 기재  
 ※ 출자금액란에는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

## 1 외국환거래 검사 제도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관세청장에게 검사 등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검사대상

#### ● 관세청

- ①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 ② 수출입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용역·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 목적으로 제3자지급등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통하지아니한 지급 등 한정)

#### ● 금감원

-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자(PG사)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 ② 수출입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당사자 등

#### ● 한국은행

-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외국 금융기관과 그 관계인
- ③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보고대상자,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한국은행총재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 공동검사 가능 : 관세청 + 금감원 / 금감원 + 한국은행

#### ※ 기관별 검사기준

- 관세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 금감원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 ②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 경고 및 거래정지 등 (법 제19조)

- 경고 : 「외국환거래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①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하였거나,
  - ② 미화 1만불 이하(제18조의 경우 미화 5만불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거래정지 :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하거나 허가 취소하거나 업무의 제한·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 ● 과태료 (법 제32조)

- 제16조 지급 등의 방법 신고 등 의무 위반(건당 위반금액 50억원 이하)
- 제17조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의무 위반(위반금액 미화 1만불초과 3만불이하)
- 제18조 자본거래 신고 등 의무 위반(건당 위반금액 20억원 이하)

### ● 벌칙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제16조 지급 등의 방법 신고 등 의무 위반(건당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 제17조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의무 위반(위반금액 미화 3만불 초과)
- 제18조 자본거래 신고 등 의무 위반(건당 위반금액 20억원 초과)

-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대상 업무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3에 따른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사항에 대한 검사를 자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건전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외국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입기업의 경우 대외거래 구조의 복잡성과 외환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법령의 위반 소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에 따른 신고 등 의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법 위반 위험을 식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을 통해 기업 내부적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국가 외환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함께 제고될 수 있습니다.

#### ※ [참고]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비교

##### 1. 관세법 (법제2조)

- 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 하며, 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
-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반송: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 2.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무역”, “수입”, “수입실적”, “수출”, “수출실적”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무역”, “수입”, “수입실적”, “수출” 및 “수출실적”을 말한다.

##### 3. 대외무역법 (법제2조)

-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 가. 물품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물품”이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

##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 <작성요령>

#### 1. 자율점검 결과표

- (1) 외국환거래법령(규정) 상 원인거래(수출입·용역·무체물·외국인수도·중계무역·자본거래 등)에 따른 결제거래(지급등의 절차·방법·지급수단수출입)와 자본거래에 대한 점검결과를 작성
- (2) 각 점검항목은 주요 신고대상 유형 및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하여 신고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
- (3) 점검결과는 각 점검항목별 점검결과를 “이행/미이행/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이행” 해당 거래가 있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거래
  - “미이행” 해당 거래가 있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
  - “해당없음” 해당 거래가 없어 점검대상거래가 없는 경우

#### 2. 점검결과 상세내용

점검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소명이 필요한 내용 또는 위반사항 자진신고 내용을 기재(아래 “작성예”를 참고하여 소명내용이나 자진신고내용 등 외국환거래 점검결과 상세설명내용을 기재)

(작성예)

(상계 미이행) 외국환거래법령(규정) 상 의무사항 미이행 내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 예시) 점검항목(상계) 0000,00,00일 A사에 대한 수입채무 미화 000불과 A사에 대한 수출채권 미화 000불을 상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 사후보고 미이행(미이행내역 별첨)

(추가설명·소명) 점검결과에 따라 세관의 검증시 추가 설명 또는 소명이 예상되는 사항 등

- 예시) 점검항목(상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00차례에 걸쳐 A사와의 채권채무 상계하였으나 상계 건별 미화 5천불 미만으로 신고(사후보고) 미대상(A사와 상계 세부내역 별첨)

#### 3. 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에 따라 전표통화별·결제방법별 총합계로 작성

- (1) 거래상대방(해외거래처)의 상호와 국가를 기재
- (2) 거래내역 항목을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세자리 통화코드를 기재, 예) 대한민국: KRW, 미국: USD, 유럽연합: EUR, 중국: CNY,
  - 거래상대방과의 수출(중계수출, 외국인도수출, 무체물·용역 수출 등 포함)과 관련된 거래내역
  - 거래상대방과의 수입(중계수입, 외국인수입, 무체물·용역 수입 등 포함)과 관련된 거래내역
  - 해외지사와의 영업자금 내역
  - 투자유가증권, 해외부동산, 해외회권, 기타 해외자산, 대여, 차입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래내역
- (3) 결제내역항목은 다음예시를참고하여작성
  - 다음 결제방법을 기재
    - 송금 : TT, 기한부신용장: LU, 일람불신용장 : LS, 추심 : DA, DP, 외상매출채권매입 : OA, 무환 : GN, 기타 : ZZ
  - 거래상대방과의 수출(중계수출, 외국인도수출, 무체물·용역 수출 등 포함)과 관련된 결제내역
  - 거래상대방과의 수입(중계수입, 외국인수입, 무체물·용역 수입 등 포함)과 관련된 결제내역
  - 해외지사의 영업자금 지급 등의 내역
  - 투자유가증권, 해외부동산, 해외회권, 기타 해외자산, 대여금, 차입금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지급 등의 내역
- (4) 거래유형별, 통화별 (2)의 거래금액과 (3)의 결제금액의 차액을 기재
- (5) (4)의 차액 발생에 대한 사유나 해당 거래에 대한 추가설명 등을 간략히 기재(상세설명 필요한 경우 2. 점검결과 상세내용에 기재)

## 1. 자율점검 결과표

| 구분 <sup>(1)</sup> | 연번 | 점검항목 <sup>(2)</sup> | 관련 외국환 거래규정    | 주요 신고대상 유형(세부내용 규정참고)                                                                                          | 점검결과 <sup>(3)</sup> |
|-------------------|----|---------------------|----------------|----------------------------------------------------------------------------------------------------------------|---------------------|
| 결제거래<br>(지급, 영수)  | 1  | 지급 등의 절차            | 제4-2조          | 결제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수령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
|                   | 2  | 상계                  | 제5-4조 제2항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제5-4조 제3항      |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제5-5조~제5-7조    |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                     |
|                   | 3  | 기간초과지급 등            | 제5-8조 제1항      | 본지사 간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결제기간 3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 본지사 간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물품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 본지사 간이 아닌 계약으로 계약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재수출목적의 금수입 선적서류 또는 물품 수령 후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 수입대금 선적서류 또는 물품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
|                   | 4  | 제3자지급 등             | 제5-10조 제2항~제4항 |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3자(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 전문회사 포함)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                     |
|                   | 5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 제5-11조 제1항 제8호 | 경상거래의 대가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br>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                     |
|                   |    |                     | 제5-11조 제3항     |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                     |
|                   | 6  | 지급수단 수출입            | 제6-2조~제6-3조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한 경우                                                                                     |                     |
| 자본거래              | 7  | 해외예금·신탁거래           | 제7-11조~제7-12조  | 해외에서 비거주자와의 외화예금거래,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                   | 8  | 외화차입거래              | 제7-14조         |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                     |
|                   | 9  | 현지법인 등의 외화차입거래      | 제7-14조의 2      | 현지법인 등 현지금융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                   | 10 | 원화차입거래              | 제7-15조         |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                     |
|                   | 11 | 대출거래                | 제7-16조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
|                   | 12 | 채무의 보증계약            | 제7-18조~제7-19조  | 비거주자와의 채무보증 계약, 거주자와 비거주자(현지법인 등을 포함) 간 거래 또는 비거주자 간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담보제공 포함)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                     |

| 구분 <sup>(1)</sup> | 연번 | 검검항목 <sup>(2)</sup>      | 관련 외<br>국환<br>거래규정    | 주요 신고대상 유형(세부내용 규정참고)                                                                                                                                                                                                                                                                                                                                       | 검검결과 <sup>(3)</sup> |
|-------------------|----|--------------------------|-----------------------|-------------------------------------------------------------------------------------------------------------------------------------------------------------------------------------------------------------------------------------------------------------------------------------------------------------------------------------------------------------|---------------------|
| 자본거래              | 13 | 대외지급수단,<br>채권 기타의 매<br>매 | 제7-20 조<br>제2항        | 거주자 간 대외지급수단 매매계약에 따른 외<br>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br>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제7-21 조<br>제2항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해외 부동산·시설물<br>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취득에<br>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제7-21 조<br>제3항        | 비거주자와의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의 매매계약<br>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                     |
|                   | 14 | 증권취득                     | 제7-31 조<br>제2항        | 비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                   | 15 | 기타 자본거래                  | 제7-44<br>조~제<br>7-46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임대차계약·담보·보<br>증·보험·조합·채무의 인수·화해 기타 이와 유<br>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 발생 등에 관한 거래-<br>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br>한 거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                     |
|                   |    |                          |                       | 다음의 해외직접투자, 변경, 청산 등을 하고자<br>하는 경우<br>-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br>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이<br>상을 취득하거나<br>-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로서 그 외국법<br>인에 임원을파견하거나 계약기간이1년이상<br>인 원자재또는제품의매매계약을체결하거나<br>기술의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br>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br>는 계약의 체결을 한 경우(이하 '현지법인')<br>-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br>취득 또는 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br>으로 하여 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자<br>하는 경우 |                     |
|                   | 17 | 해외지사                     | 제9-18<br>조~제<br>9-25조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폐쇄 등을<br>하고자 하는 경우                                                                                                                                                                                                                                                                                                                       |                     |
|                   | 18 | 외국기업 등의<br>국내지사          | 제9-32<br>조~제<br>9-37조 |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설치, 변경 등                                                                                                                                                                                                                                                                                                                                       |                     |
|                   | 19 | 부동산 취득                   | 제9-39<br>조~제<br>9-43조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비거주자의 국내부<br>동산 취득                                                                                                                                                                                                                                                                                                                            |                     |
| 기타                | 20 | 기타 검검항목                  |                       |                                                                                                                                                                                                                                                                                                                                                             |                     |

## 2. 점검결과 상세내용

자율검검 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이나 소명이 필요한 내용 또는 자율검검 결과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 상세
- 가간초과지급 등

·  
·  
·  
·  
·  
·  
·

## 3. 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

| 거래유형          | 거래처명<br>(국가) <sup>(1)</sup> | 거래내역 <sup>(2)</sup> |          |        | 결제내역 <sup>(3)</sup> |          |        | 차액 <sup>(4)</sup> | 비고 <sup>(5)</sup> |
|---------------|-----------------------------|---------------------|----------|--------|---------------------|----------|--------|-------------------|-------------------|
|               |                             | 통화<br>코드            | 결제<br>방법 | 단<br>위 | 통화<br>코드            | 결제<br>방법 | 단<br>위 |                   |                   |
| 직수출           |                             |                     |          |        |                     |          |        |                   |                   |
| 직수입           |                             |                     |          |        |                     |          |        |                   |                   |
| 외국인도수출        |                             |                     |          |        |                     |          |        |                   |                   |
| 외국인수수입        |                             |                     |          |        |                     |          |        |                   |                   |
| 중계수출          |                             |                     |          |        |                     |          |        |                   |                   |
| 중계수입          |                             |                     |          |        |                     |          |        |                   |                   |
| 무체물수출         |                             |                     |          |        |                     |          |        |                   |                   |
| 무체물수입         |                             |                     |          |        |                     |          |        |                   |                   |
| 용역의수출         |                             |                     |          |        |                     |          |        |                   |                   |
| 용역의수입         |                             |                     |          |        |                     |          |        |                   |                   |
| 해외지사          |                             |                     |          |        |                     |          |        |                   |                   |
| 외국법인증권/출자지분취득 |                             |                     |          |        |                     |          |        |                   |                   |
| 외국법인증권/출자지분처분 |                             |                     |          |        |                     |          |        |                   |                   |
| 해외부동산취득       |                             |                     |          |        |                     |          |        |                   |                   |
| 해외부동산처분       |                             |                     |          |        |                     |          |        |                   |                   |
| 해외회원권취득       |                             |                     |          |        |                     |          |        |                   |                   |
| 해외회원권처분       |                             |                     |          |        |                     |          |        |                   |                   |
| 기타해외자산취득      |                             |                     |          |        |                     |          |        |                   |                   |
| 기타해외자산처분      |                             |                     |          |        |                     |          |        |                   |                   |
| 비거주자와의대여금     |                             |                     |          |        |                     |          |        |                   |                   |
| 비거주자와의대여금상환   |                             |                     |          |        |                     |          |        |                   |                   |
| 비거주자와의차입금     |                             |                     |          |        |                     |          |        |                   |                   |
| 비거주자와의차입금상환   |                             |                     |          |        |                     |          |        |                   |                   |
| 기타            |                             |                     |          |        |                     |          |        |                   |                   |

본인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 (작성자) 소속 :                      직책 :                      작성자 :                      (인)  
 ■ (작성일자) 20. . . .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PART 11

## 납세자 권리보호

1.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2. FTA 원산지검증 시 납세자 권리 보호 받으세요
3.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4.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5. 사후 구제절차도 알아두세요
6.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소개합니다
7. 관세업무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합니다

## 1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법 제111조 제1항)

-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음

## 2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관세법 제111조 제2항)

- 해당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 ④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⑤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3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관세사나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 (관세법 제113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제외)

## 5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4조 제1항)

-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위임자 포함)에게 조사 시작 15일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외)

- ① 범죄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 ②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6 관세조사 연기신청 (관세법 제114조 제2항)

- 납세자는 다음 사유로 조사받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에게 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②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는 경우
  - ④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7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관세법 제115조)

-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통고처분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폐업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8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관세법 제116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9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7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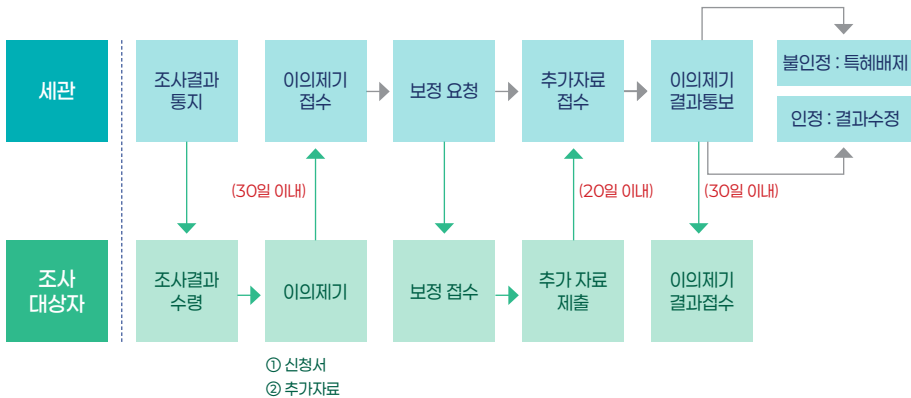
### 문의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T.042-481-7650

### 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원산지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조사 결과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 합니다.

- 또한,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시 필요한 서류

- ① 이의제기 신청서
- ②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서류
- ③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 ④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3 원산지검증 결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구제(불복)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종류  | 제기기간                 | 재결청                      | 심리기관(소관위원회) |
|----------|----------------------|--------------------------|-------------|
| 과세전 적부심사 | 과세전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 세관장<br>관세청장(청구금액 5억원 이상) | 관세심사위원회     |
| 심사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관세청장                     | 관세심사위원회     |
| 심판청구     | 90일 이내               | 조세심판원장                   | 조세심판관회의     |
| 감사원심사청구  | 90일 이내               | 감사원장                     | 감사위원회       |

#### 문의처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T.042-481-3213

## 1 관세행정의 권리구제제도

-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과세전적부심사                                                                                                                              | 사후구제절차                                                                          |
|-----|--------------------------------------------------------------------------------------------------------------------------------------|---------------------------------------------------------------------------------|
| 공통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에 의해서 개시</li> <li>●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li> <li>● 대심구조, 위원회 심의, 결과가 처분청을 기속함</li> </ul>     |                                                                                 |
| 차이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적 행정절차</li> <li>● 처분유보(제척기간 도래분 예외)</li> <li>● 심사결정 자체가 아닌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불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적 행정절차</li> <li>● 집행부정지원칙</li> </ul> |

### ① 과세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세관장은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요건

- (청구기간)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청구기관) 원칙적으로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하며,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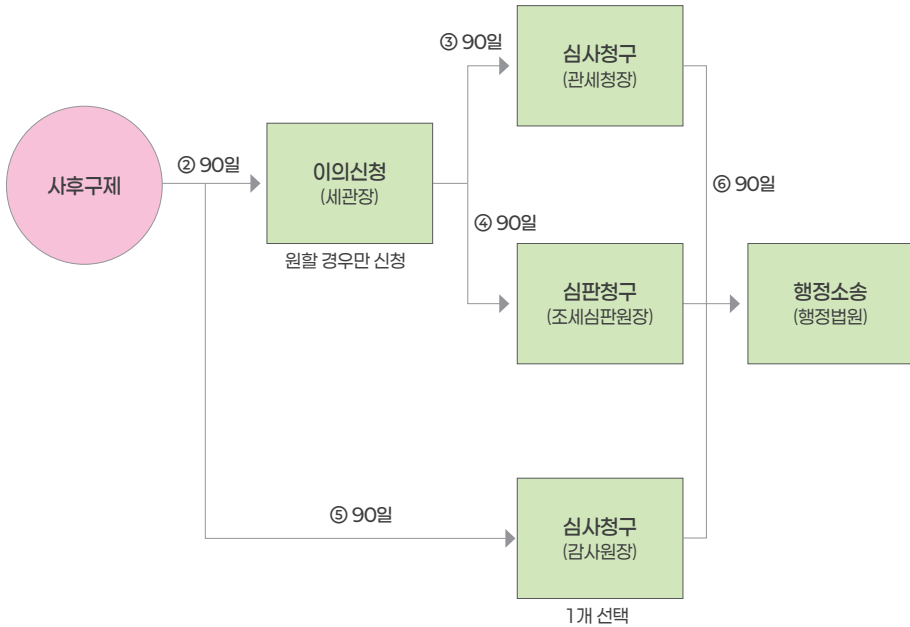
###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효과

- 세관장은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게 되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정의 효과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하게 기속력 등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자체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권리구제」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절차별 청구기간과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절차      | 청구기간 | 신청기관          | 결정기간 | 비 고              |
|-----------|------|---------------|------|------------------|
| ① 과세전적부심사 | 30일  | 본부세관장<br>관세청장 | 30일  | (관세청장)<br>5억원 이상 |
| ② 이의신청    | 90일  | 세관장           | 30일  | 원하는 경우           |
| ③ 심사청구    | 90일  | 관세청장          | 90일  | 1개 선택            |
| ④ 심판청구    | 90일  | 조세심판원장        | 90일  |                  |
| ⑤ 감사원심사청구 | 90일  | 감사원장          | 3개월  |                  |
| ⑥ 행정소송    | 90일  | 행정법원          | -    | 3심제              |

## 6

##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소개합니다

## ① 납세자보호관제도 개요

## 제도 의의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
-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 제도 목표

- 과세품질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도입 배경

-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충민원 적극 처리

## 관련 근거

- 관세법 제110조, 제118조의2~제118조의5
-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44조의2~제144조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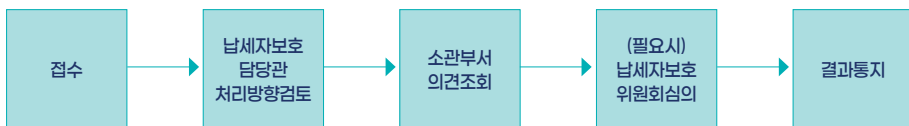
## 운영 원칙

- 관세행정 운영역\*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운영
- \* 법칙조사·외환조사·외환검사, 내부행정사항 등 일부 업무 제외
- 납세자보호관제도는 행정적인 권리보호수단으로서, 법을 초월한 권리보호는 불가하며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은 불복제도 우선 적용

## ②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 본청과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 ③ 업무 처리 절차



#### 4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 구분         |                  | 내용                                                                                                                                                                        |
|------------|------------------|---------------------------------------------------------------------------------------------------------------------------------------------------------------------------|
| 고충민원       |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                                                                                              |
| 관세조사<br>관리 | 관세조사<br>범위확대     | 관세조사부서장이 1. 조사대상기간 2. 조사대상분야 3. 조사대상품목에 대하여 관세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필요                                                                                         |
|            | 관세조사의<br>중지      | 관세조사부서장이 3회를 초과(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 제외)하여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 필요                                                                                                      |
|            | 장부 등의<br>보관기간 연장 | 관세조사부서장이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필요                                                                                             |
| 권리보호<br>요청 | 관세조사<br>권리보호요청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 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
|            | 일반행정<br>권리보호요청   |                                                                                                                                                                           |
| 제도개선       |                  | 고충민원,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의 불편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 제외 업무

| 제외 대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외환검사에 관한 사항</li> <li>● 선별기준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예 : 수출입물품 검사대상선별, 우범선박지정)</li> <li>●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예 : 감시대상화물 정보수집)</li> <li>● 세관관서의 내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예 : 법규준수·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li> <li>●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관서의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li> </ul>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납세자보호관 탭 참조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납세자 권리보호 ⇒ 납세자보호관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T.042-481-7806

### 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에 대한 모든 분야(수출입 통관, FTA, 품목분류, 평가감면, 특송물품·휴대품 통관, 보세화물, 환급 등)에 걸쳐 “one-call,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②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 (전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 (해외 : 82-2-3438-5199)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가능(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 2014. 12. 밀수신고센터와 관세청 125콜센터로 통합운영되어 밀수신고는 “10”번을, 관세상담은 “20”번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 (채팅) 카카오톡 채널“관세청 고객지원센터”채팅 상담  
평일 오전 09:00~11:20, 오후 12:00~18:00(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③ 인터넷상담을 원하시면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al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상담 코너에서 상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같은 홈페이지 인터넷상담코너의 ①상담사례조회(Q&A) / ②자주하는질문(FAQ)를 검색하여 유사 상담사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④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 전화(02-3438-5113) 또는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후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2동 611호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부록

-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
-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 04. 수출입·관세업무 관련 연락처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

생산, 계약, 구매, 운송, 통관, 판매 등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과세위험 : '○' 과세오류 위험있음, 'x' 과세오류 위험없음, 'n' 과세와 관련없음

| 구분       | 내용                             | 과세위험 | 기타위험     | 위험관리                            |
|----------|--------------------------------|------|----------|---------------------------------|
| 생산       | 생산자의 생산원가                      | ○    |          |                                 |
|          | 이윤 및 일반경비                      | ○    |          |                                 |
|          | 생산지원비용(물품, 용역)                 | ○    |          |                                 |
|          | 수출보조금                          | n    | 상계관세 부과  |                                 |
| 계약<br>구매 |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 ○    |          | 과세가격<br>사전심사<br>(APR /<br>ACVA) |
|          | 비정상적 광고선전비, 경영서비스              | ○    |          |                                 |
|          | 채무변제                           | ○    |          |                                 |
|          | 판매조건에 의한 의무적 해외훈련비             | ○    |          |                                 |
|          | 별도의 간접지급금                      | ○    |          |                                 |
|          | 일반 상거래 가격할인                    | x    |          |                                 |
|          | 누락된 선급금                        | ○    |          |                                 |
|          | 권리사용료(royalty and licence fee) | ○    |          |                                 |
|          |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 ○    | 추징       | 규정 준수                           |
| 포장       | 별도지급 용기 및 포장비용(노무비·자재비 포함)     | ○    |          | 성실신고                            |
|          | 원산지 표시(허위·오인·손상변경·부적정·미표시)     | n    | 행정제재, 처벌 | 규정준수                            |
| 운송       | 운임(수출국내 운송, 국제운송 포함)           | ○    |          | 성실신고                            |
|          | 보험료                            | ○    |          | 성실신고                            |
|          | 수출통관비용                         | ○    |          | 성실신고                            |
| 입항<br>하역 | 본선하역준비 완료될 때까지 소요 비용           | ○    |          | 성실신고                            |
|          | 본선하역준비 완료이후 비용                 | x    |          |                                 |

| 구분 | 내용                                                                                                             | 과세위험 | 기타위험     | 위험관리                     |
|----|----------------------------------------------------------------------------------------------------------------|------|----------|--------------------------|
| 통관 | 통관수수료                                                                                                          | x    |          |                          |
|    | 수입국 제세·공과금                                                                                                     | x    |          |                          |
|    | 품목분류 오류                                                                                                        | ○    |          | 품목분류 사전심사                |
|    | 저가신고                                                                                                           | ○    |          | APR, ACVA, 기업내부 과세 정보 공유 |
|    | 관세부정감면                                                                                                         | ○    |          | 감면요건 확인                  |
|    | 가산 또는 제2방법 이하 적용                                                                                               | ○    |          | 성실신고                     |
|    | -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닌 경우(무상수입 물품, 판매위탁수입물품, 수출자 책임판매물품, 지점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물품, 송화주부담 파기물품) 미조정                   | ○    |          |                          |
|    | - 조건·사정(타물품 구매조건하에 가격결정, 판매자의 타물품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 기 사용물품 반환 조건, 반제품 공급후 완제품 일부 수령조건, 구상무역, 보상거래 등)에 의한 가격 영향 미조정 | ○    |          |                          |
|    | - 처분·사용상의 제한(광고용, 전시용, 교육용,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 등)에 의한 가격 영향 미조정                                                   | ○    |          |                          |
|    | -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 미조정                                                                                              | ○    |          | ACVA                     |
|    |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 ○    | 통관보류     | 성실신고                     |
|    |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미구비                                                                                               | n    | 통관보류     | AEO                      |
|    | 관리대상화물 지정 및 수입통관 검사 강화                                                                                         | n    | 물품검사     |                          |
|    | 지재권 보호                                                                                                         | n    | 통관보류     | 병행수입                     |
| 외환 | 채권 미회수, 무역가장 자금이동, 채권·채무 상계 미신고, 당사자 이외 지급수령 미신고(환치기, 제3자 지급수령),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수령 미신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 n    | 행정제재, 처벌 | 외환당국 신고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구분    | 내용                                                                                  | 과세위험 | 기타위험        | 위험관리                |
|-------|-------------------------------------------------------------------------------------|------|-------------|---------------------|
| 납세    | FTA 특혜 관세 부당 수혜                                                                     | ○    |             | 원산지 증명              |
|       | 운송,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 용기 및 포장비용 신고 누락                                                | ○    |             | 성실신고                |
|       | 부족 신고분 세액보정                                                                         | ○    | 기간이자 부과     | 6개월 이내              |
|       | 부족 납세분 수정신고                                                                         | ○    |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
|       | 경정청구                                                                                | ○    | 과다납부        | 5년 이내               |
| 국내 운송 | 수입 이후의 운송비용                                                                         | x    |             |                     |
|       | 보험료                                                                                 | x    |             |                     |
| 설치    | 수입후 설치, 정비, 유지 등 비용                                                                 | x    |             |                     |
| 국내 판매 | 통상의 수수료(위탁물품)                                                                       | x    |             |                     |
|       | 이윤 및 일반경비(구매물품)                                                                     | x    |             |                     |
|       | 사후귀속이익(subsequent proceeds)                                                         | ○    |             | 잠정가격 신고             |
|       | 감면물품 사후관리                                                                           | n    | 감면액 추징      | 사후관리 준수             |
| 관세 조사 | 수출입의 요건 미구비 및 절차 미준수<br>- 보건·식품위생, 사회안전, 환경보전, 농수축산보호 등 66개 법령 위반(세관장확인 대상 수입요건 포함) | n    |             | 정확한 HS분류<br>수입요건 확인 |
|       | 과세가격 신고누락 등                                                                         | ○    |             | APR, ACVA           |
|       | 원산지표시단속, 종합심사, 외환조사, 범칙조사                                                           | n    | 행정제재, 처벌    | 법규준수                |
| 권리 구제 | 부당한 과세처분, 부당한 행정처분                                                                  | n    |             | 구제제도 이용             |
| 수출    | 부당 과다환급                                                                             | ○    | 행정제재, 처벌    | 소요량<br>계산 등<br>오류점검 |
|       | 외국세관당국의 원산지조사 또는 검증 요청                                                              | n    | 수출거래선<br>상실 | 인증수출자<br>제도         |
|       | 수입국의 높은 세관검사를 및 통관지체                                                                | n    |             | AEO                 |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 ① 수출입통관 안내
- ② FTA활용 안내
- ③ 관세 부과·징수와 환급
- ④ 납세협력 프로그램 안내
- ⑤ 관세조사 안내
- ⑥ 납세자원리구제 안내



##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 1 수출입통관 안내

1. 일반 수입통관 절차
2. 수출통관 절차
3. 특송물·우편물 수출입통관
4.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
5. 관세감면·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6. 원산지 표시
7.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1

## 일반 수입통관 절차

## ① 수입통관 개요

## ■ 목적

- 수입통관단계에서 적법·적당한 수입신고는 지체 없이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로 줄이고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

## ■ 용어의 정의

- 심사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한 것
- 물품검사란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

## ② 수입신고

## ■ 신고의 시기

- 수입의 신고는 통상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가능하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도 수입신고(입항전신고, 출항전 신고) 가능
-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 가능
  -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
  - 입항전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함)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

## ■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의 요건

○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물품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대상에서 제외

- 세월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다만, 당해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법령의 시행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제외)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 수입신고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비교

| 구분           | 출항전 신고                                             | 입항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
|--------------|----------------------------------------------------|------------------------------------------------------------------------------------------------------------------------------------------------------|-------------------------|-----------------|
| 신고 시기        |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의 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 후 입항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함)전 | 입항 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전 |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도착 후 |
| 신고 대상 물품     | -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br>- 일본·중국·대만·홍콩으로 부터 선박으로 수입 되는 물품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신고 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도착예정 보세구역 관할세관          |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세관  |
|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 (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 신고 수리 시기     | 검사 생략                                              | 적하목록 제출후                                                                                                                                             |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 수입 신고후          |
|              | 검사 대상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①

수출입  
통관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 신고세관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함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당해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함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신고인

-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물품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함

## ■ 신고의 효력발생 시점

-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 다만,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가 통관지세관에 접수된 시점

## ■ 신고시 제출서류

-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입시 제출서류

- ▶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시 제출)
- ▶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 ▶ 선하증권(B/L)부분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부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 검사·검역·허가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수입요건 구비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 ▶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류제출해야 하는 경우

### 종이서류 제출대상

- ▶ 캄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 ▶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 나. 특급택송물품으로서 소액면세대상물품
  - 다.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 라.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 마.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 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 사. 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 아.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 자.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 ▶ 부과고지 대상물품
- ▶ 신고수리전 반출대상물품
- ▶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B/L분할신고 및 수리

### ○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 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관리예관고시」 제5장에 따른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 신고 가능

### B/L분할이 가능한 경우

-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 B/L을 분할하여 신고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 불가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1  
수출입  
통관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③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 신고의 취하

- 수입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 가능
- 신고의 취하는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 취하(승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
- 수입신고의 취하는 수입신고로부터 수입신고수리가 되기까지는 물론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라 할지라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입물품의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취하 가능
  - 운송기관·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 취하 불가

#### 수입신고 취하 사유 및 부정적 사례

##### ◆ 수입신고 취하 사유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입신고 취하 부정적 사례

- 경기불황 등에 따른 업체의 자금사정
- 감면신청,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누락
-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취하
- 국내 판매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국내 판로 미확보 등

#### ■ 신고의 각하

- 세관장은 아래의 경우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 멸각·폐기·공매·경매·낙찰·몰수·확정·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보완요구 및 통관보류

### ■ 보완요구

- 수입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첨부서류 누락,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서류제출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신고인에게 당해 사항에 대해 보완요구 가능

### ■ 통관보류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이 보류되고 통관보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물품반출 불가

- ①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③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⑤ 「국제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⑥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⑦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 ⑧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5 신고수리전 반출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가능

### 신고수리전 반출 요건

- ▶ 완제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축물자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 포함)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 품목분류 및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 수입신고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나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미조립상태 분할선적물품 범위 및 적용

## ▶ 「분할선적물품」의 정의

-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서 분할선(기)적하여 수입하는 물품

## ▶ 수리전반출 대상: 아래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

- ①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HS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2(가))
-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분할해서 수입되는 물품
- ③ 수입통관 후 단순조립(연결, 리벳, 용접 등) 이상의 추가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 ④ 단일계약에 의해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다국적기업의 본·지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수출자로 인정)

-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세관장은 신고수리전 반출기간 중에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도래전에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화주 또는 비축물자 수입자에게 당해 관세를 부과 조치

## 문의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T.042-481-7851 / 042-481-7733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37조, 제241조 내지 제250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내지 제148조

## 참고자료

##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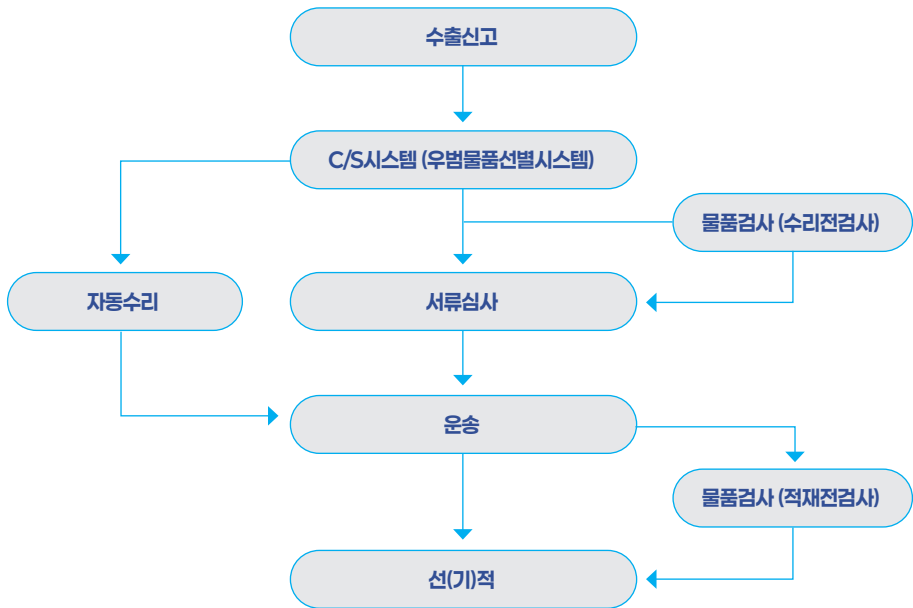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입통관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

## ① 수출통관시 정확한 내역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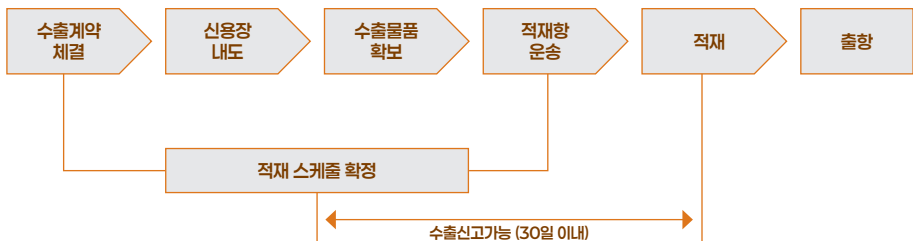
- 수출신고는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죄(관세법 제276조), 밀수출입죄(관세법 제269조), 가격조작죄(관세법 제270조의2)

## ■ 수출통관 절차



## ■ 수출 절차



##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써,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통하여 WMD 확산 통제
  - 우리나라는 4개 체제 모두 가입하였고, 대외무역법에 규정·통제

### 국제수출통제 체제

| 핵무기                     | 생·화학무기                 | 미사일                      | 재래식무기                  |
|-------------------------|------------------------|--------------------------|------------------------|
| <b>NSG<sup>1)</sup></b> | <b>AG<sup>2)</sup></b> | <b>MTCR<sup>3)</sup></b> | <b>WA<sup>4)</sup></b> |
| 46개 회원국                 | 41개 회원국                | 34개 회원국                  | 41개 회원국                |

### 국제수출통제 구조

| 구분               | 비확산조약 | 다자협약체                                                                                                                                                                | 비고(전략물자수출입고시)                                                                                                                                                                                                                                                 |
|------------------|-------|----------------------------------------------------------------------------------------------------------------------------------------------------------------------|---------------------------------------------------------------------------------------------------------------------------------------------------------------------------------------------------------------------------------------------------------------|
| 재래식무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세나르체제(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1996년</li> <li>- 회원: 41개국</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 2(제1부~제9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용도품목</li> </ul> </li> <li>■ 별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용품목</li> </ul> </li> </ul>                           |
| WMD<br>(대량 살상무기) | 핵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공급국그룹(N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1974년</li> <li>- 회원: 46개국</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전용품목(제10부)</li> <li>- 이중용도품목(제1부~제9부)</li> </ul> </li> </ul>                                                                                          |
|                  | 미사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1987년</li> <li>- 회원: 34개국</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 2(제1부~제9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테고리(로켓, 무인비행체 등의 완제품과 그 하위시스템으로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미만의 것)</li> <li>- 카테고리2(로켓용 추진시스템, 발사장비, 지상지원장비 또는 미사일개발 관련소재)</li> </ul> </li> </ul> |
|                  | 화학 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무기금지협약(CW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1997년</li> <li>- 회원: 188개국</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 2(제1부~제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3종 화학물질</li> </ul> </li> <li>- AG 1~6</li> </ul>                                                                                            |
|                  | 생물 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무기금지협약(BW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1975년</li> <li>- 회원: 165개국</li> </ul> </li> </ul>  |                                                                                                                                                                                                                                                               |

1) NSG (Nuclear Suppliers Group): 핵공급국그룹,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

2) AG (Australia Group): 호주그룹,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

3)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미사일 관련 통제

4) WA (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체제, 재래식 무기·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

## ②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 실시

- 수출신고 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짐
- 수출신고수리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바뀔치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적재지에서 불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③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에 하여야 함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 ④ 중고차 및 스마트폰 수출시 유의사항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음.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반드시 수출말소하여야 함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함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 진행



## 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 적재이행 완료 의무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관세법 제251조)

##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
|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
| (2) (삭제)                                                                                                    |                                                                             |
|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서                                               |
|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br>■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 (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
|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br>(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br>(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 ■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br>■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br>(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                                 |
| (7)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 ■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
|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br>(가) 핵물질<br>(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br>■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
|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물품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
| (11) (삭제)                                                                                                   |                                                                             |
| (1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 ■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
|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서                                                             |
|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br>(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
|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br>(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확인증                                                        |

## 문의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T.042-481-7802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T.042-481-7895(요건), 7838(검사)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제31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본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①  
수출입  
통관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1 특송물품

■ 특송물품의 신고유형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분류

○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

- (대상)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 되는 상용견품
- 다만, 아래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됨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①의약품 ②한약재 ③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건강기능식품 ⑥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식품류 주류·담배류 ⑧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⑫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한미FTA 특송물품 통관특례 해당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다만 아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함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①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②「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④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⑤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⑥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⑦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⑧「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⑨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⑩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⑪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 **(일반수입신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통상 관세사 등을 통해 신고 위임(관세사 연락처 등 문의 :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

- **(대상)**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용 물품, 목록통관·간이수입 신고 배제대상물품이 대상이 됨

○ **(소액물품 등의 면세통관)** 수입신고한 물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세통관 가능

#### ①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

- 물품이 천공 도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인 물품

#### 문의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T. 042-481-7796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관세법 제25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개인통관 ⇨ 간이통관절차

## ② 우편물

###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

- 국제우편을 통하여 해외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 주는 물품, 인터넷 등을 통해 반입하는 우편물품(서신은 제외)에 대해 별도 통관절차 운영
-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통관우편국을 지정하여 집중통관 하거나 X-ray 투시기 등 검사를 통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 제한 물품 등으로 구분·처리
- 현장면세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 받으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 (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

### ■ 면세대상 우편물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관세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

※ 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으로 나누어 수입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 등에 해당 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 ■ 신고대상 우편물

#### ○ (일반수입신고)

- ①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②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③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④ 선물 등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 ⑤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물품
- ⑥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 ⑦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

■ **신고방법**

○ **(일반수입신고)** 일반적으로 관세사(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가 신고를 대행하며, 송품장·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등 관련 서류 필요

○ **(간이신고)** 간이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음

|                   |                                                                                                                             |                                                                                                              |
|-------------------|-----------------------------------------------------------------------------------------------------------------------------|--------------------------------------------------------------------------------------------------------------|
| 이메일<br>(E-Mail)   | 간이통관신청서 내용 중<br>①통관번호 ②우편물내용 ③우편물가격 ④수취사유 ⑤성명 및 연락처,<br>⑥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여 통관 안내서에 기재된 이메일(E-mail)로 송부 |                                                                                                              |
| 팩스<br>(Fax)       |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안내서에 기재된 팩스(Fax)로 전송                                                                                        |                                                                                                              |
| 인터넷<br>(Internet) | 모바일                                                                                                                         | 관세청 모바일웹( <a href="http://m.customs.go.kr">http://m.customs.go.kr</a> 또는 안내된 QR코드) 접속 → 우편물 통관 → 개인인증 → 신청   |
|                   | PC                                                                                                                          | UNI-PASS( <a href="http://unipass.customs.go.kr">http://unipass.customs.go.kr</a> ) 접속 →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통관 → 신청 |
| 우편<br>(Post)      |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송부<br>보내는 주소 : 통관안내서에 기재된 주소                                                                               |                                                                                                              |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관련 구매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미신청시 적용불가)**

\*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제10조제2항의 원산지 증명 면제 규정에 따라 구매처(국가) 및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FTA 협정세율은 관세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

■ **중속저해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동·식물 검역 불합격 물품, 성분 불명확 의약품(다이아트약), 안보위해물품(모의총포, 조준경, 도검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수입이 불허된 물품은 반입 제한.**

\* 「관세법시행령」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1개라도 통관 불허

■ **우편물 보관기간은 「국제우편규정」 제31조에 따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45일 연장 가능)이며 보관기간내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반송됨**

## 문의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T.042-481-7855
- 우편물 해당기관 연락처

|            |      |            |                                              |
|------------|------|------------|----------------------------------------------|
| 통관         | 항공우편 | 인천공항세관     | 032-720-7400                                 |
|            | 해상우편 |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 055-783-7420                                 |
| 동·식물 검역    |      |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032-740-2683~4<br>식물검역: 032-740-2088~9 |
| 도착, 보관, 배달 |      | 우정사업본부     | 1588-1300                                    |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3절 우편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개인통관 ⇒ 간이통관절차

## ① 관세감면 개요

- 관세 감면세제도는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수입자에 대하여 관세납부 의무를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
- 외교관례, 기술개발 주도산업·방위산업의 육성, 학술연구의 촉진, 가공무역의 증진, 기타 사회정책의 수행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승인시의 조건 유무에 따라 무조건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로 구분

## ② 법 조항별 관세감면 내용

###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

#### ○ 의의

- 외교관에 대한 국제관례상 면세특권을 관세법에 규정하여 외교관의 공용품과 공관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용품 등에 대하여 무조건 관세 면세
- 정부와 사업계약을 하는 업무용품 및 국제기구 등이 파견한 고문관 등의 사용물품은 외교관 면제에 준하여 관세 면제

#### ○ 면세대상

-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 ⑥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 ○ 양수제한

- 외교적 특권이 남용되어 면세물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양수를 제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음

\* 자동차(자동차상륜차, 자동차이륜차 포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업종

-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

##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89조)

### ○ 의의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분품, 부속 기기 포함)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하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부분품이나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수리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감면제도

### ○ 면세대상

- ①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②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 지정공장제도

- 원재료의 감면세를 받고 수입통관한 물품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도록 세관장이 3년 이내로 지정하여 그 공장에만 반입하여 제조 수리하도록 하는 제도

##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관세법 제90조)

### ○ 의의

- 교육,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의 촉진과 문화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 등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

### ○ 감면대상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③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 감면율

- 100분의 80. 다만, 공공의료기관(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제외)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

### ■ 종교·자선·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1조)

#### ○ 의의

-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한 관세감면으로 사회복지의 향상, 공익사업의 달성, 종교자선 등 사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통한 국가의 지원을 실현하는 감면제도

#### ○ 감면대상

- ①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518호 및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파이프오르간 외의 관세율표 제8519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 ②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
- ③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 ④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 ○ 의의

- 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기증 받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 감면대상

-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관세율 표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하며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②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품 제외
- ③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 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⑦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⑧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 특정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3조)

### ○ 의의

- 사회정책목적상 공익사업, 공공이익추구, 국민체육향상 등 특정용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 감면대상

- ①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③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④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
- 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 ⑥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의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 ⑦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⑧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 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 ⑩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 ⑪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 ⑫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⑬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⑭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①

수출입  
통관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⑮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⑯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 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 ⑱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4조)

### ○ 의의

- 상품목록, 견품 등 소액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입니다.

### ○ 감면대상

-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 ②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 ③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관세법 제95조)

### ○ 의의

-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폐기물처리 및 기계, 기구 등과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 감면대상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감면율

-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100분의 30

## ■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6조)

### ○ 의의

- 여행자의 입국사유, 체재기간 등을 고려한 여행자 휴대품과 거주이전 사유,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 감면대상

- ①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체재기간·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②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③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 재수출면세(관세법 제97조)

### ○ 의의

- 일시 수입된 물품을 원형 그대로 재수출하거나 가공·제조된 후에 재수출함으로써 교역의 증진, 귀속의 증대, 외화의 절약, 기술의 도입,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 창출을 위한 감면제도

### ○ 감면대상

-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않은 비디오테이프
-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 중 해당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국제적인 회의·화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건품
-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 일시 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카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 광매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가.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운반용구
  - 나.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 ②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
-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

## ○가산세 징수

-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100를 가산세로 징수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①  
수출입  
통관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 재수출감면세(관세법 제98조)

### ○ 의의

- 장기간의 내용연수를 가진 공사용 기계·기구나 수리·가공용 기계·기구를 외국으로부터 빌려와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다시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사용하여 사용 후 다시 돌려주는 경우 등에 국내에서 사용된 가치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재수출하는 잔여의 가치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

### ○ 감면대상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② 개당 또는 세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 ○ 감면율

| 재수출기간                 | 감면율            |
|-----------------------|----------------|
|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 관세액의 85% |
|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해당 물품 관세액의 70% |
|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내  | 해당 물품 관세액의 55% |
|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 3년 이내  | 해당 물품 관세액의 40% |
|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 4년 이내  | 해당 물품 관세액의 30% |

## ■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

### ○ 의의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어떤 사정에 따라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그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 감면대상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②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③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 ■ 손상감세(관세법 제100조)

### ○ 의의

- 수입신고한 물품이 신고의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감세하는 경우와 관세감면 받은 물품을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로 추정할 때 그 물품이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감세하는 감면제도

### ○ 관세경감액

- 다음 각 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함
- ①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 ②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관세법 제101조)

### ○ 의의

- 원재료 또는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도록 하여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감면제도

### ○ 감면대상

- ①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②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 관세경감액

- ①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 ②의 물품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 3 관세감면 신청시기

#### ■ 신청시기 (관세법 제88조)

-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면신청서 내용(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①)

-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 ▶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 ▶ 감면의 법적 근거
- ▶ 기타 참고사항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가능

#### 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

-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4 관세분할납부

#### ■ 대상물품 (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 ▶ 부분품이 아닐 것
-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 할 것
-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
- ▶ 법 제51조 내지 제72조(탄력관세)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 확대

- ▶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 ▶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근로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 가능

## ■ 분할납부기간

-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
-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4을 참조

## ■ 신청시기 (관세법시행령 제126조)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

### 문의처

- (관세감면)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T. 042-481-7816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①  
수출입  
통관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① 사후관리 개요

### ■ 사후관리 제도의 의의

- 용도세율 적용물품,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건대로 사용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관세지원 정책의 실효성 및 관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함

### ■ 사후관리 대상물품

- ▶ 용도세율 적용을 받은 물품
- ▶ 세율불균형물품 감면세
- ▶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 ▶ 종교용품 등 면세
- ▶ 특정물품 면세
-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 관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 경감을 받은 물품
- ▶ 외교관용 면세 물품 중 양수제한물품
- ▶ 재수출 면세물품
- ▶ 재수출 감면물품
- ▶ 관세감면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관세감면받는 물품
- ▶ 기타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 ■ 사후관리 기간

| 구분                                                                                                                                                                                                                                                                                                                                                                                                                                                                                                                                                                                                            | 사후관리 기간 |
|---------------------------------------------------------------------------------------------------------------------------------------------------------------------------------------------------------------------------------------------------------------------------------------------------------------------------------------------------------------------------------------------------------------------------------------------------------------------------------------------------------------------------------------------------------------------------------------------------------------|---------|
| <p>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울)</p> <p>가. 부분품 및 원재료 ..... 3월 다만,<br/>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br/>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p> <p>나. 기계·기구·시설용품<br/>(1) 내용연수 5년 이상 ..... 3년<br/>(2) 내용연수 4년 ..... 2년<br/>(3) 내용연수 3년 이하 ..... 1년</p> <p>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1년</p> <p>※ 사후관리 생략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미만인 것,<br/>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승인)물품, ③ 사후관리에 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p>                                                                                                                                                                                                 |         |
| 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물품중 양수제한물품) .....                                                                                                                                                                                                                                                                                                                                                                                                                                                                                                                                                                        | 3년      |
| <p>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 3월 다만,<br/>(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br/>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br/>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p> <p>※ 사후관리 생략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 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p> <p>※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p>                                                                                                                                                                                                                                                                                                                                   |         |
| <p>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p> <p>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3월 다만,<br/>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br/>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p> <p>※ (1)사후관리 생략 : ①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br/>(2)사후관리 생략 신청 가능 ① 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3,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 1년</p> <p>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br/>(1) 내용연수 4년 이상 ..... 2년<br/>(2) 내용연수 3년 이하 .....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p> <p>※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p> |         |
| <p>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산·장애이용품)</p> <p>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br/>(1) 내용연수 5년 이상 ..... 3년<br/>(2) 내용연수 4년 ..... 2년<br/>(3) 내용연수 3년 이하 .....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p> <p>※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p>                                                                                                                                                                                                                                                                                                                                                                                                               |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①  
수출입  
통관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구분                                                                                                                                                                                                                                                                                                                                 | 사후관리 기간           |
|------------------------------------------------------------------------------------------------------------------------------------------------------------------------------------------------------------------------------------------------------------------------------------------------------------------------------------|-------------------|
|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br>가. 제2호 해당물품 ..... 행사종료일<br>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br>(1) 내용연수 5년 이상 ..... 3년<br>(2) 내용연수 4년 ..... 2년<br>(3) 내용연수 3년 이하 .....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br>(4) 부분품 ..... 3월 다만,<br>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br>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수입신고수리일<br><br>다. 제18호 해당물품<br>※ 사후관리 생략: 법 제93조제1호, 제3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 |                   |
|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br>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 1년<br>나. 제3호 해당물품 ..... 6개월<br>※ 사후관리 면제대상: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                   |
|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 분할납부최종납부일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br>가. 제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 해당물품<br>(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 3월 다만,<br>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br>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br>(2) 상기 (1)이외의 물품 ..... 3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 3년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br>가. 제1호 해당물품 ..... 3년<br>나. 제2호 해당물품 ..... 3년<br>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 3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                                                                                                                                                                                                                                                                                                          | 3년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                                                                                                                                                                                                                                                                                                          | 3년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3년                |
| 1.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 .....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br>(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br>2. 관세법 제98조 재수출면세 물품 .....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 자유무역예정지역 반입사실 확인일 |
|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와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 3년                |

## ■ 사후관리 세관

-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할지세관)
- 단, 세울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은 제조·수리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하며, 재수출면세 물품 및 ATA까르네 물품의 사후관리는 통관지 세관의 수입통관 부서에서 한다.

## ② 사후관리 절차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①  
수출입  
통관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3 업체 의무사항

#### 1. 용도외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고시 제11조)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 중에 해당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설치(사용)장소 변경 신고 의무(고시 제12조제1항)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3. 일시반출·기간연장 신고 의무(고시 제12조제3항, 제4항)

사후관리물품을 사후 보증수리 또는 고장수리·성능검사 시험·연구 등을 위해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일시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일시반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시반출 기간 내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4. 멸실 사실 신고 의무(고시 제13조)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멸실 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폐기·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 의무(고시 제14조)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수출(일시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폐기·수출(일시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업체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의무(고시 제15조)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 중 ①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되는 경우 합병 등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②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인 ③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④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⑤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본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7. 설치(사용)장소에 1월내 반입 의무(고시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수도 물품은 그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수리일 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8. 통관표지 부착 의무(고시 제18조제4항)

아래 물품(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제외)은 통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 9.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고시 제19조)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하여 설치·사용 내역 및 일시반출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T.042-481-7896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①  
수출입  
통관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① 원산지 표시 개요

### ■ 원산지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 물품이 채취·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 제공국·상표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
- 그 외, 원산지로 표시될 수 있는 범주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홍콩, 마카오, 괌, 사모아제도 등과 같이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의 경우 독립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음(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참조)

### ■ 원산지표시 제도의 목적

- 원산지표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
- 반면, 공급자의 부당이익 취득을 방지하여 사회 건전성을 높이고 불법 우회 수출입을 방지하여 국가간 무역 상거래 질서를 확립
-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원산지표시 제도를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운영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

## ② 원산지 표시 제도

### ■ (대상물품)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8)

- 전체 수입품목수의 56% : HS 4단위 기준 총 1,219개 중 687개 품목  
(2025.7월 기준) (공산품 513개, 농수산물 174개)

### ■ (원산지표시방법)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예외

-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 가능

-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위 원산지 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과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 가능

·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 가능

①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②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③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 (원산지 표시 요령) 다음과 같이 수입물품에 표시

○ 최종 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 최종 구매자가 식별이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고리표 등의 방식으로 표시 가능)

○ 다른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및 표시방식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한 것으로 인정

■ **(원산지 표시의 면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음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
-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대행의 경우 포함)
- 판매 및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 포함)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수입대행도 포함)
-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경유 하는 물품
-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 대상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 (판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순가공 여부로 결정

### 1) 1개국에서 100% 생산된 경우

- 완전생산기준 적용 : 주로 천연생산물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예 :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 2) 2개국이상 걸쳐 생산된 경우

-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 :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세번변경기준(HS 6단위)의 원칙,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 또는 주요공정 기준 적용\*),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 : 카메라, 가축(소·돼지), 의류, 섬유 등

\*\* 단순가공에 대한 예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 운송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가공활동
- 판매목적 포장 등
- 제조, 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가공과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열,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도축, 펴기, 압착’

## ■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

- (원산지 판정) 수입물품의 판정기준과 동일하나 수입국에서 정한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수출물품은 원산지표시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원산지 표시방법 : 수입물품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방법이 다를 경우 그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으며,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 1) 원산지 판정기준

- **(판정제외)** 대외무역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임
    -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 **(판정기준)**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 ※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봄
- **(천일염)**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봄

### 2) 원산지 표시방법

- **(판정충족)**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판정미충족)** 대외무역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
  -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 국명(○%)”)

##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대상 물품 : HS 제01류~제24류(제14류 제외) 및 제2501호(소금)

- (예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또는 부적정표시(표시방법 위반) 적발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1차부터 과태료 부과

- 수출입 농수산물 또는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로 인정

## ③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 단속

### ■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관세청,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음
- 관세청은 수입물품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한 유통단계 단속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원산지관련 부처별 소관업무

| 관련법령                | 업무                                                                                                                                                                                                                                                                                                                                                                                                         | 소관부처             | 단속기관                                       |
|---------------------|------------------------------------------------------------------------------------------------------------------------------------------------------------------------------------------------------------------------------------------------------------------------------------------------------------------------------------------------------------------------------------------------------------|------------------|--------------------------------------------|
| 대외무역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물품 원산지제도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 지정</li> <li>-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li> <li>- 수출입 및 국내생산물 원산지 판정기준</li> <li>-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li> </ul> </li> </ul>                                                                                                                                                 | 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br>관세청(세관)                             |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별 구체적 원산지표시 방법 지정</li> <li>- 대외무역법령상 일반적 표시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 표시방법을 지정</li> </ul>                                                                                                                                                                                                                                                                                     | 관세청              | 관세청(세관)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 원산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 지정</li> <li>· 원산지표시 방법 및 판정</li> </ul> </li> <li>· 국내 음식점 표시대상: 쇠고기, 쌀, 배추김치, 참돔, 갈치, 고등어 등 총 20개 품목</li> </ul> </li> <li>-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li> </ul> | 농림축산식품부<br>해양수산부 | 관세청(세관)<br>지자체<b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br>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④ 원산지 위반에 따른 제재

### ■ (통관단계) 통관제한 및 시정명령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 제한.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정정 하도록 한 후 통관 허용

### ■ (유통단계) 보세구역 반입 명령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 관세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 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령,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도록 하는 사전적 피해 예방 제도

### ■ (통관·유통단계) 과징금 부과

- (일반·공산품)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

| 단계       | 위반유형   | 위반횟수                                              |      |                     |
|----------|--------|---------------------------------------------------|------|---------------------|
|          |        | 1차                                                | 2차   | 3차                  |
| 통관<br>단계 | 허위표시   | 시정명령                                              | 과징금* | 시정명령 과징금<br>(50%가중) |
|          | 손상변경   |                                                   |      |                     |
|          | 오인표시   |                                                   |      | 시정명령 과징금<br>(30%가중) |
|          | 표시방법위반 |                                                   |      |                     |
|          | 미표시    |                                                   |      |                     |
| 유통<br>단계 | 허위표시   | 미판매분 : 시정명령<br>판매분 : 과징금<br>(30%경감, 중소기업은 50% 경감) | 과징금  | 시정명령 과징금<br>(50%가중) |
|          | 손상변경   |                                                   |      |                     |
|          | 오인표시   | 시정명령                                              |      | 시정명령 과징금<br>(30%가중) |
|          | 표시방법위반 |                                                   |      |                     |
|          | 미표시    |                                                   |      |                     |

\* 2차 이상 적발시 과징금부과와 함께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시정조치

##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 부과\*

- (부과기준) 2년간 2회 이상 위반(거짓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한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2년간 위반횟수 합산)

\* 미표시, 부적정표시의 경우 1차부터 과징금 부과(1천만원 이하)

- (통관단계)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 (통관이후) 위반금액(판매금액 합계)의 0.5배에서 4배 과징금(최고 3억원)

| 위반금액                  | 과징금의 금액            |
|-----------------------|--------------------|
| 1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5         |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7         |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0         |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5         |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0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5         |
|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3.0         |
| 6,000만원 초과            |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

## ■ (통관·유통단계) 고발·송치 의뢰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 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 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유통단계) 과태료 부과

- 원산지 표시단속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문의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T. 042-481-7885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관세법 제230조(원산지하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 참고자료

#### ● 제도, 규정 등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성실신고 이행확인 ⇒ 원산지표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http://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qs.go.kr](http://www.nfqqs.go.kr)) ⇒ 원산지표시
-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참조

## 1 개요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의 세관 권리보호 신고 및 수출입 통관보류 제도 운영

○ 보호대상: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 2 법령 근거

■ WTO/TRIPS에서 회원국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침해상품의 수출입시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5조에 동 협약 내용을 수용하여, 보호대상 지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운용

## 3 통관단계 지재권 보호 업무처리 절차

### ■ 세관권리보호 신고

○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상표권 등 권리내역을 세관에 신고

○ 세관 신고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위탁('10.4.)

### ■ 침해여부 확인

○ 수출입 심사과정에서 침해의심물품 발견 시 수출입자와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사실 통보

- 지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 IntellectualPropertyInformationManagementSystem)을 이용하여 권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진위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 가능

○ 사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재산권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담보 120%제공), 수입자는 비침해 소명자료 제출

## ■ 통관보류 등 조치

- 지재산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조사의뢰 등 조치
- 수입자가 위조상품임을 인정하는 등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 여부 확인 생략하고 조사의뢰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담보(과세가격의 120/100, 중소기업은 40/100)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관보류 조치
- 통관보류 후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하는 경우 통관보류 연장
-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과세가격의 120/100, 중소기업은 40/100)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

### 문의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T.042-481-7836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35조, 동법 시행령 제237조~제243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지식재산권 보호

##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 ② FTA 활용 안내

1.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2. 원산지 결정기준
3. 원산지 인증수출자
4. 원산지 증명서 발급
5. 원산지 검증

### ■ 원산지 사전심사의의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25.1.1.)에 따라, 사전심사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정에 대해서도 사전심사 요청이 가능해짐

### ■ 신청 및 심사절차

- (신청인) 한국의 수입자, 협정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그 대리인
- (신청대상 및 심사기관)

| 사전심사대상                                     | 심사기관        |
|--------------------------------------------|-------------|
|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
| 해당 물품 및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관세평가분류원     |
|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세원심사과   |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 그 밖의 사항                                    | 각 담당 부서     |

- (신청시기)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 (처리기간)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 ■ 신청시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신청시 제출서류) 사전심사신청서 및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 (예) 원재료내역서·제조공정도·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 등
- (수수료) 물품당 3만원

### 문의처

- 사전심사 대상별 심사기관

###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법) 제31조
- FTA관세법 시행령 제37조~제40조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33조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 2

FTA활용  
안내

####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①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요

### ■ 원산지란

- FTA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

\* 예시) 동식물은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은 제도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

- 여러 국가의 재료를 조달하거나 생산 공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 ■ 원산지결정기준이란?

-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거쳐야하는 생산, 가공, 제조 등의 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 구분    | 종류    |                                                               |
|-------|-------|---------------------------------------------------------------|
| 일반기준  | 기본원칙  |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 원칙                        |
|       | 분야별특례 | ■ 누적기준 ■ 최소기준 ■ 포장·용기 ■ 대체가능물품<br>■ 세트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 품목별기준 | 공통기준  | 일반 주, 부·류·호의 주                                                |
|       | 개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

## ②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

-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완전생산 되거나 획득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과 분야별 특례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



###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 세번변경기준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그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세번변경기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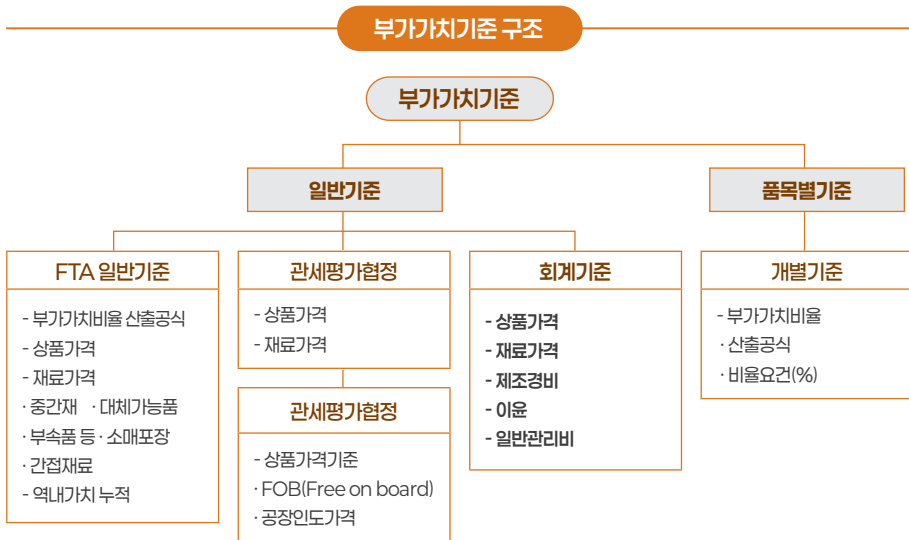
-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주로 2단위 변경기준(CC), 4단위 변경기준(CTH), 6단위 변경기준(CTSH) 세가지 종류가 있음

- CC(Change Chapter) : 2단위 변경기준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4단위 변경기준
-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 6단위 변경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난이도 : (弱)CTSH → CTH → CC(强)

## ■ 부가가치 기준

- 역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협정에서는 부가가치비율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
  - (일반기준) 부가가치비율 계산공식, 상품 및 재료 가격 계상기준 등 규정
  - (개별기준) 품목별로 요구되는 부가가치비율 규정
    - 일반적으로 재료비에 포함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 제조경비·이윤 및 일반경비 등의 계상기준은 관세평가협정,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및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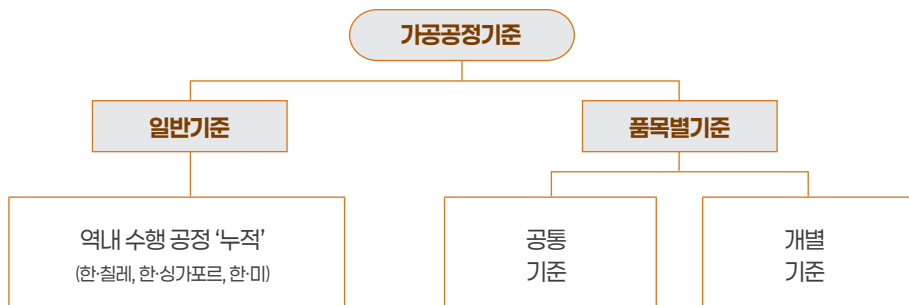
## ○ 부가가치 계산방식

- RC법(Regional Contents) :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 \* RC법 :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으로 구분
- MC법(iMport Contents) :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

## ■ 가공공정 기준

- 각 품목별로 주요 생산공정을 지정하고, 그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  
\* 어류, 식물성생산물, 섬유제품, 석유제품, 화학,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에 주로 채택

### 가공공정기준 구조



## 4 주요 분야별 특례

### ■ 누적기준

- FTA 체결국 중 한쪽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체결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체결상대국이 그 물품이나 재료를 원산지 물품이나 재료로 인정하는 것
- 누적이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이 있으며, 협정별로 상이
  - (재료누적)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
  - (공정누적)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

### 각 협정별 '누적기준' 주요 내용

| 구분       | 칠레    | 싱가<br>포르 | 인도    | 아세안         | EFTA       | 페루    | EU         | 미국    | 터키         | 호주    | 중국    | 캐나다   | 뉴질<br>랜드 | 베트남   | 콜롬<br>비아 |
|----------|-------|----------|-------|-------------|------------|-------|------------|-------|------------|-------|-------|-------|----------|-------|----------|
| 재료<br>누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br>누적 | ○     | ○        | X     | △*          | X          | ○     | X          | ○     | X          | ○     | X     | ○     | ○        | X     | ○        |
| 근거<br>규정 | 제4.5조 | 제4.9조    | 제3.7조 | 부속서3<br>제7조 | 부속서<br>제3조 | 제3.6조 | 의정서<br>제3조 | 제6.5조 | 의정서<br>제3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6조    | 제3.6조 | 제3.6조    |

\* 한-아세안 FTA의 경우 품목별원산지 기준에서 체결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품목(굴,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은 공정누적 허용

## ■ 최소허용기준\*

\* 미소기준, 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이라고도 함

-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이면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각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주요 내용

|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 EFTA            | 페루            | EU                         | 미국                          | 호주                   | 중국                         | 터키                       | 캐나다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
|---------|--------------------|---------------|--------------------------|-------|-----------------|---------------|----------------------------|-----------------------------|----------------------|----------------------------|--------------------------|-----------------------|---------------------------|----------------------------------|------------------|----------------------|
|         | 일반 품목              | 8%            | 10%                      |       | 10%             | 10%           |                            | 10%                         | 10%                  | 10%                        |                          | 10%                   | 10%                       |                                  | 10%              |                      |
| 가 격 기 준 | 농수산물 <sup>1)</sup> | CTSH 총족시 적용가능 | CTSH 총족시 적용가능 (1~14류 제외) | 10%   | 적용가능 (1~14류 제외) | CTSH 총족시 적용가능 | 적용가능 (1~14류 제외)            | 10%                         | CTSH 총족시 적용가능 (일부제외) | CTSH 총족하면 적용가능 (15~24류 제외) | CTSH 총족시 적용가능 (1~14류 제외) | 10%                   | CTSH 총족시 적용가능 (22~24류 제외) | 적용가능 (단순한 혼합 이상인 경우만, 15~24류 제외) | 10%              | CTSH 총족시 적용가능 (일부제외) |
|         | 기준 가격              | 조정가격          | 관세가격                     | FOB   | FOB             | 공장도 가격        | FOB                        | 공장도 가격                      | 조정가치                 | 조정가치                       | FOB                      | 공장도 가격                | 공장도 가격                    | FOB                              | FOB              | 조정가치                 |
| 중 량 기 준 | 섬유 <sup>2)</sup>   | 8%            | 8%                       | 10%   | 7%              | 10%           | 10%                        | 8~30% (중량 및 일부 가격 기준)       | 7%                   | 10%                        | 10% (중량 및 가격 기준)         | 8~30% (중량 및 일부 가격 기준) | 10%                       | 10% (중량 및 가격 기준)                 | 10% (중량 및 가격 기준) | 10%                  |
| 근거 규정   | 제4.6조              | 제4.10조        | 부속서 3 제10조               | 제3.8조 | 부속서 제5조 제2~3항   | 제3.7조         | 제5조 2항 부속서1의 주석5.1 부속서2 목록 | 제6.6조 부속서 6 나 제4.2조 제7항(섬유) | 제3.6조                | 제3.8조                      | 제5조                      | 제3.8조                 | 제3.7조                     | 제3.9조                            | 제3.7조            |                      |

1) 농수산물 : HS Code 제01류~제24류

2) 섬유 : HS Code 제50류~제63류

## ■ 대체가능 상품·재료

- 원칙적으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역내산 원재료와 역외산 원재료는 물리적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나,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역내산 원재료와 역외산 원재료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업의 재고관리기법(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재료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단,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함

## 각 협정별 '대체가능 상품·재료' 주요 내용

|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 EFTA        | 페루    | EU          | 미국    | 호주    | 중국    | 터키          | 캐나다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
| 적용 범위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재료     | 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상품    |
| 근거 규정 | 제4.7조 | 제4.11조 | 부속서3<br>제14조 | 제3.12조 | 부속서<br>제11조 | 제3.8조 | 의정서<br>제11조 | 제6.7조 | 제3.7조 | 제3.9조 | 의정서<br>제11조 | 제3.9조 | 제3.8조 | 제3.13조 | 제3.8조 |

## ■ 상품의 세트

- 세트물품이란 서로 상이한 세번에 해당되는 2가지 이상 물품의 조합에 대하여 기능, 용도 등에 따라 구성물품 전체를 하나의 세번으로 분류한 물품을 의미
- 일부 협정에서만 세트물품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세트물품을 인정하는 협정에서는 세트 물품 여부 판단은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를 따르도록 규정

## 각 협정별 '상품의 세트' 주요 내용

| 구 분           | 미 국          |              | EFTA,<br>EU, 터키                        | 캐나다            | 페루             | 중국             | 콜롬비아         | 칠레, 아세안,<br>싱가포르,<br>인도, 호주,<br>뉴질랜드,<br>베트남 |
|---------------|--------------|--------------|----------------------------------------|----------------|----------------|----------------|--------------|----------------------------------------------|
|               | 일반품목         | 섬유류          |                                        |                |                |                |              |                                              |
|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 ○                                      | ○              | ○              | ○              | ○            | X                                            |
|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 조정가치의 15% 이하 | 조정가치의 10% 이하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FOB 가격의 15% 이하 | FOB 가격의 15% 이하 | 조정가치의 15% 이하 |                                              |
| 근거 규정         | 제6.9조        | 제4.2조<br>제8항 | 부속서제9조<br>(EFTA)<br>의정서제9조<br>(EU, 터키) | 제3.10조         | 제3.9조          | 제3.11조         | 제3.10조       |                                              |

## ■ 소매용·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용기

-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물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해당 제품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으나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를 고려\*\*

\* 통합품목분류표상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에 한함

\*\*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한 재료비를 산정하여 반영

-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않음

#### 각 협정별 '포장재료·용기' 주요 내용

| 구분   |             | 미국                   |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 EFTA        | 페루               | EU         | 칠레               | 호주              | 중국     | 타키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캐나다              |
|------|-------------|----------------------|------------------|--------------|------------------|-------------|------------------|------------|------------------|-----------------|--------|------------|------------------|--------|------------------|------------------|
| 소매용  | 세번변경 기준 적용시 | 무시 (세번변경요건 충족 여부 불문)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 원산지별 구분계상            |                  |              |                  |             |                  |            |                  |                 |        |            |                  |        |                  | 무시               |
| 수송용  |             | 무시                   |                  |              |                  |             |                  |            |                  |                 |        |            |                  |        |                  |                  |
| 근거규정 |             | 제6.10조<br>제6.11조     | 제4.13조<br>제4.14조 | 부속서3<br>제11조 | 제3.10조<br>제3.11조 | 부속세<br>제7조2 | 제3.11조<br>제3.12조 | 의정서<br>제7조 | 제4.10조<br>제4.11조 | 제3.9조<br>제3.10조 | 제3.12조 | 의정서<br>제7조 | 제3.10조<br>제3.11조 | 제3.10조 | 제3.11조<br>제3.12조 | 제3.12조<br>제3.13조 |

\* EU, EFTA, 타키 협정에서는 포장재료·용기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별도 상세규정이 없는 바,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협정을 준용

#### 문의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T. 042-481-3234, 3221

####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한·미 FTA 등 22개 발효('25.7월기준) FTA

#### 참고자료

##### ● 제도, 규정 안내

-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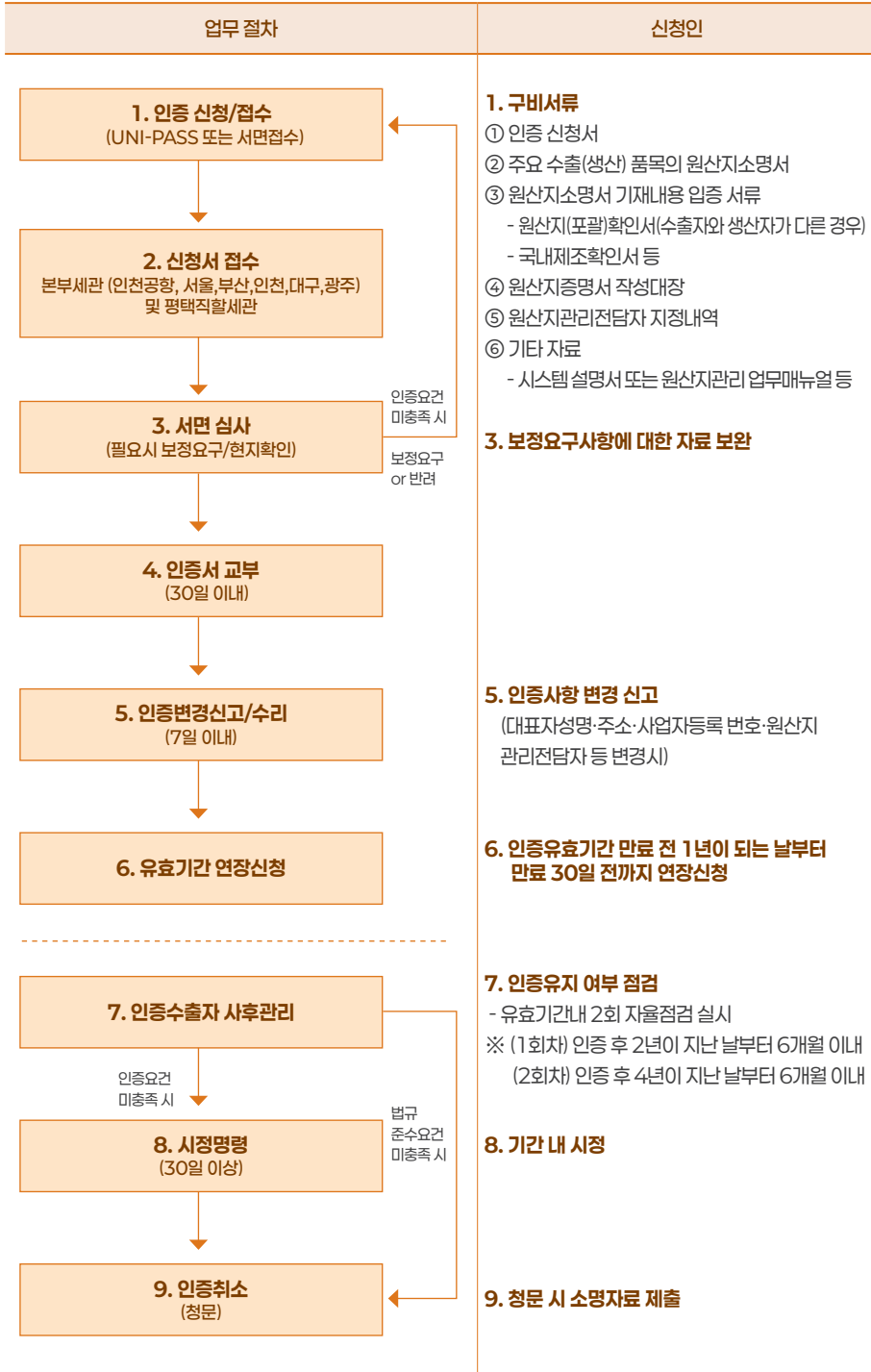
##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요

- (개념)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및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
- (도입배경)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FTA 체결 증가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 등 협정상 인증수출자 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FTA특례법에 따라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전/후 비교

| 협정                             | 인증 前                                                                                                                                    | 인증 後                                                                         |
|--------------------------------|-----------------------------------------------------------------------------------------------------------------------------------------|------------------------------------------------------------------------------|
| EU·영국                          | ①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 불가능                                                                                                      | ①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 EFTA                           | ①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서명 필요<br>*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①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서명 생략<br>* 전자문서 이용가능                                            |
| 아세안<br>싱가포르<br>인도<br>베트남<br>중국 |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br>② 첨부서류 제출<br>- 수출신고필증 사본<br>-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br>- 원산지소명서<br>- 원산지확인서(생산자·수출자 상이)<br>-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br>③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① 좌동<br>② 첨부서류 제출 생략<br><br>③ 현지확인 생략 가능                                     |
| RCEP<br>캄보디아<br>필리핀            |                                                                                                                                         | ①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br>②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 이스라엘                           | ① 미화 1천 달러 이하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 ① 미화 1천 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br>②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 ②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



### 3 원산지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방법

#### ■ 업체별 원산지인증심사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 매뉴얼 보유 여부
  - ①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 여부(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여부
-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② 최근 2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③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 ■ 품목별 원산지인증심사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 여부(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 여부

#### 문의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T. 042-481-3234, 3221

####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법') 제12조, FTA관세법 시행령 제7조,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안내
  - 관세청 FTA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활용제도 ⇨ 인증수출자 제도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2

FTA활용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① 원산지증명서 개요

### ■ 개념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수출상대국(수입국) 관세당국은 FTA 협정에서 정한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특혜세율 적용

### ■ 발급방식

- **(기관발급)**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한-싱가포르 FTA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만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 발급\*

\* 협정별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EU·영국 : 6천유로, 이스라엘 : 미화 1천달러, RCEP·캄보디아·필리핀 : 전체 금액)

- **(자율발급)**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 발급

\* 한-미 FTA에서만 가능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자율발급                                                                                                                          |
|--------------------------------------------------------|-------------------------------------------|-------------------------------------------------------------------------------------------------------------------------------|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 EU,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미시행), 필리핀 | 칠레, EFTA, 페루, 미국, 튀르키예,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호주, 중미, RCEP(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에 한해 시행('25.1.1.)), 이스라엘(미화 1천달러 이하), 인도네시아(미시행), 필리핀(미시행) |

## 2 발급방법

### ■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 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 신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한-싱가포르 FTA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

| 구분   | 첨부서류                                                                                                     |
|------|----------------------------------------------------------------------------------------------------------|
| 신규발급 |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br>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br>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br>4. 원산지소명서 |
| 재발급  | 없음                                                                                                       |
| 정정발급 | 1.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발급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br>2. 정정사유 입증서류                         |

### ■ 자율발급

-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협정상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발급하고 원산지증명서 대장 관리

\* 수출자는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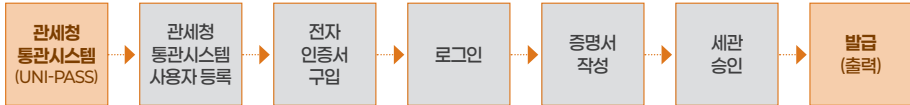
- 서명권자 변경·추가: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 및 지정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3 발급절차

#### ■ 기관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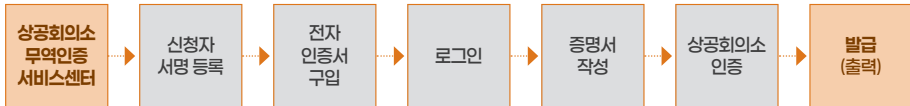
##### 세관 발급

##### ■ 온라인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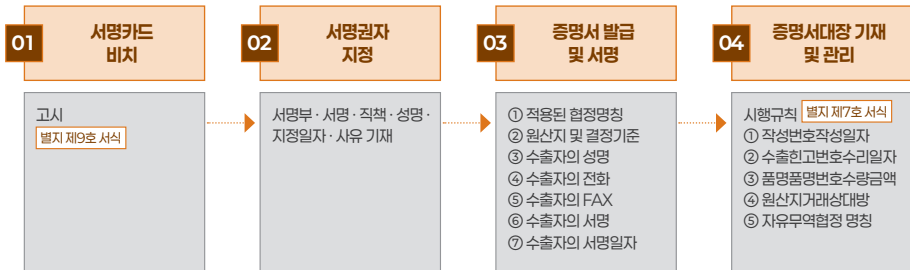
##### ■ 온라인



##### ■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 ■ 자율발급



## ① 원산지검증의 개요

### ■ 원산지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이나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나 지역을 의미

- FTA관세법 제2조에서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로 정의

### ■ 원산지검증이란?

○ 원산지검증이란 FTA 체약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상대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활동

- 원산지 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요건(거래 당사자·세율·운송 경로·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 원산지에 관한 검증(FTA관세법 제17조)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상대국 거주자 포함), 원산지증빙 서류 발급기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자 포함),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 원산지검증의 유형

○ 원산지검증 대상 물품의 지위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으로 구분

○ 검증을 수행하는 장소에 따라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서면검증과 검증 대상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지검증으로 분류

○ 조사대상자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검증과 국제검증으로 구별하며,

- 국내검증의 조사대상자는 수입업체, 수출업체, 생산업체, 원재료 생산·공급업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과 검증대상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대행과 관련된 업체
- 국제검증 대상자는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업체, 해외 원재료 공급업체

## ○ 원산지검증 수행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형태와 간접검증 형태로 운영

- 직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이 상대국 수출자·생산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검증 형태로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캐나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협정이 이에 해당
- 간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을 받아 수출국 세관 또는 증명서 발급당국에서 수출자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검증형태로서 한-EFTA, 한-EU, 한-터키 협정 등이 이에 해당
- 이 밖에 1차적으로는 수출국 세관 또는 증명서 발급당국에서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결과가 불충치 않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에서 수출자를 방문하여 검증하는 혼합 검증 형태가 있으며,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협정 등이 이에 해당
- 원산지검증의 형태는 각 협정별로 운용 방법을 각기 정하고 있으며, 점차 여러 검증 형태를 혼합하거나 순차적으로 검증절차를 나열하는 추세

## ② 원산지검증의 법적 근거

- (FTA협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협정에는 원산지검증의 목적, 절차 및 검증결과에 따른 사후조치(특혜배제 조항)를 규정하고 있음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 협정     | 검증 방식           | 검증 주체                        | 간접검증 회신기간   | 협정 규정  |
|--------|-----------------|------------------------------|-------------|--------|
| 한-칠레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                       | -           | 제5.8조  |
| 한-싱가포르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                       | -           | 제5.7조  |
| 한-EFTA | 간접검증            | 수출국 세관<br>(수입국은 참관가능)        | 15개월        | 제24조   |
| 한-아세안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br>(직접) 수입국 세관 | 2개월(최대 6개월) | 제14조   |
| 한-인도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br>(직접) 수입국 세관 | 3개월(최대 6개월) | 제4.11조 |
| 한-EU   | 간접검증            | 수출국 세관                       | 10개월        | 제27조   |
| 한-미    |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 | 수입국 세관                       | 12개월(섬유·의류) | 제6.18조 |
| 한-페루   | 직접검증+간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150일        | 제4.8조  |
| 한-터키   | 간접검증            | 수출국 세관                       | 10개월        | 제25조   |

| 협정      | 검증 방식           | 검증 주체                        | 간접검증 회신기간   | 협정 규정  |
|---------|-----------------|------------------------------|-------------|--------|
| 한-호주    | 직접검증(기관증명은 간접)  | 수입국 세관                       | -           | 제3.23조 |
| 한-캐나다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                       | -           | 제4.6조  |
| 한-중국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br>(직접) 수입국 세관 | 6개월         | 제3.23조 |
| 한-베트남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br>(직접) 수입국 세관 | 6개월         | 제3.21조 |
| 한-뉴질랜드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                       | 90일         | 제3.24조 |
| 한-콜롬비아  | 직접검증 + 간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150일        | 제3.25조 |
| 한-중미    | 직접검증 + 간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150일        | 제3.24조 |
| 한-영국    | 간접검증            | 수출국 세관                       | 10개월        | 제27조   |
| RCEP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           | 제3.24조 |
| 한-이스라엘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10개월        | 제3.29조 |
| 한-캄보디아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90일         | 제3.22조 |
| 한-인도네시아 |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2개월(최대 4개월) | 제3.23조 |
| 한-필리핀   | 직접검증+간접검증       | (직접) 수입국 세관<br>(간접) 수출국 세관   | 3개월         | 규칙15   |

○ **(국내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제17조에서 원산지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기타 FTA관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규정을 준용

\* 관세조사(제114조~제116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제233조) 등

### 3 원산지검증의 절차

#### ■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

##### ○ 국내검증

- 국내 수입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 제출된 자료로 서면검증 실시(원칙) 서면검증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를 방문하여 현지검증 실시
- 현지검증시 업체에 사전 통지하며, 예외적으로 범칙사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지검증을 실시

##### ○ 국제 직접 검증

- 직접검증의 경우 계약상대국 소재 수출자·생산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서면검증을 실시하거나 해외 수출자·생산자를 방문하여 현지검증을 실시(협정마다 국제직접검증 방법이 상이함으로 유의)
- 계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검증에 대해 기한(30일 이내) 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현지검증 동의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혜적용 배제 조치

##### ○ 국제 간접 검증

- 간접검증의 경우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발급기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상대국으로부터 결과가 회신되면 그 내용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사후조치를 실시
- 협정에서는 조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회신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상대국으로부터 결과가 회신되지 않으면 수입자가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미납된 세금을 추징
- 간접조사의 결과 회신기한은 한-EFTA FTA의 경우 15개월, 한-EU FTA 및 한-튀르키예, 한-영국, 한-이스라엘 FTA의 경우 10개월, 한-아세안 FTA의 경우 2개월(양국 합의시 6개월), 한-인도 CEPA의 경우 3개월(양국 합의시 6개월),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의 경우 150일, 한-미 FTA(섬유·의류)의 경우 12개월, 한-호주 FTA의 경우 30일, 한-중국, 한-베트남 FTA의 경우 6개월, RCEP 및 한-캄보디아, 한-필리핀 FTA의 경우 90일, 한-인도네시아 FTA의 경우 2개월로 규정

##### ○ 사후조치

- 검증결과 원산지에 관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을 유지하며,
-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징수

##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② 계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가 서면조사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③ 현지조사를 할 때 계약상대국 생산자, 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증빙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계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⑤ 계약상대국이 기간 내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⑥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⑦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⑧ 조사대상자의 부도, 폐업,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⑨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출자 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

## ○ 협정관세 적용 보류

- 원산지검증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검증이 종결될 때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음
- 보류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보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께 해야 함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2

FTA 활용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협정관세 적용보류 사유(FTA관세법시행령 제17조)

- ① 원산지증빙 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

###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 또는 관세청장·세관장의 인지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거나 관세청장·세관장이 원산지 위반을 인지한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

### ○ 서면조사

-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검증을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나, 서면 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현지조사에는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을 하여야 함
- 한-미 FTA 제4장에 따른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양국 세관이 공동으로 현장 방문시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없음(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 조사결과 체약상대국 회신

- 원산지검증을 완료하면 체약상대국에 그 결과를 회신기한 내에 통보

## 간접조사 결과 회신기한

한-EFTA FTA(15개월), 한-EU FTA·한-튀르키예·한-영국·한-이스라엘 FTA(10개월), 한-아세안 FTA(2개월), 한-인도 CEPA(3개월), 한-페루·한-콜롬비아·한-중미 FTA(150일), 한-미 FTA(섬유·의류)(12개월), 한-중국·한-베트남(6개월), 한-호주 FTA(30일), RCEP·한-캄보디아·한-필리핀 FTA(90일), 한-인도네시아(2개월)

\* 한-아세안 및 한-인도의 경우 양국 협의시 6개월 범위내로 기간연장 가능

## 4 원산지검증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 ■ 벌칙(FTA관세법 제44조)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b>제1항</b><br>(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8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br>* 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b>제2항</b><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br>2. 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울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br>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br>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br>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br>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br>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br>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
| <b>제3항</b><br>(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 <b>제4항</b>                                                                   |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 ■ 양벌규정(FTA관세법 제45조)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2

FTA활동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 과태료(FTA 관세법 제46조)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b>제1항</b><br>(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br>2.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b>제2항</b><br>(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 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br>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br>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br>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

## ○ 과태료 부과기준(FTA관세법 제46조제3항, FTA관세법 시행령 제54조)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200    | 500   | 800   | 1,000    |
| 나.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 | 200    | 500   | 800   | 1,000    |
| 다.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500      |
| 라.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500      |
| 마.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3호 | 100    | 200   | 300   | 500      |
| 바. 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4호 | 100    | 200   | 300   | 500      |

### 문의처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T.042-481-3213, 3224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2

FTA 활용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4조~21조, 동법 시행령 9조~19조, 동법 시행규칙 19조~26조
- 한-칠레 FTA 5.8조, 한-싱가포르 FTA 5.7조, 한-EFTA FTA 24조, 한-아세안 FTA 14조~15조, 한-인도 CEPA 4.11조~4.13조, 한-EU FTA 제27조, 한-페루 FTA 4.8조, 한-미 FTA 4.3조, 6.18조, 한-터키 FTA 제25조, 한-호주 FTA 제3.23조, 한-캐나다 FTA 제4.6조, 한-중 FTA 제3.23조, 한-베트남 FTA 제3.21조, 한-뉴질랜드 FTA 제3.24조, 한-콜롬비아 FTA 3.25조, 한-중미 FTA 제3.24조, 한-영국 FTA 제27조, RCEP 제3.24조, 한-이스라엘 FTA 제3.29조, 한-캄보디아 FTA 제3.22조, 한-인도네시아 FTA 제3.23조, 한-필리핀 FTA 규칙15

### 참고자료

####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제도·규정)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portallIndex.html>) ⇒ 원산지검증
- (서식)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portallIndex.html>)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원산지검증

##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 ③ 관세 부과·징수와 환급

1. 납세신고
2.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3. 관세의 납부기한
4. 가격신고 제도
5. 관세평가
6.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7. 품목분류
8.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9. 관세환급
10. 환급소요량 사전심사

## ①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

### ■ 신고납부

#### ○의의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써 “자진 신고납부제”라고도 함

#### ○신고납부대상

- 관세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

#### ○납세신고인

-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 가능

#### ○납세신고 시점

- 수입신고하는 때 가격신고와 납세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짐.

#### ○납세신고사항

- ①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 ②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 ③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 ④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 ○납세신고의 사후심사

- 세관장은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할 수 있음

-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 ④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함

## ○ 세액납부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에도 당해 세액 납부 가능

## ○ 세액의 오류 수정

- 당초 신고한 혹은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 경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는 과소납부시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 과다납부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 부과고지

### ○ 의의

- 세관장이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행 관세법에서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고지방식을 적용

### ○ 부과고지의 대상

- ① 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③ 보세구역(보세구역의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⑥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 납세고지

- 부과고지시에는 납세고지(서면)하여야 하며 여행자 휴대품 등은 구두고지 가능

### ○ 부족세액의 징수와 납부

-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음을 안때 그 부족액을 징수하며 납세고지시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 042-481-7863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3

관세 부과·  
징수와  
환급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② 관세의 종류와 적용 우선순위

### ■ 현행 관세율의 종류

#### ○ 국정관세율

- 기본관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
- 탄력관세율 : 관세법 제51조 부터 제75조까지(제73조는 제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율, 즉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의 세율.
- 환급에 갈음하여 인하한 관세율 : 수출 등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제조 또는 가공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수출 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으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 협정세율

- 외국과의 조약 또는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로서 양국간의 협정에 의한 경우와 다자간의 협정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타국에 양허하고 있는 현행 관세율은 대부분 다자간 협정에 의한 것으로 WTO협정 양허세율 등이 있음

### ■ 관세율의 적용 순위

| 순위 | 적용 관세율                                                                                  | 비고                              |
|----|-----------------------------------------------------------------------------------------|---------------------------------|
| 1  | 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
| 2  | 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                                                                    | 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 3  | 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                                              | 단, 할당관세는 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 4  | 일반특혜(제76조)                                                                              |                                 |
| 5  | 잠정(제50조)                                                                                |                                 |
| 6  | 기본(제50조)                                                                                |                                 |

## ■ 특정관세율의 적용

### ○ 간이세율

-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

#### (1)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

- 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 ②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 ③ 탁송품 또는 별송품

#### (2) 간이세율적용 제외물품

- ① 영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 ※ 영 제96조제2항
    -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2) 수출용원재료
    -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나. 고가품
      - 다.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라.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해당 물품
- ② 부과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③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④ 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 (3) 간이세율의 일반적인 산출방식

간이세율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의 합산세율

### ○ 합의에 의한 세율

-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①전 품목이 일괄 수입신고 되어야 하고, ②물품별 세율이 달라야 하며, ③화주의 신청이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같은 불복신청 불가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3

관세 부과·  
징수와  
환급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용도세율

-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 용도세율의 예                    |                   |                |
|----------------------------|-------------------|----------------|
| HS 8443.32-50<br>잉크젯방식 인쇄기 | - 5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 양허 0%(용도세율)    |
|                            | - 5090 기타의 것      | 기본 8%(용도세율 아님) |

###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T.042-481-7738

## ① 세액보정

### ■ 의의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 가능

### ■ 보정의 통지

- 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 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 가능

### ■ 보정이자의 징수

- 보정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 면제

### ■ 납부기한

-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 ② 수정신고

### ■ 의의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 신고(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 가능

### ■ 신고서의 제출 및 납부기한

-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

## ■ 가산세

- 세관장은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 ①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② 해당 부족세액 x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x 1일 10만분의 22
- 그러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②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 3 경정

### ■ 의의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음

### ■ 경정사유

-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 ■ 경정절차

- 경정통지서의 교부
  -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
- 납세고지
  -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납세고지

### ■ 가산세

- 세관장은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며, 가산세는 수정 신고하는 때의 가산세와 같음.

## 4 경정청구

### ■ 의의

- 경정청구제도는 신고납부제 하에서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존재로 인하여 과다납부시 행정쟁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

### ■ 경정청구 사유 및 기한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 경정청구 절차

-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

### ■ 경정청구의 효력

- 경정청구 자체가 납세의무를 감액변동시키는 확정력은 없으며 단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여

#### ※ 세액변경 주체 및 방법

| 구분       | 제1단계                                                                             |              | 제2단계                     |      | 제3단계                         |         |
|----------|----------------------------------------------------------------------------------|--------------|--------------------------|------|------------------------------|---------|
| 명칭       | 정정                                                                               | 정정안내<br>직권정정 | 보정신청                     | 보정통지 | 수정신고                         | 경정      |
| 주체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 조치<br>시기 | 납세신고(수입신고) 시점부터<br>신고납부 전까지                                                      |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br>이내(보정기간) |      | 보정기간 경과 다음날부터 제척<br>기간 도래시까지 |         |
| 변경<br>사유 | 과다/과소 신고                                                                         |              | 과소 납세                    |      | 과소 납세                        | 과다/과소납세 |
| 비고       | - 정정안내에 불응시 세관장 직권경정가능<br>-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때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                          |      |                              |         |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 042-481-7863

### ■ 원칙적인 납세제도와 납부기한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는 매 수입행위마다 각각 발생하며, 납세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매 수입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납세신고(수입신고하는 때 함께 합니다)한 관세 및 내국세는 납세신고가 수리(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 같이 됩니다)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
  -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하여야할 제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가 수리됨
  - 만일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게 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세법 또는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 또는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관세법 또는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시행령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납세신고를 정정하는 때의 납부기한

- 세액을 납부한 후 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납세신고 사항을 고치는 정정은 납세자에 의한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에 의한
  -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한 세액의 부족함을 알고 납세준비가 완료된 후에 신청(신고)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신청(신고)일의 다음 날까지임
  -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을 발견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한 경우는 부과고지로서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 ■ 월별납부제도와 납부기한

-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그 달의 1일이거나 30일이거나를 막론하고, 또 납세신고가 몇 건 인지를 막론하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한 건으로 일괄 납부하는 것이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의 납기 연장 효과 발생
-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관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다만, 체납액 300만원 미만 제외), ③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거나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서 세관장에게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며, 승인 유효기간은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가능(자동갱신 의사를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결격 조회 후 자동갱신 처리)
-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월별납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의 승인을 취소 가능

## ■ 징수유예제도와 납부기한

- 관세의 징수유예제도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관세법 제1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징수유예를 통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인한 일시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관세법 제10조의 징수유예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관장은 징수유예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

### ■ 분할납부제도와 납부기한

- 분할납부제도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업경영의 위기가 있거나 국내산업 진흥 및 사회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부할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수 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승인하는 것
- 관세 분할납부는 천재지변 등 관세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와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 세관장은 변경된 납부기한별로 각각 납부고지서를 발행
  -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서 정하는 물품은 시설재·건설재·학교용품·공익사업용품·의료기관용품·사회복지용품·연구소용품·중소제조업체 사용물품·국내제작 곤란 교육훈련용품 등이 해당되며, 물품별 구체적인 분할납부 요건은 관세법을 참고
- 분할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음
  - 관세법 제1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3회, 9개월 4회, 12개월 6회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
  -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에 따라 1년 6개월에서 최장 4년 6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승인기간 동안 매 6개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되, 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 분할납부 승인받은 물품을 용도외 사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 또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
  - 다만, 지정된 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잔여금액에 대하여 담보제공시 분할납부 유지

### ■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제도와 납부기한

-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 환급 기관이 세무서장이고 환급액의 계산 등도 관세 등과 차이가 있으므로 일괄 납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일괄납부제도를 적용할 경우 납세자는 앞서 설명한 월별납부제도와 유사하게 경제적 부담완화와 금융비용 절감효과

- 그 효과는 수입물품에 부과될 세액이 월별납부의 경우보다 대체로 장기간 징수 유예되는 대신 수출 후 환급받을 세액도 환급이 유예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름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는 누구나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 가능

- 담보제공 생략자는 일괄납부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제공없이 일괄납부 이용 가능

-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신청은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서 징수형태란에 사후정산 일괄 납부코드(33)를 기재

○ 일괄납부제도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세관장이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지급내역,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세액이나 지급해야 할 환급액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안내하며, 이때 세관장은 납부 하여야 할 관세 등에 대하여 같은 달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함께 고지

■ 관세 납부기한

|    | 납부제도     |         | 주요목적             | 납부기한                               | 법적근거                      |
|----|----------|---------|------------------|------------------------------------|---------------------------|
| 원칙 | 일반적인 납세  |         | -                |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관세법 제9조제1항                |
|    |          |         |                  |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    |          |         |                  | 즉시반출제도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
| 예외 | 납세 정정 제도 | 보정 신청   | 부족세액 납부          |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관세법 제38조의2 제4항            |
|    |          | 수정 신고   | 부족세액 납부          |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
|    | 월별납부제도   |         | 납세편의, 금융 비용 절감   | 일반적인 납세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              | 관세법 제9조 제3항               |
|    | 징수유예제도   |         | 재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 관세법 제10조, 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 |
|    | 분할 납부 제도 | 천재·지변 등 |                  |                                    | 관세법 제107조 제1항             |
|    |          | 특정 물품 등 | 산업시설건설, 중소기업지원 등 | 분할납부승인일부터 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 관세법 제107조 제2항             |
|    | 일괄납부제도   |         | 수출지원             | 일괄납부기간(6월 범위내)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관세환급특례법 제6조               |
|    | 납기전 징수제도 |         | 조세채권 확보          | 세관장이 정하는 날                         | 국세징수법 제9조                 |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와 T. 042-481-7644

### ■ 가격신고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가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송품장
  -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 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 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 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 분야(8개 분야)           |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
|---------------------|------------------------------------------------------|
| ①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
|                     |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② 생산지원              |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
|                     |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
| ③ 수수료·중개료           |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
|                     |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
|                     |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분야(8개 분야)  |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
|------------|--------------------------------------------------------------|
| ⑤ 용가·포장비용  |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
|            |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⑥ 사후귀속이익   |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 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
|            |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⑦ 간접지급금액   |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
|            |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
|            |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
|            |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⑧ 특수관계자 거래 |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
|            |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 ■ 가격신고 생략

○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 생략 가능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함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
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3

관세 부과·  
징수와  
환급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 가격신고 필수 신고대상

-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과세가격 가산요소)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 과세자료 제출 생략
  - ①AEO(수입부문), ②ACVA 결정물품, ③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미만 기업은 가격 신고는 하되,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생략 가능
  - ※ (납부세액 확인) 관세청 UNI-PASS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 환급 납세실적 ⇨ 제세납부실적 조회(전년도 1년)
- 최초 수입 건만 과세자료 제출
  -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시, 최초 연 1회만 제출
  - ※ 품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면 '같은조건'으로 간주
-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
  - 8개 분야 수입 거래 형태별, 해당 과세자료 제출
  - ※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는 경우, 가격신고 시 '미제출 사유서' 필수 제출
-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
  - 최초 수입 시 과세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통관 후 30일 이내 제출
  - ※ 사후 제출 시, 가격신고 할 때 '지연 제출 사유서' 필수 제출
- 미제출 시 조치사항
  - ①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②담보제공 생략 중지, ③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 ■ 잠정가격 신고와 확정가격 신고

○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 가능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

- 법정가산요소가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업체일 것

\*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 ▶ ACAV 또는 APA 승인서
-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토크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 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03

관세 부과·  
징수와  
환급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함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신고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음
  -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한 신고기간 연장 가능. 이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지정한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세관장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직접 잠정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

## 1 관세평가 개요

### ■ 의의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제30조 제1항)라고 하여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라는 원칙과 함께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비용을 가산하는 것으로 정의

$$\text{과세가격} = \text{거래가격} = \text{실제지급가격} + \text{가산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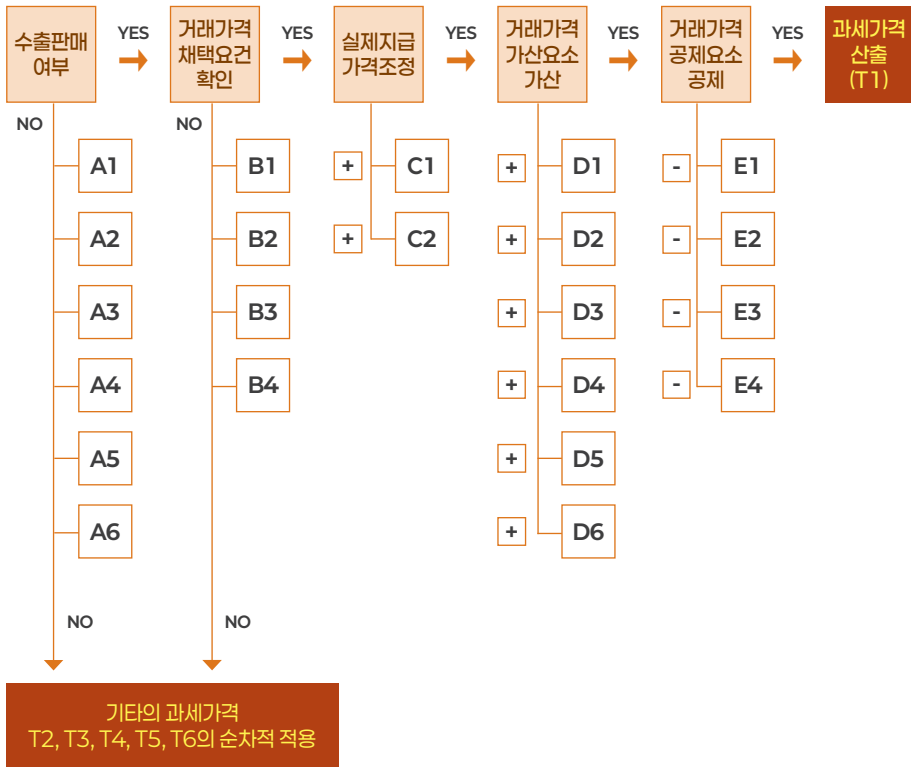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비용

- ①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②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③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 ④ 권리사용료(Royalty)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는 제외한다)
- ⑤ 사후귀속이익                                      ⑥ 운임 및 보험료

### ■ 결정방법과 적용순위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보충적인 5가지 다른 방법을 적용. 실무상 이들 6가지 방법 중 원칙을 “제1방법”, 보충적인 5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제2방법”, ... “제6방법”으로 지칭
  - 제1방법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며 대부분의 수입 물품이 이 방법에 의하여 평가됨. 따라서 제1방법은 그 비중으로 볼 때 단순히 6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 관세평가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제2방법과 제3방법은 각각 동종동질인 물품의 거래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 제4방법은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 후의 판매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법
  - 제5방법은 당해 물품의 생산원가 등 제비용을 합산하는 방법
  - 제6방법은 앞의 5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이들 6가지 방법은 각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선순위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방법을 적용해야 함
  -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순서는 바꿀 수 있음

## 과세가격 결정방법 체계도



- T**
- T1 :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 T2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 T3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 T4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 T5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 T6 : 합리적인 과세가격

- C**
- C1 : 별도로 지급한 금액 (채무변제액, 상계액)
  - C2 : 간접지급금액

- A**
- A1 : 무상 수입물품이 아님
  - A2 : 판매위탁 수입물품이 아님
  - A3 : 수출자 책임판매물품이 아님
  - A4 :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님
  - A5 : 유·무상 임대차물품이 아님
  - A6 : 송화주 부담 파기물품이 아님

- D**
- D1 : 수수료 및 중개료
  - D2 : 용기 및 포장비용
  - D3 : 생산지원비용
  - D4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 D5 : 사후귀속이익
  - D6 : 운임 및 보험료

- B**
- B1 : 수입물품의 사용·처분의 제한 없음
  - B2 : 특별한 조건·사정으로 가격에 영향 없음
  - B3 :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없음
  - B4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E**
- E1 : 수입후 설치 등 비용
  - E2 : 수입 이후의 운송비용
  - E3 : 수입국 제세공과금
  - E4 : 연불이자

## 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 ■ 의의

-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평가협정 및 우리나라 관세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만이 아닌 모든 수입거래에 대한 가격평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 과세가격의 1차적인 기초는 거래가격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 관세평가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거래 가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 특수관계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즉, 일방이 타방에 대해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일방은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함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독점대리인 등의 경우에도 ‘특수관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자로 간주할 수 있음

\* WTO 관세평가협정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 ■ 특수관계 영향여부 판단기준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방법(제1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거래상황 검토 방법과 동종, 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근접 등 비교가격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인정될 경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거래가격을 관세가격으로 수락 가능성을 검토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련이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이러한 조사는 가격의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만 요구되며, 세관당국이 가격의 인정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수입업자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함이 없이 당해 가격 인정
    - \* (예) 세관당국이 당해 관계를 미리 조사해 두었거나,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조사 또는 정보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이미 납득하고 있을 수 있음
  -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당해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당국은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

### (1) 비교가격 기준

- 적용가능한 비교가격은 세관장이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판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산정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있습니다.
- 수입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이하로 근접(closely approximates)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비교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특성, 거래내용, 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는 수입물품의 본질, 산업자체의 특징, 수입되는 물품의 계절적 특징 및 가격에 있어 그 차이가 상업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포함
- 또한 당해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의 비교시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용기 및 포장 비용, 수수료,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등 각종 가산요소 등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
-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않음

## (2) 거래상황 판단기준

- 거래상황 판단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아래와 같은 거래상황을 검토. 검토 결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
  -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
  -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
  -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사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함
  -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함.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042-481-7767, 7987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30조~제35조, 관세법시행령 제17조~제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7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WTO관세평가협정

#### 참고자료

- **관세평가 사례**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 평가분류원 정보 ⇨ 관세평가 ⇨ 관세평가 사례

## ■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 자체 체크리스트

| 구분               | 검토내용                                                                                                                        | 해당<br>유무                 |
|------------------|-----------------------------------------------------------------------------------------------------------------------------|--------------------------|
| 거래<br>상<br>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음을 입증</li> </ul>                                           |                          |
|                  | -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비<br>교<br>가<br>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거래가격                                                                                              | 신고<br>과세가격①              |
|                  |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비교가격②                    |
|                  |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차액③<br>(②-①)             |
|                  | -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                                                                                                              | 비율(%)<br>(③/②)           |
|                  | -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
|                  | 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                          |
|                  | -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                                                                                                              |                          |
|                  | -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
|                  | 다. 수출자가 제시하는 산정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                          |
|                  | -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                                                                                                              |                          |
|                  | -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3

관세 부과·  
징수와  
환급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독립당사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 (일반 사전심사; APR; Advance Pricing Rule)와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특수관계 사전심사; 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로 구분

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비교

| 구분      | 일반 사전심사(APR)                                                                                                                                                                        |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
|---------|-------------------------------------------------------------------------------------------------------------------------------------------------------------------------------------|-------------------------------------------------------------------------------------------------------------------------------------------------------------------------|
| 심사대상    | 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
| 심사기간    | 30일                                                                                                                                                                                 | 1년                                                                                                                                                                      |
| 시행시기    | '90. 12. 31                                                                                                                                                                         | '08. 1. 1                                                                                                                                                               |
| 신청자격    |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사·관계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세자                                                                                                                                   |
| 심사절차    | 일방 결정                                                                                                                                                                               | 납세자 협의 ⇨ 동의 ⇨ 결정                                                                                                                                                        |
| 심사담당    |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분류원(본부세관)                                                                                                                                                           |
| 주요 심사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공제요소 확인</li> <li>-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귀속이익 등)</li> <li>- 수출판매해당 여부</li> <li>- 제2~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li> <li>-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제6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li> <li>-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li> <li>-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li> </ul> |
| 잠정신고    | 적용대상 아님                                                                                                                                                                             | 신청시점에 잠정가격신고하고, 결정내용으로 확정가격신고                                                                                                                                           |
| 가산세     |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결정 기간 가산세 면제(잠정가격신고 시)</li> <li>- 결정 이전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산세 10% 면제</li> </ul>                                |
| 적용기간    | 3년(확인물품에 한함)                                                                                                                                                                        | 3년(결정내역과 동일 거래물품)+2년(연장가능)<br>*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말일까지                                                                                                     |
| 사후관리    | 해당없음                                                                                                                                                                                | 연례보고서 제출                                                                                                                                                                |
| 법적근거    | 관세법 제37조 제①항 제1,2호                                                                                                                                                                  | 관세법 제37조 제①항 제3호                                                                                                                                                        |

## ① 일반 과세가격 사전심사(APR)

### ■ APR 의의

-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가격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신청하는 것
- APR는 해외의 수출판매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독립당사자간 거래인 경우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1회성 수입물품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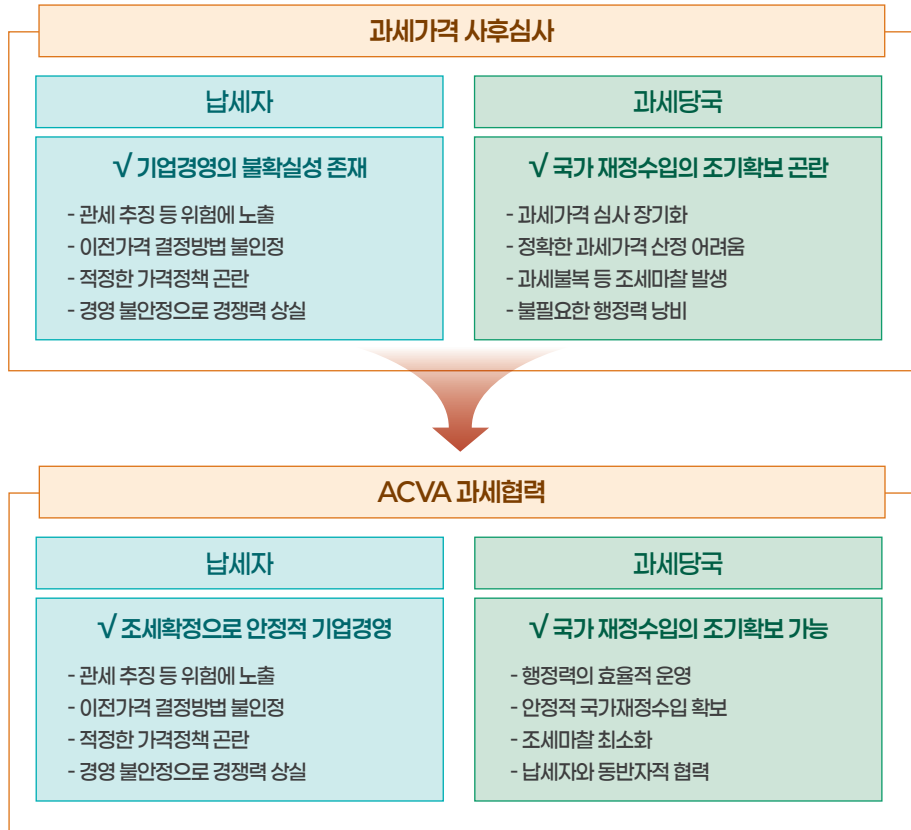
### ■ 심사절차 및 효력

- APR는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실제지급가격의 적정성, 과세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야 금액의 유무, 해당 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의 제한 유무, 거래 또는 가격의 성립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통관후 처분 이익이 수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심사
- 관세청장으로부터 APR 확인받은 내역과 향후 3년 이내 수입하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내용, 거래관계, 적용법령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확인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 ②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 ■ ACVA 의의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심사를 받는 내용은 APR과 같으나 ACVA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외 수출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본·지사 또는 그 관계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한정
- 그리고, ACVA는 특수관계자간에 해당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 사전심사받은 내용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통관 후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안정적인 가격정책과 기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음. 또한 수입가격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 받음으로써 소비자 또는 거래처 등에게도 기업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 ACVA 혜택

### ○ 사전심사기간 잠정가격신고

- ACVA 신청물품은 신청시점부터 결정시점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내역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아 추가로 관세 등을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음

### ○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기간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나, ACVA 결정 이전(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납부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 관세조사 유예

-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ACVA 사전심사기간 동안 세관의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 ACVA 결정 물품(유효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전자통관심사 허용

- ACVA 결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

### ○ AEO 공인의 지름길

- ACVA 업체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어 국내외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ACVA 운영·심사 및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T.042-714-7508, 7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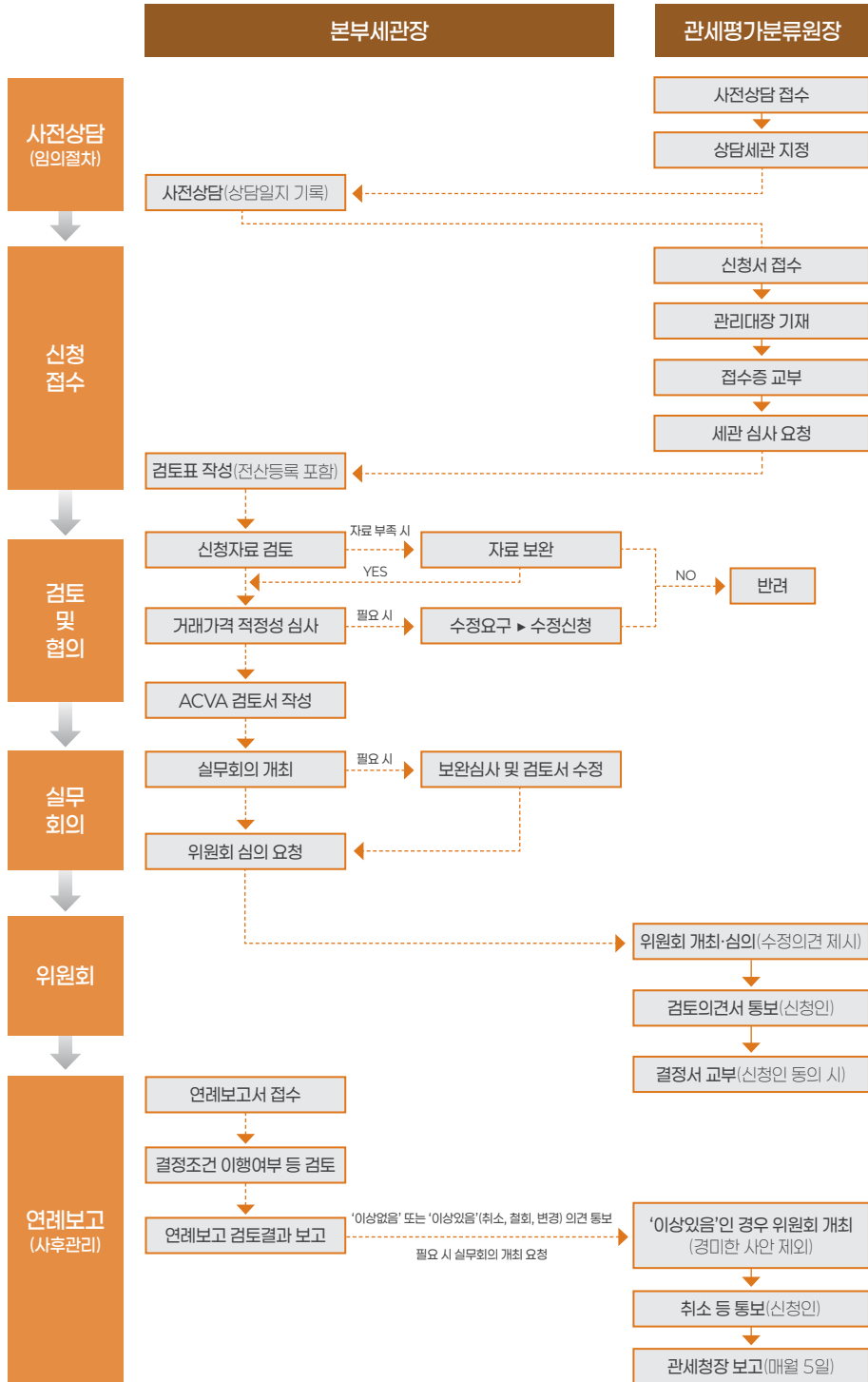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37조 제1항, 관세법시행령 제31조,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 제59조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품목분류/관세평가 ⇒ ACVA 및 관세평가자료실

## ■ ACVA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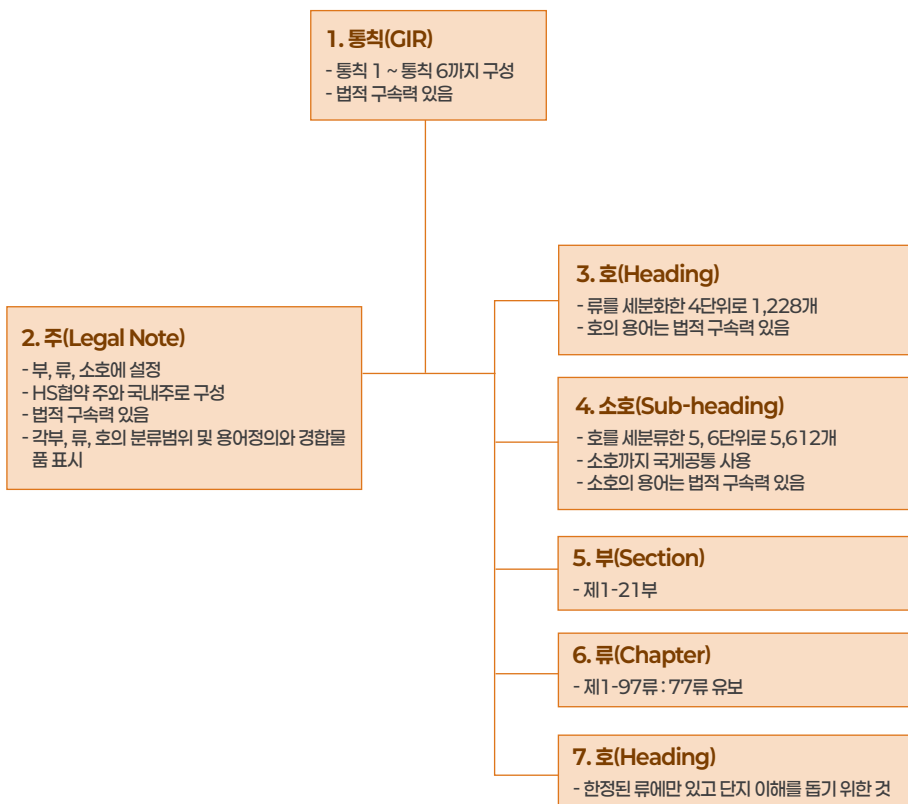
### ■ 품목분류 정의

-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
  - WTO에 가입된 회원국은 HS 체약국이 되며,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 관세와 품목분류 관계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 결정

### ■ 품목분류표 기본구조



## ■ 품목분류 신고 및 심사

### ○ 품목분류 신고 및 심사방법(관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 (기본원칙) 수출입 신고인은 자기 책임하에 품목분류 신고\* 의무를 가짐

\* 신고인의 품목분류 부담을 덜기위해 품목분류사전심사 지원제도 운영

- (심사원칙) 품목분류는 (선) 신고수리 (후) 심사 원칙

## ■ 품목분류 결정절차

품목분류사전심사  
(수출입신고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WCO  
(HS위원회)

※ 물품 특성상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운 경우 품목분류위원회, WCO 질의 등 상정

###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T. 042-481-7641~3 / 관세평가분류원 T. 042-714-7528

### 관련 규정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법 제86조,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

### 참고자료

- HS코드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이며, 관세법에서 별표 관세율표에 HS 코드를 반영·시행
-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HSK(HS of KOREA)는 한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이며 HS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한 10단위 분류체계를 갖춘 (중국·EU·8단위, 일본·9단위, 미국·10단위)

## 1 개요

### ■ 품목분류사전심사의의

-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수출입 하려는 자가 수출입 하려는 물품이 HS\* 품목분류표 상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는 제도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WCO 협약국)에서도 시행 중임

\* HS(Harmonized System, HS 협약에 의한 국제 공통 품목분류표)

### ■ 신청대상자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대상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 신청시기

- 원칙적으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은 관세법 제86조 ③항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 ■ 사전심사 효력

-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된 품목분류 번호는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관세법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품목분류번호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을 적용

- 다만, 이 경우 변경고시일 30일 전에 우리나라로 수출·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님(대법원 판례, 2005두6225, 2006.4.28)

### ■ 사전심사 분석수수료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구성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신청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 처리기한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다만,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 ▶ 신속심사 신청대상

-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 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재보정 1회) 가능.(이 경우, 보정요구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② 사전심사신청 준비와 심사절차

### ■ 신청인 준비사항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1부
- 물품설명서 1부(용도설명서, 성분함량표 및 제조공정도 포함)
- 견본 1점(분말제품 및 액상제품-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분말 500g 이상, 액상 500ml 이상)  
※ 견본제출이 어려운 거대중량(예: 기계류 등) 물품은 사유서와 대체사진 3매 제출
- 필요시, 비공개 요청서 1부(요청서와 증빙자료 포함), 신속심사요청서 1부

해당 품목별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증빙서류

| 품목 구분                 | 물품설명서(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                                                                                                                                | 증빙서류                                                                                                               |
|-----------------------|----------------------------------------------------------------------------------------------------------------------------------------------------|--------------------------------------------------------------------------------------------------------------------|
| 과채소가공품                | -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br>- 구체적인 용도 설명<br>-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br>-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
| 조제식료품                 |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br>- 구체적인 용도설명<br>-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br>-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
|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br>-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br>- 구체적인 용도설명<br>- 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br>-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br>-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
| 어류 가공품                | - 품명 및 학명 정보<br>- 구체적인 용도 설명<br>-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br>-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
| 사료용 조제품               |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br>- 구체적인 용도 설명<br>-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br>-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br>- 사료첨가제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증[부표포함]<br>-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
| 석유제품                  |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br>- 구체적인 용도 설명<br>-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br>-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br>-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
| 라스틱제품<br>고무제품<br>금속제품 | - 구성요소별 성분 및 함량<br>- 구체적인 용도 설명서 및 각각의 기능<br>- 제조 공정도                                                                                              | - 구성성분표<br>- 수입전·후의 제조공정도<br>- 용도 설명서<br>-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
| 기계류                   | -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상, 하, 좌, 우<br>- 구성요소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br>-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br>- 신청물품의 작동원리<br>-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 - 물품의 사양서<br>- 제조사의 카탈로그<br>- 사용자 매뉴얼<br>- 분해도 또는 조립도(신청물품 표시)<br>-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3

관세 부과·  
징수와  
환급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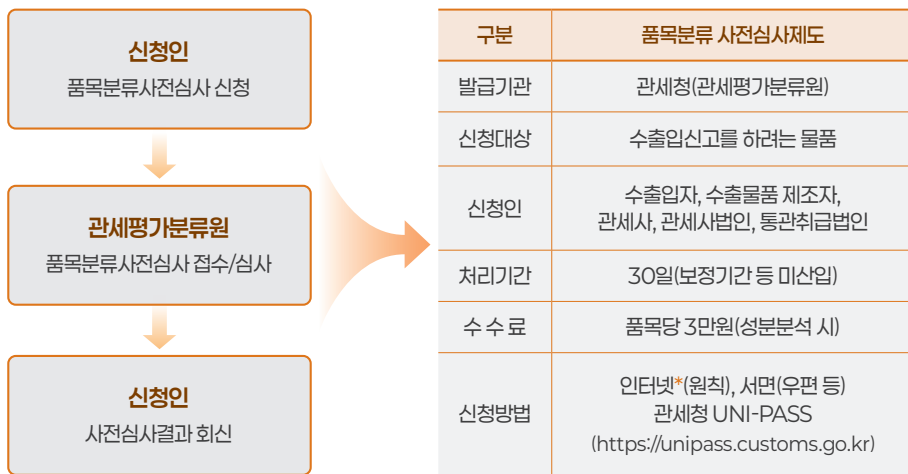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품목 구분                   | 물품설명서(서식 을지) 필수 기재사항                                                                                                                                                                                                                                                                                                                                   | 증빙서류                                                                                                                                 |
|-------------------------|--------------------------------------------------------------------------------------------------------------------------------------------------------------------------------------------------------------------------------------------------------------------------------------------------------------------------------------------------------|--------------------------------------------------------------------------------------------------------------------------------------|
| 전기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상, 하, 좌, 우</li> <li>-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li> <li>-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li> <li>-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li> <li>- 구조도</li> <li>-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li> <li>- 작동원리</li> <li>- 주변기기와 신호를 주고받는 물품의 경우 주변 기기와 연계하여 설명</li> <li>- 신호 송·수신기기의 경우 입력~출력까지 신호 흐름(변환 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사양서</li> <li>- 제조사의 카탈로그</li> <li>- 사용자 매뉴얼</li> <li>-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li> </ul> |
| 의료기기<br>검사·측정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상, 하, 좌, 우</li> <li>-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설명</li> <li>-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li> <li>-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li> <li>- 구조도</li> <li>-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부분품 장착 위치 표시(이미지)</li> <li>-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li> <li>- 주변기기와의 신호를 주고받는 물품의 경우 주변 기기와 연계하여 설명</li> <li>- 검사 및 측정 결과값 자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사양서</li> <li>- 제조사의 카탈로그</li> <li>- 사용자 매뉴얼</li> <li>-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li> </ul> |
| 수송기기<br>(차량, 선박, 항공기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상, 하, 좌, 우</li> <li>-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설명</li> <li>-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li> <li>-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li> <li>- 구조도</li> <li>-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부분품 장착 위치 표시(이미지)</li> <li>- 작동원리</li> <li>- 주변기기와의 신호를 주고받는 물품의 경우 주변 기기와 연계하여 설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사양서</li> <li>- 제조사의 카탈로그</li> <li>-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li> </ul>                    |
| 예술품<br>수집품<br>골동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물품의 구성재료</li> <li>- 신청물품의 규격</li> <li>- 신청물품의 제작 수량</li> <li>- 신청물품의 가격 자료</li> <li>- 신청물품의 전시회 관련 자료(입증 자료)</li> <li>- 신청물품의 판매자료(작품 소개자료, 브로셔 등)</li> <li>- 신청물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li> <li>- 작가 싸인 등 객관적 입증자료, 보증서, 작품 인증서 등</li> <li>- 작가 소개 자료(한글본)</li> <li>-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자의 카탈로그</li> <li>- 작품 보증서, 인증서</li> <li>-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li> </ul>                |

## ■ 신청방법

-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우편, 직접방문 접수
  - 관세평가분류원(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214, Tel. 042-714-7535, Fax. 042-936-3528)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처리 절차



###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와 T. 042-481-7738 / 관세평가분류원 T. 042-714-7535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86조 ~ 제87조,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 제107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3조,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참고자료

-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방법**
  - 관세청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 **관련내용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 품목분류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가이드 ⇒ 품목분류 확인방법

## ① 관세환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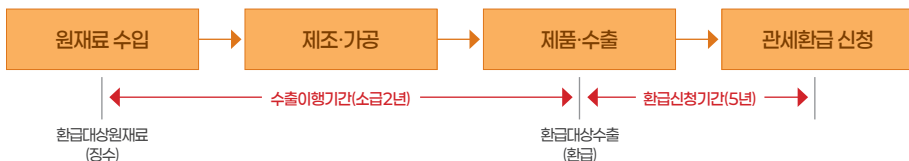
- 관세환급 : 납세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되돌려 받는 것



- 관세환급에는 과오납환급(관세법 제46조)과 계약상이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 등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환급과,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관세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란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지칭

## ② 관세환급 요건

### ■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절차 및 요건



- ①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 제3조)
- ② 수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하여(법 제9조)
- ③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해야 환급 가능(법 제14조)

### ■ 수출용원재료 요건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법 제3조제1항제1호)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법 제3조제1항제2호)

## ■ 환급대상 수출 요건

- 일반 유상수출(법 제4조제1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법 제4조제1호 단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공사(법 제4조제2호)
-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법 제4조제3호)
-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법 제4조제4호)
- 타 법령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대북반출물품 등)

## ■ 수출이행기간 요건

-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신고 수리한 날 또는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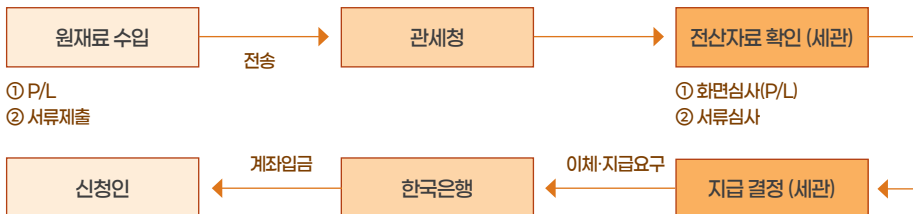
## ■ 환급신청인 요건

- 수출신고 수리된 유상수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의 경우 : 수출자 또는 제조자(단, 간이징액환급의 경우는 제조자)
- 국내 외화판매·외화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 판매자 또는 공사자
-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와 외국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과 원양 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의 경우 : 공급자 또는 제조자

## ■ 환급신청기간 요건

-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환급신청기간의 기산점)로부터 5년 이내일 것(법 제14조제1항)
-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점
  -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은 수출신고수리일
  -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출은 해당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중 단위공사가 완료된 날

## ○ 환급절차도



### ③ 관세환급 방법

- **개별환급** :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
- **간이정액환급**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 **관세환급 방법별 적용대상, 적용품목 및 제출서류**

|                |       |                                                                                                                                                                                                                  |
|----------------|-------|------------------------------------------------------------------------------------------------------------------------------------------------------------------------------------------------------------------|
| 개별<br>환급       | 적용 대상 | · 모든 수출기업                                                                                                                                                                                                        |
|                | 대상 품목 | · 모든 수출품목                                                                                                                                                                                                        |
|                | 제출 서류 | · 수출사실 확인 서류<br>· 납부세액 증명 서류<br>· 소요량계산서<br>· 조건표, 자재명세서                                                                                                                                                         |
| 간이<br>정액<br>환급 | 적용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br>·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 실적 제외)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이고,<br>·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 실적 제외)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일 것 |
|                | 대상 품목 |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수출 품목                                                                                                                                                                                            |
|                | 제출 서류 | · 수출사실 확인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

### ④ 관세환급신청 시 제출하는 납부세액 증명서류

#### ■ 수입신고필증

####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해당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원재료의 납부세액 및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평균세액증명서

- 해당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K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
-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산출에 있어서 규격확인 때문에 구비서류와 환급절차가 복잡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 ⑤ 소요량제도

■ **소요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

### ■ 자율소요량

-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
- 현재 환급에 사용되는 소요량은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율소요량 제도를 운영

###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T.042-481-7877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3

관세 부과·  
징수와  
환급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①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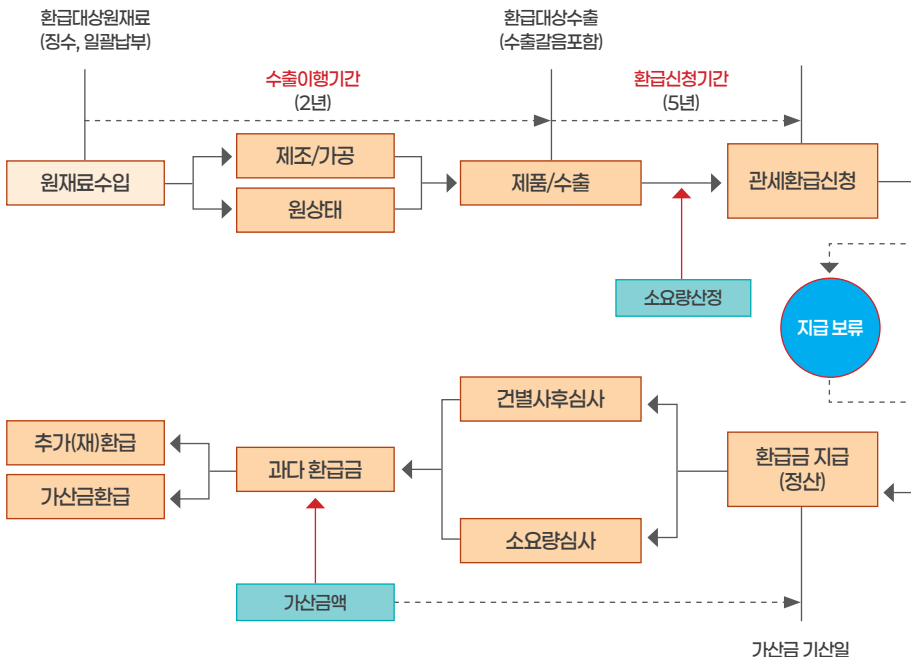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하여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현행 자율소요량 제도 및 신청에 의한 환급체계 하에서는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해당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하고, 세관은 업체의 환급신청내역에 대해 기본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사후에 그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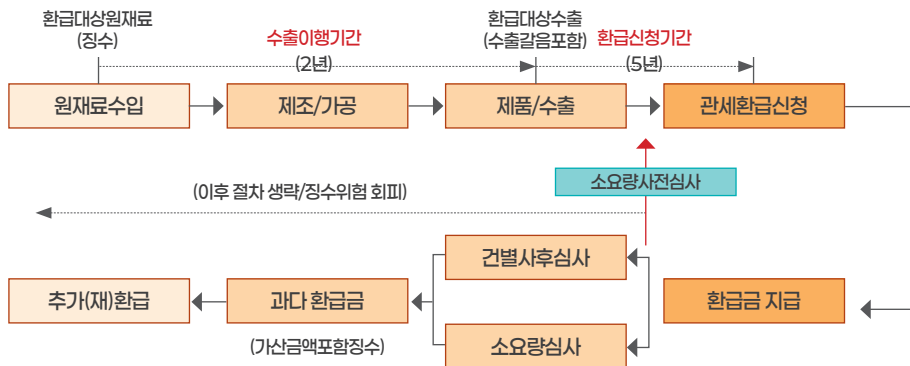
-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후심사(소요량심사 포함) 또는 관세조사시 추징에 대한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과다환급으로 추징될 경우 치유되기 어려운 추가적인 원가상승에 대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

※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환급신청 오류내역이 누적되어 과다환급금이 일괄 추징될 경우 과다환급금 납부를 위한 고액의 자금 조달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전산 정정 및 추가환급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 낭비 등 부정확한 환급 신청은 사회적 자원의 낭비 및 수출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관세청은 업체 스스로 산정한 소요량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환급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추징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성실환급신청 지원을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



## 2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이용시 이점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된 물품에 대한 결과통보는 해당 물품의 소요량 등에 대한 세관장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 결과통보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는 한 유효한 소요량 산정내역이므로 결과통보 내역대로 환급 신청할 경우 환급신청 오류로 인한 과다환급금 징수 및 불복청구사례를 기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수적으로 환급받고 있는 업체 들은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통하여 소요량 또는 원재료에 대해 정당한 환급금을 안정적 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음

## 3 신청방법

-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환급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
- 신청물품의 환급신청과 관련한 사항 중 아래 내역 등에 그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음
    - 선택한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
    - 소요량계산의 적정 여부
    - 부산물 공제비율의 적정 여부
  - 환급 고시 별표17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49호서식)와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별지 제50호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제조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제조장별로 환급받고 있는 경우 각각 환급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
-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 신청 대리 가능

####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가능

-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49호서식)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 필요시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추가제출

#### ○ 소요량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4 신청시 구비서류

####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서류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 참고사항

##### ● 소요량 계산에 의한 환급신청 시 법정 보관 서류(고시 제108조제1항)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출납대장
3. 제품출납대장
4. 부산물출납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별지 제46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출납 관련 부속서류 포함, 1 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적용시)
7. 위탁가공계약서(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시)

##### ● 소요량심사시 확인자료(고시 제113조 제2항)

1. 품목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및 변동명세서(단위소요량 산정명세표)
2. 수출물품의 단위실량 확인자료(순모율로 관리한 경우)
3.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변경내용 포함)
4. 원재료출납대장(부)
5. 제품출납대장(부)
6. 생산월보(수출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인 경우에는 작업월보)
7. 부산물출납대장(부산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함)
8. 제품별 원가계산서(직접재료비 명세서 포함)
9. 소요량계산서철 및 관련 수출입신고필증
10. 제품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산출근거 및 부산물 공제비용 산출근거
11.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출납 관련 부속서류 포함: 1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업체)
12. 위탁가공계약서(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업체)

## 5 세관 업무처리 절차

### ○ (신청인) 접수 및 서류제출

-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접수
- 접수번호 부여시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서 및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관할지 세관 제출

### ○ (세관) 자료 검토 및 보정요구

- 본부세관장에게 심사의뢰
  - AEO업체, 연산품의 소요량 사전심사신청건, 기타 세관장이 본부세관장에게 심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신청건
  - ※ 본부세관으로 심사의뢰한 경우 해당사실 신청인에게 통보
-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검토
- 해당 자료만으로 소요량 등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보정요구 사유, 보정할 내용, 보정기간(20일의 범위내)을 신청인에게 통지
  - 소요량 산정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포함
- (필요시) 현지확인
  - 현지 확인 일자 및 기간, 현지 확인자, 현지 확인사유를 현지확인 개시일 5일전에 통지

### ○ 신청서 반려

- 보정을 요청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신청인의 사정으로 현지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 불이행에 따른 신청서 반려사유가 될 수 있음
-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조사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 청구·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심사결과 통지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결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심사 신청물품인 경우
  - 세관장이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통지(현지확인의 경우 50일)
  - 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⑥ 결과 통지서의 활용

### ○ 통지결과에 구속

- 환급신청인이 통지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함

### ○ 통지받은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물품과 동일하고, 소요량의 적용기간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함
- 소요량 계산을 위한 산정기간이 다른 경우 수출등에 제공한 물품의 경우, 유효기간 중에 있는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여 소요량사전심사 결과통지내역 적용불가

### ○ 소요량사전심사 결과통지내역 갱신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
- 이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내역과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전에 받았던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제출  
→ 심사를 생략하고 유효기간 연장 통지(소요량사전심사 결과통지) 가능

### ○ 효력 상실

-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 ④ 납세협력 프로그램 안내

1. 사후세액심사
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3.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 ■ 의의

-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보정한 세액을 포함)의 부족 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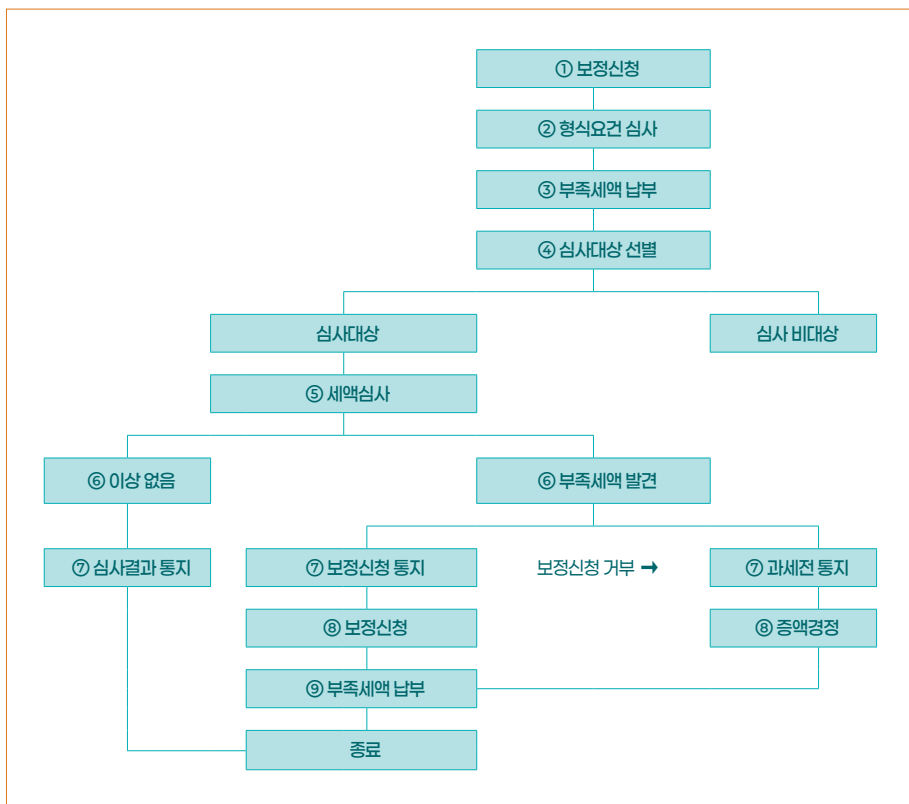
## ■ 사후세액심사 절차

### ○ 업체 보정신청 건

- 업체가 보정신청한 건은 수정신고와 같이 형식적 요건\* 심사 후 신청승인하고,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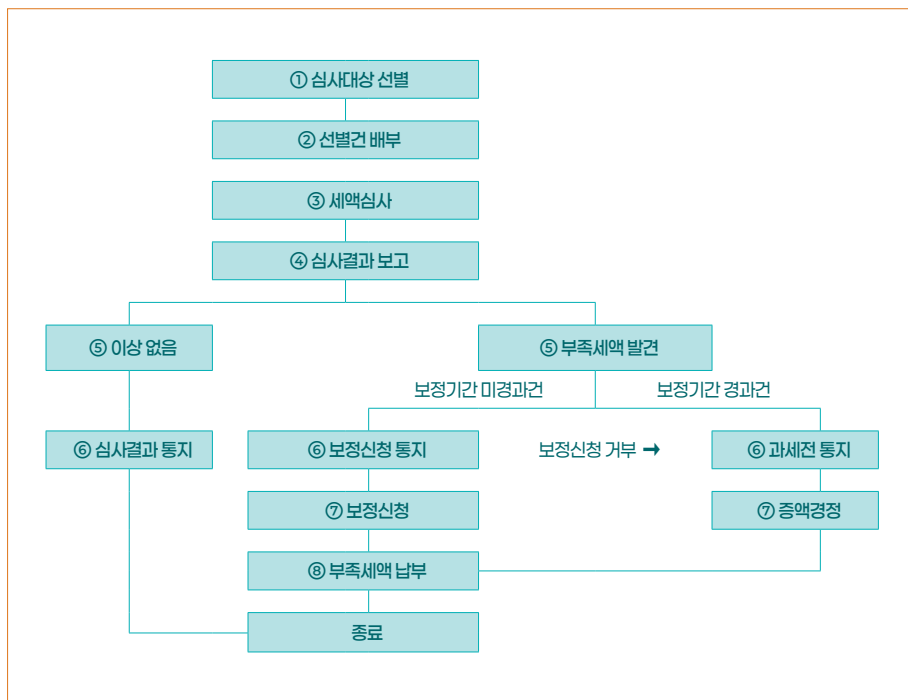
\* 첨부서류 구비여부, 보정신청내용과 첨부서류의 일치여부, 보정대상 여부 등

- 세관에서 실질요건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액심사대상으로 수작업 선별하여 심사



## ○ 업체 보정신청이 없는 납세신고한 건

- 업체의 보정신청이 없는 납세신고 건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대상은 전산선별(R/S) 또는 수작업선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 ■ 납부세액

### ○ 납부세액은 부족세액에 기간이자\*를 합한 금액

\*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 ■ 납부기한

### ○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

\* 처리절차 : 보정승인 → 납부서 생성 → 보정승인 익일까지 부족세액 납부

## ■ 보정에 따른 혜택

### ○ 불성실 신고 가산세 10% 면제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 042-481-7863

## ① 개요

### ■ AEO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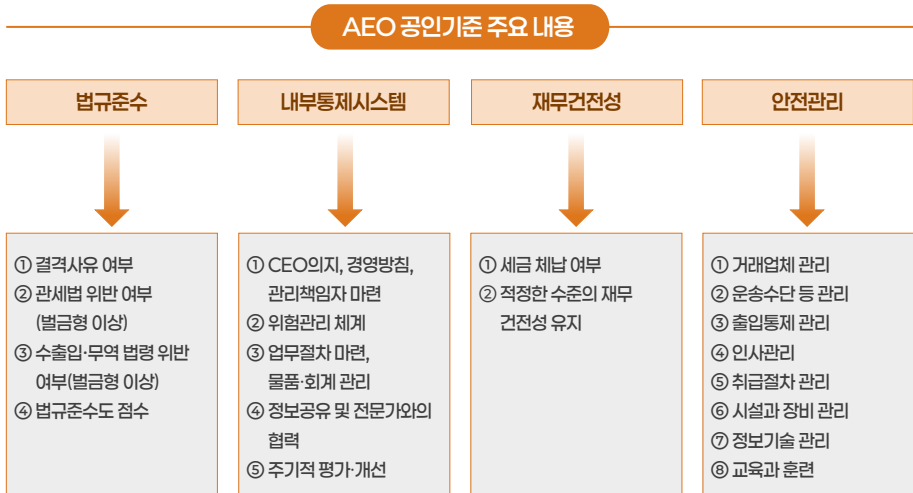
-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각국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
- AEO 제도는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 안전조치를 기반으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무역 안전과 통관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
  -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에 따라 세계 각국 관세당국이 실시하는 유사한 민·관 협력제도를 일컫는 대명사로,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관 환경에 적합하게 수용한 제도명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임

### ■ AEO 제도의 도입 의의

- 관세행정상 혜택 포괄적 제공
  - 과거 물류주체별로 단편적인 성실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 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물류주체의 성실성·안전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포괄적으로 부여
- 민·관 협력을 통한 법규준수 관리
  - 수출입 기업(특히 물류업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Enforced Compliance)’ 방식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규준수 능력을 높이는 ‘자율 법규준수 관리(Informed Compliance)’ 방식으로 전환
-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상호인정약정(MRA\*) 활용)
  - \*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AEO 공인의 신뢰성과 안전성은 국가 간 AEO MRA를 통해 상호 추인되며, MRA 체결국의 AEO 공인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통관절차상 특례를 제공
  - AEO 공인은 수출기업의 거래선 확보·유지 등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

## ■ AEO 공인기준과 등급

- (공인기준) AEO 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의 4개 부문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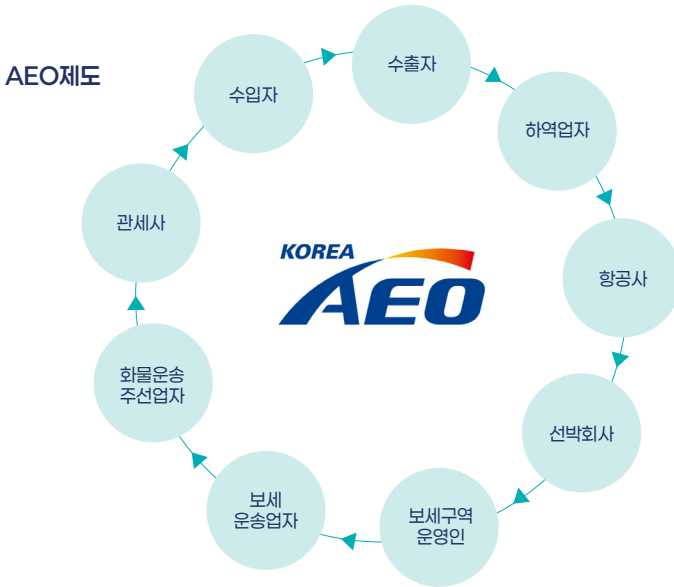
- (공인등급)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안전관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A등급  
 (단, 최초 공인 업체는 법규준수도 점수와 무관하게 A등급)
-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는 AA등급
-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BP ; Best Practice)를 보유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공인 취득을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AAA 등급
- 공인등급에 따라 관세행정상 혜택은 차등 적용

## ② 공인신청 준비와 심사 절차

### ■ AEO 공인신청

- 수출자, 수입자,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9개 업종별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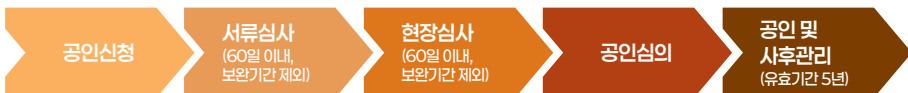


-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 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⑧AEO MRA 혜택 관련 영문 정보 ⑨최근 2년 내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한정)

### ■ AEO 공인심사 절차

-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심사를 거쳐 AEO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 및 등급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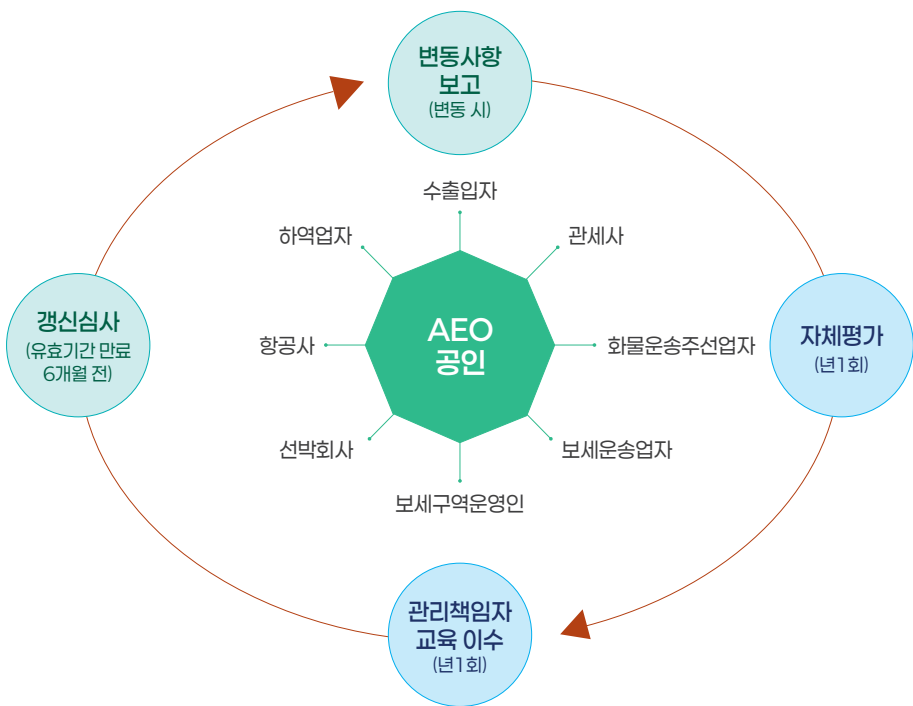


### 3 AEO 사후관리와 갱신심사

#### ■ AEO 사후관리

##### ○ 사후관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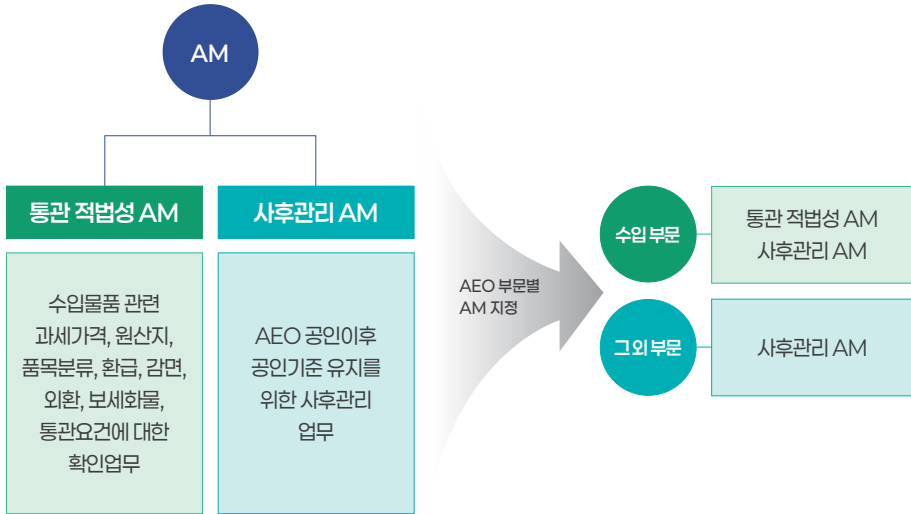
- AEO 사후관리란 AEO 공인기업이 공인 이후로도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공인 후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정기 자율평가, 관리책임자 교육 수료, 갱신심사 수감 등의 모든 활동을 통칭
- 공인업체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업체는 관리책임자를, 관세청은 기업상담전문관 (AM)을 지정·운영



#### ■ 기업상담전문관

-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내 관리책임자의 협력 파트너로서 지정된 세관의 AEO 지원 담당 직원으로, 심사 업무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 자격이 있는 직원 중에서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주요 임무) AEO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준수 및 사후관리 이행 확인,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및 컨설팅, 통관적법성 오류정보 제공 등



## ■ 관리책임자

-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업체별로 1명 이상 지정)
-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 지정, 사업장별 1명 이상 지정 권고)

※ AEO 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 구분        | 자격 요건                                          |                                                                                                |
|-----------|------------------------------------------------|------------------------------------------------------------------------------------------------|
| 총괄책임자     |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임원)             |                                                                                                |
| 수출입 관리책임자 | 수출입업체<br>화물운송주선업자<br>보세운송업자<br>보세구역운영인<br>하역업자 | 가.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br>(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 또는<br>나.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br>(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만 해당) |
|           | 관세사                                            | 수출입 통관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관세사                                                                        |
|           | 선박회사                                           |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br>따라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br>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항공사                                            | 가. 「항공보안법」에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br>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갱신심사

### ○ 갱신심사 개요

- AEO 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한 공인기업의 자격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
- AEO 공인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갱신심사를 신청한 공인기업에 대해서 실시
- 공인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준수 여부, 수출입 관리업무 수행 현황, 우수사례(BP) 보유 여부 등 심사
- 여러 부문을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부문을 기준으로 함께 갱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 갱신심사 프로세스

| 프로세스 단계별 진행사항                                                                                                                                                                               |                                                                                                                                                                                                                                                                                                                                                                |
|---------------------------------------------------------------------------------------------------------------------------------------------------------------------------------------------|----------------------------------------------------------------------------------------------------------------------------------------------------------------------------------------------------------------------------------------------------------------------------------------------------------------------------------------------------------------|
| <div> <div>갱신심사 신청</div> <div>↓</div> <div>서류심사</div> <div>↓</div> <div>업체 자율점검</div> <div>↕</div> <div>현장심사 사전준비</div> <div>↓</div> <div>심사계획 통보</div> <div>↓</div> <div>현장심사</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O 공인기업의 갱신심사 신청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li> <li>- AEO 공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li> <li>- 현장심사 관련 정보 및 준비사항</li> <li>- 통관적법성 오류정보</li> <li>- 업체의 특성 파악, 업무수행 체계 점검</li> <li>- 업체 프로파일 등 정보분석</li> <li>- 심사일정, 심사방법, 중점심사 시안 등을 포함하여 심사계획 수립</li> <li>- AEO 공인기준 준수 여부 현장심사</li> <li>- 통관적법성 준수 여부 점검 및 자율정정</li> </ul> |
| <div> <div>↓</div> <div>심사강평</div> <div>↓</div> <div>심사결과 통보</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류원인 및 개선책 안내</li> <li>- 위반사항 조치계획 설명</li> <li>- 업체통보</li> </ul>                                                                                                                                                                                                                                                      |
| <div> <div>↓</div> <div>보완조치 요청</div> <div>↓</div> <div>AEO 심의위원회 상정</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li> <li>-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이행</li> <li>- 공인유지, 등급조정</li> </ul>                                                                                                                                                                                                                                         |

## 4 AEO 혜택과 MRA

### ■ AEO 공인기업이 받는 혜택

#### ○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

- AEO 공인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전관리 역량,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잘 갖추어진 우수 기업으로서 인정되므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

#### ○ 신속 통관 보장

- AEO 공인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물품검사 비율 및 서류제출 비율을 줄여 수입 통관 절차상 신속 통관 보장

#### ○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 공인 취득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안전관리 수준 등이 개선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제고되며,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따른 통관 중단 및 물품검사 확대 시에도 우선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되어 효과적 위기 대응 가능

※ 관세행정상 혜택

| 구분        | 항목                | 내용                                                                                                  |
|-----------|-------------------|-----------------------------------------------------------------------------------------------------|
| 공통        | 처벌 경감             | · 법규 위반 시 행정형벌보다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
|           | 행정제재 경감           | · 수출입신고 오류에 대한 제재 일수 경감                                                                             |
|           | 대표자 등 우대          | · 국제공항 전용검사대 입출국심사, 전용통로 보안검색 등                                                                     |
|           | ERP 신고            | ·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허용                                                                         |
| 수출입<br>부문 | 수출입신고·<br>물품검사 혜택 | · 수출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 선별 비율 경감<br>· 수입신고 시 전자통관심사<br>·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등                               |
|           | 심사·납세 혜택          | · 수입신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제외<br>· 관세조사, 외국환검사 등 원칙적 면제<br>·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생략<br>· 월별납부 허용 및 월별납부 한도 상향 |
|           | 금융지원              | ·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 보증 한도 우대<br>· IBK기업은행(수출), IM뱅크(수출입) 자금 용자 관련 금리 우대                           |
|           | 보세공장 혜택           |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br>·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의 재고조사 생략                                                       |
| 물류<br>부문  | 특허 혜택             | · 특허 갱신기간 연장, 갱신심사 완화<br>·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수준 이상의 혜택 부여                                                |

## ■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 AEO 상호인정약정 개요

- 상대국에서 공인한 AEO 기업의 공인 지위를 자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 ○ 상호인정약정 추진 주요절차

|     |                                                                                                    |
|-----|----------------------------------------------------------------------------------------------------|
| 1단계 | <b>공인기준 상호비교(Side-by-side Comparison)</b><br>· 양국의 세부기준을 1:1 방식으로 비교 · must, should 등 문구까지 세밀하게 비교 |
| 2단계 | <b>상호방문합동실사(Joint Validation Visit)</b><br>· 공인업체를 방문 공인심사 적정성 점검 · 상대국 현장심사 참관형태로 진행              |
| 3단계 | <b>상호인정 운영절차논의(Operational Process)</b><br>· 특혜부여, 정보교환 방법 등 추가논의 · 실질적 혜택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           |
| 4단계 | <b>최고정책결정자 서명(Signing)</b><br>· AEO 상호인정협정문 작성 · 상호인정서 서명(세관당국간) 및 발표                              |

### ○ 상호인정약정 추진 현황

-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SAFE Framework를 채택한 이후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포함 전 세계 97개 국가에서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5년 6월 말 현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등 25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

### ○ 상호인정 효과 및 혜택

- AEO MRA 체결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우리 AEO 공인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
- AEO MRA 혜택은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아래와 같음

|          |                                                                            |
|----------|----------------------------------------------------------------------------|
| 수입검사율 축소 | 수출자가 AEO MRA 체결국의 AEO 공인기업임을 확인하면, 상대국 세관 당국은 이를 위험 평가에 반영하여 수입통관 시 검사율 축소 |
| 우선통관     | 검사에 선별된 물품이 AEO 공인기업의 화물인 경우, 일반화물에 비해 우선적인 검사(심사) 실시                      |
| 비상시 우선조치 | 천재지변, 국경 폐쇄 등 물류 장애로 정상적인 통관이 불가능할 경우, AEO 화물을 우선하여 조치                     |
| 세관연락관    | AEO 화물의 통관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지정된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T. 042-481-7866 / T. 한국AEO진흥협회 02-701-3325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55조의2~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

### 참고자료

####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납세협력프로그램 ⇨ AEO제도 ⇨ AEO자료실
- 한국AEO진흥협회([www.aeo.or.kr](http://www.aeo.or.kr))

#### ● 참고자료

- AEO 가이드북 :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의 필수조건, AEO”
- 국가별 통관정보 및 MRA 활용법 : “글로벌 AEO 총서”

## 납세신고도움정보를 받아보세요

## ● 개요

기업의 납세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보제공 항목

| 항목     | 항목수 | 정보제공 내역                 |
|--------|-----|-------------------------|
| 일반현황   | 8   | 수출입 실적·감면·채납 등 현황 자료    |
| 납세유의사항 | 4   | 과세신고, 품목분류, 환급, 기타 유의사항 |
| 기타 자료  | 7   | 절세 정보, 법 개정사항, 환급·감면 안내 |

## ● 주요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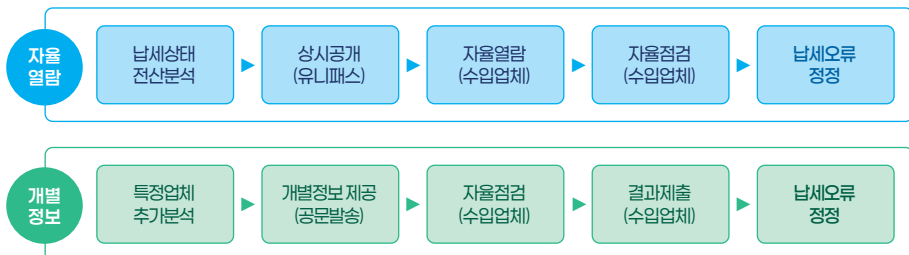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하여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성실업체에게는 해당 납세신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 신고 오류점수 면제(수입신고 정정시, 정정사유 코드를 '37'로 입력한 건에 한함)
- ▶ 수입신고 정정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 성실납세와 관련한 포상 대상으로 추천
- ▶ 가산세 : ①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 ②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

| 수정신고(보정신청)신고 기간              | 가산세 감면              |
|------------------------------|---------------------|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정일자 연 3.1%(가산세 면제) |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 1년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30% 감경    |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년 경과 ~ 1년 6개월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감경    |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 2년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감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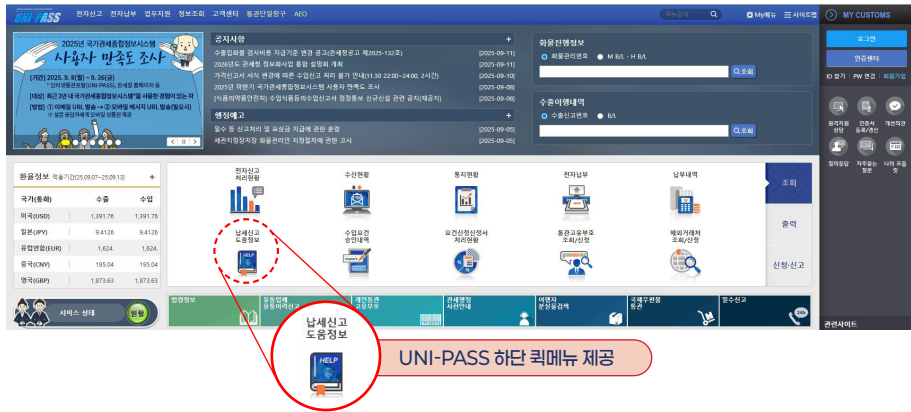
## 정보제공 방식

| 자율열람                                                           | 개별정보                           |
|----------------------------------------------------------------|--------------------------------|
| 수입기업의 납세상태를 진단하고, 납세신고오류 가능성을 유니패스(Uni-Pass)에 공개하여기업 스스로 상시 열람 | 세관이 개별 기업의 오류 가능성을 추가분석한 정보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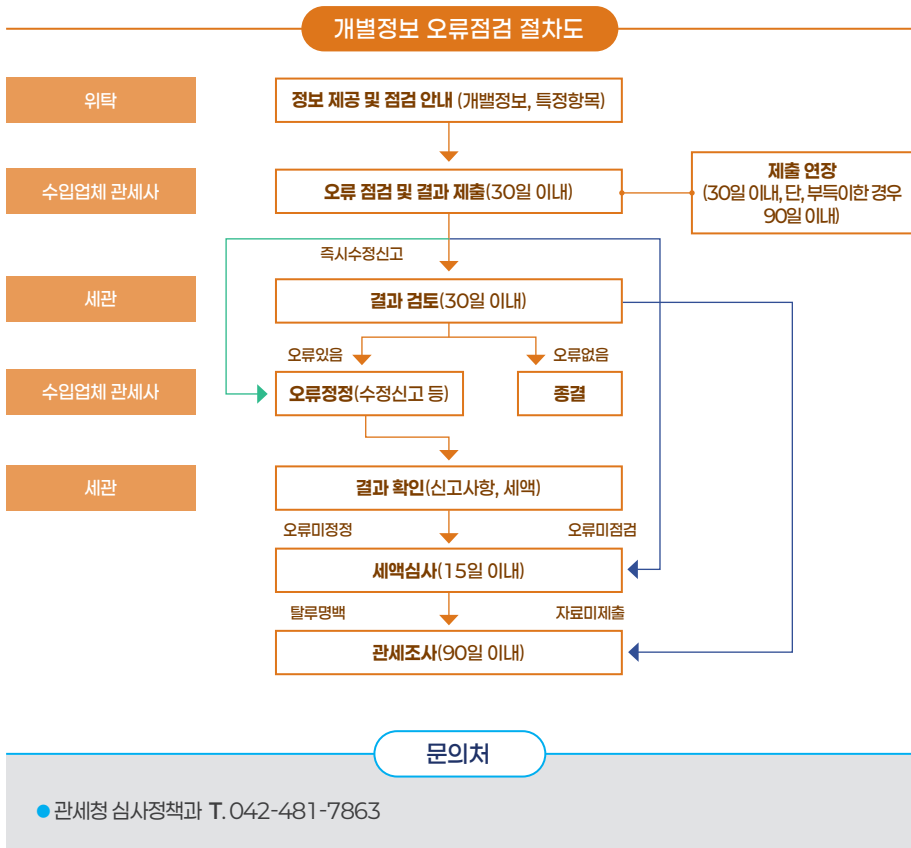


## ● 자출열람

시스템 : UNI-PASS 로그인(<https://unipass.customs.go.kr>) ⇨ 조회 ⇨ 납세신고  
도움정보



## ● 개별정보



##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 5 관세조사 안내

1. 관세조사
2. 통관적법성 위반 사례
3. 불성실신고에 대한 관세 제재
4. 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 ① 관세조사

### ■ 사후심사제도(Post Clearance Audit)

- 통관 후 관세조사는 세액심사이외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기업단위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 주요 조사항목은 관세평가(과세가격), 품목분류(관세율), 관세환급,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원산지표시 및 통관적법성(통관요건 관련 69개 법령) 등
- 통관 후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의 납세협력도와 수출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방식을 차별화
  - 일정 수입규모 이상 업체는 4~5년 주기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며 고세율 품목, 위험이 높은 업체는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

### ■ 관세조사의 종류

| 정기 관세조사                                                                                                     | 비정기 관세조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수입규모 이상 기업</li> <li>• 4~5년 주기 정기조사</li> <li>• 무작위 추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적법성 위반 고위험업체</li> <li>• 수시조사(정보 분석)</li> <li>• 특정·우범업체 관리</li> </ul> |

## ② 정기 관세조사

### ■ 개 요

- 관세조사는 크게 ① 일정수입규모 이상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② 특정 우범 업체·품목에 대한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하여 운용
- 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 선정 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관세조사 운영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규모,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등을 적용하여 반기별로 선정

### ■ 정기 관세조사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수입규모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 불 이상 & 매출액 1천억원 이상(AEO 공인 업체는 제외) 업체를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으로 지정
-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4~5년 주기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수입규모, 업체특성, 과거 조사이력을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또한, 정기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은 새로운 위험 동향과 조사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반기 단위로 선정하여 「정기 관세조사 운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세관에 배정

## ■ 조사방법

- 관세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나 장부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면조사 실시
  - 방문조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
  - 서면조사: 조사대상자로부터 방문조사를 대신하여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방법

## ■ 사전통지

- 관세조사(정기, 비정기)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세조사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관세조사 개시 15일전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대상기간 등을 기재한 「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부

## ■ 조사착수 연기

- 천재·지변 기타 관세조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조사착수의 연기 신청 가능

## ■ 조사기간

- 방문조사는 20일 이내 기간으로 실시하며 세관장은 필요시 조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간동안 연장 가능

## ■ 조사범위

- 관세조사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뿐 아니라 관세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감면, 관세환급, 원산지표시, 수출입 요건, 외국환거래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통합하여 조사

## ■ 조사결과와 조치

- 방문조사가 종료되면 추징이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오류 원인을 찾아 내부통제시스템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하여 향후에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 스스로 자발적 법규준수 기반을 제고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세관별로 설치된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증하는 한편 공평하고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2

### 3 비정기 관세조사

#### ■ 개 요

- 세액탈루, 법규위반 위험이 높은 업체(품목)에 대해 사전 정보분석 등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검증하는 관세조사 제도

#### ■ 운영현황

- 비정기 관세조사는 통관 후 사후심사하는 측면에서는 정기 관세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 대상 선정, 조사주기 등은 차이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비정기 관세조사로 선정

- ① 납세자가 관세법에 의한 신고·신청이나 과세자료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③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④ 수출입 물품 또는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분석결과 탈세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수출입 요건 위반 등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수출입 물품 또는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분석결과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및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
- ⑥ 범칙조사부서, 납세심사부서 등으로부터 관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 ⑦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다환급(과다 소요량계산 포함)을 인정할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 ⑧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비정기 관세조사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실시

- 비정기 관세조사는 AEO 공인업체와 정기 관세조사\* 대상업체를 제외한 전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함

\* AEO, 정기 관세조사 대상업체라도 구체적인 탈루제보 등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 ■ 조사방법

- 비정기 관세조사의 조사방법은 정기 관세조사의 방법과 동일

#### ■ 조사범위

- 정기 관세조사와 마찬가지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만 조사 실시

-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통합 조사 원칙

##### ■ 개 요

- 관세조사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료 등의 요구 및 조사 권한, 물품 등의 검사권한 및 방문조사권한 등에 의하여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
- 통합조사 개념은 관세조사하는 때 관세법과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신고·납부 그 밖의 의무에 대한 진위여부,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능한 통합하여 조사하여 수출입 업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납세자가 경영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수평적·대등적 납세협력 환경을 조성
- 또한, 관세조사하는 때 무역행위에 수반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일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사를 함으로써 업체의 편의성과 관세조사 업무의 효율성 향상

##### ■ 관세조사의 구체적 범위

- 관세조사 하는 때 통합하여 조사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이 경우 비정기 관세조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한 사안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추가 조사 가능
  - 다만, “FTA 원산지조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에 따라 관세조사하는 때 통합조사의 범위에서 제외.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FTA 원산지조사”의 대상자, 조사방법, 사전 통지 및 조사기간 등 절차가 관세법에 의한 관세조사 절차와 상이하고 같은 법령의 규정이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것임)

- ▶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 ▶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 ▶ 품목분류(세율 및 통관요건 포함)에 관한 사항
- ▶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관세 환급(소요량계산 포함)에 관한 사항

- ▶ 관세 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 기타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2

## 5 관세조사 절차 및 준비사항

### ■ 납세자권리현장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2. 귀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됩니다.
3. 귀하는 법령에 의해서만 관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 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세조사의 대상·사유·기간을 사전에 통지 받으며,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와 서류 등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는 것이며, 관세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 귀하는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된 장부등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귀하는 관세조사 기간이 연장, 중지 또는 재개될 때,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귀하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귀하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귀하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또는 불복을 제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납세자보호 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관세조사 절차 개요

### 관세조사 절차 흐름도



## ■ 관세조사 준비

### ○ 조사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 관세조사대상자는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선정(관세법 제110조의3)

- 정기 관세조사 선정 사유

- ①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사유

- ①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③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④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 「관세조사 사전 통지」 송달

-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세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관세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관세조사 사전 통지」 송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세조사 사전 통지」를 받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전 통지의 내용을 차분히 확인

- 귀하께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조사사유’란 참조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관서로 연락

※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생략 가능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5

관세조사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 관세조사 연기 신청 가능

- 관세조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기 연기
- 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관세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 전까지 조사관서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

- ①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②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 ③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 ④ 기타 필요한 사항

## - 관세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

-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 ②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관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되지 않음

## ■ 관세조사 진행

### ○ 관세조사 시작

- 관세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불편은 최소화

### - 관세조사 첫날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조사공무원의 신분 확인

➔ 조사착수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

둘째, 납세자권리현장에 대한 설명

➔ 납세자권리현장 요지를 낭독하여 납세자권리를 자세히 설명

셋째, 청렴서약서에 서명

➔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 요청

납세자와 대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금품·향응·식사·숙박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명한 관세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 ○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세조사 진행

- 조사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 제공
- 관세전문가의 조력 가능
-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관세전문가(변호사·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관세법 제112조)
  - ➔ 이 경우 관세전문가가 귀하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
- 해당 사안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 자료 요청
- 관세조사는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
  - ➔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고,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질문·조사는 하지 않음(관세법 제266조)
  - ➔ 조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조사공무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질문에 성실히 협조 부탁
- 「장부·서류」 등의 「제출·열람·해명」 요구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여 조사공무원의 사적인 자료 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
- 장부, 서류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 가능
  - ➔ 조사공무원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 이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
- 조사 종료 시 일시 보관한 서류 등은 납세자에게 반환
  - ➔ 조사 중에도 일시 보관한 장부·서류 중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은 반환 요구 가능
- 납세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조사공무원은 관세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

## ○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조사를 실시

- 관세조사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
- 조사범위는 「관세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하여 미리 고지

## ○ 관세조사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기간 동안 실시

- 조사기간은 「관세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하여 미리 고지
-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는 하지 않으며, 조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조기 종결가능
-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에 진행
  - ➔ 다만, 납세자가 원하시거나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외에도 조사 가능

## ○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 중지

-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문서로 통지하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통제

- 조사기간 연장 사유

- ①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②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조사가 일시 중지

➔ 납세자의 질병, 사업상 심한 어려움 등 조사 중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도 관세조사 중지 신청가능

➔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

- 관세조사 중지 사유

- ①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②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③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

-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 ②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③ 관세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승인 필요

- 조사중지 기간이 경과하거나 중지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중지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관세조사를 재개하여 잔여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

## ○ 납세자의 권리 보호

- 조사공무원은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관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 관세조사 결과 통보

### ○ 관세조사 결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관세조사 마지막 날에는 관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관련 상담 실시
  - ➔ 조사종료일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실시
- 관세조사가 종료되면 「관세조사 결과 통지」 송부
  - ➔ 추정사유, 과세근거, 예상 고지세액 등 관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작성하여 송부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납부할 세금과 절차 안내

- 관세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송부
  - ➔ 관세조사 결과통지를 받기전이라도 수정신고를 하거나, 결과통지를 받으신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

## ① 개요

-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과 통관요건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업체 스스로 점검하여 수입신고할 필요가 있음
- 세관장은 법 위반을 적발 시 세액추징,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그 외 관계기관에 적발사실 통보
  -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확인하고 있어서 사후 관세조사에 많이 적발되지는 않지만,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통합공고상 추천물품이 적발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 적발사항도 추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통보

## ② 단순·동일 사안 빈번 적발

## ■ 단순사안 빈번 추징 및 동일사안 지속 적발

- 현재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의 단순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추징되고 있으며, 동일한 사안이 빈번·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단순사안이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관련비용,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용, 용기·포장비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누락으로 추징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

## ■ 사전 예방 노력

- 유류할증료나 수수료 등 과세의 단순사안은 수입자 또는 협력업체(관세사, 운송인, 화물 운송주선인 등)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오류를 사전에 예방가능한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수입업체는 관세의 과세가격 신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업무매뉴얼 마련, 통관부서, 재무부서, 구매부서 및 협력업체(관세사 등) 간의 긴밀한 연락망 구축과 함께 비용 지급사실을 통보할 필요
  - 예를 들어 운송관련 비용중 원유가격 인상에 연동된 유류할증료가 추가 발생하여 이를 수입자가 지불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납세자가 관세사에 유류할증료 지급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관세사는 수입신고 시 반영하게 됨

## ■ 단순 사안 적발 사례

○ 다음은 동일업체가 단순 사안을 반복적으로 오류 신고한 실제 사례임

### 적발 사례

01. D사는 과거 종개료 누락으로 9백만원을 추정당했으나, 다음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75백만원을 추정당함
02. B사는 과거 생산지원비 누락으로 3,110백만원을 추정당했으나, 다음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1,210백만원을 추정당함
03. P사는 과거 용기임차료(운송관련비용) 누락으로 9백만원을 추정당했으나, 다음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5백만원을 추정당함
04. R사는 과거 수수료 누락으로 300백만원을 추정당했으나, 다음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80백만원을 추정당함
05. S사는 과거 보험료 누락으로 4백만원을 추정당했으나, 다음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402백만원을 추정당함
06. H사는 과거 생산지원비 누락으로 39백만원을 추정당했으나, 다음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72백만원을 추정당함

## ③ 주요 심사적발 사례

### ■ 생산지원비용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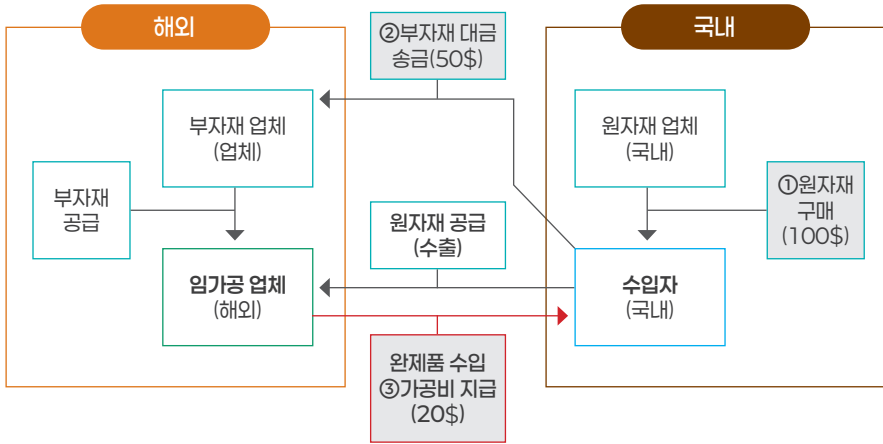
- 해외 현지공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 생산,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세 누락 형태로서, 물품의 수입 시 수입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 동 물품의 수입을 위해 별도로 제공한 물품 또는 금액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경우가 해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 ※ 해외임가공 물품 수출입 신고요령

### - 무역거래도(예시)



### - 수출입신고요령

| 신고항목  | 수출신고            | 수입신고                                                      |
|-------|-----------------|-----------------------------------------------------------|
| 거래구분  | 위탁가공 원자재 수출(29) | 위탁가공 완제품 수입(29)                                           |
| 신고가격* | 국내 구매원가(100\$)  | ①원자재비(100\$)+②부자재비(50\$)+③가공비(20\$)+기타 비용(운임 등) = 170\$+@ |

\* 수입물품 과세가격: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현지 구매자재 가격)+가공비 지급액+기타 비용(운임 등)

### 적발 사례

01. 중국 및 베트남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동 의류의 원단, 부자재 등을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가공료만을 신고한 경우
02. 프랑스산 코냑을 수입하면서 포장용기(병, 캡, 상표 등)를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였으나 동 물품의 가격을 신고 누락한 경우
03. 중국 A공장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사출물을 수입하면서, 동 사출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금형을 중국내 B공장에 의뢰하여 생산한 후, 이를 A공장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동 금형의 제작비용을 신고 누락한 경우
04. 독일에서 제작한 설계도를 중국 현지공장에 제공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면서, 동 설계비용을 신고 누락한 경우
05. 중국에서 발전기 및 수력터빈 기자재 제작에 설계도를 제공하고 설계자에게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과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신고 누락한 경우

## ■ 로열티 등 권리사용료 신고 누락

- 수입물품 자체의 가격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 기술 등에 대한 권리 사용료에 있어서도, 동 권리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나 이를 가산하지 않는 경우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적발 사례

01. 이탈리아의 △△△社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입하면서 가방 대금과는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수입신고 가격에서 동 상표권 사용료를 누락한 경우
02.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동 의약품의 특허기술료 명목으로 국내 판매가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동 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03. 일본 모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연마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연마기술과 노하우의 대가로 별도 지급한 로열티를 신고 누락한 경우
04. 일본 모회사로부터 인쇄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납땜용 합금을 수입하면서 동 합금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를 신고 누락한 경우
05. 유럽 본사와 제3자에게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수입하면서 별도 지급한 상표사용료를 신고 누락한 경우

## ■ 조건·사정에 의한 영향

- 수입거래를 하면서 당해 수입거래와는 별도의 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조건 또는 사정이 수입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을 미친 만큼 조정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단,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임)

### 적발 사례

01. 중국으로부터 냉동간마늘을 수입하면서 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특별할인을 적용하면서 이를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02. DISPLAY 산업에 소요되는 부자재인 ITO-TARGET을 수입하면서, 동 물품을 사용 후 IN(인통)이 70% 정도 넘게 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 03. 이탈리아로부터 자전거 및 부품을 수입하면서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미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단가를 조정(할인)한 후, 동 조정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04. 2008년 금융위기에 기인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손실 보전 차원에서 환율 변동폭보다 과다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 무상 수입물품 저가신고

-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상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나,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적발 사례

- 01. 중국에서 샘플용 의류를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02. 대만에서 수입한 LED칩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정상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03. 일본으로부터 금융자동화기기 수리를 위한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04. 하자가 발생한 태양광발전소 설비 부분품에 대한 무상 대체품을 독일에서 수입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 수입물품의 처분·사용상의 제한

-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약정 등에 의해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을 둠으로 인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적발 사례

01. 유럽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용 기기를 수입하면서 특정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상가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면서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동 할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02. 이탈리아 B사로부터 제빙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한 물품을 전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상가의 50%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한 후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03. 해외 제약회사인 E사가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인 M사에게 원료의약품을 공급(수출판매)하여 M사에서 이를 수입, 중간재료를 생산한 후 E사의 국내지사인 e사에만 판매토록 약정하면서 M사의 원료의약품 수입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04. 일본 소재 본사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성능 시연을 위한 데모용 또는 고장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물품의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 특수관계로 인한 저가신고

-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본래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경우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적발 사례

01. 프랑스로부터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본사)와 수입자(지사) 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타사의 경쟁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02. 국내지사가 미국본사에서 반도체장비를 수입하면서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수용될 수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결과가 아닌 이전가격 정책과는 모순되는 거래가격 결정방식을 채택하여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 ■ 품목분류 신고오류

- 수입물품은 품목분류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잘못 분류하여 저세율로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

### 관세법 제4절(제84~87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품목분류표를 고시함(동 품목분류표에 따라 품목별 세율이 결정됨)

### 적발 사례

01. 저주파 자극기 부분품(관세율 8%)을 마사지용 기기 부분품(관세율 0%)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02. 발전기 부분품(관세율 8%)을 발전기 완성품(관세율 0%)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03. 교육용 완구(관세율 8%)를 전자식 게임기(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04. 헬리콥터 제조에 사용된 볼트, 너트 등의 범용성 부분품은 해당 세번(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나, 항공기 부분품(관세율 0%)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05. 가타의 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관세율 8%)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 ■ 부당환급

- 관세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으면서 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 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적발 사례

01. 수출물품의 소요량을 계산하면서 정상 소요량인 단위당 0.000085보다 10배 많은 0.00085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02. 전기동을 제조·수출하면서 실제 제조에 사용된 동정광, 동스크랩, 동브리스터 등을 환급받아야 하나, 동스크랩만 전량 사용한 것으로 신청함으로써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에 대해 환급받은 경우
03. PCB를 제조·수출하면서 동 스크랩 등 잉여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환급신청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환급 받은 경우
04. 보석류를 수입 후 불량(하자)품으로 분류되어 매장에서 보관하다가 다시 미국 본사로 수출한 바, 이는 관세 환급특례법상 원상태환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상태 환급받은 경우
05.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합성 사파이어로서 HS7104호(간이정액 환급대상 아님)에 분류되는 웨이퍼를 불순물 처리된 화합물이 분류되는 HS3818(간이정액 환급대상)호로 분류하여 간이정액 환급을 받은 경우
06.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경우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5

관세조사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4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대상 위반 사례

- ▶ CITES 대상 멸종위기동식물 미허가 수출입(통고처분)
- ▶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및 안전성심사 미필(식약청장에게 적발 사실 통보)
- ▶ 자율안전 확인 미신고 자전거 부정수입(관계기관 통보)
- ▶ 전기용품 안전 미인증 커피메이커 등 부정수입(관계기관 통보)
- ▶ 수입식품법 식품검사 받지 아니한 식품등 수입(관계기관 통보)
- ▶ 전기용품 안전 미검사 종고복사기 부정수입(관계기관 통보)
- ▶ 안전확인미신고 리튬전자 부정수입(관계기관 통보)
- ▶ 사료관리법상 미추천 사료 수입(관계기관 통보)
- ▶ 수입식품법 미신고 유리컵 수입(관계기관 통보)
- ▶ 비료관리법 중금속위해성 미검사 동물성 비료 수입(관계기관 통보, 조사의뢰)
- ▶ 안전확인과 다른 배터리 사용 휴대용 선풍기 수입(관계기관 통보, 조사의뢰)
- ▶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허위 인증번호로 수입(관계기관 통보, 통관보류)
- ▶ 안전확인미신고 배터리 사용 전동킥보드 수입(관계기관 통보, 통관보류)

## ① 관세제재의 종류

### ■ 강제징수

- 관세 체납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 실시

### ■ 관세형벌

#### ○ 관세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b>제1항</b><br>(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 제234조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자<br>가. 헌법질서문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br>나. 정부기밀누설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br>다.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 <b>제2항</b><br>(5년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1. 제241조제1항 정상신고 절차 없이 물품수입·제241조제2항 간이 신고 절차 없이 휴대품, 우편물 등 물품수입 또는 제244조제1항 입항 전 신고 절차 없이 물품수입 다만, 제253조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한 물품 제외<br>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
| <b>제3항</b><br>(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 벌금)                    | 1. 제241조제1항 정상신고 절차 없이 물품 수출하거나 반송·제241조 제2항 간이 신고 절차 없이 휴대품, 우편물 등 물품수출하거나 반송<br>2.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 또는 반송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 ○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b>제1항</b><br>(3년이하 징역 또는<br>포탈관세 5배와 물품<br>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br>벌금) |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한 자 중<br>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기위해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br>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br>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 제3항에<br>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br>다. 법령에 의한 수입제한의 회피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br>갖춘 미완성, 불완전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
| <b>제2항</b><br>(3년이하 징역 또는<br>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한 자 중 법령에 따른<br>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br>수입한 자                                                                                                                                                                            |
| <b>제3항</b><br>(1년이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 벌금)                         |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한 자 중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추천, 증명<br>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                                                                                                                                                                                           |
| <b>제4항</b><br>(3년이하 징역 또는<br>감면, 면탈세액 5배<br>이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 받거나 관세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징수를 면탈한 자                                                                                                                                                                                                                                              |
| <b>제5항</b><br>(3년이하 징역 또는<br>환급받은 세액 5배<br>이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을 받은 자(부정환급세액 즉시 징수)                                                                                                                                                                                                                                                    |

## ○ 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2년이하 징역 또는<br>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br>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br>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br>가.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br>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br>다.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br>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

## ○ 관세법 제274조 (밀수품 취득죄)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b>제1항</b><br>(3년이하 징역 또는<br>물품원가이하 벌금)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감정한자<br>가.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물품<br>나. 제270조제1항제3호(수입제한 회피목적의 부분품, 미완성·불완전 물품, 완제품을<br>부분품의 분할)<br>제270조제2항(허가 등 수입제한물품의 부정수입)해당물품<br>제270조제3항(허가 등 수출제한물품의 부정수입)해당물품 |

##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b>제2항</b><br>(물품원가 또는 2천<br>만원 중 높은 금액<br>이하 벌금)                           | 1. 제198조제1항 종합보세사업장 신고 없이 종합보세기능을 수행<br>2. 제204조제2항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 세관장 폐쇄명령에 위반하여<br>종합보세기능을 수행<br>3. 제238조 보세규역반입명령에 전부,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함<br>4. 제24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br>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br>4의2.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고<br>5. 제248조제3항 수출, 수입, 반송 등 신고수리 전 반출                                                                                                                                                                                                                                                                                                                                                                                                                                                                                                                                                                                                                                                                                |
| <b>제3항</b><br>(2천만원 이하 벌금,<br>다만, 과실로 제2호<br>부터 제4호 해당 시<br>300만원 이하<br>벌금) |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br>2. 제12조 서류 미보관(5년 이내), (단 신고필증 미보관 제외(과태료))<br>제98조제2항 재수출 감면물품의 용도와 사용 및 무단양도 시<br>제109조제1항 관세법 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른 관세감면 물품은 3년 용도의<br>사용 및 무단양도 시<br>단, 직접 수입한 경우 감면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br>양도한 자는 제외(과태료))<br>제134조제1항 외국무역선(기)의 불가항정 무단출입<br>제136조제2항 출항적하목록 미제출<br>제148조제1항 국경출입차량의 관세통로 비경유, 통관역(장) 미정차<br>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미이행<br>제222조제1항 하역, 보세운송, 선용품 및 용역업자 등의 미등록<br>제225조제1항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등의 보세화물취급 미신고<br>3. 제83조제2항 용도세물품의 용도와 사용 및 무단양도 시<br>제88조제2항 외교관용 등 면세물품의 용도와 사용 및 무단양도 시<br>제97조제2항 재수출 면세물품의 용도와 사용 및 무단양도 시<br>제102조제1항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와 사용 및 무단양도 시<br>다만, 직접수입 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동일용도에 사용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외<br>(제277조 제4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대상)<br>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br>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br>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 의무이행 요구를 미이행한 자<br>5. 제38조제3항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자<br>6. 제178조제2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구역 특허를 받은 경우)·<br>제5호(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및 제22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br>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운송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5

관세조사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제4항<br>(1천만원 이하 벌금,<br>다만, 과실로 제2호<br>부터 제4호 해당 시<br>200만원 이하 벌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자</li> <li>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입항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li> <li>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하여 제277조제4항제4호 포함) 입항 보고 시 선용품 목록, 여객 및 승무원 명부, 휴대품 및 적하목록 미 제출자<br/>제136조제1항 외국무역선(기) 출항허가 없이 무단출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br/>제137조의2제1항후단 승객예약자료 미제출자<br/>제140조제1항 입항절차 종료 전 허가 없이 물품의 하역 및 환적(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br/>제140조제4항 물품의 하역 및 환적 시 미신고(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br/>제140조제6항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에 내국물품적재, 내항선에 외국물품 적재(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br/>제141조제1호 외국물품을 신고없이 일시적으로 무단양륙(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br/>제141조제3호 타 운송수단으로 신고없이 환적, 복합환적, 사람이동(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br/>제142조제1항 무허가 항외하역 및 환적(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br/>제144조 세관장 승인 없이 자격전환(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br/>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통관역(장)의 미허가 출발<br/>제151조 국경출입차량의 외국물품의 하역 미신고<br/>제213조제2항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미신고</li> <li>4. 제135조제2항 입항보고서류의 입항 전 제출조치 위반(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 제외)<br/>제200조제3항 종합보세구역 반출입물품 제한 위반<br/>제203조제1항 종합보세구역 인원, 차량 통제, 물품검사 위반<br/>제262조 운송수단의 출발금지 위반</li> <li>5. 제248조제1항 단서 수출수입반송 전산신고필증 부정 발급 받은자</li> <li>6. 제263조 서류제출, 보고 등의 명령 불이행, 거짓보고</li> <li>7. 제265조 물품, 운송수단의 검사, 봉쇄에 대한 거부, 방해자</li> <li>8.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자료 제시, 제출요구 거부자</li> </ol> |
| 제5항<br>(500만원이하 벌금)                                               | 제165조제2항 관할세관장 미등록 보세사 근무                                                                                                                                                                                                                                                                                                                                                                                                                                                                                                                                                                                                                                                                                                                                                                                                                                                                                                                                                                                                                                                                                                                                                                                                                                                                                                  |

## ■ 과태료

- 관세법은 각종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277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서 관세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관세형벌과는 다름
- 법 277조는 위반경중에 따라 2억원, 1억원, 1천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 가산세

- 가산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관세법 제42조 등에서 규정)
- 정정, 보정, 수정, 경정(경정청구)

| 구분 | 근거규정                         | 사유                                                                                     | 납부기한          |
|----|------------------------------|----------------------------------------------------------------------------------------|---------------|
| 정정 | 법§38(신고납부)④                  |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 과부족 있을 경우                                                         | 당초의 납부기한      |
| 보정 | 법§38의2(보정)<br>영§32의4(세액의 보정) |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세액 부족이 있을 경우<br>※보정이자 부과                                               | 보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 |
| 수정 | 법38의3(수정 및 경정)①              |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세액부족이 있을 경우<br>※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 |
| 경정 | 법38의3(수정 및 경정)②, ③           | ① 경정청구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br>② 경정 :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 신청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을 경우 | 고지한날로부터 15일   |

## ○ 정정방법별 보정이자 및 가산세부과여부

| 정정 방법 | 정정 주체  | 정정시기          | 가산세 부과여부             |                       | 비고(관세법상)                                                                                                                       |
|-------|--------|---------------|----------------------|-----------------------|--------------------------------------------------------------------------------------------------------------------------------|
|       |        |               | 이자<br>(납부불성<br>실가산세) | 가산세<br>(신고불성<br>실가산세) |                                                                                                                                |
| 정정    | 납세 의무자 | 납부 전          | X                    | X                     |                                                                                                                                |
| 보정    | 납세 의무자 | 신고납부 후 6월 이내  | 보정이자 부과<br>※가산세 아님   |                       | 이자율: 연 1천분의 31<br>- 추징시(보정이자): 법38의2(보정)⑤, 영32의4(세액의 보정)④<br>- 환급시(환급가산금): 법48(환급가산금), 영56(환급가산금 등의 결정)②, 규칙9의2(관세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 수정    | 납세 의무자 | 신고납부 후 6월 이후  | ○                    | ○                     | 부족세액의 10%+1일 22/100,000 [법42(가산세) 및 영39(가산세)]                                                                                  |
| 경정(+) | 세관장    | 신고납부 후 6월 경과후 | ○                    | ○                     | 부족세액의 10%+1일 22/100,000 [법42(가산세) 및 영39(가산세)]                                                                                  |
| 경정(-) | 세관장    | 신고납부후 6월 경과후  | ○                    | X                     | 직권환급(환급가산금)(연 1천분의 31) [법48(환급가산금), 영56(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 ○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사유별 부과여부

| 정정 방법 | 면제사유                                         | 보정 이자 | 가산세 부과여부             |                       |
|-------|----------------------------------------------|-------|----------------------|-----------------------|
|       |                                              |       | 이자<br>(납부불성<br>실가산세) | 가산세<br>(신고불성실<br>가산세) |
| 보정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br>- 우편물             | X     | X                    |                       |
| 수정    |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결과 부족세액 발생                        |       |                      |                       |
|       | 확정가격신고                                       |       |                      |                       |
|       | ACVA 결정 이전(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 세액 수정신고 |       |                      |                       |
|       |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br>- 우편물             |       |                      |                       |
|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신고 시 가산세 60% 적용

-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방법을 말함

- ①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 ③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 ④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2 관세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에서 관세법과 별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b>제1항</b><br>(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br>(환급세액 즉시 징수)                                                                                                        |
| <b>제2항</b><br>(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자<br>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br>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br>(환급세액 즉시 징수) |
| <b>제3항</b><br>(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 <b>제4항</b><br>(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심사 시 요청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3 FTA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b>제1항</b><br>(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8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br>* 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b>제2항</b><br>(2천만원 이하의 벌금.<br>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br>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br>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br>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br>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br>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br>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
| <b>제3항</b><br>(300만원 이하의 벌금.<br>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 <b>제4항</b>                                                                      |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 4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 ■ 외국환거래업무 및 환전업무(법 제8조)

-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 등록사항 변경, 폐지: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 ■ 지급 및 영수 허가 등(법 제15조)

-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지급·영수: 금지

### ■ 지급 및 영수 방법(법 제16조): 아래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거주자

- 상계, 기간초과 지급·영수, 제3자 지급·영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한국은행 신고

###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법 제17조)

#### ○ 세관신고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 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제외한 지급수단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 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화물, EMS, 서신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고하자는 경우(단, 다른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등에 신고된 경우는 제외)

### ■ 자본거래 신고(법18)

#### ○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예외

- 자본거래의 종류
  - 예금, 신탁
  -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 현자금용
  -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 등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증권발행 및 취득
  - 파생금융거래
  -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

## ■ 외환사범에 대한 벌칙(법 제27조 ~ 법 제31조)

| 조항(처분)                                                                                                         | 위반내용                                                                                                                                                                                                                                                                                                                                                                                                     |
|----------------------------------------------------------------------------------------------------------------|----------------------------------------------------------------------------------------------------------------------------------------------------------------------------------------------------------------------------------------------------------------------------------------------------------------------------------------------------------------------------------------------------------|
| <b>제27조 제1항</b><br>(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br>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br>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br>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 의무를 위반한 자<br>5.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 의무를 위반한 자<br>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
| <b>제27조의2 제1항</b><br>(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br>2. 제9조제1항 전단·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br>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
| <b>제28조 제1항</b><br>(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 <b>제29조 제1항</b><br>(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1.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br>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br>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제16조 위반은 25억원, 제18조 위반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자<br>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br>5.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br>6. 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 외환 과태료 부과기준(법32조)

### 1. 과태료 부과기준표

| 처벌조항(법)     | 위반내용(법)                                                         | 부과금액                                                                                                                                                                      |
|-------------|-----------------------------------------------------------------|---------------------------------------------------------------------------------------------------------------------------------------------------------------------------|
| 제32조제1항 제1호 |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 중대한 사항의 경우 : 5천만원<br>경미한 사항의 경우 : 1천만원                                                                                                                                    |
| 제32조제4항 제1호 |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700만원                                                                                                                                                                     |
| 제32조제1항 제2호 |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 5천만원                                                                                                                                                                      |
| 제32조제1항 제2호 |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 5천만원                                                                                                                                                                      |
| 제32조제4항 제2호 |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
| 제32조제2항 제1호 |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천만원                                                                                                                                                                      |
| 제32조제2항 제2호 |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높은 금액<br>단, 거짓으로 증빙한 경우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높은금액                                                                                                        |
| 제32조제1항 제3호 |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등 신고사항 위반시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li> <li>·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장 신고사항 위반시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li> </ul> |
| 제32조제1항 제4호 |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                                                                                                                                                                           |
| 제32조제1항 제5호 |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                                                                                                                                                                           |
| 제32조제1항 제6호 |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 위반금액의 5%                                                                                                                                                                  |
| 제32조제2항 제3호 |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는 경우 | 위반금액의 5%                                                                                                                                                                  |
| 제32조제3항 제1호 |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 100만원과 위반금액 2% 중 큰 금액                                                                                                                                                     |
| 제32조제4항 제3호 |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 300만원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5

관세조사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처벌조항(법)     | 위반내용(법)                                                                | 부과금액  |
|-------------|------------------------------------------------------------------------|-------|
| 제32조제4항 제4호 |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700만원 |
| 제32조제3항 제2호 |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천만원  |
| 제32조제4항 제5호 |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 700만원 |
| 제32조제3항 제3호 |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
| 제32조제3항 제3호 |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 2천만원  |
| 제32조제3항 제3호 |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 700만원 |

## 2.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중 됨.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각 항에서 정한 최고액을 넘을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사유를 여러 개 적용하는 경우에도 총감경액은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수 없음
  - ①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 ④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가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경우
  - ⑤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⑥ 그 밖에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자의 위반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외환 과태료 부과절차

### 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안내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15일내 의견 진술할 수 있다는 안내문 통지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별다른 의견 없이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납부 고지서 통지

### ② 의견 제출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및 고지서
- 과태료에 불복하는 경우 60일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③ 과태료 불복에 따른 이의제기시 절차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
-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5

관세조사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① 추진 배경

- 국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관세조사 유예

### ② 유예기업 선정기준

- 2024년도 1억불 이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2025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를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2025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 수입 규모별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 창출비율

| 2024년 수입금액      | 1천만불 미만 | 1천만불 ~ 5천만불 | 5천만불 ~ 1억불 |
|-----------------|---------|-------------|------------|
| 일자리 창출비율 (전년대비)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청년 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고용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 ③ 지원 및 선정방법

- 지원방법 : 관세청 누리집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접수처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계획서”
- 선정방법 : 관세청의 지원대상 적용요건 확인 후 선정

### ④ 지원(조사유예) 기간

- 관세조사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

#### 문의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T.042-481-7973

##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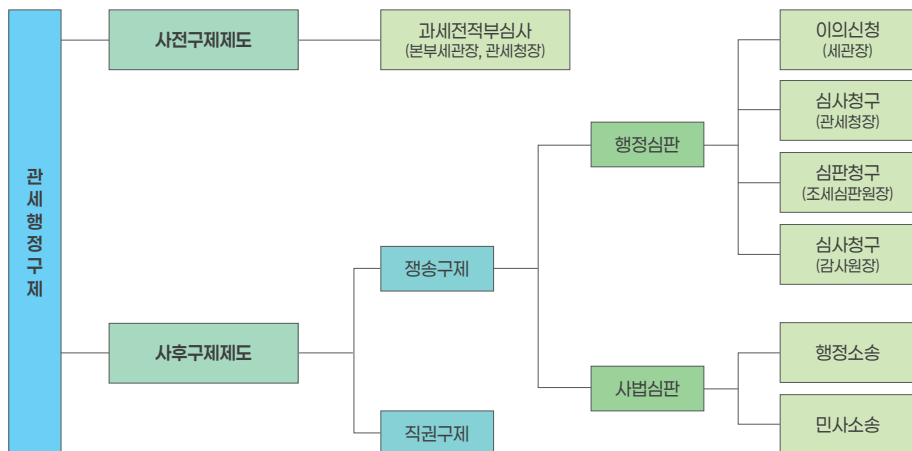
### ⑥ 납세자권리구제 안내

1.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2. 불복청구 주요사례
3. 납세자보호관제도
4. 관세 종합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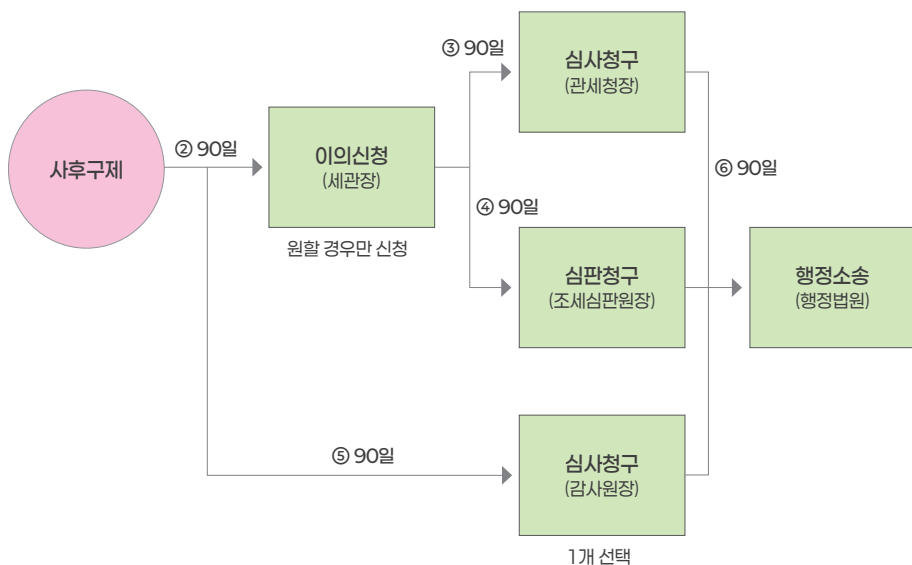
## ① 개요

-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관세행정 구제제도 개요



- 사후구제제도 중 행정쟁송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본부세관장, 관세청장)

### ○ 세관장의 과세전통지

- 세관장은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는 통지 생략 가능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요건

- (청구기간)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청구기관) 원칙적으로 본부세관장,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에게 청구

※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관세법 제118조 제2항 단서)

- ① 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②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른 부족세액 징수
- ③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및 유관해석에 따라 부족세액 징수
- ④ 동일 납세자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적부심 청구
- ⑤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효과

- 세관장은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 유예  
다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는 없음

### ○ 심리와 의결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과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하게 기속력 등의 효과 발생
-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불가.  
청구 결정에 따른 해당세관의 구체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 제기 가능

## ■ 심사청구(관세청장)

### ○ 청구인 적격과 청구의 대상

-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청구대상이 아님

- ①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 ②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③ 과태료 부과처분

### ○ 청구기간

-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가능

### ○ 결정기간

-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지체없이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가능

##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 심판청구의 요건

- 청구인 적격과 그 범위, 심판청구의 대상, 청구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

### ○ 심리와 의결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다음과 같이 소액 또는 경미한 것일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 가능

- ①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 결정기간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

## ■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장)

### ○ 청구인 적격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청구기간

-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결정 기간

-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
-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세청장에게 문서로 통지

### ○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조치

- 관세청장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

## ■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처분

### ○ 처분의 의미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처분을 인정한 사례

#### 판례1

일정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내부에 있어서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의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의사결정의 내용을 담은 서면이 작성·준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예: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어떠한 형식이든 행정청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없이 정확하게 전달(예: 세번을 변경하는 경정처분)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한한다. (大判 1990.9.25, 89누4758)

#### 판례2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한 세법상의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大判 1985.12.10, 84누243)

### ○ 처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행정입법, 일반처분과 고시, 행정청의 내부행위 및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사실행위,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등

#### 판례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大判 1987.3.24, 86누656)

#### 판례2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大判 1995.5.12, 94누13794)

### 판례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 납부한 세금을 과세 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서울고등 법원 판결 1988.1.13, 87구524)

### 판례4

행정각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소관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大判 1992.10.13, 91누2441)

## ■ 불복청구기간과 관련된 사례

### ○ 원칙적인 청구기간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관련한 판례

- 교부·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지는 않음

### 판례1

1997.12.27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토요일이라 원고직원들은 퇴근하고 없어 문서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월요일인 29일 원고의 담당부서에 전달하였다면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로서는 27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옳다.(大判 1999.12.28, 99두9742)

### 판례2

우편법등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2.3.27, 91누3819, 92누13127)

### 판례3

재무부장관이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필연코 원고들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만한 우편제도상이나 일반실태상의 보장도 희박하다.(大判 1977.2.22, 76누263, 1993.5.13, 92다2530)

### 판례4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본다.(大判 2001.7.27, 99두9490)

## ○ “처분이 있는 날”과 관련한 판례

- 처분의 주체·절차·형식·내용상의 요건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함

### 판례1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에서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6.8.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당시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9.5.26에 이르러 원고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89.5.30 제기된 이 사건의 소가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大判 1990.7.13, 90누2284)

## ○ 예외적인 청구기간

- 아래 사유로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 ① 천재(天災)·지변(地變)이 있는 경우
  - ②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기타 세관장이 위에 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례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大判 1992.7.28, 91누12844)

##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된 사례

### ○ 화주가 일정기간 품목분류를 일관되게 신고한 상황에서 세번이 잘못되었다 하여 제척기간 내에서 한꺼번에 추정할 경우

-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원가에 소급반영하지도 못하는 등 가장 대표적으로 납세자 불만이 있는 사례임

### ○ 외국의 입법례

- 개정 교토협약에서 관세당국은 부족세액 등 발견 시 오류 정정 및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 (부속서 3.39)

- 일본은 우리나라 제도와 동일하며,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제척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괄 추징은 보편적 추세

'07년 독일 등 EU 국가는 우리나라 수출물품 DMB폰에 대해 품목분류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일괄 추징

- **(적용요건)**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장기간 비과세사실 존재 여부가 중요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

| 구분    | 소급과세금지원칙                                                                       | 신의성실원칙                                                                                                          |
|-------|--------------------------------------------------------------------------------|-----------------------------------------------------------------------------------------------------------------|
| 법률규정  | 관세법 제5조                                                                        | 관세법 제6조                                                                                                         |
| 적용대상  | 과세관청                                                                           | 과세관청, 납세자                                                                                                       |
| 적용납세자 | 불특정 납세자                                                                        | 특정 납세자                                                                                                          |
| 적용요건  | ① 장기간 비과세 사실 존재<br>② 불특정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 질 것<br>③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 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br>② 견해표명신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 없을 것<br>③ 견해표명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할 것<br>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경제적 불이익 부과 |
| 관청연동  | 일반성                                                                            | 개별성                                                                                                             |
| 임증책임  | 납세자                                                                            |                                                                                                                 |

### ○ 장기간 비과세 사실 존재관련 판례

- 판례에서 '장기간'에 대해 정립된 바 없어 사안별로 수입신고 반복정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 “장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 납세자들도 동일 세번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동일 세번 신고확률이 90% 이상일 것을 요구(관세청 심사청구 2009-30호)

<대법원 80누203호, '83.4.12>

다른 업체의 동일물품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개 업체가 10년 동안 계속하여 같은 세번으로 수입 통관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 인정

## ○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관련 결정례

- 품목분류 유권해석은 질의된 특정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유사품목에 대해서는 효력 불인정(관세청 적부심 2001-66호)
- 공무원의 구두 행정지도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결이 있음

### 인정사례 <대법원 88누5280, '90.10.10>

세무서직원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 불인정사례 <대법원 91누7569, '92.4.10>

담당공무원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무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같은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할 경우 공적 견해 표명의 성립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판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2001. 4. 24., 2000두5203)

## 문의처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T. 042-481-7988

## ■ 개요

-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제도 의의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
-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 제도 목표

- 과세품질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도입 배경

-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충민원 적극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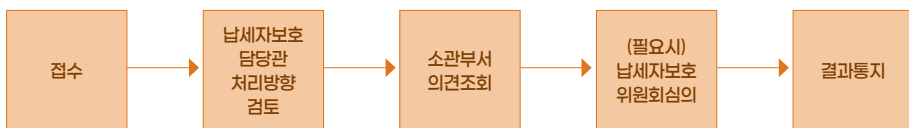
## 관련 근거

- 관세법 제110조, 제118조의2~제118조의5
-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44조의2~제144조의5

## 운영 원칙

- 관세행정 주영역\*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운영
- \* 범칙조사·외환조사·외환검사, 내부행정사항 등 일부 업무 제외
- 납세자보호관제도는 행정적인 권리보호수단으로서, 법을 초월한 권리보호는 불가하며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은 불복제도 우선 적용

## ○ 업무 처리 절차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 본청과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수호

## ■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 구분         |                  | 내용                                                                                                                                                                                |
|------------|------------------|-----------------------------------------------------------------------------------------------------------------------------------------------------------------------------------|
| 고충민원       |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                                                                                                      |
| 관세조사<br>관리 | 관세조사<br>범위확대     | 관세조사부서장이 1.조사대상기간 2.조사대상분야 3.조사대상품목에 대하여 관세<br>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필요                                                                                                 |
|            | 관세조사의<br>중지      | 관세조사부서장이 3회를 초과(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 제외)하여 관세조사를<br>중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 필요                                                                                                           |
|            | 장부 등의<br>보관기간 연장 | 관세조사부서장이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br>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필요                                                                                                  |
| 권리보호<br>요청 | 관세조사<br>권리보호요청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br>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br>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br>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
|            | 일반행정<br>권리보호요청   |                                                                                                                                                                                   |
| 제도개선       |                  | 고충민원,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의 불편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br>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 ※ 제외 업무

| 제외 대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조사, 외환조사 및 외환감사에 관한 사항</li> <li>● 선별기준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예 : 수출입물품 검사대상선별, 우범선박지정)</li> <li>●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예 : 감시대상화물 정보수집)</li> <li>● 세관관서의 내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예 : 법규준수·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li> <li>●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관서의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li> </ul>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납세자보호관 탭 참조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납세자 권리보호 ⇒ 납세자보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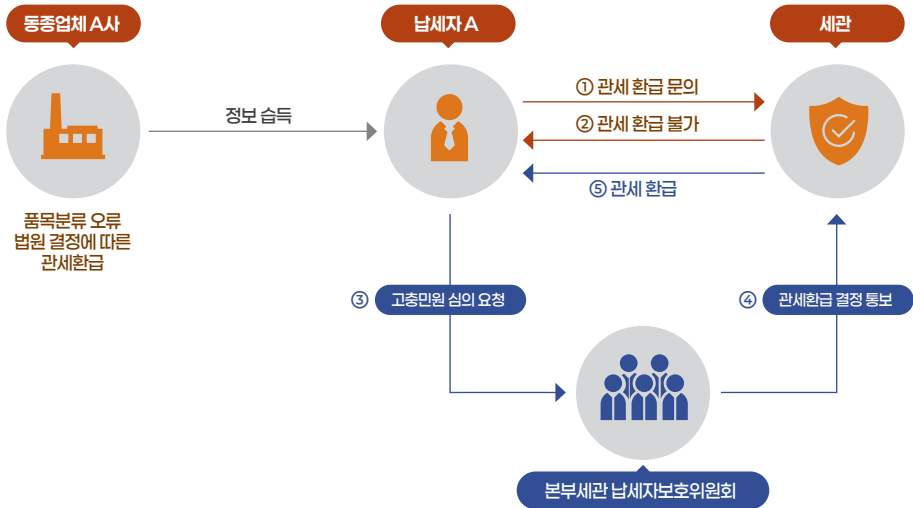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납세자보호관제도 주요 사례

### 사례 1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도입 취지 및 타 업체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세관의 품목분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던 점을 감안해 납세자 A가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도 환급 결정



### 사실관계

- 납세자 A는 2년여 전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잘못됐다는 통지를 세관으로부터 받고, 법적으로 다룰 생각도 했지만 소요될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다투지 않고 세금 납부
- 이후 본인과 같은 이유로 세금을 납부했던 다른 납세자는 소송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 A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세관에 문의했으나 세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답변
- 이에 A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동일한 물품에 대한 세관의 품목분류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소송 결과를 감안하여 A가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 하도록 결정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6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부록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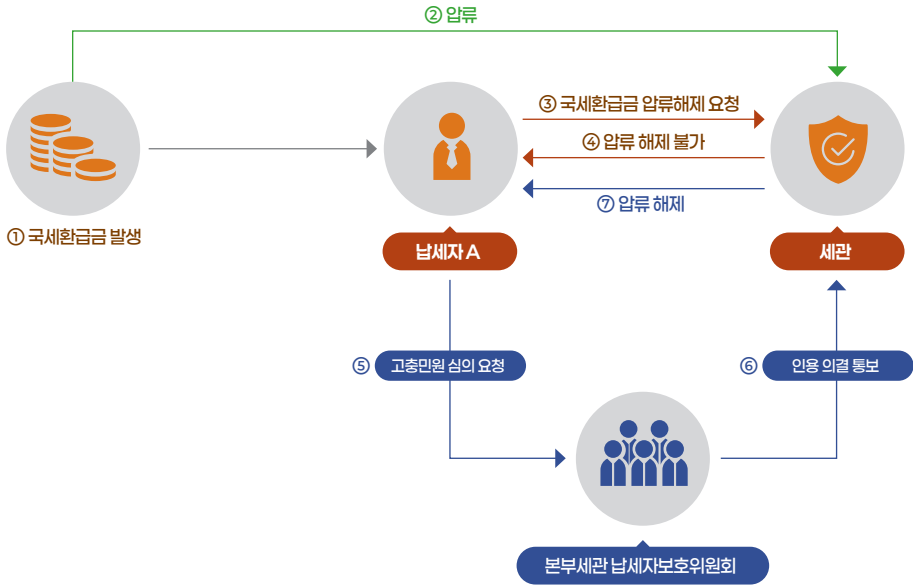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사례 2

체납 관세를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었고 환급금 압류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 체납 세금 완납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압류된 국세 환급금 반환 결정



##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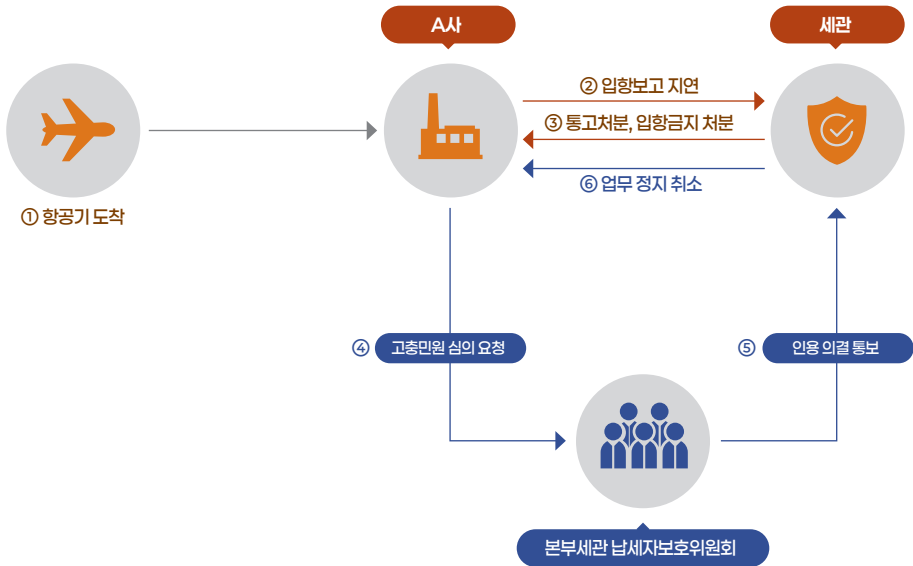
- 납세자 A는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게 돼 세관과 협의해 체납된 관세를 분할해 납부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국세 1억여 원을 환급받게 됐는데 환급받기 전에 세관에서 이를 압류
- 납세자 A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 민원 신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체납된 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고 환급금이 압류돼 경영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남아있는 체납 관세를 완납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감안해 국세환급금을 되돌려주도록 결정

### 사례 3

통고처분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A社の 법규준수도, 입항 보고 지연사유,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정지(10일)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



### 사실관계

- A社(항공기 지상조업 및 급유업 등을 영위)는 항공기 도착 후, '여객명부·승무원명부·기용품목록·적하목록' 등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의 입항보고 지연으로 인해 통고처분 및 통고처분에 따른 경고누적으로 10일의 업무 정지 처분 예고 통지서 수령
- 항공사 A社は 통고처분은 감내하면서도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입항 보고 지연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까지 처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생각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항공사 A社は 동일 사유로 처벌된 전례가 없고 매분기별 법규준수도 평가등급도 양호한 업체로서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요청에 대한 인용 결정

부록  
01

단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6

납세자  
관리규제  
안내

부록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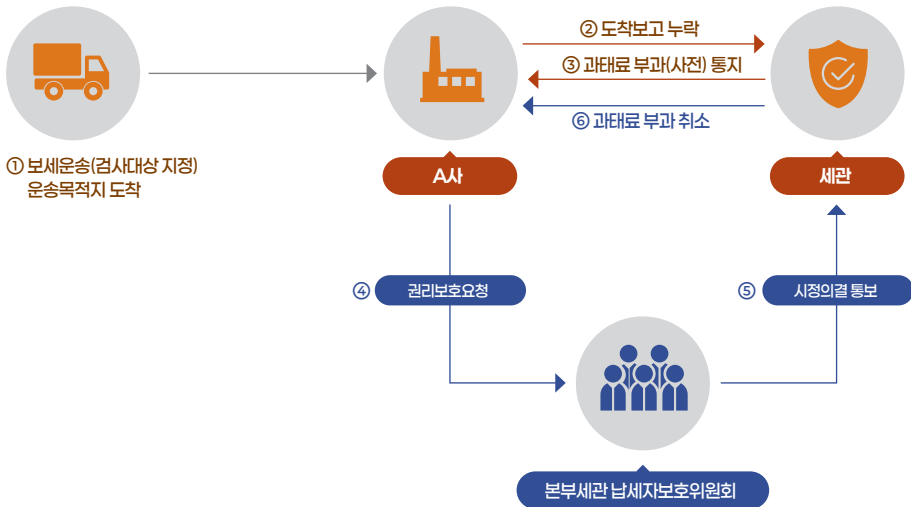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사례 4

A사가 보세운송 도착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예정)처분 받고 신청한 권리보호요청건에 대해 도착보고 누락 당시의 상황분석과 관련제도 해석 등 다각적인 판단으로 처분취소 결정



##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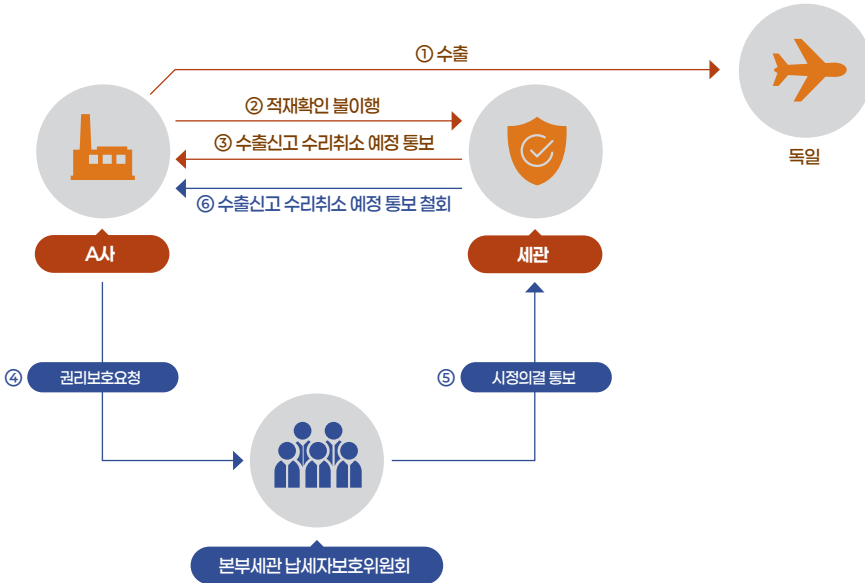
- 보세운송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도착지 세관장에게 도착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A사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A사는 당시 도착보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팩스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세운송 물품에 대하여 도착보고를 하였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처리하였음을 유선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경과한 현시점에 도착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 생각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A사가 16년 당시 팩스를 통해 도착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관련규정상 민원인의 서류 보관 의무기간(2년)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4년)에 도착보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민원인에게 지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과도하다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요청에 대한 인용 결정

## 사례 5

적재확인 절차를 위반했으나, 객관적 자료로 독일수출이 입증되어 수출신고수리 취소처분(예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권리보호 결정



## 사실관계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탁송물품의 형태로 휴대하여 반출할 때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 확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A社에 대해 관련 수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 취소 예정 통보
- A社(수탁가공 업체)는 독일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임가공 후 재수출하면서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독일내 락다운 발생에 따른 물류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휴대탁송(핸드캐리)하여 항공편으로 수출 진행
- 제품이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수입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고 당해년도 매출 마감 및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수출신고가 취소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A社가 담당자 부주의로 세관의 적재확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물품이 관련서류(납세고지서 등)를 통해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수입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을 고려하여 수출신고수리 취소처분(예정)은 불합리 하다고 결정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6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부록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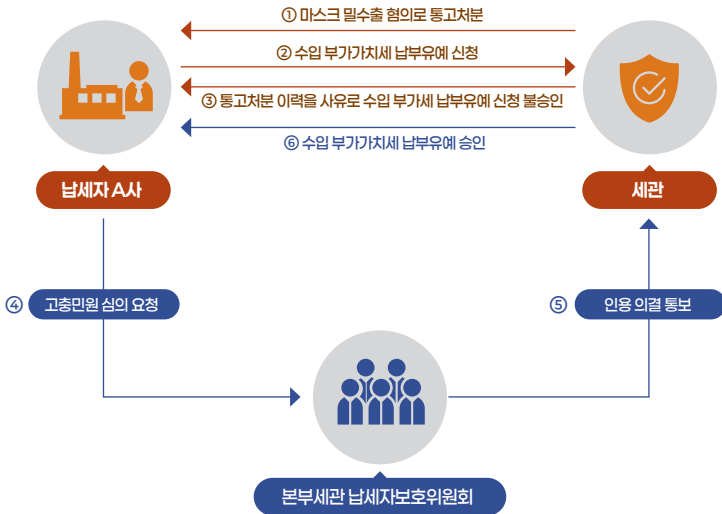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사례 6

통고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A사의 통고처분 발생 정황, 사유,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불승인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결정(처분부서에서 재심의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함)



##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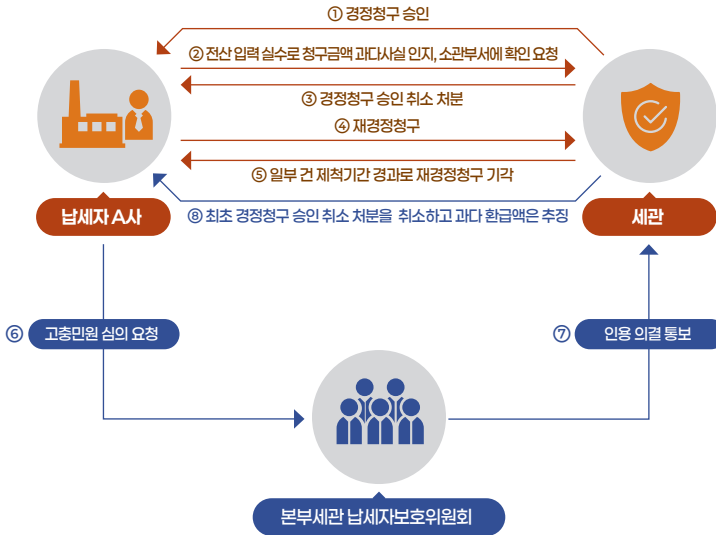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 2월, 납세자 A사는 중국에 파견된 자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려 하였으나, 당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및 시행으로 마스크 생산업자 외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수출 금지되자 직원들의 명의로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밀반출 하려해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 받음
- 2020년 5월 A사는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불승인 통지를 받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처분세관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불승인한 원처분이 적절한 처분이기 하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규정이 수출을 주로하는 성실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유예 해주는 지원 정책임을 볼 때 A사는 해당 통고처분 외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미충족 요건이 없고, 동 통고처분이 코로나19에 따라 해외 파견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고처분 발생 원인과 과정 등을 고려하여 A사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불승인 처분의 재고 요청에 대해 인용 결정

## 사례 7

경정청구 승인 건에 대하여 납세자A사가 입력 실수로 과다한 금액이 청구된 사실을 인지하고 소관부서에 확인 요청 후 소관부서가 기존 승인을 취소처분하여 다시 경정청구하였으나, 일부 건이 경정청구기간을 초과하여 기각 처분된 건에 대하여, 최초 경정청구 시점이 경정청구기간 내이고 소관부서의 승인 취소 처분에 의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회가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정 청구 인용 결정



## 사실관계

- A사는 국내발생비용 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직원 착오로 전산 입력시 공제 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하여 청구된 사실을 인지하고 소관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였고, 소관부서는 기존 경정청구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A사는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소관부서가 일부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초과를 사유로 기각처분하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처분세관이 납세자의 재경정청구 건에 대해 경정청구기간이 초과하여 기각 처분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이기 하나, 신청인이 오류내역을 정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청구기간이 초과하게 된 것 또한 고의성이 없으며 오류정정 사유가 과다환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인정하여 인용 결정

부록  
01

단기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6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부록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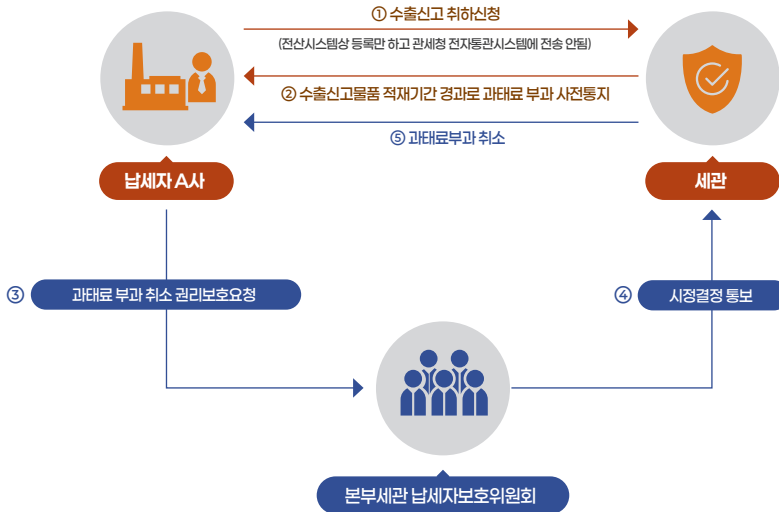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 사례 8

납세자 A사가 사용하는 전자시스템 오류로 수출신고 취하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아 적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A사의 고의성이 없고 전산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



## 사실관계

- A사는 수출신고물품을 적재기한 내에 적재하기 어려워 납세자 A가 사용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신고 취하를 진행하였으나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수출신고 취하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에 처분부서는 적재기한 내에 적재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함
- 납세자 A는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시스템에 '취하 진행 중'으로 되어있어 취하 신청이 제대로 된 것으로 이해하였고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니므로 과태료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요청인이 전자시스템에 취하신청 등록을 한 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을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요청인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고 취하를 위해 전자시스템에 취하 등록을 한 점, 시스템에 '취하진행중'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취하 신청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요청에 대한 인용 결정

###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소개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에 대한 모든 분야(수출입 통관, FTA, 품목분류, 평가·감면, 특송물품·휴대품 통관, 보세화물, 환급 등)에 걸쳐 “one-call, total service”를 제공
- 상담은 전화, 채팅,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

###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해외 : 82-2-3438-5199)

| 상담번호 | 상담분야내용          |
|------|-----------------|
| 1    | FTA             |
| 2    | 해외직구            |
| 3    | 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
| 4    | 품목분류·HS코드       |
| 5    | 수입통관 및 평가·감면    |
| 6    | 수출통관            |
| 7    | 관세환급            |
| 8    | 보세·화물관리         |
| 9    | 조사, 외환 및 기타 상담  |

- 전화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며, 채팅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09:00~11:20, 오후 12:00~18:00(공휴일, 토요일 제외)

### ■ 인터넷상담

- (상담신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all.customs.go.kr>) ⇨ 인터넷상담코너]에 상담 등록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답변(법령 설명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설명 7일 이내)
- (사례검색) [인터넷상담코너 ⇨ ①상담사례조회(Q&A)/②자주하는질문(FAQ)]를 검색하여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조회 가능

### ■ 방문상담

- 전화(02-3438-5113) 또는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예약한 후 방문하여 상담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2동 611호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 인터넷상에서 업무 관련 자료 찾는 법

### ■ 인터넷상에서 관세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 ● 각종 법령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등 → 해당란을 클릭 후 검색어 검색

#### ● 과세환율

관세청 UNI-PASS → 환율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 우측 하단에 관세환율정보 → 관세환율 더보기

#### ● 과세가격

관세평가예규 : 관세평가분류원 (https://customs.go.kr/cvnci/main.do) → 평가분류원정보 → 관세평가 → 관세평가사례

#### ● 수출입 통관절차 안내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 개인 통관고유번호 발급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 통관고유번호 발급

#### ● 해외직구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 이사물품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해외 이사물품

#### ●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예상세액 조회

#### ● UNI-PASS 사용자 등록 및 인증센터

관세청 UNI-PASS → 고객센터 → 사용자 등록 / 인증센터

#### ● 수출 이행내역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수출 이행내역

#### ● 수출입통계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 이달의 통관실적 → 통관실적 더보기 → 수출입무역통계

#### ● 원산지 증명서 신청

관세청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 전락물자 사전판정

전락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yestrade.go.kr)

### ● 관세청 UNI-PASS 장애 발생시

기술지원센터(1544-1285)

### ● 민원서식

관세청 홈페이지 → 알람·소식 → 통합자료실 → 민원서식 및 작성요령

### ● 간이정액환급률표

관세청 UNI-PASS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간이정액환급률(세번부호별 전체년도 조회)

### ● 관세환급안내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 → 기업부담 완화제도 → 관세환급

### ● 환급금지지급은행 코드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공개 정보목록 → 징수·환급 → 환급 → 관세 환급금 지급은행 현황

### ● 관세사시험 관련 공지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 관세사시험

### ● 외국관세청 사이트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 관련 기관안내 → 외국관세청

### ● 외국의 관세율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세계HS정보

### ● 외국관세 사이트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 소개 → 관련 기관안내 → 외국관세 → 외국관세 사이트

### ● 우편물 통관 진행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우편물 통관 진행정보

### ● 여행자 분실물 검색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여행자 분실물 검색

### ● 납세신고 도움정보

관세청 UNI-PASS → 정보조회 → 납세신고도움정보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6

납세자  
관리구제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관세·수출입  
업무 관련  
연락처



수출입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성실신고 가이드북**



부록 **04**  
**수출입·관세업무 관련  
연락처**

## ■ 관세청 연락처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125                       | <a href="http://call.customs.go.kr">http://call.customs.go.kr</a>                           | 관세행정 상담전반           |
| 관세청 밀수, 관세탈루 신고               | 국번없이 125                       | <a href="http://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a>                             | 밀수/관세포탈, 마약, 불법외환신고 |
| 관세청 전자통관<br>기술지원센터(HELP-DESK) | 1544-1285                      | <a href="http://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a>                       | UNI-PASS, 관세행정정보시스템 |
| 관세청행정통합민원센터                   | 080-512-2339                   | <a href="http://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a>                             | 관세행정불만, 개선건의        |
| 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0                   |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 과세환율, 평가            |
| 관세평가분류원 분류1과                  | 042-714-7535                   |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 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 안내     |
| 관세평가분류원 분류2과                  | 042-714-7583                   |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 품목분류(01~81, 84류)    |
| 관세평가분류원 분류3과                  | 042-714-7559                   |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 품목분류(82~83, 85~97류) |
| 중앙관세분석소                       | 055-792-7312~5                 | <a href="http://cclss.customs.go.kr">http://cclss.customs.go.kr</a>                         | 분석, 과학기술지원          |
|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 032-720-7400                   | <a href="https://customs.go.kr/incheon-airport/">https://customs.go.kr/incheon-airport/</a> | 국제우편물통관             |
|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br>(부산국제우체국)       | 055-783-7420<br>(055-371-0100) | <a href="https://customs.go.kr/yongdang">https://customs.go.kr/yongdang</a>                 | 국제우편물통관             |
| 서울세관 이사회물과                    | 02-510-1184,7                  | <a href="https://customs.go.kr/seoul">https://customs.go.kr/seoul</a>                       | 이사회물품               |
| 인천세관 통관검사2과                   | 032-452-3243                   | <a href="https://customs.go.kr/incheon">https://customs.go.kr/incheon</a>                   | 이사회물품               |

## ■ 수출입관련 문의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02-3416-5000  | <a href="https://www.kctdi.or.kr">https://www.kctdi.or.kr</a>               | 수출입실적, 무역통계표 교부         |
| 한국관세물류협회(서울)             | 02-701-1455   | <a href="https://www.kcla.kr">https://www.kcla.kr</a>                       | 보세사시험, 보세운송업자 차량 등록     |
| 한국관세사회                   | 02-547-9714~6 | <a href="https://www.krcaa.or.kr">https://www.krcaa.or.kr</a>               | 관세사안내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600-7119     | <a href="https://www.kotra.or.kr">https://www.kotra.or.kr</a>               | 외국의 관세율, 외국통관제도         |
|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 02-759-5300   | <a href="https://voc.bok.or.kr">https://voc.bok.or.kr</a>                   |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상담          |
| 국세청 국제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 <a href="https://call.nts.go.kr">https://call.nts.go.kr</a>                 | 내국세 문의                  |
| 한국무역협회                   | 1566-5114     | <a href="https://www.kita.net">https://www.kita.net</a>                     | 무역업체초회, 무역상담            |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 02-3445-3761  | <a href="https://www.e-tipa.org">https://www.e-tipa.org</a>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
|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br>신고상담센터 | 1666-6464     | <a href="https://koipa.re.kr/ippolice">https://koipa.re.kr/ippolice</a>     | 위조상품신고센터                |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a href="https://www.kipo.go.kr/kcall">https://www.kipo.go.kr/kcall</a>     | 상표등록확인, 지식재산권           |
| 국제우편물류센터                 | 032-745-9733  | <a href="https://koreapost.go.kr/se/ipo">https://koreapost.go.kr/se/ipo</a> | 우편물도착확인                 |
| 무역안보관리원                  | 02-6000-6400  | <a href="https://www.kosti.or.kr/">https://www.kosti.or.kr/</a>             | 전략물자 판정                 |
| 한국인공지능·<br>소프트웨어산업협회     | 02-2188-6900  | <a href="https://www.sw.or.kr">https://www.sw.or.kr</a>                     | 무체물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 처리      |
| (사)보성 유통사업단              | 02-511-0322   | <a href="https://www.utong.or.kr">https://www.utong.or.kr</a>               | 관세청 물수품·국 고귀속물품<br>수탁판매 |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1577-8863    | <a href="https://www.korndi.or.kr">https://www.korndi.or.kr</a> | 위험물 분류, 선적허가 등         |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1566-2119    | <a href="https://www.ktnet.co.kr">https://www.ktnet.co.kr</a>   | 전자통관서비스, 무역서류          |
| 대한상공회의소<br>원산지증명센터 | 02-6050-3303 | <a href="https://cert.korcham.net">https://cert.korcham.net</a> | 원산지증명서, 까르네 발급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054-429-4000 | <a href="https://www.naqs.go.kr">https://www.naqs.go.kr</a>     | 농산물원산지표시<br>(농산물품질관리법)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 <a href="https://www.motie.go.kr">https://www.motie.go.kr</a>   | 대외무역관리규정               |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 044-203-4044 | <a href="https://www.motie.go.kr">https://www.motie.go.kr</a>   | 원산지제도문의                |

## ■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1577-1255                | <a href="https://www.mfds.go.kr">https://www.mfds.go.kr</a>         | 약사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br>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br>축산물 위생관리법,<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02-596-7404              | <a href="https://www.kmdia.or.kr">https://www.kmdia.or.kr</a>       |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
| 한국동물약품협회            | 031-707-2470             | <a href="https://www.kahpa.or.kr">https://www.kahpa.or.kr</a>       |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
| 한국약품수출입협회           | 02-6000-1841             | <a href="https://www.kpta.or.kr">https://www.kpta.or.kr</a>         |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국번없이 110<br>044-201-1827 | <a href="https://www.mafra.go.kr">https://www.mafra.go.kr</a>       | 수입허가(양곡관리법),<br>양허관세추천(보리, 쌀)                                               |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1000             | <a href="https://www.qia.go.kr">https://www.qia.go.kr</a>           | 동축산물, 식물 검역                                                                 |
| 국립농업과학원             | 063-238-2000             | <a href="https://www.naas.go.kr">https://www.naas.go.kr</a>         | 중금속검사항격(비료관리법)                                                              |
| 농협중앙회               | 02-2080-5114             | <a href="https://www.nonghyup.com">https://www.nonghyup.com</a>     |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br>쌀보리수출추천(양곡관리법)                                            |
| 한국단미사료협회            | 02-585-2223              | <a href="https://www.kfeedia.or.kr">https://www.kfeedia.or.kr</a>   |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
| 한국사료협회              | 02-581-5721~33           | <a href="https://www.kofeed.org">https://www.kofeed.org</a>         |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
| 한국종자협회              | 031-760-1620~1           | <a href="https://www.kosaseed.or.kr">https://www.kosaseed.or.kr</a> | 종자산업법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br>검역검사과 | 051-400-5716             | <a href="https://www.nfq.go.kr">https://www.nfq.go.kr</a>           | 수산물 검역                                                                      |
| 국립수산물과학원            | 051-720-2303             | <a href="https://www.nifs.go.kr">https://www.nifs.go.kr</a>         | 이식승인(수산업법)                                                                  |
|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 <a href="https://www.motie.go.kr">https://www.motie.go.kr</a>       | 생화학무기법                                                                      |
| 국가기술표준원             | 1381<br>043-870-5600     | <a href="https://www.kats.go.kr">https://www.kats.go.kr</a>         | 안전인증, 안전검사,<br>자율안전확인(전기생활용품안전법),<br>형식승인확인(계량에관한법률)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0             | <a href="https://www.kcl.re.kr">https://www.kcl.re.kr</a>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 1899-7654                | <a href="https://www.ktc.re.kr">https://www.ktc.re.kr</a>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80-808-0114             | <a href="https://www.ktl.re.kr">https://www.ktl.re.kr</a>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 한국의료 시험연구원          | 02-3668-3000             | <a href="https://www.katri.re.kr">https://www.katri.re.kr</a>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381<br>1577-0091                      | <a href="https://www.ktr.or.kr">https://www.ktr.or.kr</a>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 FTI시험연구원                | 02-3299-8000                           | <a href="https://www.fiti.re.kr">https://www.fiti.re.kr</a>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 KOTITI시험연구원             | 02-3451-7000                           | <a href="https://www.kotiti-global.com">https://www.kotiti-global.com</a>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 <a href="https://www.kgs.or.kr">https://www.kgs.or.kr</a>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 환경부 토양지하수와              | 1577-8866<br>044-201-7185              | <a href="https://www.me.go.kr">https://www.me.go.kr</a>                       | 먹는물관리법                                              |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0                           | <a href="https://www.me.go.kr">https://www.me.go.kr</a>                       | 야생생물보호법, CITES                                      |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3                           | <a href="https://www.me.go.kr">https://www.me.go.kr</a>                       | 수출입허가(폐기물국가간이동및<br>처리에관한법률, 바젤협약),<br>수출입신고(폐기물관리법) |
| 한국환경공단                  | 032-590-4000                           | <a href="https://www.keco.or.kr">https://www.keco.or.kr</a>                   | 폐기물부담금<br>(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03                           | <a href="https://www.kcma.or.kr">https://www.kcma.or.kr</a>                   | 화학물질관리법                                             |
| 국립환경과학원                 | 032-560-7114                           | <a href="https://www.nier.go.kr">https://www.nier.go.kr</a>                   | 소음인증(소음진동규제법),<br>배출가스인증(대기환경보전법)                   |
| 한국교통안전공단<br>(자동차안전연구원)  | 1577-0990<br>(031-369-0367)            | <a href="https://main.kotsa.or.kr">https://main.kotsa.or.kr</a>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주)1599-0001<br>(야)044-201-4672        | <a href="https://www.molit.go.kr">https://www.molit.go.kr</a>                 | 형식승인, 형식신고<br>(건설기계관리법)                             |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397-7300                            | <a href="https://www.nssc.go.kr">https://www.nssc.go.kr</a>                   | 원자력안전법                                              |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 02-3490-7111                           | <a href="https://www.koara.or.kr">https://www.koara.or.kr</a>                 | 원자력안전법                                              |
| 국립전파연구원                 | 061-338-4567                           | <a href="https://www.rra.go.kr">https://www.rra.go.kr</a>                     | 적합성평가인증(전파법)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br>(교육홍보팀) | 02-761-1101<br>(02-761-1104)           | <a href="https://www.aerospace.or.kr">https://www.aerospace.or.kr</a>         | 수출입공고(항공기 등), 관세감면                                  |
| 한국석유공사                  | 052-216-2114                           | <a href="https://www.knoc.co.kr">https://www.knoc.co.kr</a>                   | 석유수입부과금(석유사업법)                                      |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 02-2076-1023                           | <a href="https://dialogue.unikorea.go.kr">https://dialogue.unikorea.go.kr</a> | 반출입승인(남북교류협력법)                                      |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02-3150-2647                           | <a href="https://www.police.go.kr">https://www.police.go.kr</a>               | 총포, 도검, 화약류수입허가                                     |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02-3270-6062                           | <a href="https://www.kdia.or.kr">https://www.kdia.or.kr</a>                   | 방위사업법<br>(일반방산물자수출허가)                               |
| 방위사업청                   | 1577-1118<br>02-2079-6377<br>(수출진흥 담당) | <a href="https://www.dapa.go.kr">https://www.dapa.go.kr</a>                   | 방위사업법<br>(주요방산물자수출입허가)                              |
| 국가유산청(T1)<br>문화유산감정관실   | 032-740-2921~2                         | <a href="https://www.khs.go.kr">https://www.khs.go.kr</a>                     | 문화재보호법(비문화재확인서)                                     |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 042-481-4894                           | <a href="https://www.khs.go.kr">https://www.khs.go.kr</a>                     | 문화재보호법(반출허가)                                        |
| 한국화학산업협회                | 02-3668-6193                           | <a href="https://kcia.kr">https://kcia.kr</a>                                 | 수입금납부, 수입확인서<br>(오존층 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br>등에 관한 법률)   |
| 안전보건공단<br>산업안전보건연구원     | 1644-4544<br>052-703-0833              | <a href="https://www.kosha.or.kr">https://www.kosha.or.kr</a>                 | 위험기계, 보호구경정<br>(산업안전보건법)                            |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간행물윤리위원회 | 063-219-2822 | <a href="https://www.kpec.or.kr">https://www.kpec.or.kr</a> | 추천(출판문화산업진흥법)                          |
| 영상물등급위원회 | 051-990-7200 | <a href="https://www.kmr.or.kr">https://www.kmr.or.kr</a>   | 등급분류(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br>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 게임물관리위원회 | 051-720-6800 | <a href="https://www.grac.or.kr">https://www.grac.or.kr</a> | 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 ■ 관세감면추천 확인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031-713-0588 | <a href="https://www.kocema.org">https://www.kocema.org</a>           |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 02-565-2721  | <a href="https://komma.org">https://komma.org</a>                     |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2-369-8600  | <a href="https://www.koami.or.kr">https://www.koami.or.kr</a>         |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02-576-3472  | <a href="https://www.ksia.or.kr">https://www.ksia.or.kr</a>           |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 <a href="https://www.moef.go.kr">https://www.moef.go.kr</a>           | 감면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114 | <a href="https://www.koita.or.kr">https://www.koita.or.kr</a>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관세감면) |
| 외교부                     | 02-3210-0404 | <a href="https://www.mofa.go.kr">https://www.mofa.go.kr</a>           | 외교관용품 확인          |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044-215-7621 | <a href="https://mosf.go.kr">https://mosf.go.kr</a>                   |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    |
| 외국인투자지원센터<br>(인베스트 코리아) | 1600-7119    | <a href="https://www.investkorea.org">https://www.investkorea.org</a> | 외국인투자촉진법          |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0 | <a href="https://www.mohw.go.kr">https://www.mohw.go.kr</a>           | 장애인용품(관세감면)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044-203-4323 | <a href="https://www.motie.go.kr">https://www.motie.go.kr</a>         | 재수출감면세(관세감면)      |
| 산업통상자원부<br>조선해양플랜트과     | 044-203-4338 | <a href="https://www.motie.go.kr">https://www.motie.go.kr</a>         | 재수출감면세(관세감면)      |

## ■ 양허관세 추천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한국종축개량협회   | 02-588-9301~5 | <a href="https://www.aiak.or.kr">https://www.aiak.or.kr</a>                           | 종우, 종돈                             |
| 대한양계협회     | 02-588-7651~4 | <a href="https://www.poultry.or.kr">https://www.poultry.or.kr</a>                     | 종계, 조란                             |
| 한국유가공협회    | 02-584-3631   | <a href="https://www.koreadia.or.kr">https://www.koreadia.or.kr</a>                   | 분유, 연유, 유장, 버터, 유당                 |
| 국립종자원      | 054-912-0119  | <a href="https://www.seed.go.kr">https://www.seed.go.kr</a>                           | 종자용감자, 종자용옥수수, 종자용조,<br>대두, 사료용근채류 |
| 한국과수종묘협회   | 054-435-5338  | <a href="https://www.kkja.org">https://www.kkja.org</a>                               | 종묘                                 |
| 산림조합중앙회    | 02-3434-7114  | <a href="https://www.nfcf.or.kr">https://www.nfcf.or.kr</a>                           | 대추, 밤, 잣                           |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064-739-5401  | <a href="https://www.citrusjeju.nonghyup.com">https://www.citrusjeju.nonghyup.com</a> | 오렌지, 감귤                            |
| 한국대두가공협회   | 02-712-9431   | <a href="https://blog.naver.com/korsoypa">https://blog.naver.com/korsoypa</a>         | 대두                                 |
| 한국대용유사료협회  | 02-597-0688   | <a href="https://www.milkreplacer.or.kr">https://www.milkreplacer.or.kr</a>           | 기타 배합사료, 보조사료                      |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한국사료협회        | 02-581-5721~33 | <a href="https://www.kofeed.org">https://www.kofeed.org</a>       | 매니옥펠리트, 보리, 옥수수, 대두, 사료용근채류, 참깨유박                                                        |
| 한국단미사료협회      | 02-585-2223    | <a href="https://www.kfeedia.or.kr">https://www.kfeedia.or.kr</a> | 골분, 사료용근채류, 옥분, 보조사료                                                                     |
| 대한잡사회         | 02-783-6071    | <a href="https://kojamsa.or.kr">https://kojamsa.or.kr</a>         | 잡종, 뽕나무                                                                                  |
| 한국생사수출입조합     | 02-785-5915    |                                                                   | 누에고치, 생사                                                                                 |
| 한국섬유수출입협회     | 02-6284-5000   | <a href="https://www.textra.or.kr">https://www.textra.or.kr</a>   | 생사                                                                                       |
| 한국전분·당협회      | 031-440-9941   | <a href="https://kc pia.or.kr">https://kc pia.or.kr</a>           | 옥수수                                                                                      |
| 농협중앙회         | 02-2080-5114   | <a href="https://www.nonghyup.com">https://www.nonghyup.com</a>   | 천연꿀, 고구마, 매니옥펠리트, 종자용호밀, 종자용귀리, 맥주맥, 종자용옥수수, 종자용수수, 맥아, 전분, 이눌린, 변성전분, 고구마전분, 인조꿀, 참깨유박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114   | <a href="https://www.at.or.kr">https://www.at.or.kr</a>           |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녹두, 팥, 기타서류, 오렌지, 감귤, 목차, 생강, 옥수수, 메밀, 기타가공곡물, 감자분, 대두, 낙화생, 참깨, 인삼, 참기름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02-2162-8000   | <a href="https://www.kpta.or.kr">https://www.kpta.or.kr</a>       | 옥수수, 매니옥전분, 밀전분, 변성전분등                                                                   |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02-3474-7124   | <a href="https://www.kcca.or.kr">https://www.kcca.or.kr</a>       | 옥수수, 매니옥전분, 변성전분등                                                                        |
| 한국제지연합회       | 02-549-0981    | <a href="https://www.paper.or.kr">https://www.paper.or.kr</a>     | 옥수수, 매니옥전분, 변성전분등                                                                        |

## ■ 할당관세 추천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대한석유협회          | 02-3775-0520 | <a href="https://www.petroleum.or.kr">https://www.petroleum.or.kr</a>       | 석유, 역청유                                               |
|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 02-2280-8200 | <a href="https://www.kfpic.or.kr">https://www.kfpic.or.kr</a>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
|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 031-761-0921 | <a href="https://kppca.org/">https://kppca.org/</a>                         | 폴리(락트산)                                               |
| 한국생사수출입조합       | 02-785-5915  |                                                                             | 생사                                                    |
| 한국섬유수출입협회       | 02-6284-5000 | <a href="https://www.textra.or.kr">https://www.textra.or.kr</a>             | 생사                                                    |
| 한국철강협회          | 02-559-3500  | <a href="https://www.kosa.or.kr">https://www.kosa.or.kr</a>                 | 페로실리코망간                                               |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02-576-3472  | <a href="https://www.ksia.or.kr">https://www.ksia.or.kr</a>                 | 동의박                                                   |
| 한국비철금속협회        | 02-567-2313  | <a href="https://www.nonferrous.or.kr">https://www.nonferrous.or.kr</a>     | 니켈분                                                   |
| 한국대용유사료협회       | 02-597-0688  | <a href="https://www.milkreplacer.or.kr">https://www.milkreplacer.or.kr</a> | 유장                                                    |
| 한국단미사료협회        | 02-585-2223  | <a href="https://www.kfeedia.or.kr">https://www.kfeedia.or.kr</a>           | 유장, 귀리(사료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
| 한국주류산업협회        | 02-780-6414  | <a href="https://www.kalia.or.kr">https://www.kalia.or.kr</a>               | 매니옥칩(주정용), 조주정                                        |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한국사료협회        | 02-581-5721~33 | <a href="https://www.kofeed.org">https://www.kofeed.org</a>                   | 매니옥칩과 펠리트(사료용),<br>겉보리(사료용), 귀리(사료용),<br>옥수수(사료용), 면실(사료용),<br>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당밀(사료용),<br>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
| 농협중앙회         | 02-2080-5114   | <a href="https://www.nonghyup.com">https://www.nonghyup.com</a>               | 매니옥칩과 펠리트(사료용),<br>호밀(녹비용), 맥주맥, 겉보리(사료용),<br>귀리(사료용), 옥수수(사료용), 밀전분,<br>맥아(맥주제조용), 면실(사료용),<br>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당밀(사료용),<br>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
| 한국곶협회         | 02-571-6082~3  |                                                                               | 팝콘용 가공용 옥수수                                                                                                                                 |
| 한국곡물차재가공협동조합  | 02-2652-5166   |                                                                               | 가공용 옥수수                                                                                                                                     |
| 한국인양품수출협회     | 02-2162-8000   | <a href="https://www.kpta.or.kr">https://www.kpta.or.kr</a>                   | 옥수수전분                                                                                                                                       |
| 한국제지연합회       | 02-549-0981    | <a href="https://www.paper.or.kr">https://www.paper.or.kr</a>                 | 옥수수전분, 매니옥전분                                                                                                                                |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02-3474-7124   | <a href="https://www.kcca.or.kr">https://www.kcca.or.kr</a>                   | 옥수수전분                                                                                                                                       |
| 한국제분협회        | 02-777-9451    | <a href="https://www.kofmia.org">https://www.kofmia.org</a>                   | 밀(제분용)                                                                                                                                      |
| 한국전분·당협회      | 031-440-9941   | <a href="https://kcopia.or.kr">https://kcopia.or.kr</a>                       | 가공용 옥수수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6300-1114   | <a href="https://www.at.or.kr">https://www.at.or.kr</a>                       | 가공옥수수(콘그리츠제조용)                                                                                                                              |
| 한국대두가공협회      | 02-712-9431    | <a href="https://blog.naver.com/korsoypa">https://blog.naver.com/korsoypa</a> |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 한국유가공협회       | 02-584-3631    | <a href="https://www.koreadia.or.kr">https://www.koreadia.or.kr</a>           | 유당                                                                                                                                          |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00   | <a href="https://www.kfia.or.kr">https://www.kfia.or.kr</a>                   | 카세인 및 카세인유도체<br>(커피크리머제조용)                                                                                                                  |
| 한국비료협회        | 02-552-2810~2  | <a href="https://www.fert-kfia.or.kr">https://www.fert-kfia.or.kr</a>         | 요소(비료 및 비료제조용)                                                                                                                              |
| 한국작물보호협회      | 02-3474-1590~4 | <a href="https://www.koreacpa.org">https://www.koreacpa.org</a>               | 농약원제                                                                                                                                        |

## ■ 한·아세안 FTA 할당 추천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631-1114 | <a href="https://www.at.or.kr">https://www.at.or.kr</a>       | 강낭콩(기타용)                   |
| 국립종자원         | 054-912-0119 | <a href="https://www.seed.go.kr">https://www.seed.go.kr</a>   | 강낭콩(종자용)                   |
| 한국주류산업협회      | 02-780-6414  | <a href="https://www.kalia.or.kr">https://www.kalia.or.kr</a> | 매니옥                        |
| 한국제지연합회       | 02-549-0981  | <a href="https://www.paper.or.kr">https://www.paper.or.kr</a> | 매니옥전분                      |
| 한국수산물무역협회     | 02-6300-8901 | <a href="https://www.kfta.net">https://www.kfta.net</a>       | 새우, 새우살, 냉동갑오징어,<br>새우가공식품 |

## ■ 한·EFTA FTA 할당 추천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대형선망수협        | 051-254-9011 | <a href="https://www.sunmang-suhyup.co.kr">https://www.sunmang-suhyup.co.kr</a> | 냉동고등어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631-1114 | <a href="https://www.at.or.kr">https://www.at.or.kr</a>                         | 스위스치즈 |

## ■ 한·칠레 FTA 할당 추천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631-1114 | <a href="https://www.at.or.kr">https://www.at.or.kr</a> |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유장, 기타채소, 맥더린, 자두 |

## ■ 한·EU FTA 할당 추천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631-1114               | <a href="https://www.at.or.kr">https://www.at.or.kr</a>                                                                                  |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오렌지, 맥주맥, 맥아, 텍스트린 |
| 한국유가공협회               | 02-584-3631                | <a href="https://www.koreadia.or.kr">https://www.koreadia.or.kr</a>                                                                      | 식용 유장, 치즈류, 조제분유                            |
| 한국단미사료협회<br>한국대용유사료협회 | 02-585-2223<br>02-597-0688 | <a href="https://www.kfeedia.or.kr">https://www.kfeedia.or.kr</a><br><a href="https://milkreplacer.or.kr">https://milkreplacer.or.kr</a> | 보조사료                                        |

## ■ 한·미 FTA 할당 추천기관

|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631-1114               | <a href="https://www.at.or.kr">https://www.at.or.kr</a>                                                                                  |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감자(침용 및 증지용 제외), 오렌지, 보리, 맥주맥, 맥아, 옥수수전분, 수삼, 백삼, 텍스트린 |
| 한국유가공협회               | 02-584-3631                | <a href="https://www.koreadia.or.kr">https://www.koreadia.or.kr</a>                                                                      | 식용 유장, 치즈류, 조제분유                                                                |
| 한국단미사료협회<br>한국대용유사료협회 | 02-585-2223<br>02-597-0688 | <a href="https://www.kfeedia.or.kr">https://www.kfeedia.or.kr</a><br><a href="https://milkreplacer.or.kr">https://milkreplacer.or.kr</a> | 사료용 식물, 보조사료                                                                    |

부록  
**0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  
점검하기

부록  
**02**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6**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부록  
**03**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부록  
**04**

수출입관세  
업무 관련  
연락처



##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 행 일 : 2025년 12월

발 행 처 : 관세청 심사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TEL.(042)481-7862

FAX.(042)481-7869

편 집 : 손성수 심사국장

김용철 심사정책과장

박진규, 채정균, 남우현, 신현우, 심혜원, 김동익, 강정광, 서은정, 이석영, 유종숙,

임덕호, 김성구, 이은정, 정미희, 김은경, 추민지, 이기범, 한상희, 김소현, 정니나,

김상욱, 강민권, 황제영, 정문길, 이준아, 김승경, 고령, 박귀숙, 권영미

디자인·인쇄 : design 3mm(02-6263-0200)

이 책자는 수출입기업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록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세법 또는 관계 법령을 참고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수록사항에 대하여는 책자 내용 중  
「문의처」 또는 「125 관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5번)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